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文學博士學位論文

조선 후기 鑄錢정책과 財政활용

2014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 史 學 科

兪 昡 在

조선 후기 鑄錢정책과 財政활용

指導敎授 金 仁 杰

이 論文을 文學博士 博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 史 學 科

兪 昡 在

兪昡在의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14년 1월

위 원 장 _____(인)

부 위 원 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조선 후기 鑄錢정책과 財政활용

유현재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국사학계의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는 농업생산력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상공업발달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특히 상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농업 기술의 발달 때문에 잉여생산물이 나타나고 이를 기반으로 교환경제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화폐의 유통량과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사학계의 화폐사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언제부터 유통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유통 규모와 범위를 밝혀 간접적으로 상업발달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고려부터 조선 후기까지 화폐유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화폐연구가 상업발달의 상응관계를 조명하는 데 집중한 결과 전근대 화폐유통의 역사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초기부터 유통된 화폐에 대해 대체로 상업과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근대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모습을 전근대에 투영하는 오류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전근대의 화폐가 근대의 화폐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 따라서 고려시기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성격도 기본적으로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결과물로 이해하였고, 조선시대에 유통되었던 화폐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대량으로 유통된 상평통보 이전의 화폐는 모두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유통이 실패한 화폐로 간

주했다.

본격적인 조선시대 화폐사에 대한 고찰은 상평통보(常平通寶) 발행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화폐유통에 대한 당대의 제도적인 고찰이 이루어졌고, 화폐가 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화폐가 유통될 수 있었던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즉, 조선 내부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화폐유통을 촉진했는지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의 화폐유통을 고찰하는데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다. 하지만 전근대 유통된 화폐유통은 상업보다 국가의 재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화폐를 유통하는 목적과 시행정책 등을 살펴볼 때에 국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 화폐사 연구가 지나치게 상업과 관련성에 주목하여 오히려 화폐로 파악할 수 있는 조선 후기 다양한 맥락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 하에 좀 더 거시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화폐유통을 검토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본 논문은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상평통보 유통 이전에 사용되었던 화폐가 어떤 과정으로 발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화폐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살펴보면서 조선 초기의 화폐유통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켜 보았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화폐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통되었다. 당대의 화폐가 경제의 발달과 조응한 것이라고 한다면 화폐가 존재했던 고대 중국의 경제와 상평통보가 등장했던 18·19세기 조선사회와 차이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고대 중국의 기록에 나타나는 화폐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보고 이후 조선시대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인식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화폐의 기능을 재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해 보았다. 그 결과 조선 초기에 유통되었던 동전이나 楮貨은 국가 주도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유통되었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의 화폐는 유통된 시간과 공간적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재정적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책으로 재평가했다.

제2장에서는 상평통보의 유통과 대량 주전이 가능해졌던 시대적 변화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후기의 화폐유통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것은 화폐의 원료에 대한 문제와 그와 관련된 대외적인 조건이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法貨였던 상평통보의 주재료는 구리였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구리 생산량이 많지 않아 전국적으로 유통될 정도로 많은 양의 동전을 주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구리를 해외, 그 중에서도 17세기 이후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반 이상을 산출하고 있었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동은 은과 함께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淸에서는 동을 확보하고자 일본에 첩자까지 파견하여 구리수입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리에 대한 무역경쟁이 심화되고 일본의 구리 수출제한 조치가 더해지면서 동의 무역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동전의 가격을 시장의 원리에 맡길 경우 조선에서는 필요한 양의 구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는 중국에서도 국가적으로 주전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만큼 중국과 경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VOC마저 가세하여 구리무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조선은 어떻게 이 경쟁체제에서 동을 획득하고 주전하였는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있던 중국의 화폐유통과 조선의 상황을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축적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가 화폐를 대규모로 유통시키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중국이나 다른 국가와 경쟁하며 어떻게 원료를 취득해 나갔는지, 그리고 국가는 화폐를 재정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중국과 다른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렇게 만들어진 화폐가 과연 당대의 상업현실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었는지 양적인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에서 탈피하여 당대의 흐름 속에서 조선시대 유통된 화폐의 기능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관점의 확대를 통해 1678년 주전되었던 상평통보는 국가의 주도 아래 재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민간에 유통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은과 교환할 수 있는 동전의 양을 중국과 일본이 1:800정도의 비율로 정했던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1:200~400 사이로 정하며 차액만큼 국가가 이익을 가져가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동전원료를 수입하는 대외환경이 변화하면서 동전 유통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동전유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동전이 유통되는 제반 여건이 악화되고 동전을 제작하는 것은 재정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관에서 세납을 동전으로 실시하면서 현물을 거둘 때보다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동전유통을 지속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동전이 직접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동전유통으로 재정물류의 유동성이 증가했고 동전을 통해 다양한 재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균역법으로 대표되는 중앙 재정정책의 큰 변화 속에서 동전을 통해 재정 적자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던 점은 동전유통이 지속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단순히 교환수단으로 간주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재정수단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왜 錢荒 속에서도 동전의 사용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동전이 재정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시켜주었는지 백성과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상평통보 이전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성격을 재조명

하고 상평통보의 주전과 행전을 주변국과 비교하여 조선의 화폐정책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켜보았다. 조선은 동전 유통을 통해 당시 위기에 빠져 있던 재정상황을 호전시키고 임시방편으로 조선 후기 사회의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비슷한 시기 일본과 중국의 화폐사 연구를 통해 조선만의 특징이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주요어: 楮貨, 朝鮮通寶, 常平通寶, 倭銅, 銀錢比價, 주전이익
학번: 2005-30032

목 차

서론 ····· 1

제1장 常平通寶 이전의 화폐유통과 성격 ····· 13
1. 조선 초기 화폐유통의 성격 ····· 13
1) 전근대 화폐의 특징 ····· 13
2) 면화의 유입과 통용 ····· 19
3) 銀의 유입과 유통 ····· 32

2. 명목화폐의 발행과 재정책 ····· 40
1) 楮貨의 발행 ····· 40
2) 朝鮮通寶의 유통 ····· 48

3. 兩亂 이후의 銅錢 유통책 ····· 58
1) 壬辰倭亂 전후의 동전 유통 ····· 58
2) 丙子胡亂 이후의 동전 유통책 ····· 73

제2장 17세기 동아시아 구리 유통구조의 변동과 常平通寶 발행 ····· 86
1. 17세기 조선의 정세 변동과 鑄錢 필요성 대두 ····· 86
1) 兩亂의 극복과 재정의 확대 ····· 86
2) 일본의 광업생산량 변화와 倭銅 수입 ····· 94

2. 常平通寶의 발행과 재정적 효과 ····· 109
1) 鑄錢의 과정과 확대 ····· 109
2) 常平通寶의 주전이익과 재정확충 ····· 128

제3장 廢錢論의 대두와 常平通寶의 재정효용 ····· 156
1. 동전의 공급감소와 廢錢 논의의 진전 ····· 156
1) 민간의 廢錢 논의: 星湖 李瀷의 廢錢論을 중심으로 ··· 156
2) 純木令의 실시 ····· 168

2. 倭銅 수입감소와 貨幣流通策 ····· 180
1) 주전량의 감소와 高額換 ····· 180
2) 倭銅의 확보노력과 결제수단 ····· 186

3. 18세기 중반 동전의 활용과 유통 ····· 195
1) 동전납의 확산과 '民願'의 증가 ····· 195
2) '貿米'의 활용과 재정유동성 증가 ····· 207

결론 ····· 220

참고문헌 ····· 237

Abstract ····· 245

표 목차

표 1) 惡米 금지 내용 ····· 28
표 2) 중국의 은 수입량 추계(1550~1645) ····· 38
표 3) 명대 초기 중국의 銅 가격 ····· 51
표 4) VOC를 통해 수출한 일본 동전 수량 ····· 67
표 5) 戶曹 세입세출표 ····· 92
표 6) 일본의 은 생산량 추계 ····· 95
표 7) 일본의 對朝鮮 동수출액 ····· 103
표 8) 乾隆年間 지방전국개주시 사용 동의 출처 ····· 106
표 9) 對淸 연평균 銅수출량 ····· 107
표 10) 18세기 일본과 스웨덴의 연간 구리 생산량과 수출량 118
표 11) 일본 수출동의 할당량 분포 ····· 120
표 12) 幕府의 구리 매입가격(1773년)과 時價 비교표 ····· 122
표 13) 동아시아 각국의 일본 구리 수입가격 변화 ····· 123
표 14) 淸의 국내 銅생산량과 주전량 비율 ····· 142
표 15) 常平通寶의 鑄錢利益 변동표 ····· 145
표 16) 常平通寶의 銀錢比價 변동표 ····· 151
표 17) 18~19세기 大坂 지역 銀錢比價 변동표 ····· 152
표 18) 淸代 銀錢比價 변동표 ····· 153
표 19) 公木·公作米 지급수량 ····· 188
표 20) 17세기 말~18세기 초 조선의 米·綿布 가격 변화표 ·· 191
표 21) 戶曹의 연간 수출입액 중 동전의 수량 ····· 196
표 22) 宣惠廳의 연간 수입·지출량 중 동전 액수 ····· 197

그림 목차

그림 1) VOC를 통해 수출한 일본 동전 수량 ····· 76
그림 2) 明淸시기 銀錢比價 변화(1629~1649) ····· 82

부표 목차

부표 1) 明·淸시기 銀錢比價 변동 ····· 228
부표 2) 18~19세기 大坂및 京都의 米·綿布의 가격 변화표 ··· 230
부표 3) 숙종~정조 연간 물가 변동표 ····· 232

서론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국사학계의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는 농업생산력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상공업발달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특히 상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농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잉여생산물이 나타나고 이를 기반으로 교환경제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점차 상업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맹아'가 트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전근대사회의 해체를 설명하기 위해 농업과 상업의 발달을 규명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1] 그 중에서도 전근대사회를 해체시킨 주요 요인으로 상업을 주목하면서, 상업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시도되었다. 기존 연구성과의 대체적 경향은 조선 후기를 '자본주의 맹아'가 커가고 있던 시기로 규정하며 조선 후기 역사를 봉건사회의 해체기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즉, 농업과 상업의 발달을 봉건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지주제와 신분사회를 무너뜨리는 동력으로 보았다. 또한 조선 후기에 발행된 常平通寶도 역시 당대 경제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화폐의 유통량과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사학계의 화폐사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언제부터 유통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유통 규모와 범위를 밝혀 간접적으로 상업발달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2]

최근 국사학계와 상반된 시각으로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해석하

1) 김용섭, 1991 『증보판 조선후기농업사연구』(Ⅱ) 일조각; 강만길, 1973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출판부; 고동환, 1998 『조선후기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이태진 외, 2000 『서울상업사』 태학사

2) 宋贊植, 1975 『李朝의 貨幣』春秋文庫 9, 한국일보사; 원유한, 1975 『朝鮮後期 貨幣史硏究』 한국연구원

는 경제학계의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양산되면서 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시도된 일련의 연구들은 조선 후기 기록물 가운데 장기적인 시계열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류나 물가자료를 이용하여 조선 후기 경제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조선 후기 경제지표를 계량화하고 있다.[3] 경제학계에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내놓은 조선 후기 경제지표는 지금까지 국사학계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조선이 19세기 초를 기점으로 장기적인 침체에 빠진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들은 조선후기의 농업생산성은 상승하지 않았으며 상업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이자율, 가격통합성 등 각종 지표도 상업발달에 비우호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9세기 이전까지 조선의 경제 지표가 점차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어 '맬서스(Malthus)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선 후기 역사의 성격을 자본주의적 발전이 아닌 침체에 가까운 장기변화로 규정짓고 있다. 토지가격, 인구증가율, 노동자의 임금수준 등 서구자본주의를 규정짓는 경제지표를 조선 후기 경제에 적용하여 조사한 결과, 이전까지 국사학계에서 설명하던 조선 후기의 경제상과 정반대의 모습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시기를 해석하는 정반대의 연구 결과는 그 간극을 좁히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갈래의 연구 경향 모두 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상업의 발달 그리고 신분제의 해체로 이어지는 단선적 발전과정을 상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존 국사학계의 역사인식은 이전단계가 존재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단선적인 역사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사학계의 연구 결과와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경제학계의 한국사연구도 또한 이전단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새로운 다음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의 단선적인 역

3) 조선 후기 자료를 계량화하여 경제 변동을 설명한 대표적인 저작으로 이영훈 편,『수량경제사로 본 조선후기』 서울대출판부 2004가 있다.

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선적인 시각으로는 고려시대의 벽란도로 대표되는 해외무역의 성행에 비해 그보다 규모와 대상이 줄어든 조선시대의 해외무역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을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생산력이 발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사가 발전한다는 시각으로는 고려시대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더 발전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제적 현상을 통계수치에 따라 발전과 낙후로 결정짓고, 또 몇 가지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접근도를 가늠하는 방법은 현대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해줄 수 있다. 하지만 전근대 사회는 그 사회 자체의 시대적 상황과 맥락이 있으며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분석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근대사회의 경제적 지표를 현대 경제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과거의 역사를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다.

전근대사회의 화폐연구도 상기한 의미에서 기존 시각을 벗어나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화폐의 교환 기능에 집중하여 화폐의 양적인 확대를 곧 교환의 증가 혹은 상업의 발달로 등치시켜 왔다. 따라서 세종대 朴瑞生이 일본에 통신사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화폐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던 사실을 보고하고 조선에도 편리하게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자고 건의하는 실록의 기사는 단선적인 발전과정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기록이다.[4] 기존 시각에서 세종대 기사를 해석하면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조선에는 그에 상응하는 화폐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조선의 경제 수준이 화폐를 유통시킬 수준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뒤집기 위해 조선에도 일본의 화폐유통에 상응하는 화폐 대체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연구가 나오

4) 『세종실록』 세종 11년 12월 3일

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麤布인데, 당시에 조선에는 화폐가 없었지만 거의 가치가 없는 열악한 품질의 麤布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의 명목화폐와 같은 기능을 추포가 대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5] 조선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동전이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추포가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즉, 조선에서도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추포가 화폐를 대신해서 사용되었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전근대 화폐가 교환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었던 만큼 화폐의 등장을 경제발달과 동일시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전근대의 화폐는 교환수단의 기능 외에도 지불수단, 가치표시 기능 등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교환수단 역할을 하는 화폐가 필요한 것은 전근대나 근대사회나 마찬가지이지만 화폐가 없다고 해서 그 사회를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낙후된 사회로 등치시키는 것은 화폐의 기능을 너무 축소시켜 버려 오히려 화폐로 읽어 낼 수 있는 전근대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死藏시켜 버릴 수 있다. 화폐에 교환수단으로서의 의미만 부여한다면 전근대 시기 화폐유통량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제의 후퇴로 직결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상 유통된 화폐의 양이 전적으로 확대만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보다 이른 시기에 화폐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던 일본에서도 貫高制에서 石高制로 변화가 있었고 조선에서도 英祖代에 純木令이 내려져 廢錢論이 실행에 옮겨지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역사의 흐름에 반대되는 반동적 흐름으로 해석한다면 당대의 정치·경제적 변화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화폐사 연구에서 향후 새롭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어떤 구조 속에서 동전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廢錢 정책이 시행되었는가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화폐사 연구는

5) 송재선, 1985 「16세기 면포의 화폐적 기능」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삼영사, 389~430쪽

화폐의 교환수단이라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전근대 화폐는 근대의 화폐와 달리 화폐의 유통과 발행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국가의 정치적 의도가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화폐를 단순히 경제현상을 측정하는 도구로만 보지 말고 당대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재정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면서 조선시대 화폐유통을 검토한다면 당대의 사회·경제상을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화폐에 대한 연구는 1940년대에 시작되었다.[6] 古代에 한반도에서 발견된 중국화폐 明刀錢부터 1678년 이후 조선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널리 유통한 常平通寶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유통이 확인된 모든 화폐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그 대상이었다. 이후 조선시대 화폐제도에 대한 연구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화폐의 종류와 변천과정에 대해 서술한 造幣公社의 기초적 연구가 시작이었다.[7] 하지만 연대기 자료인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화폐제도의 변화를 서술하다보니 화폐유통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못했다. 이후 본격적인 조선시대 화폐사에 대한 고찰은 원유한과 송찬식이 상평통보 발행을 전후한 시기에 유통된 화폐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며 시작되었다. 먼저 원유한은 1963년 肅宗대 화폐 주조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화폐연구를 진행하였다.[8] 원유한은 조선후기 화폐유통에 대한 특징을 화폐가 유통되었던 시기별 특징과 화폐유통

6) 유자후, 1940 『朝鮮貨幣考』 학예사
7) 최호진의 연구는 그가 참여한 『韓國貨幣全史』를 통해 최초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의 저작도 『韓國貨幣全史』를 다시 정리하여 발간한 정도였다. (韓國造幣公社, 1968 『韓國貨幣全史』; 최호진, 1974 『韓國貨幣小史』 瑞文堂)
8) 원유한, 1963 『李朝肅宗時代의 鑄錢에 對하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유한의 화폐에 대한 논고는 80여 편에 달한다. 조선 후기 화폐유통에 대해 설명한 그의 대표적인 책은 다음과 같으며 이전 연구를 종합하여 최근에 간행하였다.(원유한, 2008 『조선후기 화폐사』 혜안)

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던 다양한 인물들의 주장을 통해 세밀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송찬식은 숙종대의 동전 유통문제에 대해 『承政院日記』와 『備邊司謄錄』에 기록된 자료들을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면밀하게 고찰하여 정리하였다.[9] 그는 화폐유통이 당시 상품유통, 상업자본에 끼친 영향에 대해 폭넓게 분석하여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의 논문에서도 밝힌바 대로 그동안 수집한 화폐관계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성에 따라 집필하였던 만큼 그의 연구는 후학들의 조선후기 화폐연구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세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연구 성과들은 조선후기 화폐유통의 실상과 의의를 상당부분 밝혀내었다. 조선후기 화폐를 유통시켰던 당대의 제도적인 고찰이 이루어졌고, 화폐가 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화폐가 유통될 수 있었던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10] 조선 내부의 사회·경제적인 발달이 어떻게 화폐유통을 촉진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화폐유통을 고찰하는데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다.[11]

상기한 선구적인 연구가 수행된 이후 화폐와 상업교환의 증가는

---

9) 宋贊植, 1975, 앞의 책

10) 화폐의 유통은 국가 내부적 요인 뿐 아니라 외부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어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Hiroyuki Honda, 2007, *Copper coinage, Ruling Power and Local Society in medieval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2007), 4, pp. 225-240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하지만 화폐가 유통되기 위한 내부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화폐가 소개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초기의 楮貨 유통을 고려 말에 유입되었던 元의 寶鈔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은(김도연, 2004, 「元간섭기 화폐유통과 寶鈔」 『한국사학보』 18) 당시 元의 寶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이강한, 『13~14세기 高麗-元 교역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73쪽).

11) 화폐연구를 집대성한 원유한은 우리나라 화폐유통의 역사를 아래와 같이 시기구분하며 화폐가 교환경제의 성숙에 따라 어떻게 발전했는가라는 시각으로 정리하였다. 화폐생성기(고조선~10세기 말), 화폐유통 시도기의 전반(10세기 말~14세기 말), 화폐유통시도기의 후반(14세기 말~16세기 말), 화폐경제 성장발전기(17세기 초~19세기) 근대화폐 수용기(19세기~20세기 초)로 구분하고 있다.(원유한, 2008,『조선후기 화폐사』 혜안)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 발전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의 경우에는 자료가 많지 않아 官撰 기록을 중심으로 화폐유통의 실상이 파악되었다.[12] 조선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화폐 유통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외에도 賣買文記와 같이 실제 화폐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私撰資料가 많이 남아 있어 상평통보 발행 이후 전국적인 유통상황을 확인한 연구도 나오게 되었다.[13] 이 연구들에서는 고려시대 이후 국가에서 발행한 동전과 楮貨와 같은 지폐가 민간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퇴장되었던 상황과 대비시켜 조선후기 화폐가 이전 시기보다 넓은 범위에서 많은 양의 화폐가 사용되었던 사실을 史料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민간부분의 화폐사용 확대를 기반으로 세금으로 동전을 받아들이는 金納이 확대되는 현상을 시기별로 확인하여 화폐경제의 성숙도를 가늠하기도 했다.[14]

상기한 연구 성과들은 모두 전근대 화폐유통이 민간에서 활발하게 나타날 경우 상품화폐경제도 그에 상응하여 발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이는 화폐사 연구에서 전근대 화폐유통이 근대적 화폐유통과 유사할수록 전근대경제에서 근대적 경제체제로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고려부터 조선 후기까지 화폐유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5] 하지만

---

12) 고려시대 화폐유통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채웅석의 연구가 있고(채웅석, 1988 「고려전기 화폐유통의 기반」『한국문화』 9), 조선 초기의 저화를 비롯한 화폐유통에 대해서는 원유한과 권인혁의 세밀한 연구가 있다.

13) 정수환, 2007 『17세기 동전유통의 정책과 실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수, 2006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경북대출판부

14) 방기중, 1984 「17·18세기 전반 금납조세의 성립과 전개」『東方學誌』 45

15) 원유한, 2006 『한국화폐사』, 한국은행; 김병하, 1970 「이조전기의 화폐 유통-포화유통을 중심으로-」『경희사학』 2; 전수병, 1982, 「조선 태종대의 화폐정책-저화유통을 중심으로」『한국사연구』 40; 권인혁, 1984 「조선 초기 화폐유통연구-특히 태종대 저화유통을 중심으로」『역사교육』; 권인혁, 1984, 「세종대의 저화유통책」『논문집』 17 제주대; 권인혁, 1986 「세종대의 동전유통책」『논문집』 19; 이강한, 2001, 「고려후기 元寶·의 유입 및 유통실태」『한국사론』 46; 이정수, 2006,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경북대출판부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화폐와 상업발달의 상응관계를 조명하는 데에 집중하여 전근대 화폐유통의 역사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한계가 있다. 조선초기부터 유통된 화폐에 대해 상업과 관련성을 파악해 보려는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근대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모습을 전근대에 투영하는 오류를 벗어나지 못했다. 즉, 전근대의 화폐가 근대의 화폐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기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성격도 기본적으로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결과물로 이해하였고,[16] 조선시대에 유통되었던 화폐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17] 그러다보니 각 화폐가 유통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고찰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과 중국에 비해 화폐유통 시기가 지체되었던 사실은 경제발달 즉 상품화폐경제 발달의 지체와 동일시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과 일본에 유통되었던 화폐와 비슷한 유형의 화폐가 우리 역사에도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연구에서는 사용가치가 없는 麤布가 명목화폐 기능을 하며 당시 발달한 유통경제를 매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18] 즉, 중국과 일본에 비해 당대 조선의 화폐경제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점을 추포 유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16세기 당시 조선에서 유통된 추포를 화폐와 등치시켜 당대의 경제를 실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이후 16세기 조선의 경제를 인접 국가의 경제수준과 비교·검토하는 근거로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추포는 사용가치가 담보되어야만 유통될 수 있었던 만큼 명목화폐로 기능했던 것은 아니다.[19]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통해 전근대 시기 화폐유통에 대한 외형

16) 채웅석, 1988,「高麗前期 貨幣유통의 기반」 『한국문화』 9
17) 현재까지 조선시대 화폐사를 살핀 연구들이 대부분 이러한 시각에 중점을 두고 있다.
18) 송재선, 1985 「16세기 면포의 화폐적 기능」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 유현재, 2005, 「16세기 추포유통 유통과 그 성격」 『한국사론』 38

적인 사실은 거의 밝혀졌다. 하지만 전근대 화폐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근현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와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화폐유통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근대 경제적 상황을 국사학계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제학계의 연구 성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 당대 시각에서 화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당대에 화폐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와 이를 기반으로 전근대 사회에서 어떻게 화폐가 유통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상평통보 유통 이전에 사용되었던 화폐가 어떤 과정으로 발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화폐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살펴보면서 조선 초기의 화폐유통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화폐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통되었다. 당대의 화폐가 경제의 발달과 조응한 것이라고 한다면 화폐가 존재했던 고대 중국의 경제와 상평통보가 등장했던 18·19세기 조선사회와 차이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고대 중국의 기록에 나타나는 화폐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보고 이후 조선의 연대기 자료와 문집 등을 통해 조선시대와 현대의 화폐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조선후기 화폐의 실상에 접근하기 위해 전근대 화폐의 기능과 정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당시 조선에 유통되었던 화폐가 상업적인 측면 외에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국가주도로 제조되었는지, 그리고 유통된 화폐는 조선 후기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화폐의 기능을 재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함으로써 전근대 화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에서는 상평통보의 대량 주전이 가능해졌던 시대적 변화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조선후기의 화폐유통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것은 화폐의 원료에 대한 문제와 그와 관련된 대외적인 조건이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法貨였던 상평통보의 주재료는 銅이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銅鑛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생산량이 많지 않아 전국적으로 유통될 다량의 동전을 주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銅을 해외, 그 중에서도 17세기 이후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반 이상을 산출하고 있었던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동은 은과 함께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淸나라에서는 동을 확보하고자 일본에 첩자까지 파견하여 구리수입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리에 대한 무역경쟁이 심화되고 일본의 구리 수출제한 조치가 더해지면서 동의 무역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동전의 가격을 시장의 원리에 맡길 경우 조선에서는 필요한 양의 구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는 중국에서도 국가적으로 주전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만큼 중국도 동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VOC[20]마저 가세하여 구리무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조선은 어떻게 이 경쟁체제에서 동을 획득하고 주전하였는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있던 중국의 화폐유통과 조선의 상황을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축적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또한 대규모 주전과 행전을 시행하면서 주도적으로 나타날 수밖

20) VOC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ampagnie)의 약자로 1602년에 설립되었다. 네덜란드의 선박회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자 정부 차원에서 네 개의 선박회사를 합병하고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두었는데 네덜란드 의회는 동인도회사에 통치권에 준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어 국가와 회사의 권한이 비슷한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아시아 무역을 담당하여 일본과 무역에도 참여하였다.

에 없는 국가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1678년 상평통보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전의 원료인 구리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작업은 국가적인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당시에는 동전의 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료의 수입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구리를 수입하여 동전을 제조하고 동전을 통해 물가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화폐의 기능적인 측면보다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전 시기 화폐 유통이 단기간 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화폐의 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화폐의 실질가치가 부족한 명목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했던 원인이 컸던 것에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가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 어떠한 관점으로 화폐를 바라봤으며, 일본으로부터 중국이나 다른 국가와 경쟁하며 어떻게 원료를 취득해 나갔는지, 그리고 국가가 화폐를 재정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중국과 다른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렇게 만들어진 화폐가 과연 당대의 상업현실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양적인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에서 탈피하여 당대의 흐름 속에서 조선시대 유통된 화폐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관점의 확대를 통해 전근대 화폐의 성격과 유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화폐를 통해 당대사를 새롭게 바라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3장에서는 동전원료를 수입하는 대외환경이 변화하면서 국가의 주전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관의 行錢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재정적으로 적자를 감행하면서 관에서 동전을 유통하였던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동법과 균역법으로 대표되는 중앙 재정정책의

큰 변화 속에서 동전이 어떠한 기능을 하면서 재정과 관련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당대의 변화를 동전유통의 관점에서 해석해보았다. 화폐의 기능을 단순히 교환수단으로 간주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재정수단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왜 동전 사용이 錢荒 속에서도 동전의 사용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상평통보 이전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상평통보의 주전과 행전을 주변국과 비교하여 조선의 화폐정책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화폐는 당대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 아래에서 유통되었는지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화폐를 교환수단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상업발달을 측정하는 도구로만 바라본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전근대 조선을 유지하는 데에 화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제1장 常平通寶 이전의 화폐유통과 성격

1. 조선 초기 화폐유통의 성격

1) 전근대 화폐의 특징

화폐는 고대 중국 商周시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布帛, 珠, 玉 등을 포함하여 貝殼까지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고대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화폐는 현물이 아닌 금속을 용해해 특정한 형태로 제작되어 발행되어 유통되기도 했고, 원나라 시기에는 지폐인 寶鈔가 사용되기도 했다. 형태의 변화는 시기가 내려오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화폐에 대한 규정과 인식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다.

貨幣의 어원은 중국에서는 비단에서 비롯되었다. 서양에서는 라틴어로 '황소'를 뜻하는 'pecus'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둘 다 그 자체만으로도 물품가치가 높은 귀중품을 의미한다. 고대 중국에서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布帛, 珠, 玉 등도 물품자체가 높은 가치를 지니는 귀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포백이나 황소 그리고 진주와 같은 것들은 물품가치가 높은 화폐므로 널리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수량이 확보되지 못했고 교환수단으로서 내구성이 떨어져 화폐라기보다는 하나의 귀중품에 가까웠다.

상기한 화폐는 화폐로 분류하고 있지만 근대에 유통되는 화폐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폐가 사용되는 공간 또한 근대적인 시장과 그 기능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전근대 화폐유통을 근대적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화폐유통에 대해 잘못 이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록 오늘날과 형태상 동일한 銅錢과 지폐가 이른 시기부터 유통되었지만,[1] 화폐가 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근대 화폐와 많은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2] 즉, 전근대에 유통된 화폐를

오늘날의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전근대 화폐유통에 대한 역사성을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근대 화폐는 근대에 유통되었던 화폐와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근대의 화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전근대 화폐에 대하여 전제하고 있는 일반적 특징과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역사상 유통되었던 화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보자면 물품화폐, 금속화폐 그리고 지폐와 같은 명목화폐로 구분할 수 있다. 고대 중국으로부터 金, 銀, 玉과 같은 귀금속 그리고 布, 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화폐로 사용되었다.[3]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것은 동전형태로 布幣, 刀幣, 環錢, 蟻鼻錢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布幣는 농기구로 쓰이던 괭이나 쟁기의 초기 형태였던 '鎛'에서 기원하였으며 아랫부분의 모양에 따라 뾰족한 형태의 尖足布, 둥근 모양의 圓足布, 方足布, 釿足布로 구분되었다.[4] 刀錢은 칼날 형태를 띄는 화폐이고, 環錢은 圓錢이라고도 한다. 전국시대 말기에 진나라와 위나라에서는 圓體 중앙에 둥근 구멍이 있는 圓體圓孔錢이 나왔고, 뒤이어 제나라에서 네모진 구멍의 圓體方孔錢이 유통되었다. 蟻鼻錢은 조개모양의 화폐로, 외형 때문에 '銅貝'라고도 불린다. 뒷면은 평평하고 대신 앞면이 볼록하게 솟아있고 그 위에 글자를 음각하여 화폐를 구분하였다. 이후 외형은 원형이고 가운데 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는 圓錢이 가장 널리 퍼

1) 화폐가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중국의 경우 商周 시기에 가축이나 곡식, 포백 등이 화폐로 사용되었고 춘추전국시기에는 황금과 銅으로 주조한 幣가 나타나 유통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화폐의 정확한 용도와 가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葉世昌, 2002, 「春秋戰國時期貨幣理論」『中國貨幣理論史』 厦文大學出版部)

2) 고병권, 2005, 『서유럽에서 근대적 화폐구성체의 성립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36~39쪽.

3) 葉世昌, 앞의 책, 3쪽.

4) 丁福保 2006,『歷代古錢圖說』丁福保编纂出版社

져 유통되었다. 원전은 玉璧의 형태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근대이전까지 유통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화폐종류 만큼 화폐를 바라보는 인식도 한가지로 고정되지 않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화폐는 물품화폐에서 금속화폐 그리고 명목화폐의 순서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고 그 변천과정을 '발달'로 간주하였다.[5] 따라서 물품화폐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대신 금속화폐나 명목화폐가 최초로 유통되기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선진적인 화폐제도가 먼저 도입된 것으로 간주했다.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소재가치와 관계없이 가벼운 고액의 화폐가 유통되는 것은 화폐의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동전과 지폐와 같은 화폐가 출현하는 것을 '화폐발달'의 중요한 증거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환경제가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시장에서는 운송이 편리하고 소재가치와 관계없이 액면가가 다양한 화폐를 원하였고,[6]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명목화폐로 '발전'할수록 화폐는 더 활발하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시장이 화폐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7] 이런 논리 속에서 명목화폐는 시장에서 환영받았고 명목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는 시장에서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8] 당시 유통되었던 화폐는 오늘날의 화폐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9] 기능이 같다면 좀 더 가볍고 사용하기

---

5) 전성인, 1996,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25~36쪽.

6) 시장에서 교환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필요의 이중적 우연 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 즉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교환 당사자들이 서로의 물건을 원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환하는데 있어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이 거절하기 힘든 어떤 하나의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폐이다. (애덤 스미스, 김수행 역, 1996,『국부론』상권, 동아출판사, 29~30쪽)

7) J. R. Hicks, *A Market Theory of Money* (Oxford, 1989), pp.47~54

8) 교환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하나의 통화로 교환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9)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근대의 화폐는 한 종류의 화폐로 오늘날에서처럼 모든 기능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

편리한 화폐로 대체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동일한 액면가가 인쇄된 명목화폐라면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가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는 시장에서 사라진다고 보았다.[10]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역량이 증가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는 대량으로 제조할 수 없었으므로 가치보장을 담보한 명목화폐가 유통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화폐는 교환에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하나의 화폐로 통합되어 이전의 화폐와 '대체'되고 점차 물품화폐와 같은 교환수단은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 보았다.[11] 정리하자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볍고 소재가치가 없는 명목화폐가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을 근대적 화폐유통의 최종 종착지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어떤 화폐가 시장에서 유통되는지에 따라 해당 시기의 경제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전근대의 화폐유통은 실제 역사를 살펴볼 때에 위에서 상정한 변천 과정과는 다른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전근대의 화폐는 오늘날과 외형상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어 유통되었지만 시장에서는 빈번하게 정체현상을 보이며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했다.[12] 실제 이러한 사례는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宋代 (960~1270)에는 역사상 동전이 가장 많이 유통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13] 그 중에서도 발행량이 가장 많았던 1070~80년 사이에는 거의 6백 만관의 동전이 시중에 유통

었다.(칼 폴라니, 이종욱 역, 1994 『초기제국에 있어서의 제국과 시장』 민음사, 340쪽)

10) 이를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이라고 한다. 즉,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Good Money)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Bad Money)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레샴은 이 현상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고 표현하였다.

11) 정운찬, 2000, 『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판사, 30-42쪽.

12) 통화수단이 시장에서 사라져 개인적으로 축장하는 '錢荒(Currency Famine)'이라는 문제가 화폐의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13) 마크 엘빈, 李春植 외 역, 1989, 『중국역사의 발전형태』 신서원

되는 등 화폐의 공급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12세기 초반에 동전은 시장에서 사라져버렸고 새로운 통화를 발행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14] 지폐발행을 가장 성공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받는 원나라에서도 1260년 中統鈔를 시작으로 불태환 지폐였던 至元鈔까지 紙幣를 연속해서 유통시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다. 1302년부터는 至元鈔의 불태환원칙을 수정하여 동전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서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至元鈔와 동전유통도 恒常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하고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다.[15] 그 결과 元말기에는 100貫의 지폐로 1kg의 곡식도 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16] 조선에서도 17세기 후반부터 상평통보가 法貨로 정해져 사용되었고 동전유통이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동전유통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로 보았던 영·정조 대에도 錢荒의 문제가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었다.[17] 또한 양란이 채 끝나기도 전부터 전란이 끝난 직후 화폐의 원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行錢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 경우 鑄錢 원료도 부분적인 유통만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로 분량이 작았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화폐가 유통되었다고 보기보다 국가가 필요에 따라 화폐를 유통하지 않았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화폐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원활하게 순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실제 역사상 화폐는 시대와 상관관계 없이 유통과 정체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체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한가지로 규정하기 힘들다. 우선 통화발행량을 조절하지 못해 인플레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흉년과 같은 자연재해로 곡식가격이 등귀했기 때

14) Von R. Glahn, *Ibid*,, pp. 48-49.
15) Von R. Glahn, *Ibid* pp. 57-66.
16) Von R. Glahn, *Ibid* p. 69.
17) 『영조실록』 권30, 7년 8월 6일 ; 『정조실록』 권17, 8년 2월 14일

문에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화폐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화폐와 실제 유통이 강제된 화폐가 달랐기 때문이다.[18] 즉, 지폐나 동전과 같은 명목화폐는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화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통강제책이나 가치보장이 명확하게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떨어져 유통에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전근대 국가에서 유통시켰던 화폐가 시장의 필요보다는 국가의 목적에 따라 발행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19] 국가에서 발행했던 화폐는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 졌다기보다 군사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재정적 필요에 따라 세금을 걷는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20] 이에 비해 실제 시장에서 필요로 했던 교환수단은 상인들이 수요에 맞게 유통시키고 있었다. 심지어 20세기 초반까지 중국과 인도에서는 특정상품을 특정한 화폐로만 구입하는 현상이 지속되기도 했을 정도였다.[21] 구매자들이 택하는 교환수단은 국가에서 발행한 통화 외에도 곡식과 布 그리고 금과 은 같은 귀금속에 이르기까지 상인들이 필요에 따라 혹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18) Kuroda Akinobu, *Ibid*, 2007.

19) 화폐가 국가의 필요성 혹은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 졌는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이다. 교토대학의 중국사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필요에 따라 화폐를 유통시켰다는 관점을 소개했다. 하지만 본래 화폐의 행정적 측면은 막스 베버(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pp.176~178)가 먼저 설파한 것으로 보인다. (Von R. Glahn, "Revisiting The Song Monetary revolutiom"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1, 1 (2004)*, pp. 159-178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 宮澤知之는 北宋대의 활발한 동전 유통이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北宋대에 한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화폐유통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宮澤知之, 1998『宋代中國の國家と經濟』 創文社, 68-70쪽)

21) 1910년 江西省 북단의 九江에서는 멕시코산 은은 차와 도자기를 구입하는데만 사용되었고, 일본산 은은 燈油와 면직물을 구입하는데만 사용하였다. 1789년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상업화가 진전된 벵갈지역에서 통화유통실태를 조사했는데 52개의 순도와 무게가 다른 동전이 유통되었다고 파악하였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특정화폐로는 특정상품만 구입하는 현상도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Kuroda Akinobu, “Concurrent but non-integrable currency circuits:complementary relationships among monies in modern China and other region” *Financial History Review 15*.I 2008, pp.17-20)

해 특정한 화폐를 고집하기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일한 화폐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근대 시장에서 화폐는 표면적으로는 복잡하게 유통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통일되지 못한 화폐는 시장에서 불편함을 야기했다기보다[22] 전근대사회에서 다양한 수요를 매개하는 중요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23] 이와 같이 전근대의 화폐는 오늘날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형태와 다른 모습이 상당 부분 나타난다. 다음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화폐가 어떤 형태로 유통되었으며 유통된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면화의 유입과 통용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5세기 후반부터 국가주도의 명목화폐는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었다. 정부주도의 화폐가 시장에서 퇴장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가 관주도의 화폐를 유통시킬 의지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면포는 국가주도의 화폐가 사라진 가운데 새로운 교환수단으로 민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면포는 조선 초기에는 아직 널리 사용되지 못했고, 면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고려 말 文益漸을 통해 한반도에 유입되었다.[24] 원나라를 통해 고려에 유입되기 이전에도 한반도에 다른 종류의 면화가 일부 재배되고

22) 로이드 E. 이스트만, 이승휘 역, 1999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155쪽.
23) 실제 20세기 초반에 외국인들은 중국정부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일된 화폐를 만들어 줄 것을 바랐으나(G. Vissering, *On Chinese Currency,* vol. Ⅰ(Amsterdam, 1912).) 당시 중국 사람들은 복잡해 보이는 통화 시스템에 대해 전혀 불만을 느끼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만 불평을 할 뿐이었다.(Kann, *Currency of China,* pp.416~417)
24) 『高麗史』 권25 열전, 文益漸

있었던 것이 고고학 유물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해살이의 목화가 전래되어 재배되었던 것은 문익점이 원으로부터 목화씨를 몰래 들여온 시기 이후로 보인다.[25]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목화는 본래 고온 건조한 인도지역에서 재배되었던 품종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것도 원나라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최초로 중국에 전래되었던 한해살이 면화는 실크로드를 통해 오늘날 파키스탄으로 전해진 아시아면(학명:G.herbaceum)이었다. 이 면화는 오늘날 신강자치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재배되기 시작하여 주변부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면화의 재배는 기후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 만큼 확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재배되었던 면화는 조생종으로 130일 정도의 생장기간이 필요하였다. 이후 7세기까지는 신강지역, 12세기에는 산시성까지 면화재배가 이루어졌고, 13세기에는 양자강까지 확대되었다.[26]

또한 문익점이 수입한 새로운 목화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다양한 종류의 면화가 중국에 전래되어 재배되고 있었다. 기록상 등장하는 면포에 대한 이칭은 柴花, 吉貝, 如蘿 등이 있는데 이것은 문익점이 도입한 한해살이 면화가 아니라 다년생 면화이거나 품종이 다른 면화였다.[27] 당시 재배되고 있는 목화들은 모두 직조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다른 재질로 직조한 천 사이에 충전물로 집어넣어 보온 효과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직조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재배되던 면화가 직조과정에서 다습한 환경

25) 목화의 다른 별칭이 여러 기록 들에 散見되는데 '吉貝'와 같은 명칭도 조선 후기에는 면포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류가 다른 다년생 목면으로 보아야 한다.

26) 면화는 건조지방에서 잘 자랐지만 직조 단계에서는 습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면화를 생장시키고 면포로 직조하는 과정을 한 지역에서 전부 완성하기 쉽지 않았다. 건조한 지역에서 직조를 할 경우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쉽게 끊어졌기 때문에 면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27) 柳僖, 『物名攷』(文雅社, 1974)

이 유지되지 않으면 쉽게 끊어지는 섬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28] 생산량 또한 많지 않아 섬유로 제작하는 양도 매우 적었고 직조하는 과정에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면포는 실질가치가 높은 상품이기도 했다.[29]

이렇게 제작된 면포는 국내에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상품 혹은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더불어 당시 일본에서는 면포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생산되는 면포를 수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조선에서 생산된 면포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교역시 사용되는 국제 무역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었다.[30] 일본은 국내에서 늘어나는 면포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1600년까지 마카오를 통해 포르투갈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의 면직물을 일년에 2만~3만 斤 정도 수입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소비한 면포의 양은 점점 더 증가하여 중국 면포를 수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1638년에는 네덜란드 선박 11척이 프랑스산 면 5만880여反[31]을 수입하기도 했다. 일본에 형성된 城下町은 에도(江戶) 근처의 사치품 소비를 더욱 부추겼고, 고급 면포소비는 이전보다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639년에는 중국선 93척이 면직물을 일본에 판매하였는데 그 양이 1만150여反이었다. 1645년에 중국선과 네덜란드 선박이 일본에 수송해서 판매한 직물의 총계는 대략 14,630反이었다.[32] 하지만 일본에서 소비되는 면포는 더욱 늘어났고

---

28) Chao Kang, 1977 *The Development of cotton textile production in China,*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29) 면포의 경우 직접 노동력 투입 당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비단의 경우 전업직조를 할 경우 1인의 여자가 한달에 10필의 비단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Pan Mingti, ,Rural credit and the concept of 'peasant petty commodity production' in Ming-Qing Jiangna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5:1.1996)

30) 이태진 편, 2000 「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상업의 성쇠」『서울상업사』, 태학사

31) 일본 직물의 크기를 재는 단위인 '反'은 조선에서 사용하는 '疋'의 1/2크기로 환산하였다.

32)『長崎商館の日記』『長崎商館仕訳帳』를 참고하여 합산한 것임.(山脇悌二郎, 2002, 『絹と木棉の江戶時代』, 吉川弘文館, 163쪽)

중국에서 수입되는 양만으로 소비를 전부 충당할 수는 없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면포 재배지역이 늘어나면서 면화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면포를 이용하여 明과 거래를 진행하기도 했다. 연산군대에는 조선에서 중국의 唐貨를 구매하는데 소용되는 면포가 연산군 4년에 43,000필(86,000反)[33]에 달하기도 했다.[34] 하지만 연산군대의 사치억제책으로 명과의 교역이 중단되었고 동시에 면화의 중국유출도 단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 교역 환경은 조선에서 생산된 면포가 대마도를 통해 일본으로 유출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 이후 17세기 전반 일본에 면직물이 전파되면서 '木棉革命' 혹은 '衣料革命'으로 불리는 획기적인 의생활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조선의 면포는 대일본 교역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에도 면화가 전래되고 생산이 확대되면서 寬永·慶安 시기(1623~1651)에는 일본의 국산 목면으로 직조한 직물로 일본 전국의 무사와 죠닌(町人)·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생산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일본국내에서 면직물의 생산량이 점차 늘어가고 중국, 네덜란드 상선이 싣고 오는 면직물까지 더해지자 상층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면포는 하층민까지 사용이 확대되어 갔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국내산 면직물은 현대의 20番手에 해당하는 굵은 직물에 한정되어 생산되었고, 에도 시대에도 대부분 이러한 太物만이 생산될 뿐이었다.[35] 이에 상층 귀족층이 소비하였던 높은 품질의 면포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였고, 중국과 조선으로부터 수입되는 면포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일본 내의 면직 기술은 대략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조선이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면포 품질에 상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36] 즉, 일본 내에서 면화의 재배와 면포의 직조기술이 일

33) 『燕山君日記』 연산군 4년 6월 11일
34) 『燕山君日記』 연산군 4년 6월 15일
35) 山脇悌二郎, 2002, 위의 책, 122쪽.

정수준에 이르기까지 조선 면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고, 조선에서는 면포를 매개로 일본과 교역을 진행할 수 있었다. 왜로 유출되는 면포의 양이 증가하면서 조선에서는 유출되는 면포의 양을 조절하려는 차원에서 면포의 수출을 제한하려고 했다. 당시 남쪽 지방에 남아 있는 면포가 500여 同인데 비해 일본으로 유출되는 면포의 양은 1,200~1,300동이나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무역불균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고 있었다.[37]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면포의 국제적인 흐름은 인위적인 규제책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었다.[38] 즉, 조선의 면포는 국제적인 교환수단인 동시에 상당한 매력이 있는 상품으로서 17세기 이전까지 朝日무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왜로 면포가 유출되는 양상을 걱정했던 것은 면포가 의복의 직접적인 재료로 기능했기 때문에 현물 자원의 유출을 걱정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교환수단으로서의 면포유출을 걱정하는 차원도 있었다. 면포가 등장하기 이전 조선에서 교환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던 것은 미곡이었다. 하지만 쌀은 보관성도 떨어지고 중량도 나갔기 때문에 효용성은 높았지만 교환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쌀보다 중량이 가볍고 보관성이 좋은 면포가 교환수단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지역 내 혹은 지역을 벗어난 교환을 매개할 적합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쌀이 주요한 교환수단으로 사

---

36) 일본 내 직조기술은 최초의 일본그림 백과사전이라고 하는『訓蒙圖彙』(1666년 간행)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다르면 당시 일본 내 면직기술의 확대가 일본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후 직조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져서 1695년에 간행된 菱川師宣이 그린 『和国百女』의 그림과 설명을 통해 17세기 통해 일본에서 40~60번수의 면직물을 직조하는데 사용되었던 紡車를 사용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山脇悌二郎, 위의 책, 123쪽)

37) 『중종실록』 중종 20년 10월 8일 "國儲虛竭, 非但公債, 緜布亦然 今者倭人所貿去南方緜布一千二三百同, 而遺在只五百餘同矣 戶曹深以爲憂, 謂不可盡從"

38) 1525년 당시 왜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국내의 면포가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었다.(이태진, 2000,「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상업의 성쇠」『서울상업사』 태학사, 126쪽)

용되고 있었다. 상품교환시장의 규모가 이전 시기에 비해 조선시대에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볼 구조적 변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시 지역 내의 시장거래를 매개할 수단은 명확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식량 생산이 소비량을 따라 증가하지 못하면서 식량을 교환수단으로 사용할 여유가 없던 것이 전근대 조선이 직면한 상황이었다.[39] 따라서 식량으로 사용될 현물화폐 대신 교환을 매개할 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통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던 정부 주도의 저화나 동전 외에 교역을 매개할 수단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화나 동전이 사라지면서 면포와 쌀과 같은 현물화폐가 저화나 동전의 자리를 대신하여 유통되고 있었다. 쌀과 면포와 같은 현물 교환수단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고 쌀의 경우 소량으로 거래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저화가 강제되고 있던 시기에도 저화와는 별도의 교환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40] 단지 15세기까지 저화와 같은 명목화폐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면포나 쌀과 같은 현물화폐의 사용은 금지하였고,[41] 사용하더라도 일정금액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며 정부에서는 명목화폐의 유통을 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현물거래에 쓰이는 면포와 쌀은 衣食과 관계되는 것으로 백성들의 생활에 중요한 물품이었고, 국가에서도 소요되는 주된 물품이었기 때문에 저화와 달리 광범위하게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었다.[42] 그 중에서도 일정한 규격을 갖춘 면포는 田畓과 가옥같은 큰 규모의

39) 『明宗實錄』 명종 6년 9월 17일 “近年以來, 連歲凶荒, 非徒禾穀不登, 至於綿花亦不收。貨幣乏絶, 民生困苦之狀, 誠如臺諫所陳, 甚可矜憐。 不可不立科條, 以爲貿遷之用”

40) 太宗代 민간에서 추포를 사용하는 것을 ‘舊習’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비록 면포가 아니지만 추포와 같은 현물화폐는 이미 이전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太宗實錄』 태종 10년 10월 24일)

41) 『世宗實錄』 세종 7년 6월 17일 “戶曹啓 今降敎旨 不用錢文 潛以米布雜物 私相買賣者一皆禁止 其斗升以下 不在此限”

42) 남원우, 1991「15세기 유통경제와 농민」『역사와 현실』5, 90쪽.

거래에 사용될 정도로 고액의 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43] 더욱이 성종대에는 면포가 일본과의 무역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소용가치가 확대되고 있었다.[44] 이러한 면포유통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15세기 후반 이후 면화 생산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45] 이는 세종 7년에 편찬된 『慶尙道地理志』에 109개 군현 중에 88곳에서 전세를 면포로 납부하고 83곳에서 목화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7년 뒤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면화의 산지명이 경상도 외에 충청도·전라도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통해 면화생산이 점차 남한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46]

하지만 대내외적인 면포 수요가 증대되고 생산도 남한전역으로 확산되었지만 16세기 조선에서 규격에 맞는 높은 가격의 정포를 갖추고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되어 있었다.[47] 특히 생산수단에서 유리된 채 도성에 유입된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正布는 상당한 고액 화폐였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생계를 위한 소액거래에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물품과 교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고액의 정포는 백성들에게 소용이 크지 않았다. 특히 토지가 없고 녹봉조차도 받을 수 없는 도성의 백성들은 땔감을 구해 시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겨우 '朝夕之資'를 마련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규격을 갖춘 면포 마련·사용하기는 어려웠다.[48]

---

43) 이정수, 1996「조선전기의 물가변동-미곡 이외의 상품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68
44) 이태진, 2000「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상업의 성쇠」『서울상업사』
45) 단적인 예로 성종 5년(1474년)에 祠雨한 僧에게 면포를 상으로 주자 면포가 아무리 賤物이라 해도 모두 民力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러한 것을 함부로 승도에게 상으로 줄 수 없다(『成宗實錄』5년 6월 27일)고 한 사건을 통해 당시 면포는 조정의 하사품 가운데서 이미 고급스런 물품이 아니었고 이를 통해 민간에서 어느 정도 면화의 생산이 뒷받침되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남미혜, 1998「조선전기 면업정책과 면포의 생산」『국사관논총』80
46) 조효숙, 「방직업」『한국사』24, 283-284쪽
47) 『中宗實錄』 중종 36년 6월 16일 "長准綿布 貧民不得易備 而貸於富家 則富者反專其利也"
48) 조선전기 이래 도성상인은 정부가 건축한 공랑에 입주하여 상업을 영위하던 公廊상인과

대신 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正布의 품질을 낮춘 추포나 소액거래에 유용한 쌀이었다.[49]

먼저 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쌀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소액거래에도 유용하였지만 한번의 거래를 통해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아래는 중종 10년 6월에 추포와 같은 현물화폐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저화를 다시 유통한 직후의 기록으로, 민간에서 현물화폐를 이용하여 거래를 했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畿甸의 가난한 백성은 柴炭·板子나 生穀草나 生魚物과 닭·꿩이나 나물·과일 등 雜物을 싣고 와서 판매하여 조석 비용에 이바지하는데, 이와 같이 자질구레한 물건까지도 저화를 가지고 서로 貿易하게 되면 원망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이상 잡물은 쌀이나 저화 중에 원하는 대로 매매하도록 하되, 만일 혹 백성이 원하는 것을 어기고 강제로 매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法司로 하여금 糾擧하게 하여 중하게 논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50]

즉, 도성에서는 국가 주도의 저화가 다시 유통되었지만 백성들은 저화의 유통과는 상관없이 생필품을 교역하는 데에 암묵적으로 쌀을 사용하고 있었다.[51] 그러나 쌀은 백성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했기

임시점포를 설치해 상업을 하는 假家商人 등의 坐商, 朝市 및 지방을 순행하며 상행위를 하던 行商으로 구성되어 있다.(유원동, 1977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일지사, 142쪽)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상업활동 외에도 골목마다 작은 저자(小市)가 개설되어 교역을 하고 있었다.(『中宗實錄』 중종 9년 11월 15일) 그리고 조정에서도 도성근처의 백성들은 나무를 파는 것으로 업을 삼아 생계를 해결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中宗實錄』중종 9년 5월 26일)

49) 『明宗實錄』명종 6년 9월 17일 "如決訟作紙, 犯罪徵贖, 次知徵闕, 行廊各市月稅, 奴婢身貢餘錢, 醫司賣藥之類, 及一應官府所出納之物, 皆以楮貨, 從綿布時直, 準計用之, 使民知楮貨之有用, 則皆樂於行用, 而至於小小買賣, 亦皆用之, 而握粟之弊, 庶或滅矣"

50) 『中宗實錄』중종 10년 7월 9일 "畿甸貧民等 或柴炭板子 或生穀草 或生魚物雞雉 或菜果等雜物 載來而賣 以供朝夕費 則如此細碎之物 亦以楮貨相貿 怨咨必興 右雜物 或米或楮貨中 從願買賣 而如有或違民願 勒令買賣之人 令法司糾擧重論"

51) 저화 통용이 실현되는 경우는 오로지 사섬시에서 징수하는 月稅, 각사에서 지급하는 노

때문에 유통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계속해서 유통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상인들이 교환액을 쌀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백성들이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탓도 있지만 쌀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은 쌀의 유통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이득을 꾀할 수 있었다.[52] 상인들은 삼남과 양계지방의 곡물의 가격차를 통해 이익추구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었다. 그리고 일탈적인 형태이지만 백성들에게 필수적이었던 만큼 쌀에 잡물을 섞거나 물을 넣어 불린 惡米를 유통시키기도 했다.[53] 이러한 악미 유통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금지되었는데, 쌀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었던 상인들이 당장 朝夕거리를 구하는 백성들을 상대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일종의 '牟利' 행위였다. 즉, 쌀의 유통은 백성들에게도 편리한 것이었지만 상인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였기 때문에 쌀을 이용한 상인들의 모리행위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악미의 유통은 국가의 입장에서 재생산의 기반이었던 백성들의 근본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묵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하여 금지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쌀은 현물가치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악미의 유통은 금지령이 느슨해질 경우 다시 나타나서 중종대에 들어서도 악미의 유통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비의 魚木價 정도였다고 한다.(권인혁, 1993「16세기의 楮貨 유통론과 그 배경」『建大史學』8, 142쪽)

52) 『世宗實錄』 세종 7年 6月 17일 "今降敎旨, 不用錢文, 潛以米布雜物, 私相買賣者, 一皆禁止, 其斗升以下, 不在此限。 然市裏魚菜等常用雜物買賣者, 以升斗終日買賣, 積至成石, 由此不用錢文, 今後竝皆禁止"

53) 『成宗實錄』 성종 12年 9月 3일 "市井之徒, 以惡米興販爲業者, 或漬以水, 或雜塵沙, 恣行欺詐"

표 1) 惡米 금지 내용

시기	처벌대상자	처벌내용	전거
成宗(연대미상)	惡米매매자	笞刑 50에서 杖刑 80으로	『燕山君日記』卷21, 3年 1月 戊辰
成宗 12年(1481)	惡米興販者	制書有違律	『成宗實錄』 卷133 12年 9月 甲戌
成宗 23年(1492)	惡米제조자, 座主, 切隣	全家徙邊	『明宗實錄』 卷26 15年 7月 癸未
中宗 9年(1514)		全家徙邊	上同
中宗 10年(1515)	쌀에 모래 섞는 자 切隣, 座主 통용하는 사람	杖 100대 徒 三年, 杖 80대	『中宗實錄』卷22 10年 6月 己未

다음으로 쌀과 함께 중요한 현물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면포는 점차 升數와 尺數가 기준에 못미치는 추포로 변하여 유통되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정한 규격을 갖춘 正布는 백성들이 거래에 사용하기에 매우 높은 가격이었으므로 그 대신 품질이 열악한 麤布가 일반적으로 유통되었다.[54] 이러한 추포의 유통은 조정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기록을 통해 보자면 추포가 유통됨으로써 시중의 물가는 상승하고,[55] 국가의 재원이 부실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56] 따라서 조정신료들은 추포사용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폐단을 금지하기 위해 다시 명목화폐를 사용하는 문제를 고려하였고, 司贍寺에 쌓여 있는 저화를 발행하여 대신 추포를 거두어들이려고 하였다.[57] 하지만 이렇게 처벌규정을 동반하여

54) 기존 연구성과에서 升數와 尺數가 부족한 麤布는 正布보다는 가격이 낮은 소액교환수단으로 강조되었다.(송재선, 앞의 논문) 하지만 본고에서는 기본적인 소액교환수단 외에 16세기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아래에서 형성된 추포유통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55) 『中宗實錄』 중종 10年 6月 8일 " 本國楮貨, 亦其遣意, 而近來廢之不行, 專用綿布。緜布麤惡, 徒費女工, 無所用之, 物價踴貴, 職此之由"

56) 『中宗實錄』 중종 10年 6月 17일
방기중, 앞의 논문, 145쪽(추포는 자연적인 耗損으로 소모되는 양이 정포에 비해 많아 축장기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57) 『中宗實錄』 중종 10年 6月 25 "今欲革惡布, 正國幣, 而不用錢, 楮爲通貨, 因收貿惡布, 則其道無由"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포의 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대체될 다른 교환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추포는 민간에서 아직 효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추포는 백성들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갑작스럽게 사용을 금지시킨다면 큰 피해를 백성들만 입을 것이 분명했다.

반면에 부상대고들은 추포가 일상의 교환수단으로 금지되더라도 다른 유통로를 통해 대량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은 당시 조성되고 있었던 대내적인 추포 교역환경이었다. 성종 초반에 장산곶을 지나는 水路가 개통되면서,[58] 이전까지 없었던 물자의 유통이 활발해지게 되어 양계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면포가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59] 이에 따라 도성과 양계지역간의 교환이 활발해졌고 그 중에서 면포는 양계지방에서 '軍資'로서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교역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60]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계지방으로 면포가 보내졌고, 그 가운데 추포는 도성의 창고에서 재정을 빈약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계지방에 보내져서 군복의 겉감으로 활용되었다. 즉, '軍資' 보급을 가장한 추포유통이 나타나면서 상인들은 추포를 축장하여 교역품목으로 사용하고 이득을 꾀하고 있었다. 또한 상인들은 양계지방으로 추포를 유통시킬 뿐만 아니라 濟用監에 추포를 바치며 관서와도 거래를 하기도 했다.[61] 이렇듯 면포는 실용성을 갖추었

58) 『成宗實錄』 성종 6年 8月 19일 "平安道 西通上國... 比年以來 水路始通"

59) 양계지방에서 면화는 세종대의 재배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영향으로 생산되지 않았다.(『世宗實錄』 24年 6月 戊申) 그러나 계속된 면화장려책으로 성종대에 평안도에 면화를 심어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成宗實錄』 성종 5年 1月 19일) 하지만 기후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처럼 많은 양이 재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이우성·임형택, 1973 「婢夫」『李朝漢文短篇集』上, 일조각)

60) 양계지방에 면포는 군수물자로 필요했다. 이민족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므로 군복의 재료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겨울기온이 낮아 보온성이 뛰어난 면포의 수요는 어느 곳보다도 절실했다.

61) 『成宗實錄』 성종 1年 6月 7일 "濟用監僉正金廷光聽富商之請, 許納升麤布二千五百餘匹, 恐事覺, 欲滅迹, 率納布人二十名, 擅入臺庫, 盡割兩端着標處, 所犯至重. 請依法堅囚"

고 운송이 상대적으로 편했던 까닭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교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저화나 동전의 유통이 저조하게 될 때, 면포는 현물교환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추포가 제용감에도 유통이 될 만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널리 사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면포는 다양한 형태와 용도로 16세기에 유통이 확대되고 있었다.

국내에서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면화의 재배는 증가했고 면화의 수요는 국외로도 확대되어 갔다. 앞서 살펴보았듯 대외적인 효용성은 對日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초반까지 일본으로 수출하는 면화의 양은 증가하였고 양란이후 무역이 재개되어 다시 倭館으로 유출된 면포는 1691년에 公木 766同, 1787년에는 543同(전체 수출 물량을 면포로 환산하면 1,221同이다.)으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양이었고 조선에서 유출되는 면포의 양은 상당하였다. 일본에서도 면포를 생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선으로부터 면포를 수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으로서는 일본에 면포를 수출하고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교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 내에서 면화를 자급하여 면포를 직접 직조하고 있기는 했지만 아직 조선의 면포와 가격을 비교한다면 차이가 있었다. 면화를 자급하기 시작한 18세기 초반의 경우 일본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면포일지라도 면포 1필 가격은 은으로 6~6.3냥 정도였다.[62] 이를 당시 쌀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오사카에 수입된 중국쌀을 기준으로 약 3.5석(일본 용량으로 7석)이었다.[63] 비슷한 시기(1703년) 조선 면포 1필의 가격을 미가로 환산할 경우 일본의 면포가격은 조선보

62)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10월 10일
63) 동양 삼국의 石 단위 용량 비교

국가	리터
朝鮮	85리터
중국	100리터
일본	180리터

다(2석/은 1냥 당) 약 1.5배 정도 비쌌다.[64] 물론 이러한 조선과 일본의 면포 가격의 불균형은 18세기 중반 들어 점차 일본 내에서 면화 생산지가 증가하게 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면화의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조선에서의 면화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1752년부터 1772년 사이 에도의 주요물품을 기록한 내역에 따르면 면포 1필당 은으로 표시된 가격이 1757년 6.438냥을 시작으로 대개 6냥 대 초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1758년부터 1필 당 은으로 표시된 가격이 5.839냥을 기록한 이후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 6냥을 넘지 않고 1772년 1월부터는 4.6냥으로 점점 하락하였다. 이렇게 18세기 후반 들어 면포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일본 내에서 면포를 자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포의 대외교역수단으로서 기능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쌀과 면화가 많이 생산되지 않는 대마도에서만 교역 수단으로 기능할 뿐이었다. 倭館을 통해 대마도로 들어가는 公木은 公作米로 바꾸어 수출되기도 했는데 대마도에서 자연조건상 쌀을 자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내에서도 면포의 화폐적 기능은 점점 쇠퇴하고 있었다. 면포가 갖는 상품적인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실질가치가 높았던 것은 맞지만 정부가 아닌 백성들이 생산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할 만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백성들이 필요에 따라 면포의 품질을 고의로 낮춰 고액의 면포대신 소액환으로 면포를 사용하면서부터 국가에서는 면포의 품질을 통제할 필요성에 따라 있어 통제책을 내세웠지만, 백성들의 손에서 나오는

64) 大坂의 면포가격은 '三井文庫 編, 1952『近世後期における主要物価の動態』東京大学出版会,' 86쪽에 있는 표 2 '大坂主要商品相場表'에 기재된 물가를 이용하였다. 표에 기재된 繰綿가격을 中國米가격과 환산하여 조선의 미가와 비교하였다. 일본내의 미가를 비교하기 위해 일본미의 가격을 직접 비교하면 좋겠지만 표에는 일본미가 대신 중국미가가 기록되어 있어 중국미가도 일본미가와 비교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비교하였다. 원자료의 출처는 '『會日落着帳』(三井文庫所藏史料 別 2651)'로 기록되어 있다.

면포는 국가의 의도대로 품질이 정해지지 않았다. 당시 관점으로 보자면 면포의 유통을 통해 국가가 이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 즉, 면포 유통은 '利權在上'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간주하게 되었다. 특히 면포는 실질가치를 그대로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격을 조절하거나 생산력을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민간의 고의적인 품질저하 때문에 국고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면포유통의 금지는 재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결국 면포유통은 국가 재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지 않았고 국가 통화로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채 민간통화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3) 銀의 유입과 유통

은은 물품 자체의 가치가 매우 높은 상품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화폐로 사용되었다. 더구나 생산량마저 제한적이어서 고대부터 금, 동과 함께 '三金'으로 불리며 귀금속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고대부터 금이나 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말로 동일시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더라도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의 축장은 국가 재정의 확실성과 동일시 할 수 있다. 따라서 은은 국제적으로도 거래를 매개할 만큼 물품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 당시 국제무역의 교환수단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었다. 당시 은의 최대 수요처는 중국으로, 중국에서는 사치품을 수출하고 그에 대한 결제대금을 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유입된 은은 중국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은의 유출은 곧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임진왜란으로 명나라에서 은화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명의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이것이 명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65] 조선에서도 국제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은이 있었지만 그 양은 중국과 비교해 볼 때 미미한 수준이었다. 조선에 가장 많은 양의 은이 유입된 것은 임진왜란이었다. 왜란의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명군이 참전하게 되었고 명군이 지참하고 왔던 은이 시장에 거래되면서 조선에서도 은이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명군의 참전이후 조선의 시장에서는 모든 거래를 은으로 매개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은의 유통은 임란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선에서 은은 생산량이 거의 없었던 만큼 가치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은은 조선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유입되기 전부터도 유통되고는 있었지만 쌀이나 면포와 같은 현물에 비해 유통량이 적어 민간에서는 은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이 지닌 기본적인 가치가 높았고 명과 교역을 통해서도 은이 유입되면서 조선에서는 국부의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은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특히 명, 일본과 무역을 지속하면서 결제 통화로서 은이 유입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무역 불균형으로 은이 유출되기도 하여 정부로서는 국부 유지차원에서 은의 유출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66]

조선에 유입된 은은 국가 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가치가 높았던 만큼 대량으로 물품을 거래하던 상인들에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富商大賈'로 불리우는 이들은 은을 활용하여 대규모로 지역 간 거래를 매개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편리한 은을 사용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국제교역 시 사치품 수입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은을 사용하자 조선에서는 은 유출을 염려하여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통제정책으로 명으로 나가는 은의 양이 국가차원에서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는 은의 양이 매우 적었으므로 화폐로 사용될 만

65) 한명기, 1992「17세기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규장각』15, 1쪽.
66) 한상권, 1983「16세기 대중국 私무역의 전개」『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큼 은이 확보되지 못했다. 당대 신대륙과 일본에서 유입되는 은의 양이 공식적으로는 거의 없던 상태였으므로 조선에서 확보할 수 있는 양이 미약할 수밖에 없어 화폐로 유통되지는 못했다.

공식적인 무역의 제재로 은과 상품의 유통이 대외적으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직후 명의 참전으로 다량의 은이 유입되면서 조선에서도 은이 교환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 조선에 참전한 明軍은 군량과 軍需를 모두 중국 본토에서 가지고 올 수는 없었다. 전세의 불리함으로 속히 참전해야하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명군은 군량을 조선 현지에서 조달할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었다. 명의 황제는 명군이 출병할 때 沈惟敬을 보내서 다량의 은을 하사하여 조선에서 필요한 군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명군은 이를 기반으로 조선에 파병된 군사들의 軍糧을 해결했고, 조선에서는 이에 따라 은을 받고 군량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명군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로에서만 은의 유통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전국적으로 유통되지는 못했다. 은의 유통이 오늘날의 화폐유통과 같이 이전과 단절된 화폐흐름의 양상을 보인 것은 아니다. 1592년(선조 25) 9월 선조와 명의 사신 薛藩과의 대화에서 설번은 명의 원병이 양식을 구비하여 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은으로 군량 가격을 가지고 와서 조선에서 쌀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선조에게 물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조는 쉽게 승낙하지 못하면서 조선은 땅이 좁고 백성들도 은의 가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銀兩이 있더라도 군량으로 바꿀 수 있을지 확언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67] 실제로 조선정부는 명군이 조선에 참전한 이후 명군이 구비한 은을 매개로 군량과 의복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해 혹시 명의 군사들이 철병할 것을 염

67) 『宣祖實錄』 선조 25년 9월 2일 “天兵十許萬方到. 且千里饋運, 勢所未易。 欲以銀來此換米何如 上曰 邦土地偏小, 人民貧瘠, 且國俗不識貨銀之利, 雖有銀兩, 不得換米爲軍糧矣”

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조는 명군이 군량과 의복을 제때 확보하고 있는지 수시로 보고하게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당대 명나라에서 가지고 온 은으로 어떻게 민간에서 군량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조뿐만이 아니라 조정에서도 식량과 군수가 구해지지 않으면 명군이 철병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조선에서 명이 군량과 군수를 확보하는 작업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전쟁 중이라는 상황에서 물자의 생산이 원활하지 않기도 했지만 당시 민간에서 은을 현물과 교환하는 인식이 부족했고 은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이 그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68] 물론 당시 명나라 군사가 참전당시 필요한 모든 전쟁 물자를 조선에서 구매한 것은 아니었다. 요동에서도 은을 매개로 戰馬와 군복에 쓰일 면포 등을 구매하기도 하였다.[69] 이러한 상황은 조선에서 은을 매개로 물자를 구비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란이 고착상태에 빠지면서 명군의 주둔비용과 군수물자를 구입하는 비용을 명나라에서 전적으로 감당하지 않았다. 명나라는 초기 전황이 진정되고 전쟁이 정체에 접어들자 왜군의 공격에 대비할 목적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에 명군을 주둔시키고 그 경비의 대부분을 조선에 요구하기도 했다. 명군의 숫자는 2만에 가까웠는데, 이들이 소비하는 군량, 피복 그리고 포상비를 합친 1년 간의 주둔 비용을 100만 냥 정도로 계산하여 그 중 64만 냥을 조선에 요구했다.[70] 이때

68) 『宣祖實錄』 선조 26년 1월 21일 “今日之事, 只在天兵糧餉, 予欲以匹馬, 率某某臣, 策應於天兵之後, 督運糧餉, 而此處有接待天朝將官之事, 令世子前進安州, 一邊策應天兵, 一邊督運糧餉事”

69) 『宣祖實錄』 선조 26년 8월 25일 “前日所送提督軍前銀兩, 送于總兵, 俵給軍士似當。但以三千兩, 分給六千餘軍, 一名所得僅半兩”

70) 『宣祖實錄』 선조26년 8월 10일(당시 2만에 달하는 명나라 군사에게 드는 비용은 주로 月糧과 식량에 소비되는 비용이었다. 月糧으로 1냥 5전 그리고 行糧과 鹽菜代로 1냥 5전 그 밖의 비용으로 도합 3냥 6전을 지급해야 했으니 1년 동안의 합계가 1백만 냥에 이르게 되었다.

부과된 액수는 모두 은전으로 계산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명군의 참전으로 은이 유입되기도 했지만 일부 군사비를 부담하면서 국외로 유출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명군은 전쟁 중 은이 다량 소비되면서 조선에 원병을 파견한다는 초기의 의도와 달리 은을 확보하는 문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명군 중에는 광부가 있어 조선에서 은이 날만한 지역을 군사작전으로 조사하였지만 은맥을 별도로 찾을 수 없어 군자 마련에 실패하였을 정도였다.[71] 조선으로서 명나라 군사들을 물러나게 할 수도 없고 현상태로 유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국부의 유출을 줄이기 위해 조선에 머무르는 군사의 숫자를 5천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제안했을 뿐이었다.[72] 전란 중에 나타나는 은의 강제적인 유통과 명나라 장수들의 모리수단으로 은광맥을 찾으려는 노력은 조선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고 명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명군의 참전으로 조선에 유통된 은이 조선의 경제 변동에 영향을 미쳤고 그 효과가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왜란이라는 군사적 압박에 닥처 조선도 현실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명의 참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명군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채굴이 금해졌던 端川의 은광을 다시 허가하여 은 생산량을 확보하려고 했다.[73]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은을 제련하는 기술은 발전하였지만 채굴하는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은을 채굴하기 위한 갱도가 수직으로 내려 갈 경우 갱도에는 지하수가 차기 마련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71) 上同

72) 『宣祖實錄』 선조 26년 8월 10일 “若如經略之言, 則我國雖闕粢盛, 除上供, 不頒祿, 竭一國而專供天兵, 勢所難支。 故兩南俱是敵之要衝, 而當初請留兵, 不過五千者, 非不知多多挽駐, 在在結屯, 使賊不敢窺, 而以爲萬全之地也。 專爲糧餉之難, 只請五千, 作爲聲勢, 兼使敎鍊我士, 以爲之用, 至於陳奏, 已蒙準可。 五千之數, 似難加減”

73) 『宣祖實錄』 선조 26년 8월 3일 “方今國用蕩盡, 用銀一事, 最爲急切, 端川所産, 素稱品好, 今當弛禁, 許令採取”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기술력 부족은 비단 조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대 중국에서도 수직갱도에서 생길 수 있는 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물을 얻기 위해 지하로 더 깊이 파들어 갈 수 없었다.[74] 하지만 정부는 긴급한 재정 압박 하에서도 은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에 백성들 중에 은을 납부하는 자들에게 免役과 免賤의 혜택을 부여하면서,[75] 정부차원에서 은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당시 단천의 은광 표면에 매장되어 있는 은은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더 깊이 채굴하여 은을 모아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역이 많이 들어 백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댓가로 신분의 상승을 제시할 정도였다. 면역과 면천의 기준을 각각 은 50냥과 70냥으로 정하여 은을 확보할 정도로 당시 조선의 재정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천의 은 생산량만으로 명군이 소모하는 銀子를 충당할 수가 없었다. 1598년(선조 31)의 경우 단천에서 거두어들이는 稅銀이 5천 냥[76]이었는데, 이것으로는 실제 명군이 요구하는 은의 양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부족한 稅銀은 곡식 대신 민간에서 은을 받거나 納贖을 은으로 한정하여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77] 정부에서도 백성들이 전쟁으로, 특히 단천지역의 백성들은 은을 채굴하느라 많이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役을 견감시키면서까지 은을 채굴해 군수에 충당해야 했다.[78] 결국 채굴

---

74) Kenneth Pomeranz, 2001 *The Great Diverg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반면에 영국의 경우에는 갱도를 깊이 파들어 가지 않더라도 땅에서 깊지 않은 곳에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쉽게 광물을 획득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었던 연료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Pomeranz는 설명하였다.)

75) 『宣祖實錄』 선조 27년 5월 25일

76) 『宣祖實錄』 선조31년 2월 10일

77) 『宣祖實錄』 선조 27년 3월 30일

78) 『宣祖實錄』 선조 27년 5월 25일 "端川則近甚疲弊, 而吉州則上年稍稔, 頗得蘇完云, 兩邑貢物, 除尤甚緊要者外, 其餘令該司斟酌, 一切蠲減 使之, 專力於採銀'

만으로 모자란 은을 백성들에 대한 유인책을 동원해서 확보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은 유통이 강제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은을 매개로 한 거래가 국지적으로나마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전란상황 아래에서 은이 강제로 거래되면서 조선에서도 은이 교환매체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았고 선조대의 은광개발과 은 확보책은 군수마련을 위한 일시적인 방책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명군이 가지고 온 은과 조선에서 보충한 은이 당시 유통된 양의 전부였기 때문에 명군이 철수한 이후 조선에서는 은을 교환수단으로 사용할 만큼의 양은 확보되지 못했다. 임란 당시 명군이 사용한 은의 양은 대략 700~900만 냥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79]

표 2) 중국의 은 수입량 추계(1550~1645)

은원생산지	전달	1550-1600 (단위 톤)	1601-1645 (단위 톤)	총계1550-1645 (단위 톤)
일본	포르투갈	740-920	650	1,390-1,570
	중국	450	1,442	1,892
	독일	-	340	340
	밀수	?	?	?
	총계	1,190-1,370	2,432	3,622-3,802
남미				
	중국	584	620	1,204
	포르쿠갈	-	75	75
	밀수	?	1,030	1,030
	총계	584	1,725	2,309
인도양	유럽	380	850	
총계		380	850	1,230
합산		2,154-2,334	5,007	7,161-7,341

* 典據: Richard Von Glahn, *Fountain of Fortune: Money and Monetary Policy in China, 1000-1700* 1996, p.140의 표를 재구성

79) 한명기, 앞의 논문, 10쪽(申炅이 『再造藩邦志』에서 추계한 양과 萬曆 28년(1600) 명의 王德完의 추계)

위의 표는 1550년부터 1645년 사이에 중국에 수입되었던 은의 양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근거해 보면 1550년부터 1600년 사이 중국에 유입되었던 왜은의 양은 2,400톤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1592년부터 조선에 군량확보 등을 목적으로 유입되었던 은의 양은 최대 900만 냥(5,400톤)으로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 50여 년 동안 유입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임진왜란 당시 명으로부터 조선에 유입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명목화폐의 발행과 재정책

1) 楮貨의 발행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화폐는 石貨이다. 그리고 정확한 사용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화폐로는 기원전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明刀錢이 있다. 이 밖에도 중국과 교역을 통해 한반도로 유입된 五銖錢·王莽錢도 발굴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 화폐가 유입되어 사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80]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적인 화폐제도가 성립하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전, 鐵錢, 銀甁 그리고 종이돈이었던 저화 등 여러 종류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교환이 증가하면서 화폐가 이를 매개하다보면 점차 더욱 활발하게 유통되고, 교역량이 증가할수록 이를 감당하기 위해 좀 더 고액의 화폐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조선초기의 화폐는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장해버렸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이전에 유통되었던 화폐나 조선 초기의 저화, 동전에 대해 비록 유통에 실패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유통되기 위한 기반을 닦은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81] 그런데 소재 가치가 거의 없고 액면가가 높은 최고 수준의 통화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저화는 화폐의 발전 단계상 가장 높은 수준의 통화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유통이 가능한 통화이다. 그렇다면 화폐가 유통되기 위한 주

80) 원유한은 우리나라의 화폐유통의 역사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점차 발전하여 근대화폐가 수용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폐유통의 근거가 되는 것은 생산력발전에 이은 상품화폐경제 화폐의 활성화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화폐의 생성기(고조선~10세기 말), 화폐유통시도기의 전반(10세기 말~14세기 말), 화폐유통시도기의 후반(14세기말~16세기 말), 화폐경제의 성장발전기(16세기 말~1860년대) 그리고 근대화폐수용기로 나누었다.(원유한, 앞의 책, 19~23쪽)

81) 원유한, 앞의 책, 5~6쪽

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단계에서 최고 수준의 통화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저화가 한정된 지역에서나마 사용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이에 대한 평가는 조선초기의 저화가 당시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국가에서 주도하여 강제적으로 유통시키려 했고, 결국 유통에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왜 저화를 유통시키려고 했으며, 근대에 사용된 지폐와 외형상 같은 화폐가 유통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조선 초기 저화유통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 초기에 명목화폐였던 저화와 저화의 유통이 부진할 때 대안으로 논의 되었던 동전이 실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화를 제조해서 유통하려는 시도는 고려 恭愍王대에도 있었다. 宋과 元代에 유통되었던 지폐를 따라 楮貨를 제조했지만 실제 통용시키지는 못하였다.[82]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 다시 저화를 유통시키려고 하였고 1401년(태종 1) 4월에 저화를 발행하는 司贍署를 새로 설치하여 저화유통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이듬해 1월 본격적으로 저화를 발행하여 민간에 유통시키게 된다. 『大典續錄』에 나오는 저화의 외형은 楮注紙로 만들었고 길이가 1척 6촌, 폭은 1척 4촌의 직사각형이었다.[83] 하지만 통화를 발행하는 단계에서도 규격에 대한 논의가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저화의 '厚薄'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84] 발행되었던 저화의 외양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길이 외에 저화에 인쇄된 내용 등 구체적인 모습은 짐작할 수가 없다. 저화의 규격에

82) 『고려사』 권79 志33 食貨2, 恭愍王 3년 3월.
83) 『大典續錄』 권2, 戶典 雜令
84) 『태종실록』 태종 12년 11월 28일 "且楮貨之紙, 各道分造以納, 故其厚薄不同, 揀擇之弊, 亦由此而生"

대한 언급은 이후 文宗대에 이르러서야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의 체제에 따라 판을 만들어 인쇄하고 이전에 사용되었던 저화와 같이 유통 시킬 것을 정하는 것으로 미루어 저화의 외형은 文宗 이전에는 통일된 형태로 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85]

다음으로 저화를 시장에서 유통시키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가격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화는 소재가치가 떨어지는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재가치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지 못했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며 유통시켜야 하는 명목화폐였다. 저화를 만들어 유통시키면서 최초로 정해졌던 저화의 가격은 저화 한 장당 五升布 1필(米 2斗)이었다.[86] 하지만 저화의 가치는 조정에서 정했던 가격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다. 당장 저화를 발행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다. 1402년(태종 2) 6월에는 저화 1장으로 米 1두를 사지 못한다는 기록으로 미루어[87] 저화의 가격은 반이하로도 떨어지고 있었다. 1412년(태종 12)에는 민간에서 더 이상 저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왔고,[88] 이후 正五升布의 가격이 鈔 5장까지 하락하기도 했다.[89] 세종대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던 저화는 1418년(세종 1) 8월에는 米 2斗의 가치가 있었지만 역시 가격이 점차 하락하여 1423년(세종 5)에 저화의 가격이 쌀 1升에 해당될 정도로 가치 하락을 거듭하고 있었다.[90] 거듭된 가격

85) 『문종실록』 1년 2월 1일
86) 저화의 액면가를 표현하는 방식도 송대와 원대 그리고 명대에 발행된 지폐는 동전을 기준으로 가치를 표현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저화가 발행되어 유통되었다. 한 예로 元의 中統元年 (1260)에 발행되었던 中統元寶交鈔가 동전 10文에서 2貫까지 10종류가 있었다.(葉世昌,, 2006「元朝的貨幣理論」『中國貨幣史理論』, 廈門大學出版) 그런데 조선초기의 경우 한 장당 가격을 쌀이나 포같은 현물로 표현되어 유통되었다. 이에 태종 15년에 저화의 가치를 쌀로 표현할 경우 쌀의 가격 등락폭이 너무 커서 가치보장이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현하였다. 그에 대한 방책으로 柳思訥은 포필로 가격을 정할것을 요청하였고 佐副代言 卓愼은 덧붙여서 저화의 종류를 大鈔와 小鈔로 나눌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태종실록』 태종 15년 6월 11일).
87) 『태종실록』 태종 2년 9월 24일
88) 『태종실록』 태종 12년 6월 5일
89) 『태종실록』 태종 16년 8월 22일
90) 태종~세종대 저화의 가격 추이

하락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저화의 가격 하락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다. 국가에서는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창고에 쌓여 있는 쌀이나 포 등을 내어 방매하였고 이를 통해 저화의 公信力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국가가 현물과 저화를 교환해 준다는 보증을 통한 국가의 유통진흥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91] 즉, 저화는 종이 자체가 갖는 소재가치가 액면가에 훨씬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국가의 간섭을 전제로 한 통화였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화와 같은 지폐가 국가의 의도와 간섭에 따라 유통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北宋대에 사용되었던 지폐 交子는 먼저 민간에서 사용하던 것을 官에서 채용한 방식으로 四川지역의 16家 점포에서 철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交子鋪를 만들고 일종의 약속어음이었던 交子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었다.[92] 이에 비해 조선초기의 저화는 유통범위와 수량 등 저화를 유통시키기 위한 제반 조건이 자유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 진 것이었다. 즉, 지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유통되는 경우와 달리 강력한 신용이 필요하였고 전근대의 경우 국가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 초기에 저화를 발행할 때에도 다수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저화유통을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저화를 사용하자는 쪽도 있었지만 당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布貨를 그대로 유통시키자는 의견 등이 계속해서 대두하고 있었다.[93] 실제 가치를

단위	가격	전거
저화 1장	쌀 2斗	『태종실록』 권3, 2년 1월 임진
저화 1장	쌀 1斗 이하	『태종실록』 권4, 2년 9월 갑진
저화 1장	쌀 3升	『세종실록』 권5 1년 8월 갑술
저화 1장	쌀 2升	『세종실록』 권11, 3년 4월 무술
저화 3장	쌀 1升	『세종실록』 권21, 5년 9월 갑오

91) 『태종실록』 태종 10년 10월 29일
92) 葉世唱, 2006, 「北宋的貨幣理論」 『中國貨幣史理論』, 廈門大學出版.
93) 『태종실록』 태종 1년 4월 19일

가지고 있는 布나 銅으로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자체가치가 있는 銅錢을 통해 자연스러운 통화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저화자체로는 원활한 유통이 힘들다는 우려를 뒤로하고, 저화를 유일한 화폐로 지정하였고 다른 통화나 현물의 교환을 엄하게 금지시켰다. 이러한 금지책을 바탕으로 저화를 유일한 통화로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조정의 의도와는 달리 민간에서 저화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 저화의 양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한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백성들이 저화를 사용하지 않아 시장에서 저화의 구매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것이었다.[94] 화폐의 가치가 일정해야 유통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저화의 가치가 액면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저화의 가치를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못하고 강제로 저화의 가치를 정하거나, 관리의 월급으로 저화를 지급하는 등 저화를 유통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저화를 유통시키기 위한 조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민간에서 회수한 포화를 세 쪽으로 끊어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도록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95] 한시적으로 저화를 쌀과 포로 교환할 수 있도록 교환가를 공포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성과 지방에서 五升布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기는 자는 가산을 몰수하고 有職者는 직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유통책으로 선회하였다.[96] 그러나 저화는 조정의 강제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영역에서만 유통이 되고 있었다. 실제 민간에서는 저화보다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아직까지 호환성이 높았던 포나 쌀을 주로 사용하였다. 사용의 빈도수가 떨어지는 만큼 저화의 화폐적 가치는 그에 비례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조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쌀이나 布의 유통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97] 결국

94) 『태종실록』 태종 2년 4월 19일
95) 『태종실록』 태종 2년 6월 10일
96) 『태종실록』 태종 2년 5월 24일

유통을 위한 조정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화는 가치가 하락하였고 태종 3년에 한시적이기는 하나 저화제도가 폐지되기도 하였다.[98]

하지만 1410년(태종 10) 5월에 의정부는 明나라의 예를 들며 저화를 회복하여 유통시킬 것을 건의하였다.[99] 이를 받아들여 저화는 1410년(태종 10) 7월에 다시 사섬시에서 이전의 저화에 印을 고쳐 찍어 발행 되었다.[100] 그리고 오승포의 유통금지령을 동시에 내리면서 저화의존도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101] 그리고 저화를 재발행하면서 이전에는 설치하지 않았던 和賣所를 한성과 개경에 각각 설치하였다.[102] 화매소는 정부 소유의 물품을 무역하도록 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조정에서 발행한 지폐의 가치를 항시적으로 보장해주려는 의도에서 만든 것이다.[103] 규정된 저화에 액면가대로 현물을 교환해주는 것은 저화의 유통에 신용을 더해주는 것으로 일찍이 원나라에서는 交鈔를 운영할 때 平準庫를 설치해서 액면가에 해당하는 金과 銀을 교환해 주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원나라의 저화는 平準庫를 각 路마다 설치하여 금과 은 같은 귀금속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전제로 저화를 유통시켰던 것이다.[104] 그런데 조선초기에 설치된 화매소는 개경과 한성 두 곳에만 한정되어 있어 저화의 유통범위를 일부 한정된 지역으로 설정했던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국가에서는 和賣所를 설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나마 유통을 보증하려고 노력하였고 다른 현물의 교환을 금지하였지만 도성에서

97) 『태종실록』 태종 2년 9월 24일
98) 『태종실록』 태종 3년 9월 10일
99) 『태종실록』 태종 10년 5월 15일
100) 『태종실록』 태종 10년 7월 1일
101) 『태종실록』 태종 10년 10월 1일
102) 『태종실록』 태종 10년 10월 28일
103) 『태종실록』 태종 10년 10월 24일
104) Von R. Glahn, *Ibid*, p.58

도 저화는 의도한대로 유통되지 못했다. 이에 저화대신 새로운 주축통화를 정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1423년(세종 5) 9월에는 銅錢을 주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105] 물론 銅錢 유통에 대한 논의가 세종대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저화의 유통이 활발하지 않게 되면서 저화와 동전을 겸용하려는 시도도 있어왔다.[106] 당시의 논의는 저화로 세금을 거둘 경우 저화의 최소단위에 못 미치는 세액의 납부를 위해 동전을 만들어 겸용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저화와 동전이 같이 유통될 경우 동전이 오히려 저화유통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더 이상 논의되지는 못했다. 동전은 고려시대에도 이미 제조하여 유통된 적이 있고,[107] 무엇보다 銅이 가지고 있는 실질가치가 있어 저화와 달리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었다.[108] 특히 동전은 최소단위의 가치가 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소액환으로도 기능하였고 이 때문에 소소한 물건을 매매하는데 저화보다 훨씬 편리하였다. 또한 저화가 부진한 유통을 보이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동전의 유통책을 현실성있게 논의하기도 했다.[109] 당시 조선에서 저화가 가장 국가의 이득을 최대화 해줄 수 있는 화폐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동전은 저화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화폐로 간주하였다.[110]

중국에서는 저화와 동전을 같이 발행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즉, 저화의 가치를 동전의 수량으로 표시해서 가

105) 『세종실록』 5년, 9월 16일
106) 『태종실록』 태종 15년 6월 16일 "造楮貨一張直米一斗 三十張直木緜一匹 至是楮貨甚賤 一張一升 百餘張一匹 乃會政府 六曹議鑄錢與楮貨通行"
107) 이정수, 앞의 책, 7쪽.
108) 銅이 가진 기본적인 소재가치가 있으나 가치가 높게 책정되어 명목화폐로 볼 수가 있다(이종영, 2003, 「화폐정책고」 『조선전기사회경제사연구』 혜안). 하지만 기본적인 소재가치가 있어 楮貨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화폐라고 할 수 있다.
109) 『태종실록』 15년 6월 16일
110) 이러한 인식은 동전이 유통되었던 조선후기에도 나타났다.(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편, 1992, 『公車文叢書』 6, 1731년 8월 「修撰任珽上疏」, 508쪽).

치를 명시하였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저화의 가치를 현물로 표시하여 저화를 단독으로 유통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시 復用되었던 저화의 가치가 하락하자 세종대에는 동전과 병행하여 유통시킬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朝鮮通寶'를 발행하여 유통시키기도 했다.[111] 물론 동전 외에도 1411년(태종 11) 6월에는 한성부로 하여금 2斗 이하의 쌀을 교환할 때에 저화가 아닌 다른 잡물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112] 그리고 1412(태종 12)에는 知議政府使 李膺이 시중에서 저화가 너무 천하여 쌀로 교환을 하는 자가 없다고 하였고 죄인의 贖으로 거두던 저화마저도 布로 대체되는 형국이었다.[113] 특히 1415년(태종 15) 1월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에 布貨의 사용을 허가하여 사실상 저화사용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114]

이후 저화의 발행과 유통은 계속되었지만 화폐의 기본적인 역할인 가치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퇴장될 수밖에 없었다. 1445년(세종 27)에 저화를 강제적으로 통용시키려고 했지만,[115] 1512년(중종 7)에 이르면 저화는 전폐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법전에서만 살펴볼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다.[116] 정리하자면, 조선 초기에 유통되었던 화폐는 하나로 통일되어 유통되지 못했고 저화와 동전 그리고 쌀과 포 같은 현물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면상으로 저화의 유통은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정책상으로 저화는 태종대부터 성종대까지 유통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 저화의 가치는 최초에 의도했던 액면가대로 유통되지 않아 시중에서 태환성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나마 중종 이후로 저화는

111) 『세종실록』 세종 5년 9월 16일
112) 『태종실록』 태종 12년, 6월 15일
113) 『태종실록』 태종 12년 6월 5일
114) 『태종실록』 태종 15년 1월 16일
115) 『세종실록』 세종 27년 12월 4일
116) 『중종실록』 중종 7년 1월 20일

시장에서 퇴장해버려 더 이상 국가에서 보장하는 화폐는 존재하지 않은 채 면포와 쌀을 포함한 다양한 현물들이 거래에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다.[117]

2) 朝鮮通寶의 유통

조선통보는 1422년(세종 4) 10월 처음으로 유통이 검토되었다. 백성들이 저화를 쓰지 않고 대신 동전이나 布幣 등을 쓰고자 하므로 이에 따라한다고 하여 동전을 유통시키려는 국가의 의도였다.[118] 이에 따라 1423년(세종 5) 9월에 唐의 開元通寶를 본 따서 만든 朝鮮通寶의 제조가 결정되었다.[119] 조선통보는 구리를 주재료로 하는 금속화폐로 금속이 가지고 있는 실질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동전자체로 유통이 될 수 있었고 별도의 보조화폐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인 화폐였다. 따라서 조선통보는 원래 독립적인 유통을 위한 것이 아닌 고액권이었던 저화와 소액환이었던 동전을 병행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유통되었다.[120] '錢楮兼行之法'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에 따라 고액환이었던 저화를 뒷받침해줄 소액환의 동전을 만들어 민간에 널리 유통되도록 유도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통될 만한 동전을 제조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동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원료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제조된 동전도 소액으로 기능하기에는 동전 자체의 가치

117) 16세기 이후 화폐유통에 대해서는 송재선의 논문(송재선, 「16세기 면포의 화폐기능」『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5)을 기초로 이후의 연구를 진행시켰다.. 하지만 송재선의 논지와 다르게 16세기 추포가 명목화폐처럼 교환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비판적 논문이 최근에 발표되었다(유현재, 2006, 「16세기 麤布유통과 그 성격」『한국사론』 서울대 국사학과).
118) 『세종실록』 세종 4년 10월 16일
119) 『세종실록』 세종 5년 9월 16일
120) 『세종실록』 세종 6년 2월 7일

가 높아 결국 고가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동전을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은 동의 확보였다. 하지만 조선 초기는 국내 동의 생산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설치되는 동광에서 생산한 동보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조선 초기 훼철한 사찰에서 나오는 동제품[121] 등을 활용해서 동전주조를 계획하였다.[122] 특히 민간에서 동을 가져오기 위해 동 보상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동의 가격에 대해 명확한 시장가격을 책정하지 못하고 『大明律』에 의거하여 구리 1근 당 150개의 새로 제조한 동전으로 1:1로 보상하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관에서는 동전의 액면가가 높게 되면 위조화폐가 나오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전의 가치와 제조 비용과 액면가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123] 따라서 민간에서는 실제적인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동전이나 布幣 등이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저화보다 선호되었다.[124] 동전은 상기한 장점 때문에 유통이 확산되었지만 원료부족 때문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동전을 확보할 수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에 매장된 구리의 양이 많지 않았고, 1445년(세종 27) 이후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동을 조금씩 수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당시 왜에서 생산되는 구리의 양은 조선과 비교해 크게 많지 않았던 시기라 동전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넉넉하게 확보할 수가 없었다. 또한 동으로 만든 동전의 완제품은 일본에서 가격이 훨씬 좋아 불법으로 상인들이 일

121) 『세종실록』 세종 6년 2월 7일 “新羅之世 ,佛宇所支銅鐵器皿, 無處無之, 柴炭所出, 處處俱足”

122) 『세종실록』 세종 7년 2월 23일 “今所鑄銅錢, 只用於公, 不行於民間, 未便. 請令民將銅及雜物, 納官以買”

123) 『세종실록』 세종 6년 10월 6일 “戶曹啓 歷代錢幣之制, 唐德宗朝勅, 今後天下鑄造買賣銅器, 竝不須禁止, 其器物, 約每斤價直不過一百六十文, 如有銷錢爲銅者, 以盜鑄錢罪論, 元朝進士林泉生曰, 錢小直多則物價必貴, 銅輕利重則僞鑄難防, 使盜鑄者欲鑄一錢, 則費一錢, 雖賞之, 不竊也, 大明律曰, 軍民之家, 應有廢銅, 竝聽赴官中賣, 每斤給價銅錢一百五十文, 臣等竊意, 大明律, 時王之制, 且得輕重之宜, 乞依律文以銅錢一百五十文準銅一斤”

124) 『세종실록』 세종 4년 10월 16일 “上以楮貨民不興用, 欲用銅錢與布幣, 使金益精, 鄭招往議三議政, 柳廷顯請堅行楮貨, 不用者嚴刑, 李原請行銅錢, 鄭擢請用布幣”

본에 밀수하여 동전자체를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125]

순수한 구리 1斤으로 만들 수 있는 동전의 개수는 동전을 주조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제반 비용이 지역마다 달랐기 때문에 최초의 계획된 품질에 따라 제조하더라도 실제로 명확하게 통일되기 힘들다. 하지만 동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쌀 경우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석과 납 등을 섞어서 제조하거나 동전의 무게 등을 변화시켜 제작단가를 조절 하였다.[126] 특히 동의 가격과 동전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 특히 동을 녹이기 위한 연료비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구리 1근으로 150문의 동전을 만들지 못하고 130문으로 낮출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127]

1424년(세종 6)에는 관이 주체가 되어 수입한 동으로 동전 1만 관을 제조하려고 했다. 1만관은 환산하면 10만 냥으로 동전의 개수로는 이론상이지만 천만 文에 달하는 규모이며 정부에서는 이 동전과 함께 저화를 幷用하려고 계획했다.[128] 그런데 실제로 동전의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특히 15개의 冶爐에서 한정된 기간에 10만

125) 『세종실록』 세종 27년 10월 11일 “今之欲改, 特患銅乃異國所産難繼之物, 且已鑄錢文爲工匠所鎔與夫流入倭國, 日至於滅耳, 非有巨弊不可行也”

126) 동전을 주조할 때에 아연과 납과 같은 성분을 섞게 되면 제작 단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외에도 금속을 액체화 시켰을 때 훨씬 더 유동성이 좋아지는 측면 때문에 아연과 같은 다른 금속을 섞기도 한다.(彭信威, 1958『中國貨幣史』, 6쪽)

127) 『세종실록』 세종 7년 2월 8일 “戶曹啓曾奉敎旨, 以銅錢一百五十文準銅一斤, 然新鑄錢文輕重不一, 一百五十文之重, 重於一斤, 且鑄造之費不細, 而以一百五十文準銅一斤, 則錢貨過輕 請以一百三十文準一 從之”

128) 동전의 단위에 대해 간단하게 환산식을 정리하자면 조선 초기에 기록된 ‘貫’은 동전의 개수로는 1천문에 해당한다. 즉 동전 10문=1錢, 10錢=1兩 10兩=1貫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 후기 常平通寶를 유통하는 시기에는 1貫은 1緡 등으로 사용되며 1兩으로 통용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동전 단위에 대한 설명이 법조항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土地賣買明文 등 고문서 자료와 『승정원일기』와 같은 관찬 사료를 통해 兩이 貫과 동일하게 사용된 내역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동전의 단위는 고정된 채 사용하기 보다는 문맥을 통해 단위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종 대 단위 환산은 세종 7년 2월 8일 기사에 1근의 동전으로 150~130문의 동전을 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다음 기사를 통해 1貫은 10냥의 동전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세종실록』 세종 6년 8월 5일 “將司贍寺已鑄錢四千五百七十八貫, 計用銅三萬五千七百六十五斤. 以此例之則一萬貫所鑄銅七萬八千八十八斤, 十萬貫所鑄銅七十八萬一千八百七十七斤”

냥을 주조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에 冶爐와 인원을 확충하고, 주전 장소를 경상도 외에 전라도까지 확대하여 동전을 제조하려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동전을 유포시키기로 약속한 시기에 이르러 司贍署 提調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예정된 양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천5백78관 즉, 457만 8천 개의 동전을 제조하고 있을 뿐이었다.[129] 이때까지 제조된 동전을 은으로 환산할 경우 당시 명나라의 은가격은 정련된 구리를 기준으로 100근 당 6냥 정도로 환산할 수 있다.

표 3) 명대 초기 중국의 銅 가격

	동 100근당 가격	동의 종류	전거
1368년(洪武 元)	은 5냥		
1453년(景泰 4)	은 5냥	紅銅	
1577년(萬曆 5)	은 7냥		
1597년 이후(萬曆 25년 이후)	은 5냥		『冬官記事』

* 전거: 彭信威, 1958『中國貨幣史』, 678쪽에 서술된 내용을 표로 만들었음.

이후 연말까지 동전 제조를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서울과 각 도의 주전소에서 제작한 동전은 모두 1만 9백 21관에 이르렀다. 1424년(세종 6) 12월까지 1만 관의 동전을 만들었다는 보고에 근거하여 이를 무게로 환산하자면 약 4만 냥(1,500kg)의 은이 소비되는 양이었다.[130] 물론 실제 동전이 유통되기 직전에 보고된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다. 호조 참판 睦進恭의 보고에 따르면 1425년(세종 7) 4월에 호조에서 반포한 동전은 3천 관이었고 아직 반포하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있는 동전은 2만 4천여 관, 실제 시중에 풀린 동전은 1천 관에 불과했다.[131] 즉, 세종 9년까지 저화와 동전을 병용하려는 계획

129) 『世宗實錄』 세종 6년 7월 26일 "自癸卯十一月至今七月鑄成之數, 不過四千五百七十貫, 雖盡今年, 未滿一萬貫"
130) 『世宗實錄』 세종 6년 12월 5일 "京中及各道所鑄錢, 一萬九百二十一貫"
131) 『世宗實錄』 세종 7년 4월 14일 "戶曹參判睦進恭進曰, 今頒布錢文 三千貫也, 見留在

아래에서 제작한 동전의 총계는 결국 모두 기록되지 않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략 4만 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132]

현실적으로 동전을 저화와 함께 병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1426년(세종 6)에 제작한 1만 관 그리고 1425년(세종 7) 4월에 파악한 동전량 2만 4천여 관으로는 전국적인 유통은 힘들었다. 각 도에 2만 4천여 관을 산술적으로 동일하게 분송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도에 분송되는 양은 3만 냥이 채 되지 않았다. 물론 저화와 함께 병용하려는 계획이 있어 전체적인 분송액은 더 많을 수 있었지만 동전 수치만을 생각해보면 전국적인 유통을 실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다. 저화의 양은 알 수가 없지만 저화유통은 이미 이전 시기에 동전의 주전량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가치보장이 시장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으므로 세종대에는 저화와 동전을 병용하는데 동전수효만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동전 수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화도 통용될 수 없었을 것이고, 서울에 많은 양이 분정된다면 다른 여타의 도에는 1만 냥 정도 밖에 분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동전을 더 주조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지만 당시 조선에서 생산되는 구리로는 계획한 동전주조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새로 만들어야 할 器皿제작을 다음으로 미루고 기명을 몰래 제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었다. 이로 미루어 동전의 원료가 부족했고 동전 제작은 국가적으로 급선무였던 것으로 보인다.[133] 따라서 애초에 저화와 동전을 병용시키려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동전은 한정된 지역

官者, 二萬四千餘貫”

132) 『世宗實錄』 세종 9년 1월 7일 이전 기록에도 3만관에서 약 4만 5천관에 이르기까지 주조량에 대한 추계가 호조와 사섬시 관리의 보고를 통해 보고되었으나 일치된 견해가 없고 세종 9년에는 4만 냥으로 주조된 양을 추계하고 있어 대략적으로 당시에 주조된 양을 유추할 뿐이다. 이 같은 이유는 주조하는 기관이 여럿이고 주조하는 冶爐도 확대해가면서 정확한 주조 추계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3) 『世宗實錄』 세종 8년 12월 6일 “鑄錢銅不足, 請自今公私新造器皿一禁, 違者, 杖一百、身充水軍”

에서 유통시킬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서울은 소비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물가의 등락에 따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곳이었다. 따라서 세종도 서울에 집중하여 동전을 유통시키고자 하였고, 동전이나 저화를 사용하지 않고 현물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처벌을 내려 동전의 유통을 강제시키고 국가에서 제조한 화폐의 공신력을 확보해나가려고 노력했다. 당시 현물을 사용하는 자들은 주로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장을 때리고 水軍에 충당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134] 贖錢과 같이 백성들이 내지 않으면 큰 곤란을 겪는 경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새로 주전한 동전을 속전으로 강제하면서 유통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었다. 특히 주비짓기를 5호단위로 하여 감시체제를 마련하여 동전과 저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적발하게 하여 면밀하게 화폐사용을 감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널리 민간에 유통시키려고 하였다.[135] 사실 이전부터 물품을 통해 관습적으로 상업활동을 하고 물물교환을 통해 백성들은 최소한의 거래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만큼 동전이나 저화를 만들어 유통을 강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거래수단을 바꿀 수 없는 일이었다. 제조한 동전의 개수도 충분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 단일한 교환수단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따라서 엄격한 처벌을 동반한 화폐유통책은 민간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경중에 화재가 빈발하였는데 그 주요한 원인으로 강력한 동전 유통책에 있다고 보았다.

---

134) 『世宗實錄』 세종 7년 7월 8일 “今觀不用銅錢受罪者, 非富商大賈猾之徒, 類皆鰥寡孤獨, 貧乏之人而已, 一朝受杖一百, 身充水軍, 籍沒家産, 永失其所, 誠可憐憫, 願自今除籍沒家産, 止杖一百, 身充水軍”

135) 『世宗實錄』 세종 7년 2월 8일 “戶曹啓, 銅錢依已曾受敎, 與楮貨兼用, 其不用銅錢者, 糾察條件, 具錄如左, 一富商大賈諸色工匠, 輕慢國法, 米豆布貨, 互相貿易, 不用銅錢者, 以所犯輕重, 重者典刑廣示, 輕者杖一百, 身充水軍, 家産沒官 … 有托以銅錢輕重及錢面不鍊字畫不明, 多般揀擇者, 以王旨不從論, 一京中五部以五家爲比, 諸色工匠之家及雜物買賣者, 不用楮貨銅錢, 潛以米布, 私相貿易, 隨卽捕告”

이와 관련하여 吏曹參判 成揜 등은 아래와 같은 건의를 올렸다.

>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가산을 관청에서 몰수하므로, 살아갈 길이 없어 원한을 품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해치는 이유가 여기에 기인한 듯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산이 관청에 몰수되었거나, 자신이 수군에 보충되었거나, 왕명에 의하여 장형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다른 물품으로 매매했을 때에는 액수를 계산하여 동전으로 환산하여 3배를 추징하게 하소서.[136]

1426년(세종 8)에 강력한 처벌 규정과 동전유통을 강제한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저화와 동전의 유통이 철저한 강제를 통하지 않고는 민간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고 특히 장사치들은 국가에서 제조한 화폐보다는 현물을 통해 이득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전 유통 강제책은 현실적으로 서울이외의 지방에서도 강제하기 어려웠다. 1439년(세종 21) 載寧郡에서 일어난 知載寧郡事 尹莘發이 장을 쳐서 人吏를 죽인 사건에서처럼 윤재발에게 처벌과 함께 피해를 입은 人吏를 매장하는 대가로 동전 10냥을 부과하고 있다.[137] 그러나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전이 유통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조정에서 강제한 노비의 신공이나 속전과 같은 비용은 반드시 국가에서 제조한 화폐를 통해 납부해야 했으므로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동전이 유통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재령군에까지 매장 비용을 동전으로 부과하였던 것처럼 동전으로 수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했고 이를 근거로 지방에서도 동전은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주전량이 많지 않았고 유통 구조상 세금으로 서울에 올라온 동전이 창고에 쌓일 경우 다

136) 『世宗實錄』 세종 8년 2월 26일
137) 『世宗實錄』 세종 21년 12월 6일

시 지방으로 유입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지방의 동전 사용은 서울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세종대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조선 전시기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특히 중국에서도 이러한 동전의 서울 집중 현상은 막기 힘든 것으로 전근대 화폐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세종대에는 동전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민간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또한 동전 사용이 줄어들면서 동전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었다. 국가에서 주전한 동전의 양은 많다고 하나 실제 민간에서는 동전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동전의 가격은 희소성 만큼 가치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다. 또한 존재하고 있던 동전의 가치보다 구리의 현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동전을 녹여 필요한 器皿을 만드는 훼전도 나타나 세종대의 동전유통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138]

세종대 동전이 발행된 이후 국가에서는 저화와 병용하며 사용처를 강제하는 등 유통책을 펼쳤지만 동전유통은 원활하게 정착되지 못했다. 동전이 가지고 있는 물품적 가치가 있었지만 생활에 직접 필요한 물자가 아니니 매개체의 역할을 할 뿐이어서 흉년이 들거나 도성에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동전 유통은 현물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동전을 속전으로 강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이어지고 있었다.[139] 실제 동전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노비의 身貢을 동전으로 바치도록 하였는데 세종 14년의 기록에 따르면 노비가 많아 이들이 신공으로 동전을 내지 못한다고 하였다.[140] 이

138) 『世宗實錄』 세종 20년 2월 12일 “ 以此國家鑄錢多, 而散在民間者, 不能什之一, 其勢必將盡而後已, 誠爲可慮。 水鐵, 本國之産, 且無銷鑄出境之弊, 鑄鐵錢以代銅錢何如 僉議以啓”

139) 『世宗實錄』 세종 13년 3월 14일 “今和賣收納銅錢, 非欲取利於民, 專爲興用也。 官吏等不顧此意, 或定數收錢, 或收納後, 不卽給米, 因此人不樂於貿易。 其以杠輸, 輸米于市, 委差及色官員親監, 如有願納銅錢者, 隨卽和賣”

140) 『世宗實錄』 세종 14년 6월 5일 “戶曹啓, 各司奴婢之貢, 請以錢收納, 上曰 奴婢多而銅錢少, 督納所無之物, 不亦難乎”

러한 현상은 노비의 숫자가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가 했다기보다 동전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통을 강제하고 贖錢으로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정부의 유통촉진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전의 유통은 널리 확대되지 않았다. 동전 사용이 확대되지 않으면서 동전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민간에서는 동전의 효용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가격이 낮아지고 있었다.[141] 서울에서도 동전의 유통은 제한적이었는데 호조참판 睦進恭은 민간에 돈이 많이 퍼져있고 신료들이 동전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자주 진달하면서 백성들에게 화폐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세종은 동전 유통이 부진한 원인을 자주 바뀐 법에 있다고 보기도 했다.[142] 하지만 세종이나 호조참판이 계획했던 동전 유통의 범위는 당시 주전한 동전의 양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인 유통범위를 상정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주전에 필요한 원료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유통될 만큼 충분한 동전이 제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전을 초기부터 저화와 병용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세종대에 계획한 수량이 모두 주전되더라도 전국적으로 활발한 유통이 실현되었을지 여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발행규모를 전국적으로 균등히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발행량은 당시 부세규모를 감안하면 세금으로 거두는 양으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종대에 발행한 동전과 병용하기로 했던 저화는 교환수단으로 확대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발행초기부터 없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종대의 화폐 발행은 백성들에게 교환수단을 공급해주기 위한 의도보다는

141) 『世宗實錄』 세종 13년 4월 9일 “錢幣, 歷代所寶. 本國自行錢幣以來, 民不興行, 有司請嚴刑立禁, 使民興用, 予猶不允. 獻議者曰: “假之數年, 當見其效. 姑從之, 適有天變, 因罷刑禁, 到于今日, 民不興用, 錢幣至賤, 予甚憫焉”

142) 『世宗實錄』 세종 7년 7월 18일

애초부터 부분적인 유통을 염두에 두고 한정된 효과를 보고자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의 화폐유통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시각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3. 兩亂 이후의 銅錢 유통책

1) 壬辰倭亂 전후의 銅錢 유통

조선정부는 임진왜란이 지속되던 1598년(宣祖 31) 4월 명나라 군사들의 참전으로 이들에게 보급해야할 식량과 군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 곡창지대인 전라도가 왜의 침략을 받지는 직접적으로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전란의 영향이 재정에 영향을 심대하게 끼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조선에 파병되어 있던 명나라 장수 楊鎬는 재정압박을 다른 방법이 아닌 주전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명나라 뿐만 아니라 조선 내부에서도 주전을 통해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건의가 대두하며 주전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143] 주전 사업은 광물을 채굴하여 원석을 주전하는 장소까지 이동시키고, 주전 과정에서도 原石을 녹여 주조해야 하므로 채굴과 주조과정 모두에서 비용이 상당히 소용되는 작업이었다. 특히 원광석에서 純銅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연료가 소모될 수밖에 없었다.[144] 동전을 주조하기 위해 匠人들을 모으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적합한 주조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으로 이전에 주전 경험이 없던 상황에서는 많은 공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주전을 하고 주전량을 유지하는 사업은 고대부터 화폐를 유통시키고 있었던 중국에서도 국

143) 『宣祖實錄』 선조31년 4월 2일 "銅錢一事, 議者或以爲: '當此財竭之時, 通貨殖財之策, 無所不用其極。 試之而中止, 別無大段之害, 試行無妨, 或以爲 我國習俗, 與中華不同, 祖宗朝亦嘗行之而旋廢, 今不可輕易爲之云。 第今經理意思, 必欲行之, 至以爲上本, 請鑄萬曆通寶云。 試令該曹, 磨鍊擧行。 上曰 必不能行"

144) 『銅政便覽』 卷1 大水溝廠 (중국 운남성에서 구리 100근으로 동전을 생산할 경우 1,400~1,500근의 석탄이 주전하는 연료로 소비된다고 보았다. 주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원료인 구리를 녹이는 연료비용이라고 당대에도 인식하고 있었다.)

가의 '大政'으로 간주하며 백성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45] 비단 物力이 많이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물가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했기 때문에 한번 통화를 유통시키는 데에는 민감한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이와 같이 상당한 공력과 물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주전사업을 아직 임진왜란이 채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에서 강행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조선 초기부터 진행되었던 화폐유통책이 국가의 의도대로 성공하지 못하여 정책적 방향마저 확립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새로운 '大政'을 실시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은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宣祖는 객관적인 주변 여건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장수 陽鎬의 직접적인 제안을 기반으로 형성된 주전론을 군수마련을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실시하였다.[146]

당시 주전에 대한 요청은 조선에 참전했던 명나라 장수에게서도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 측에서는 右議政 柳永慶을 비롯하여 여러 신하들이 주전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들이 주전을 주장한 당위성의 근거는 교환수단의 필요성이 아닌 국가 재정의 확충이었다. 물론 화폐를 발행하여 재정에 확충하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재정을 염두에 둔 주전일지라도 민간에서 유통을 염두에 두고 소액환으로 제작하려고 계획했다. 주조하여 민간에 동전을 나눠주고 대신 현물을 받는 과정을 통해 국가는 일시적이나마 재정을 확충할 수가 있었다.

---

145) 『皇朝經世文編』「開銅源節銅流疏」乾隆9年 "臣惟錢幣, 國家大政也, 民生日用急需也, 常苦於錢之少, 而錢亦日鑄而不敷, 價遂日昂"

146) 『宣祖實錄』 선조 36년 6월 24일 "領議政李德馨議曰, 我國無泉貨, 只用米布, 故農病而國貧. 當此板蕩之時, 目前經費, 猶患窘乏, 脫有意外之需, 則將束手無救, 不得已破格設法, 使利權在上而通行, 然後國計可以支度, 兵餉可以措備. 往年楊經理, 每語臣以爾國亂後, 糧餉匱竭, 不可不創用錢貨, 以裕公家之用. 一曰急令臣, 商量應行事宜來告. 臣與接伴使金睟, 磨鍊啓稟, 自上以爲: 難於遽用, 其議遂寢. 今者戶曹之事目, 益艱難, 乃有此議。若先自官家, 鑄錢流布之後, 約以某日爲始, 於各處, 應捧布貨, 參酌用錢, 務便人情, 則雖未知行之可以久遠, 而利柄在官, 布貨流滯, 必有所益. 第所鑄之資, 出處旣少, 法立之後, 奸騙可慮. 此則在有司詳盡規畫, 俾無纔設旋廢之悔而已"

이에 임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주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도 동전의 주조를 계획했던 시기는 군사적인 위험과 군사비가 대량으로 필요하던 시기가 많았고 실제 주전을 통해 확충하려고 했던 예산 항목은 '兵餉'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주전을 통해 재정확충이 가능했으며 특히 중국은 이미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주전을 통해 위기를 벗어났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전을 주조하여 재정확충을 꾀하려고 했던 것은 조선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을 보여준다.[147] 물론 동전유통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면 예산 확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종이돈을 유통시키겠지만 종이돈은 이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동전이 뒷받침되어야 유통이 보장되었다. 따라서 조선입장에서는 임진왜란으로 조선에 참전한 明軍에게 조선의 식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즉시 명군에게 軍資를 지급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전을 택한 것이다. 백성들로부터 식량을 거두고 대신 결제할 수단이 현물로는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동전을 주조하여 이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군자를 확보하자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銅이 생산되지 않았고[148] 처음에는 민간의 器皿과 佛像등을 녹여서라도 鑄錢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이후 지속적인 주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조정에서 나오고 있었다.[149]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진왜란 당시

147) 『欽定大淸會典事例』卷254 戶部二 奉餉七 京城兵餉 "本年立春以來, 雨澤稀少, 量米騰貴, 加以銀價日增, 錢法壅滯, 兵丁生計維艱, 朕心實深軫念, 著自五月爲始, 所有在京八旗及巡捕各營兵丁月餉, 應放鈔票 ,折銀三十五萬一千兩零"

148) 조선에서 동이 전혀 생산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청동의 주요 재료가 구리와 주석이었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器皿類의 주요 재료도 동이었으므로 조선에서도 동의 생산이 일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적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숙종 대를 기준으로 한해에 40만근 정도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임란이 끝난 이후 1625년(인조3)에 주조사업을 통해 사용된 동의 양은 약 5천근을 넘지 않을 정도였다. 동을 외부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조선ㅍ내의 민간 器皿과 佛像 등을 녹여 만든 결과물이었다.

149) 『宣祖實錄』 선조 36년 6월 24일 "目今國儲板蕩, 有司之臣, 無計支用, 爲此用錢之論。

주전은 계획으로만 그치고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주전에 대한 논의가 채택된 시기는 전란이 끝난 지 20여 년이 흐른 뒤였다. 仁祖反正 이후 인조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동전의 주전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명으로부터 반정의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光海君을 복위시키자는 논의도 나오는 가운데 반정 이후 왕권을 안정화 시키는 작업은 인조에게 닥친 제일 급선무였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환관이 포함된 명나라 사신들의 방문과 국가 제례들은 많은 예산이 소모되었지만 인조로서는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反正직후에 내부에서는 논공행상을 이유로 李适이 서울까지 위협했던 지경이라 인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명의 명분을 얻고 재정을 안정시켜 민심을 얻는 것은 왕권의 존폐와 직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재정의 확충은 인조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반정 이후 동전 주전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625년(仁祖3) 호조의 건의가 있었던 때 부터였다.[150] 이후 주전에 대한 회의적인 논의가 일자 金藎國은 고려부터 실시되었던 동전통용이 실패했던 원인을 저화와 병용하고 저화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전에 반포된 주전책을 거두지 말고 계속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151] 이를 계기로 인조는 서울에 鑄錢廳을 설치하여 주전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인조대에 주전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줄어든

姑試之, 似無不可, 但自前屢有此議, 而未得施行者, 必有其由。 今若率爾行之, 而及其有弊, 施爲停廢, 則不如謀始之爲愈, 故前日以令該曹, 先爲磨鍊節目, 然後更議處之之意, 獻議矣. 今據該曹事目, 反覆參詳, 則該曹欲以鑄鉛銅三鐵爲本質, 而銅鐵本非我國所産, 鉛鐵雖産於我國, 而采取亦甚不易, 此大段難行之事也”

150) 『仁祖實錄』 인조 4년 윤6월 18일 “肅宗二年, 始立鑄錢之官, 七年十二月, 以所鑄錢一萬五千貫, 分賜宰樞、文武兩班、軍人, 以爲權輿錢, 仍置京城左右酒務, 又於街衢兩傍, 勿論尊卑, 各置店鋪, 以興使錢之利”

151) 『仁祖實錄』 인조 4년 9월 20일 “恭愍王時, 多用楮貨, 故仍廢矣。 太宗亦欲用之, 而其時亦盛用楮貨, 故仍不用之也。 大槪百姓不信國法, 不肯多買, 故錢不爲貴. 以此用之難矣. 國初用錢之時, 先告宗廟而後用之, 蓋重其事也”

이전의 경작지를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고 수세할 수 있는 수세원도 고갈되었다. 이에 국가의 재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김신국은 반정 직후 인조대의 경제상황을 타개할 방책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우선 근본적으로 '裁省廳事目'을 언급하며 祭享과 御供 등에 들어가는 물자를 아껴 재정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에 불필요하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줄여 과도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자는 계획이었다. 이 방법은 원천적으로 재정을 건전하게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한 해 동안 예정되어 있는 제사를 줄이는 일은 수월하지 않았다. 정통성의 문제가 항상 대두하고 있었던 인조 대에 제사의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御供 또한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는 제향과 어공의 제한을 통해 예산을 가시적으로 늘리지는 못했다. 따라서 현실적인 예산 증대책으로 호조와 김신국이 내세운 방안은 '鑄錢'이었다. 화폐의 유통은 중국 고대부터 시작되었던 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도 화폐를 이용하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를 본받아 주전한다면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바다에서 생산되는 산물에 세를 부과하여 재정에 보탠다면 이 또한 재정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52] 세액을 확충하기 위해 關稅를 걷거나 海稅를

152) 『仁祖實錄』 인조 3년 10월 27일 "當今國儲蕩竭, 經用無制, 各司艱一日之供, 大倉無數月之需, 而督府綵段之價及諸處賒用之物, 略計不下五六萬銀。 譬如貧婁之家, 朝不及夕, 而執契券, 誅求宿債者, 踵門而盈室, 其何以堪之哉 臣晝夜思之, 敢陳三件事 其一曰, 制國用。 臣伏覩上年裁省廳事目, 上自祭享、御供, 下至百司所用, 皆取僅足而無餘, 可謂一時之定制, 而若以一歲恒入之物, 較諸一年應出之數, 猶有不足之慮。 況乎規外不制之費, 倍蓰於常用者哉 又況所謂已定之制, 亦有所不遵者乎 紙燭筆墨, 物之微者, 而其用甚廣, 故爲費不億。 半餉之燃, 一行之書, 燭不至跋, 筆不濡毫, 而終歸於下吏之私用 祖宗朝用後還下之法, 今不可復行乎 公家百物, 莫非民之膏血, 雖在庫藏充牣之時, 不宜任其消耗。 矧今國非其國之日, 寧委而不收哉 如使大小之官, 愛惜國計, 一如主者之心, 凡不得已需用之物, 必移文本曹, 不許直責該司然後, 各司庶可蘇息, 而經用不至於無制矣。 其二曰, 造錢幣。 錢之爲幣, 始於太昊。 或謂之金, 或謂之泉, 或謂之貨, 代各異稱, 而其實則一也。 先王以此一物, 御人事, 而平天下, 降及後世, 其用益繁。 惟我東方, 亦嘗用錢, 高麗成宗之世, 始用鐵錢。 肅宗朝,

거두는 방법은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된 稅源 확충책이었다.[153] 세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실시한 정책은 주전사업이었다. '裁省'의 문제는 이후 大同法의 실시로 귀결되었지만 실제 공물을 포함한 예산의 '裁省'은 반영되지 않았다. 공납은 본래 제후국이 표하는 예의 일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왕에 대한 예우를 포기하는 것은 명분상 쉽게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裁省'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稅制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로 세제의 변화가 결정되더라도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인조가 당장 눈앞의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채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주전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인조는 즉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626년(인조 4)에 仁慶宮에 鑄錢廳을 설치하여 시급한 현안을 주조로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전청은 오래지 않아 주전을 멈추고 명칭만 남은 주전청이 되고 말았다. 당시 주전청에서 주조한 동전의 양은 6百 貫(6천 냥)이었다. 주전 작업은 6백 관의 동전을 일회성으로 주조하는데 그친 뒤 주전청

國人皆知用錢之利, 如三韓重寶、東國通寶、海東重寶, 其稱不一 恭愍王時, 依倣宋之會子, 始置高麗通行楮貨, 而錢用於是少衰矣。 入我朝, 專用楮貨, 至太宗大王, 方議用錢, 鑄造伊始, 適値論議不一, 獻廟不得已命罷, 乃曰 後有明君出而行之 蓋其時楮貨盛行, 故慮有相妨之患。 然而聖人遺意, 亦可見也。 方今聖神御極, 利用厚生, 稽古昔之制, 遵先王之志, 作爲一國之通幣, 以阜民財, 以幸後世, 此其時也。 其三曰, 收海利。 海之爲物, 其利甚博。 齊楚吳越之富, 甲於天下者, 以其有魚鹽之利也。 我國三面際海, 魚箭、鹽場, 處處相望, 又有漁採之船, 簇立於海中, 苟能善爲規畫, 則富國之資, 實在於此。 祖宗朝收稅之規, 載在金石之典, 而數十年來, 國綱解弛, 公家莫重之利, 盡歸於私門。 京外官司之橫侵劫奪者, 無補於國家之用, 而只益殘民之愁怨, 可勝痛哉 嘗聞一國之兵擧, 歸之夏官; 一國之財擧,歸之地部, 而今者魚箭、鹽場, 各有主者 巨艦、小舠, 莫不有標。 該司之所得以收稅者, 百無二三, 雖欲善爲規畫, 以收其利, 而其道末由也。 諸宮家、各衙門所屬魚鹽, 皆令量宜定制, 亦必受標於該曹, 俾無落漏之弊, 而略收其稅, 以爲國用, 亦無所不可也。 凡船隻、鹽場之屬諸宮家、各衙門者, 所在地方, 則莫不私自收稅, 而該曹則不敢下手。 今若必令受標於該曹, 而痛禁地方之私收, 則無疊徵、重斂之弊矣。今言海利者, 必曰大開鹽場, 轉換得穀, 臣則以爲, 大開則勞民, 轉換則病輸。 雖仍其存, 而什一收稅, 許其來買, 而勿令遠賣, 亦足以補經費之乏也。 願下臣箚于廟堂, 增損潤色, 作爲條令, 使得以奉行, 幸甚"

153) 『皇朝經世文編』「鼓鑄議」夏駟"國家正賦之外, 充軍國之用, 惟鹽政關稅與錢法而已"

의 주전 작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사실상 혁파되었다.[154] 당시 주조되었던 동전 6천 냥은 동전의 개수로 환산하면 600,000文에 해당했는데 실제 유통되지는 못했다. 주전한 총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만약 유통을 시켜 세금으로 강제할 경우 오히려 동전을 구하지 못해 동전을 위조하는 등 폐단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155]

당시 주조한 동전은 연대기 기록에 따르면 萬曆通寶 보다 심히 무게가 가볍다고 했으니, 그 최대치를 계산하기 위해 만력통보의 무게였던 1錢 4分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동으로 주조했다고 가정한다면 동전의 총 무게는 5,250근(3,150kg)이 된다. 즉, 당시 주전에 사용된 동은 최대로 계산하더라도 5천근 이하의 소규모 주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전 규모를 쌀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156] 당시 관원들은 만력통보의 1文의 무게가 1전 4푼(5.25g)인데 朝鮮通寶의 무게는 심히 가벼우니 새로 제조하는 동전은 만력통보를 본받아 비슷한 무게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157] 그리고 동전 1문의 가격을 이전에 1升으로 정했지만 단위가 너무 높아 반으로 가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즉 병인년에 동전 1문의 단위를 1승으로 정했으므로 인조 대에 주전했던 동전의 양은 쌀로 환산할 경우 6,000,000升(45,250석) 규모의 예산을 동전 주조를 통해 확대하려고 계획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158] 물론 계

154) 『仁祖實錄』 인조 4년 윤6월 18일

155) 『仁祖實錄』 인조 4년 8월 2일 "用錢之法, 必有國家收捧之規然後, 可以通行於公私。 今者所鑄無多, 若廣開責納之路, 則齊民無處覓得, 而其弊必至於盜鑄"

156) 시기상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아래에 인용한 인조 11년 기록에 나타난 미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157) 『仁祖實錄』 인조 11년 11월 4일 "用錢事, 旣已設廳, 本曹堂上及郎廳三員、常平郎廳二員, 各令句管, 分左右鑄錢, 而監鑄於常平廳。 嚴禁私鑄, 俾無奸濫之弊, 私鑄者, 依大明律處絞, 匠人罪同, 各衙門鑄錢者, 亦宜禁斷。 且臣等取見萬曆通寶及朝鮮通寶則萬曆通寶, 重一錢四分, 朝鮮通寶其體過小。 請依萬曆樣子, 鑄成朝鮮通寶, 易以八分書, 以別新舊, 而丙寅年事目, 則錢一文, 準米一升爲式。 今之議者多以爲: '其價太重, 一文準米半升爲式, 則價可平準云"

158) 15斗를 1石으로 환산하였다.

획과 달리 동전과 쌀의 가격이 민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동전 1文당 쌀의 가격을 0.5두로 낮추었기 때문에 실제 유통이 되었더라도 확충가능한 액수는 훨씬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조했을 당시에는 4만 5천석을 재정에 확보하려는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4만 5천석 규모의 긴급한 재정을 위해 실시된 주전 사업은 김신국과 같은 지속적인 주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란을 이유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丁卯胡亂으로 한 차례 전란을 더 겪은 이후인 1633년(仁祖 11) 주전논의가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전후 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묘호란을 겪게 되면서 조선에서는 公私간에 재물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주전을 하게 되면 곡식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조선에서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아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한탄 속에서 주전을 다시 시행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었다.[159] 주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정묘호란 이전에 주조하고 유통시키지 못한 동전과 매년 수 만근씩 공납하는 일본 동전을 기반으로 常平廳에서 동전을 '加鑄'하려고만 한다면 충분히 동전을 유통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1633년(인조 11)의 이러한 기록에서 등장하는 당시 조선이 일본의 동전을 수입했다는 부분은 기존 연구들의 일방적인 설명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본은 조선동전을 수입하는 수입국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대마도에서 발견된 중국동전과 조선동전을 예로 들어 당시 대마도는

159) 『仁祖實錄』 인조 11년 10월 15일 "戶曹啓曰 竊念錢幣之行, 上自少昊之世, 下至漢唐宋, 通用不廢, 式至于今 其貨甚輕, 其用甚廣, 流行中國, 與菽粟同其功. 獨我國尙不能用, 豈非生財之一大欠乎. 丙寅年間, 本曹設廳鑄錢, 行之纔數月, 而因丁卯之亂, 遽爾停廢. 今其所鑄, 尙有餘儲, 且倭貢銅錢, 歲不下數萬斤. 若以常平廳所儲米布, 添補加鑄, 可以由小至多, 自內及外, 家財可足, 國儲可裕。 請令廟堂, 商確便否, 如其不可, 則置而不用, 事如可爲, 則斷然行之, 俾無旋設旋廢之患. 備局回啓以爲: "宜從戶曹陳啓, 以爲久遠流行之地"

동전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선의 동전을 대량 수입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조선은 국가적으로 추진된 대규모 주전사업을 강행할 만큼 충분히 동을 생산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선의 동전이 대마도로 일방적으로 수출 되었던 것이 아니라 대마도로부터 조선으로도 동전이 수입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실제 1633년(인조 11) 10월 15일 기록에 왜가 공물로 바친 동전을 '倭貢銅錢'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若以常平廳所儲米布, 添補加鑄'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160] '倭貢銅錢'을 '倭銅'으로 간주할 근거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161]

당시에 일본은 이미 독일에서 설립한 동인도 회사를 통해 유럽으로도 동전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었다. 일본은 1602년 이후 유럽과 통교를 시작한 이래 다양한 물종을 가지고 대규모로 교역이 진행시키고 있었다. 특히 1602년 설립된 독일 동인도 회사를 통해 나가사키에서 유럽으로 동전을 수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에서 일방적으로 동전을 왜로 수출하고 있었다는 기존 논의 구도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OC)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동전의 양은 1635년 당시 41,985貫을 기록하고 있다. 동전 개수로 1관을 10냥으로 계산할 경우 41,985,000文에 해당하며, 동전의 무게를 1錢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전의 전체 무게가 약 157.5톤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1634년(인조 12)에 조선으로 수입되는 왜동의 양이 약 18톤이었으므로,[162] 이와 비교해 본다면 일본 내에서 유럽으로 수출한 동전의 양은 상당한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일본에서는 원료인 구리

160) 上同

161) 원유한은 '倭貢銅錢'을 원료인 동을 수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의 연구들은 원유한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특히 대마도에서 발굴한 동전의 종류 중에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초반의 동전들이 발견되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대마도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동전을 수입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일본 동전을 수입할 가능성을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정수, 『조선후기의 화폐와 화폐량』 경북대출판부, 2000)

162) 『仁祖實錄』 인조 12년 2월 20일 '宜以一年倭貢三萬斤之銅'

생산량이 많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선보다 많은 양의 동전을 생산하고 있었음을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표 4) VOC를 통해 수출한 일본 동전 수량

연도	수출량(貫)	가격(兩)
1633	15.420	
1635	41,985	
1636	13,500	
1637	3,015	
1660	400	
1663	9,230	1.26
1665	26,980	1.26
1666	20,000	1.26
1671	318	
1675	1,948	
1682	5,181	1.26
1699	2,000	
1700	3,700	1.35

* 典據: Oskar Nachod, *Die beziehungen der Niederländischen ostindschen kompagnie zu Japan im siebzehnten jahrhundert, Leipzig*, R. Friese, 1897. (Innes, *Ibid*, p.531 Table 32 재구성)

따라서 1633년(인조 11) 단계에 이르면 동전을 재정에 활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동전 완제품을 수입했던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부족한 액수의 동전은 조선에서 주전청을 계속 운영하여 조금씩 加鑄하여 유통량을 조절하려고 계획했다. '加鑄'라는 표현이 먼저 일본으로부터 동전을 수입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즉, 정묘호란을 겪은 직후인 1633년(인조 11) 단계에서는 필요한 동전을 충당하기 위해 온전히 조선에서 주전한 양에 의존하던 이전의 상황과 달리 일본에서 수입한 동전을 그대로 유통에 활용하려고 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유통되었던 동전의 최하 품질에 해당되는 동전무게를 1전으로 가정하여 10만 단위 아래로 계산한다하더라도 16,000

냥~144,000냥(1만 근~9만 근 사이) 사이의 동전을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163] 비슷한 시기 동전 1文의 가격이 실제 시장에서는 쌀 5升으로 거래되었으니[164] 시중 米價로 계산한 인조 11년 당시 일본 동전의 수입규모는 5만3천 석~48만 석(8,000,000승~72,000,000승)으로 환산 가능하다. 연이은 전란으로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왜의 동전 완제품을 수입하여 얻으려고 했던 효과는 경제적인 이득이었다. 특히 동전 유통으로 얻는 효과를 '與菽粟同其功'이라고 할 만큼 동전 수입으로 곡식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재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즉, 정묘호란 이후 인조는 긴박한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왜의 동전을 수입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1634년 이전까지는 주전이 서울에서만 이루어졌다면, 1634년 이후에는 상평청의 건의로 安東과 開城까지 확대되어 이루어졌다. 물론 처음부터 지방에서 주전이 허가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서울과 지방에서 동전 사용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 원인이 바로 주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인지하면서 부터 지방가지 확대되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동전을 주전하여 공급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먼저 서울에서 주전한 동전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관서와 군문에서 제조한 동전을 바로 군사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三手軍의 전체 급료의 1/10로 직전

163) 『仁祖實錄』 인조 11년 10월 15일 "竊念錢幣之行, 上自少昊之世, 下至漢、唐宋元, 通用不廢, 式至于今。 其貨甚輕, 其用甚廣, 流行中國, 與菽粟同其功。 獨我國尙不能用, 豈非生財之一大欠乎 丙寅年間, 本曹設廳鑄錢, 行之纔數月, 而因丁卯之亂, 遽爾停廢。 今其所鑄, 尙有餘儲, 且倭貢銅錢, 歲不下數萬斤。 若以常平廳所儲米布, 添補加鑄, 可以由小至多, 自內及外, 家財可足, 國儲可裕。 請令廟堂, 商確便否, 如其不可, 則置而不用, 事如可爲, 則斷然行之, 俾無旋設旋廢之患。 備局回啓以爲: 宜從戶曹陳啓, 以爲久遠流行之地"

164) 『仁祖實錄』 인조 11년 11월 4일 "請依萬曆樣子, 鑄成朝鮮通寶, 易以八分書, 以別新舊, 而丙寅年事目, 則錢一文, 準米一升爲式。 今之議者多以爲: 其價太重, 一文準米半升爲式, 則價可平準云。 請以此爲式, 但錫錢則每一文準米一升, 而公家應捧木綿、米穀等物, 或三四分之一, 以錢文計捧, 如田稅、三手糧等物, 遠方之人, 似難以錢文卒然備納, 而若三司收贖、各司作紙, 爲先以錢捧之, 凡市中給價之物及賜予賞役之物, 參諸元數, 以錢文分數計給"

에 제조한 동전을 지급하고 있었다. 군문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가장 큰 부분인 급료중 일부를 동전으로 지급하여 식량을 보전한 것이다. 하지만 군인들은 갑자기 동전으로 지급한 급료를 그 자체로 간수하지 않고 쌀로 바꾸어 주기를 바랐다. 실제 군인들이 월급으로 받은 동전을 常平倉에 와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 상평창에서는 교환해줄 수 있는 쌀이 바닥을 드러내었고 동전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은 도성 안에서 경작이 금지되었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급무관들에게는 식량으로 사용할 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다. 따라서 무관들은 쌀의 공급이 흉년으로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동전으로 쌀이나 기타 식량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에 식량으로 환급이 불투명한 동전보다 쌀이라는 현물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이런 문제는 서울이라는 도시 구조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고, 동전을 급료로 지불할 때마다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강제로 동전을 지급할 경우 백성들은 현물과 교환이 불편한 돈의 효용성에 대해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방에 유입된 동전의 유통도 원활하지 않았다. 먼저 돈을 세금으로 거두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세금의 미수분을 돈으로 받는다고 하였을 때에는 서울사람들은 돈을 구하여 바칠 수 있었지만 지방 사람들은 돈을 구하지 못하여 바치지 못하는 폐단도 나타나고 있었다. 세금의 일부를 돈으로 강제할 경우 지방 사람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었다.[165]

위의 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당대 동전은 오늘날과 같이 화폐가 항시적으로 유통되어서 어느 때에나 公私를 막론하고 편리

165) 『仁祖實錄』 인조 12년 2월 20일 “今者以常平所鑄之錢, 給三手什一之料, 而初未有賦於民之令, 故三手之受錢者, 皆赴於常平, 常平之米有限, 不能盡買, 則人皆曰 錢不可行。國家不設賦錢之制, 秖令民間轉賣, 愚民之不信, 亦宜矣…宜以一年倭貢三萬斤之銅, 分鑄於安東、全州、公州等處, 比京中稍高其價, 許民和買”

함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당시 동전 발행이 논의되던 시기는 오히려 시험적으로 발행한 동전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았고 정부에서 원활한 유통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던 시기였다. 백성들은 충분한 수효의 동전이 마련되지 않아 동전을 사용하고자 해도 구하기 힘든 폐단이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폐단이 있더라도 동전 발행을 멈추기보다 백성들에게 불편이 있더라도 정부의 효용에 따라 유통을 강제하는 상황이었다.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흉년에는 모자란 곡식을 보충하는 용도로, 또 세금의 운송에 편리함을 위해서 세금의 일부를 동전으로 걷는 용도 등이 당대 조선에 유통된 화폐가 갖는 효용성 중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화폐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원리 보다는 국가의 통제와 조정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三手軍의 급료로 동전을 활용한 것에서도 보이듯이 동전이 국가의 재정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보인다.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현물을 동전으로 1/3가량 환산하여 받아들이고 시중의 물건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전문으로 계산하여 줌으로써 서울 안에서는 동전의 가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국가가 서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방에서도 유통을 강제한 지역에서는 국가의 간섭으로 일정부분 화폐의 사용강제가 나타났고 정부가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믿음은 동전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어졌다. 일부 지방이기는 하지만 서울과 몇몇 지방의 동전유통은 국가의 통제와 강제가 뒷받침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166]

이 때 주조된 동전의 양은 명확한 숫자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

166) 『인조실록』 인조 11년 11월 4일 “丙寅年事目, 則錢一文, 準米一升爲式。 今之議者多以爲: ‘其價太重, 一文準米半升爲式, 則價可平準云。 請以此爲式, 但錫錢則每一文準米一升, 而公家應捧木綿、米穀等物, 或三四分之一, 以錢文計捧, 如田稅、三手糧等物, 遠方之人, 似難以錢文卒然備納, 而若三司收贖、各司作紙, 爲先以錢捧之, 凡市中給價之物及賜予賞役之物, 參諸元數, 以錢文分數計給。 但行錢, 患在於不得多鑄。 通用中原之錢, 則譯官輩, 必多貿來, 厥價與本國錢價同用爲當 答曰依啓。 但中原錢文, 不可通用矣”

지만 일본에서 공납으로 바치는 동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전을 행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조선에서 주전한 양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왜는 공납으로 매해 3만 근(18톤) 정도의 동을 대마도에서 동래를 통해 조선으로 바친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임란 이후 군사력의 보강에도 힘을 쏟고 있었으므로 공납 받은 동을 모두 주전에 쏟아 부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도 어느 정도의 동은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내에서 생산된 구리는 무기를 제조하는데 투입되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공납 받은 대부분의 동을 급박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주전에 대부분 활용했다고 추정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주전량은 당대 주전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당대에 유통되었던 동전은 중량이 너무 가벼워 유통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였는데 그 무게가 8分이었다. 물론 이 동전은 유통이 잘 되지 않았고 이에 관에서는 어느 정도 무게가 확보되어야 민간에서 신뢰하고 사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당대에 화폐를 제조할 경우 모범으로 삼고 본받으려고 했던 중국의 萬曆通寶(1전 4푼)를 기준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주전하려고 했던 동전의 무게를 만력통보를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대략 3만 근의 구리를 가지고 순도 100%로 주전하더라도 1전 4푼(5.25g) 동전 34,285문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인조 11년 11월 4일 기사에 나온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쌀로 환산하여 본다면[167] 최대 114만 285석(1,714,285斗)의 규모의 쌀을 동전 주조를 통해 추가 예산으로 정부는 마련할 수 있었다. 100만석은 18세기 후반 서울에서 소비하는 1년 치의 쌀의 양으로, 인조 대 주조를 통해 100만석 규모의 쌀을 마련했다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器皿과 대포를 만드는 구리를 3만근에서 제하고 절반가량이 동전주조에 사용되었다고 해도 한해에 50만석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며

167) 『인조실록』 인조 11년 11월 4일 “丙寅年事目, 則錢一文, 準米一升爲式”

三手軍의 급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전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주전된 동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도 동전이 시장에서 퇴장되거나 서울에만 적체되어 유통이 막히는 현상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따라서 이후 주전에 대한 계획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진행되었다. 大邱와 水原, 海州에 구리를 분급해주고 주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에서의 주전도 중앙관서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지방에서 주조한 것을 다시 서울로 전량 회수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지방에서 주전한 동전은 대부분 주전을 행한 지역에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구에서 주전하는 이유는 기술자를 동원하기 수월하다는 이유였지만 구리 8천근 규모로 제조한 동전의 지역 배분도 무시할 수 없는 주전 이유라고 볼 수 있다.[168] 주전하는 과정에서 원료가 공급이 된다면 연료와 장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지불하더라도 주전이익을 내는 것이 수월했지만 원료비가 많이 소비 될 경우 국가에서는 주전을 하는 체계와 소요되는 비용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水原과 해주 같이 구리를 조금씩 생산하고 있던 곳에서 주전을 청하자 요청대로 분산하여 주전하는 것을 허락하고, 일정 부분 상납받아 중앙 재정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해당 관청에서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주전을 할 경우 원료도 근방에서 취하도록 하는 '卽山鑄錢'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렇게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주전을 하게 되면 동을 운송하는데 드는 막대한 운송비도 절약하여 주전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조선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동전을 고대부터 유통하고 있었던 중국에

168) 『仁祖實錄』 인조 12년 3월 9일 "安東府鑄錢之令, 實合民情。 第念安東, 僻在一隅, 鑄錢之後, 右道之民, 往來交易, 勢所難便。 且一邑所鑄, 多至八千餘斤, 則功役未易就。 大丘處於嶺南之中, 行商輻輳, 且鑄工多在其地, 而府使洪履一, 又頗勤幹。 若於此府, 分半鑄成, 則遠近之民, 均蒙其利, 朝廷設施之法, 可以立見其 從之"

서도 鑄錢時에 강조되었던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169] 즉, 국가에서는 주전을 하기 위해 과도한 연료가 한꺼번에 소비되는 것을 막고 원활한 동전제조를 통해 시급한 재정확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지방의 분산주전은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丙子胡亂 이후의 銅錢 유통책

산발적인 鑄錢과 行錢논의는 병자호란의 여파로 지속되지 못했다. 전란의 급박함 속에 주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논의는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동전이 직접 軍資로 활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정적 필요성에 따라 동전의 주조를 시행했고 확대를 염두에 둔 논의가 계속되었던 만큼 병자호란 이후 전후 복구 차원에서 주전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이후 중단되었던 주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었다.[170] 이 때에 나타난 일차적인 주전에 대한 방향은 이전과는 약간 달랐다. 원료의 수급과 제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국내에서 주전을 행하는 대신 일단 중국에서 제조된 동전을 수입해서 사용하려는 방안이 시도되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동전의 주요 원료였던 구리의 산출량이 충분하지 않았고 더구나 주전에 소요되는 제

169) 『宣祖實錄』 선조 30년 4월 13일; 『宣祖實錄』 선조 36년 5월 23일 "凡有國家, 莫不有通行之貨幣。 三代以後, 代各殊名, 而其所以用之之意則一也。 蓋米布 則人得以衣食之。 若別無貨幣, 而以衣食之者爲貨, 則富人多蓄, 獨專其利, 而貧人不得衣食焉。 公私俱困, 職由是也。 若於衣食之外, 別有所謂貨幣者行用, 則貨幣俱積於公私, 而米布, 則人只得衣食而已。 以此卽山鑄錢, 爲富國第一件事。 何獨於我邦疑之乎 雖在平時, 生財之道, 所當熟講無餘, 況今大亂之餘, 公私赤立, 財用匱竭之時乎 今當多設方便, 自官鑄錢, 使之流布國中, 則實是無中生有, 裕民足國, 亦可因此而致, 府庫之匱渴, 有不足言"

170)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3월 9일 "用錢之期, 退定數三年, 而□監營, 皆以戶部之物鑄錢, 錢則賣於民間, 價則歸於戶部. 民一結之稅, 三分之二分, 則以納之, 一分則以錢許納, 輪回流行, 與泉不息, 而嚴禁其防納, 則其爲利益公私, 爲如何哉"

반 비용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 동전을 주조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일단 현실적인 벽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동전 확보책은 동전 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동전을 수입하여 유통시킨 것은 孝宗대가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 수입하는 장소와 수입하는 동전의 규모가 이전 시기와는 달랐다. 앞선 1633년(仁祖 11)에는 일본으로부터 동전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비해, 효종 대에는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 遼東 상인들로부터 동전을 수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효종대의 동전 수입계획을 주창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金堉이었다. 김육은 중국으로부터 동전을 수입해 유통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하였던 개혁론자였다. 중국으로부터 우선 15만 文을 수입해서 平壤과 安州에 시험적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동전의 유통이 시행가능한지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171] 김육은 대동법을 시행하여 재정수입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인물인 만큼[172] 김육이 동전을 유통시키려 했던 의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상업적인 교환수단으로 동전을 유통시켜야 한다는 의도보다 대동법이라는 국가 재정의 큰 변화 속에서 재정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동전유통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김육은 동전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잡고 우선 유통이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동전의 공급을 시작한다면 동전유통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173] 이러한 인식아래에서 김육은 현실적으로 동전의 직접주조가 불가능한 상태

171) 『효종실록』 효종 1년 6월 25일 “先是, 領中樞府事金堉請行錢貨於兩西, 至是以陳慰使入燕, 以其行資, 貿錢十五萬文, 還到灣上, 啓請分置其錢於平壤、安州都會之地, 先令試用, 如其可行, 則卽山鑄錢而繼之爲便 上從之”

172) 한영국, 「대동법의 실시」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73) 『인조실록』 인조 22년 9월 1일 “我國曾欲用錢, 而不得行者, 以其欲盡用於國中, 故深僻之地, 或不知其爲便, 且鑄錢不易, 不得行也。 今若只行於兩西一路行旅絡繹之地, 則必可行矣”

에서 부분적이나마 淸錢을 수입하여 조선에 유통시키고 동전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효과를 거두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육의 주장에 이어 효종 대에는 청전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려는 비슷한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이전과는 다르게 동전을 일본이 아닌 중국을 통해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이전의 동전확보책과 다른 점이었다. 동전을 들여오는 수입선이 변화되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국과 조선, 일본 사이의 무역과 각국의 사정을 비교해 보면서 그 해답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일본이 VOC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동전의 양 추이를 살펴보며 수입선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동전을 제조하여 유통시키고 있었는데 동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동전 제조량도 늘어나고 있었다. 제조량과 함께 수출되는 동전이 많아지면서 급기야 1659년에는 막부에서 내수용 동전이 아닌 수출을 위한 동전을 별도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 동전은 일본식 동전이 아닌 중국연호를 표기한 중국식 동전으로 VOC를 통해 남아시아로 수출을 하고 있었다.[174] 특히 남아시아에서 일본 동전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점차 수출규모가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동전 수출량은 1635년 최고치(41,985貫)을 기록한 이후 1636년에는 13,500貫으로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 자국 내에서 확대된 내수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1637년에는 3,015貫으로 萬貫이하로 수출량이 급감하였다.

---

174) Ryuto Shimada, 2006 *The Intra-Asian trade in Japanese copper by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bid*, Brill, 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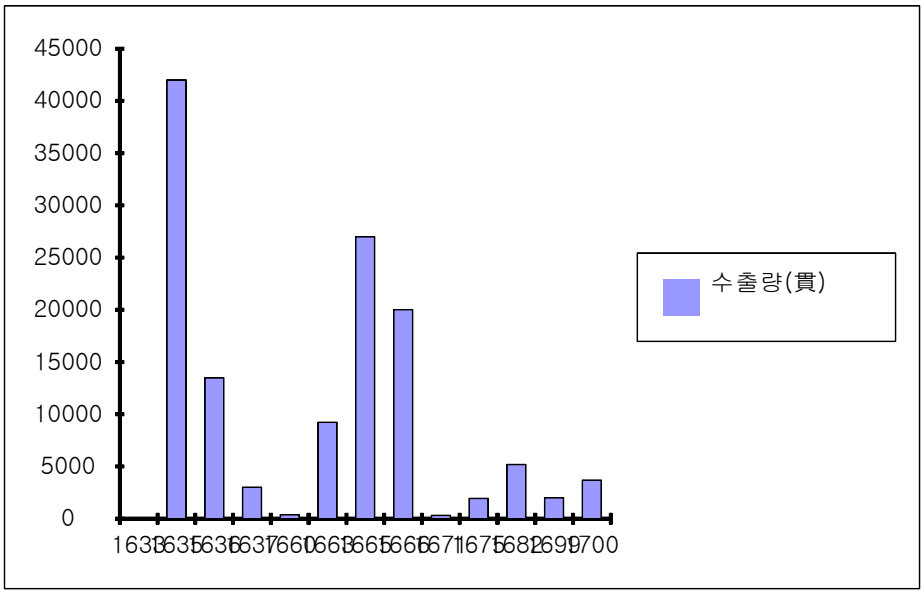

그림 1) VOC를 통해 수출한 일본 동전 수량

* 典據: '표 4) VOC를 통해 수출한 일본 동전 수량'을 근거로 작성

일본의 동전 수출량에 대한 1650년(효종 1)의 기록이 없어 그림 1)에서는 급격히 수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1660년에 400관, 1663년에 조금 회복되어 9,230貫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했던 1635년에 비하면 수출량은 이전보다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VOC로부터 수입할 수 있었던 동전의 양은 이전보다 양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악화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동전을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VOC와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을 것이 보인다. VOC가 일본과 통교하며 결제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은 비단이나 비단의 원료가 되었던 生絲와 같은 사치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VOC는 중계무역을 통해 당시 아유타야 왕조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통킹만을 거쳐 일본과 거래할 품목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중계무역은 VOC가

일본과 교역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일본 동전의 가장 큰 소비처가 남아시아였기 때문에 VOC는 일본 동전을 남아시아에 공급하면서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었다. 1700년대 중반의 경우 일본 동전을 중간에서 교역하면서 얻는 이득이 투자한 금액 대비 180%에 이르기도 했다.[175]

특히 동남아시아산 비단을 수입한 VOC는 이것을 일본에 다시 되파는 형식으로 일본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당시 淸은 鄭成功이 해안을 차지하고 있어 국경 자체를 해안선으로부터 내륙으로 옮기는 遷界令을 실시하였고 海禁 정책을 실시하여 일본과 무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176] 따라서 중국산 비단은 일본으로 극소량만 유입되었기 때문에, 베트남으로부터 비단을 구입하여 일본에 판매하려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비단을 매개로 일본과 무역을 진행할 수 있었다. VOC가 구매했던 비단은 중국산보다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길이 닫힌 상태에서 일본에서는 남아시아산 비단이 비교적 좋은 품질로 인식되어 널리 팔려나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서는 온화한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이미 1200년대 중반부터 품질이 좋은 비단을 생산하고 있었다.[177] 비단은 다른 섬유에 비해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사치품으로 일본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비단의 가격은 상당히 고가였는데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초기 비용이 투자되어야 했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 우선 비단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누에가 성장하기 위해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야 했다. 누에가 성장하는 시기는 5월에서 6월 사이인데 이 시기에 네 번의 탈피를 하면

175) Ryuto Shimada, *Ibid*, p.127

176) 高淑娟、馮斌, 2003,『中日對外經濟改革比較史綱-以封建末期貿易政策為中心』清華大學出版社, 244~252

177) Hoang Anh Tuan, Silk for silver: Dutch-Vietnamese relations, 1637-1700, 2006 Ph.D. thesis, Leiden University, p.28(https://openaccess.leidenuniv.nl/handle/1887/5425, 검색일: 2013.01.02.)

서 生絲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 시기에 만약 온도가 낮다면 누에는 성장을 하지 않고 먹이 활동을 멈춰 누에고치의 크기가 크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고치를 맺지 않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따라서 5월과 6월 고치를 생산하기 위해 온도를 높여주어야 했고 명나라 말기에 편찬된 『沈氏農書』에 따르면 生絲를 생산하기 위한 전체 비용의 10%가 이 시기의 연료비로 소비된다고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연료비를 절약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기후조건이 갖춰진 베트남의 경우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훨씬 자연조건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비슷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중국보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178] 1679년에 베트남 지역을 방문했던 Tavernier는 통킹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빈부에 관계없이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있으며 독일은 이를 이용해서 큰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베트남에서 비단 생산이 성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정성공의 활동으로 청나라에서는 바다로 나가는 무역자체를 제한했던 만큼 당시 비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던 일본과 무역을 하기 위해 베트남 비단을 수입했던 VOC는 일본과 무역을 독점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매년 VOC가 통킹만에서 비단을 싣고 일본시장으로 향했던 사실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179] 1908년 베트남에서 발간되었던 프랑스 기록에인 'Revue Indochinoise'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다. 1627년에 베트남에 도착한 프랑스 신부 Alexandre de Rhodes도 목재

178) Pan Mingte, 1994 *Rural credit market and the peasant economy (1600-1949): the state, elite, peasant and "usury"* Ph.D. thesis Univ. of California Irvine, p.104(Pan Mingte의 설명을 요약했으며 Pan Mingte는 『沈氏農書』의 양잠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179) B. Tavernier, "Relation nouvelle et singulière du Royaume du Tonkin", Revue Indochinoise 1908: 514.(Hoang Anh Tuan, Silk for silver: Dutch-Vietnamese relations, 1637-1700, 2006 Ph.D. thesis, Leiden University, p.28)(https://openaccess.leidenuniv.nl/handle/1887/5425, 검색일: 2013.01.02.)

와 함께 중국 일본 상인들이 통킹에서 교역하고자 하는 상품이 비단이라고 명시하였다.[180] 특히 일본에 수출된 베트남의 비단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일본 상인들은 1630년대부터 직접 베트남과 교역을 통해 비단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비단을 운송하는 상인들도 일본 상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국, 포르투갈 상인까지 가세하여 비단거래에 참여하였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 1634년에 히라도(平戶) Dagh-register Batavia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 선박은 2,500피큘picule[181](150톤)의 중국과 베트남 비단을 운송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82]

이러한 동아시아 무역구도 속에서 조선은 1600년대 이후 왜에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던 비단 같은 고가의 상품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본과의 교역을 대마도 외에 일본의 대외 무역의 중심지였던 나가사키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조건이 구비하지 못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17세기 초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城下町을 중심으로 사치품 소비가 증대되었다. 사치품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들이 1년 여의 기간 동안 한정된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參勤交代制의 실시로 일본의 도시 인구 비율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183] 따라서 사치품, 그 중에서도 비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生絲를 수입하여 다시 중국에 파는 중계무역의 형태로 대마도와 거래하고 있었다. 당시 朝淸무역의 규모를 높게 평가한 다수의 연구가 있지만,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생사를 운반하여 되팔았던 만큼 그 규모는 한계가 분명했

---

180) Rhodes, Historie du royaume de Tonkin p.56-57(Hoang Anh Tuan의 Ph.D논문에서 재인용)

181) 피큘(picule)은 1斤(600g)과 동일한 질량이다.

182) 1634, Dagh-register Batavia, p.249, 250(Hoang Anh Tuan의 Ph.D 논문에서 재인용)

183) 일본의 도시인구비율에 대한 연구는 학자마다 다르게 잡고 있지만 일본의 도시인구비율이 전근대 시기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도시인구 비중을 가장 높이 잡고 있는 학자는 Thomas C. Smith로 1959년에 저술한 “The Agrarian origins of modern Japan”이란 단행본에서 대략 18%정도의 인구가 城下町에 모여살고 있었다고 보았다.

다. 특히 배로 일본과 직접 무역을 하고 있었던 VOC와 비교해본다면 조선은 비단을 운송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양도 많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당시 동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남아시아에 공급했을 경우 이득이 180%나 보장되어 대규모로 대일무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VOC와 무역 경쟁을 하는 것은 조선으로서는 매우 힘겨운 일이었다. 17세기 물가를 기록한 蘇斗山(1627~1693)의 『雜物折價』에 나타난 白絲의 가격이 청에서 수입할 당시 100근 당 120兩이었고 조선에서는 190兩 그리고 왜관에서는 240兩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청의 상인들이 조선에 생사를 팔아서 얻는 이익보다 조선이 왜관에 팔아서 얻는 이득이 은으로 약 20냥 정도가 적었다.[184] 육상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운송비가 바다를 통해 대량으로 운반하는 것보다 많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은 무역을 통해 동전을 이전처럼 왜로부터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조선은 긴급한 재정적 위기를 동전 공급으로 해결하기 위해 왜에서 동전을 수입하는 대신 현실적으로 요동으로 시야를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淸錢의 도입과 유통에 대해 1651년(효종 2)에는 비변사에서 구체적인 淸錢조달 방안을 밝히고 있었다. 당시 조선에 동전을 팔려는 요동상인들로부터 동전을 은 1냥 당 812文의 비율[185]로 구매하여 유통시킬 것을 비변사에서 계청하고 있다.[186] 당시 수입하기로 했던 규모는 동전무게로 80稱(8,000斤, 1백 3십여 만 文)이었는

184) 張存武, 『淸韓宗藩貿易』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 1978(김택중 편역, 2001, 『近代韓中貿易史』교문사)의 부록 3에서 蘇斗山, 『雜物折價』내용을 참조.

185) Richard von Glahn, *Ibid*, p.106~107 참조(table 4.는 1478년부터 1649년까지 은전비가를 추적하고 있다.

186) 『효종실록』효종 2년 3월 13일 "備邊司啓曰 西路行錢, 旣已知會, 而但錢文數少, 難以遍用。 與戶曹判書元斗杓相議, 則以爲鑄錢不如買錢之易。 今聞, 漢人聞我國用錢, 多載出來, 置於遼東, 與譯官相約其價云, 蓋其錢八十稱, 而一稱七十貫, 爲一萬七千文, 則八十稱, 將至百三十餘萬文, 價銀一千六百兩云。 今於謝恩使之行, 送其價, 而以方物回馬載來, 則事甚便當。 令戶曹付送其價, 而如或不足, 則令常平廳, 助其三分之一, 使之貿來爲當"

데, 동전무게로 추정해보면 동전 1文의 무게는 9.8分(3.53g)으로 1錢(3.75g)이 되지 않는다. 순동으로 주조했다는 가정 하에 추정해보면 수입한 동전은 동 1근당 170개의 동전을 산출하는 정도의 품질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강남지역에서는 은 1냥 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比價가 은 1냥 당 3,300~3,500文인 것에 비해 요동상인들이 판매한 동전은 은 1냥 당 812文의 비율로 판매되었다. 따라서 요동상인들은 조선에 동전을 판매하면서 최소 세 배에 가까운 판매이익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비변사에서는 동전 가격과 동전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이 요동에 대기하고 있던 상인들로부터 동전을 구매하여 유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후에도 조선에서는 동전을 제조하는 방안보다는 완제품의 동전을 구입하여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유통과 재정에 보탬을 주려는 계책을 계속해서 奏達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동전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이 생기면서 중국 상인들이 앞다투어 국경 근처에 대기할 정도로 동전 구입은 일본에서 구입하는 상황보다 훨씬 호의적이었다. 당시 중국 내의 동전 가격은 은 1냥 당 동전의 가격이 1,000文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는데 이는 淸정부가 고정하려고 했던 가격을 훨씬 뛰어 넘는 선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일본보다 요동을 통해 동전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당시에 조선에서는 동전을 수입하는 대가로 은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중국 상인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거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본은 17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 은의 1/3을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은 생산량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187] 특히 淸錢을

187) Dennis O.Flynn, Arturo GiraldeZ,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Journal of World History* 6:2 (1995), pp.202(16세기 은생산량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다. 그 중에서 Dennis O.Flynn, Arturo GiraldeZ일본

구매하던 전후 시기 중국의 銀錢 비율은 동전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중국 상인들에게는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기 좋은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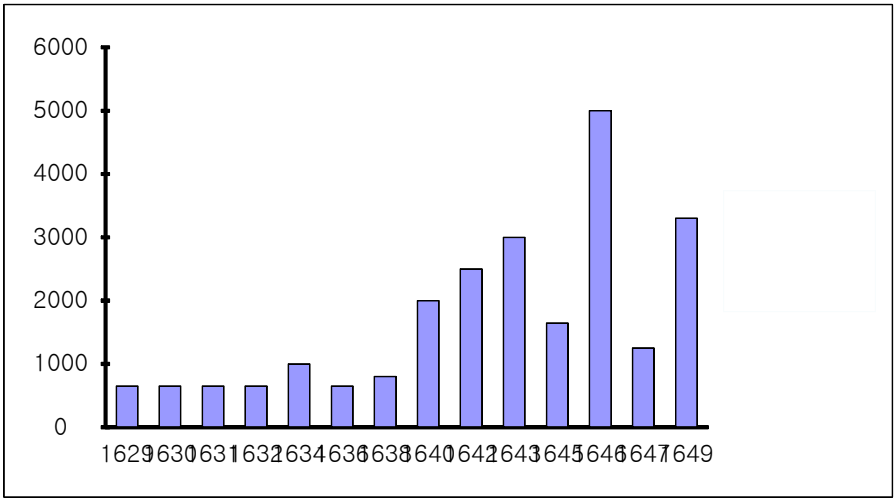

그림 2) 明淸시기 銀錢比價 변화(1629-1649)

* 典據: 부표 1)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1647년에 국가에서 유통하는 동전의 비율이 강남의 소주지역을 기준으로 은 1냥 당 동전 약 6,000文 정도로 거래되고 있었다.[188] 그리고 1649년에는 3,300~3,500文 사이로 유통되고 있어 은에 비해 동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다.[189] 당시 정부차원에서 정한

의 은생산량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추정치를 잡고 있는 학자이다. 둘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1615년과 25년 사이에 일본은 전 세계 은의 30~40%정도의 은을 생산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는 Kent G, Deng이 있다. Deng의 경우 중국의 일본은 수입량에 대해 과장되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188) 『吳城日記』 中卷, 丁亥(1647) 1月1日(顧公燮(淸), 侏名(淸), 1999 陳去病 撰, 江蘇古籍出版社,) "錢價降之 每千直一錢六七分" 吳城은 蘇州의 옛 지명이다. 『吳城日記』는 작자미상의 일부 유실된 내용을 18세기에 재간행한 개인일기로 소주의 물가 및 경제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明淸교체기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89) 『吳城日記』 下卷, 1649 1月 8日(顧公燮(淸), 侏名(淸), 陳去病(民國) 撰, 江蘇古籍出

은전비율이 은 1냥 당 동전 1천 문이었던 것에 비하면[190] 시중에 유통되었던 동전은 품질면에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매우 열악하게 품질을 낮추어 유통시켰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그런데 요동에 모인 중국 상인들은 조선에 판매한 동전의 가격을 더 낮추어 은 1냥 당 약 812文의 비율로 교환하고 있었다.[191] 물론 당시 요동상인들이 가져온 동전이 淸朝에서 유통되는 정식 동전이었는지 아니면 시중에서 私鑄造된 열악한 품질의 동전이었는지에 대해 『승정원일기』의 기록만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정식 유통된 동전이라고 가정하고 가치를 淸정부에서 요청하는 은전비가에 준한다고 하더라도 요동상인들로부터 구입한 동전은 조선 상인들이 각종 비용 명목으로 은 1냥 당 200文 이상의 손해를 구입한 것이 된다. 특히 상인들이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던 私鑄造된 동전을 가지고 와서 판매한 것이라면 조선의 손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요동에 상인들이 동전을 판매하기 위해 동전을 쌓아 놓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가장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 私鑄造된 열악한 품질의 동전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192] 결국 조선은 당시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동전을 유통시키려는 정책을 청과 거래를 통해 실행했으며, 조선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에서 동전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속된 계획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행되었다. 평화로운 시기에 시장거래를 매개할 수단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

版社, 1999.)“順治錢價 漸減至每千直銀三二錢”

190) 『通考』卷13 4966쪽“順治四年 改定制錢十文准銀一分 則千文合銀一兩”

191) 『승정원일기』효종 2년 3월 13일“蓋其錢八千稱, 而一稱十七貫, 爲一萬七千文, 則八十稱, 將至百三十餘萬文, 價銀一千六百兩云”

192) 『승정원일기』효종 2년 3월 13일“今聞漢人, 聞我國用錢, 多載出來, 置於遼東, 與譯官相約其價云”

던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정묘호란 이후에도 호조로부터 주전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 倭로부터 동이 아닌 동전을 받아 米布와 같이 사용한다면 국가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주전을 하였다. 1633년(인조 11) 당시 주전을 하기 위해 실제 萬曆通寶를 전례로 삼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중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중국의 동전형식을 본 따 국내에도 동전을 유통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었다.

동전유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麤布와 銀이 민간에서 유통되었던 사실을 근거로 민간에서는 이미 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678년 상평통보를 본격적으로 주조하여 유통하기 직전에 權大運은 이미 松都에 동전이 유통된지 오래되어 모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다른 지역에서도 돈은 송도와 같이 유통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93] 실제 상평통보를 본격적인 法貨로 유통시켰던 1678년에 백성들이 상평통보 사용을 거부하지 않았고 유통에 아무런 장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194] 즉, 민간에서 동전을 교환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환경은 사실상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195]

조선 초기에는 조선 내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화폐를 자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통을 염두에 둘 정도로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했다. 양란이후 국가의 재정적 필요에 따른 주전에 대한 수요가 위정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동전을 제조하거나 동전자체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과 교역이

193) 『숙종실록』 숙종 4년 1월 24일

194) 『승정원일기』 숙종5년 2월 18일 "左參贊吳挺緯所啓, 行錢已至經年, 而少無窒碍, 民皆樂用矣"

195) 고려시대의 화폐유통을 살핀 연구에서는 고려시대에 이미 화폐가 유통되기 위한 기반은 마련되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채웅석, 「조선전기 화폐유통의 기반」『한국문화』9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재개되고 은과 동을 수입하고 있었지만 중국과 VOC와 경쟁에서 전란 직후 조선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중국을 통해 완성된 동전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제한된 지역에 동전을 유통시키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려는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 일본에서 동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선도 銅무역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동전 제조의 규모와 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내역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장 17세기 동아시아 구리 유통구조의 변동과 常平通寶 발행

1. 17세기 조선의 정세 변동과 주전 필요성 대두

1) 兩亂의 극복과 재정의 확대

양란 이후 동전 발행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었다. 국가에서는 동전을 직접 주조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청과 왜로부터 수입하여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동전 공급으로는 정부가 의도했던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지속적이고 규모가 큰 주전 사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貨幣유통사 연구의 대부분은 상기한 정부의 화폐유통 시도를 화폐유통의 기반을 경제발달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어 화폐유통을 시도했던 국가의 본래 의도와 화폐유통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당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매우 협소하게 하도록 만든 경향이 있다.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점차 잉여생산물이 늘어나게 되었고 잉여생산물을 교환하는 양과 횟수가 늘어나면서 교환매체인 화폐가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는, 즉 사회의 '화폐성숙도'가 높아지면서 그것이 常平通寶의 유통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논리로만 화폐유통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적용시켜 조선 후기의 화폐유통을 비슷한 시기의 다른 아시아 권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전의 서술과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동시기 중국과 일본에서는 훨씬 많은 양의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경제 발달이 비슷한 문화권을 가진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뒤처진다는 예상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

다. 동시기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화폐가 비교적 광범하게 유통되었고 화폐가 유통되었던 시기도 조선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1] 그렇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초기부터 16세기 중후반까지 화폐유통책들은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논의되었고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화폐를 유통시키고 있었다. 오히려 조선시대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성격은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제조되어 유통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더구나 부분적으로 주전론이 나타나고 있었던 당시는 아직 商業에 대한 末弊論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점이고, 전란 이후 계속된 위기도 아직 다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교환수단으로만 사용될 동전을 원료를 수입해가면서 제작할 상황은 아니었다.

1678년 이후 조선은 常平通寶를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다. 이전의 소규모 국지적인 주조와 비교할 때 대량으로 주조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은 대규모의 주전을

1) 『세종실록』 세종 11년 12월 3일 "日本自國都至沿海, 錢之興用, 勝於布米, 故行者雖適千里, 但佩錢緡而不齎糧。 居路傍者各置行旅寄宿之所, 如有客至, 爭請接之計, 受客錢以供人馬, 關梁則大江設舟橋, 溪澗設樓橋, 其傍居者掌其橋之稅, 令過客人納錢十文或五文, 酌其橋之大小而納之, 以爲後日修補之資。 至於土田舟車之稅, 無不用錢, 故使錢之術廣, 而人無負重致遠之勞矣" 세종대에 박서생이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이후 일본에서 화폐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조선에서도 이를 본받는다면 훨씬 편리할 것이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만 놓고 본다면 조선이 일본보다 화폐사용에 있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실제 대부분의 아시아 화폐사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서나 화폐사 개설서에는 이 기사를 놓고 조선이 일본보다 화폐유통에 있어 시기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화폐유통사 연구서인 Richard von Glahn의 책 *Fountain of fortune*에서도 상기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본격적인 화폐유통은 동의 생산이 본격화되는 1600년대 후반에 가서야 동전이 시골에서도 사용된다는 기록이 나오므로 박서생이 보았던 내용을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Etahn Segal, Money and the state, *Economic Thought in Early Modern Japan*, Brill 2010, p.22 Ethan Segal은 芭蕉(1644-1694)라는 승려가 지은 시에서 여행을 하며 동전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이르러 불편함을 토로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金世濂, 『東溟先生集』「海槎錄」에는 인조대 일본의 동전 사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음식과 房屋의 값을 모두 전문으로 지불하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 묵는데 50전, 말 한 마리는 30전, 밥 한 그릇에 1전 술 한 병에 4전으로 각각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직접적으로 조선과 대조하여 비교한다면 조선의 行錢 수준은 일본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전에는 가능하지 못했던 대규모 주전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선 내부적 상황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그 배경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전의 완제품을 수입하던 바로 이전 시기의 화폐정책과는 다른 이러한 통화질서 변화에 대해 조선의 국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외의 상황변동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화폐유통에 대한 당대의 종합적인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먼저 대규모 주조가 설행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화폐를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인식하였고 왜 필요로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왜 동전이 대규모 유통화폐로 선정되어 주조 및 유통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상평통보 유통을 시도하던 시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두 번에 걸친 전란 후유증을 극복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양란 직후부터 계속된 다양한 정책과 노력으로 전후 복구가 진행되어가면서 조선은 점차 정치·경제적으로 회복을 해나갔지만 점차 늘어가는 재정에 대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에 당대의 전후 복구 이후 나타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變通論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다.[2)]

물론 경제적인 피해의 복구 외에 명분론적인 상처도 남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오랑캐로부터 仁祖가 굴욕을 당했다는 명분론의 상처였다. 인조가 오랑캐에게 '三拜九叩頭禮'를 행한 것은 물리적인 굴복일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굴복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치욕을 회복하기 위해 '復讎雪恥'한다는 명분은 당대에 실현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맹위를 떨칠 수밖에 없었고 국가적으로도 '復讎雪恥'를 하기 위한 정책이 최우선으로 선택되어 여타의 현실적인 문제

2) 정연식, 1992, 『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안들은 우선순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명분 앞에 당시 조선의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현실과 전혀 관계없이 청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려는 '北伐論'이 대두하게 되었다. 전후 복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정치적 구호였지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조치였다.

상기한 조선의 당대 현실은 전란의 상처를 완벽하게 극복한 상태가 아니었다. 특히 자연적으로 늘어난 전후 복구 비용에 北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더해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태였다. 이런 맥락에서 肅宗대의 재정규모는 점차 확대되었다. 군사력을 확충하여 임란과 특히 호란의 패배를 명분론으로 극복하려고 실제 군사력을 확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五軍營체제의 운영으로 급료병이 증가하면서 제한된 국가예산으로 새로운 흐름을 감당 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벌의 정치적 실효성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군제가 만들어지고 도성 중심의 군영제로 군제가 개편되면서 군병의 수가 증가하여 군사비도 크게 증가했다.[3] 현종 12년 尹堦가 지적한 내용은 당시의 군비 증가에 대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지금 고질이 된 것은 養兵이 그것입니다. 옛날 우리 聖祖께서 신비로운 무예로 용처럼 일어나시어 五衛의 좋은 제도를 창설하였으니, 대개 周禮의 남긴 뜻을 따른 것입니다. 병조가 주관하고 五衛都摠府가 거느리면서 한 차례 번을 드는 것이 수천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선묘조에는 진휼을 받으러 나온 자들 중에서 장정을 뽑아 서울을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당시는 적과 대치해 있었으므로 병사 모으기를 힘썼을 법한데도 3천 명에 불과하였으니, 대개 양식을 걱정하

3) 김종수, 1996, 『조선후기 훈련도감의 설립과 운영』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8~214쪽.

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어난 수가 배를 넘고 기타 御營의 정원이 늘어 2만에 이르며 禁軍의 수가 늘어 천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또 호위하는 수백 명의 군관, 訓局·御局의 두 국과 守禦·摠戎·精抄의 여러 청의 票下將領·局出身·別軍職 등의 호칭은 모두 예전에는 없던 것으로 후에 가설된 것입니다. 나라에 입을 벌려 먹고 사는 자들이 이처럼 많아졌습니다. 태평 시절에는 세입이 보통 30여만 석에 이르렀는데도 백관의 녹봉만을 나누어 주고 양병의 비용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창고가 넘치고 퇴적가리가 뜨고 부패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일 년 세입이 10만에 불과한데 태반이 장교와 군졸의 급료로 들어갑니다. 비록 수재 한재가 아니더라도 지탱할 형편이 아닙니다. 더구나 근래 해마다 연이어 흉년이 들어 그 수입이 점점 줄고 그 비용은 점점 느니, 나라가 나라꼴이 아닌 지경에 어찌 이르지 않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올해 죽은 자와 이후 사망한 자는 모두 대역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 늙어 쇠잔한 자에 대해서는 본토로 귀환함을 허락하고 3천 명을 한도로 삼아 조금씩 裁損하소서. 군졸이 없는 將官의 숫자도 또한 많아 급료만 헛되이 소비하니, 어찌 사리에 합당하겠습니까. 수어청을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남한산성 때문이고, 총융청에 府를 둔 것은 본래 경기도를 관장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장관을 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각 아문의 屯田에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이고 소용처가 어디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간악하고 참람된 무뢰배들이 둔전을 설치할 곳을 다투어 말하여 백성의 전답을 약탈합니다. 오직 뜻한 바 욕심대로 하고 한 치의 땅도 남기지 않으면서 자기 사사로움을 성사시킵니다. 公家에 들어오는 것은 터럭만큼도 안 되고 私門으로 빠져 나가는 것은 밑 빠진 독이라더니, 바로 오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만약 둔전의 명색을 혁파하여 그 전답에 세금을 매기고 그 사람에게 부역을 시키지 않는다면 크나큰 폐해가 제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4)]

4) 『현종개수실록』 현종 12년 6월 19일

특히 훈련도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숙종 한해 호조의 연간 재정 약 12만 석 가운데 약 8만석 정도가 경비로 소비되고 있었다. 훈련도감의 경비는 호조에서 담당하였는데 三手米로는 훈련도감의 급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다. 1648년의 경우 쌀은 52,100석, 太 5,276석으로 합하여 약 6만 석에 달하는 곡식이 훈련도감의 운영에 소비되고 있었다. 이는 호조 전체 세입의 2/3를 차지하는 규모였다.[5)]

이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명목의 軍門들이 늘어가는 것과 더불어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확장되면서 기존의 예산만으로는 감당해 낼 수 없었다. 더구나 기존의 재정상황도 전란이후의 복구 때문에 넉넉하지 않았고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북벌에 대한 진행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재정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1681년(숙종 7) 三藩의 난이 평정되면서 북벌론이 명분론으로 바뀔 때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淸을 정벌하려는 북벌론이 현실에서 사라진 것과 동시에 군사비용도 곧바로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이전보다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지출은 일시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숙종초의 호조 예산이 8~9만이었던 것에 비해 말년에는 두 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상기한 사항 외에도 재정의 확대가 전반적으로 진행되었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6)]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稅額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병자호란 이후 임란의 상처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정된 토지에 증가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전란이후 표면적으로나마 세액을 감축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1608년 光海君대

5) 송찬섭, 2000,「숙종대 재정추이와 경자양전」『역사와 현실』36, 114~116쪽.
6)『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7월 18일 "嘗聞肅廟朝初年, 通計一歲國用, 都不過八九萬, 而及至季年則倍之, 先朝初年, 已過肅廟季年之數, 及至近年則又倍之"

에 시작한 大同法으로 겉으로나마 세액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액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7] 실제 백성들 사이에서는 변통책으로 세액이 줄어든 만큼 雜稅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8] 이에 잡세에 공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民庫를 설치하여 대처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더 이상의 세액을 늘려 거두는 것은 한계가 명확한 방책이었다. 稅源을 늘리는 방법도 이미 無名雜稅라는 형식으로 백성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목을 더 만드는 일은 명분상으로도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표 5) 戶曹 세입세출표

연도 및 예산		米	田米	大豆	銀	錢	綿布	布	折錢合計
효종2	수입	99270	16440	41727	39093		109100	5000	972814
	지출	111934	3768	35204	35927		103650	5000	951906
현종9	수입	103963	15032	51391	30262		86650	5000	952245
	지출	110174	15717	47347	12124		53750	5900	875834
숙종26	수입	121621	24912	60215	39519	84260	83950	19850	1229189
숙종28	지출	121650	19092	51732	23100	81850	115800	14900	1203398
숙종39	수입	43780	26969	39980	66780	82350	67550	6550	790476
숙종40	지출	105006	15680	45180	31280	73200	70350	5500	988160
경종3	수입	98511	14590	63527	31156	115026	78350	11500	1067871
	지출	106724	5739	64590	49091	126674	108800	13500	1187871
영조6	수입	127870	15250	65083	28332	177420	88700	8450	1291442
	지출	127880	9097	44724	45554	198790	107200	5200	1302296

* 典據: 오일주, 1984, 「조선후기 국가재정과 환곡의 부세적 기능의 강화」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8-9쪽(『度支志』 권18 經費部 一年經費)

더구나 생산력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액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었다. 표 5)에서 나타나는 米의 증감도 시기별 풍흉에 따른 증감폭이 있을 뿐 최대로 거둔 미곡량이 12만 석 정도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생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위해 나타나야 하는 큰 변화가 없었고 특히 施肥의 확대가 이

7) 이정철의 경우 대동법을 통해 공물의 80%이상이 감소되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후 다른 稅目으로 전환되어 실제 세액의 감소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이정철, 2010,『大同法 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8) 장동표, 1999, 『조선후기지방재정사연구』, 국학자료원

뤄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에서는 콩깻묵과 정어리를 비료의 재료로 사용하였고 비료를 구매하는데 운송료까지 더해졌지만 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조선 초기 이후 인분을 활용하여 시비하던 방식에서 綠肥의 첨가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자연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비료의 양적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크게 향상되기 힘들었다. 국가 재정이 이처럼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도 면세지의 축소[9]와 새로운 세목으로 稅源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단일 세원에 증세하는 방식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토지가 각종 부세를 부과하는 기반이었으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量田사업과 면세지를 축소하는 문제는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면세지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던 宮房田과 屯土는 한번 지급이 되면 회수하기가 어려웠고 지급대상이 왕실과 국가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궁방과 둔토는 획기적으로 줄이기 힘들었다.[10] 19세기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당시 궁방전을 소유한 곳이 69개 처나 되었고 한번 지급된 궁방전과 둔전은 회수가 힘들었기 때문에 면세혜택을 받는 당시 궁방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궁방이나 둔토에서 거두는 세금은 중간관리자였던 宮差나 導掌 그리고 宮監으로 불리는 중간관리인들

9) 『현종실록』 현종11년 1월 2일 재정부족의 원인에 대해서 면세전의 증가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기록은 다수 발견되고 있다. 특히 鹽盆과 漁箭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에 부실화 되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비변사등록』 현종 원년 9월 29일 “臣每念我國免稅之地太多, 國用不敷, 職由於此, 良可痛也。 如各邑官屯田及忠勳府以下各衙門及內需司諸宮家所屬土地免稅處, 一併停罷, 收其稅入, 付之公家, 永爲成憲, 使四境之內, 絶無免稅之地, 雖諸學宮所屬之田, 亦勿許免稅, 其於國用, 豈少補哉 其稅雖自公收之, 本田之依例分穫, 亦自不少, 可無所閡矣。 此外如鹽盆漁箭船稅, 亦宜一切收稅於公家。 此實至切至急之擧, 願殿下, 疇咨廊廟, 斷然行之而勿疑焉。 臣每欲陳達而未及, 今因下詢, 敢竭微衷云。 上命下於備局議啓”)

10) 박준성, 1984,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에게 빠져나가고 있어 궁방전과 둔토의 확대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었다.[11] 이러한 세금의 중간 누수 때문에 지방재정에 충당되는 세액도 줄어들었고 중앙으로 상납하는 세액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宮房田은 세습이 허용되었고 왕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줄어들지 않고 확대되었으므로 재정의 악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숙종 21년에 궁방전의 지급규모를 200결로 제한하는 '乙亥定式'을 공표함으로써 궁방전 확대에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이미 지급한 궁방전과 둔토를 축소시킬 만한 방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12] 조선으로서는 재정의 확대 때문에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지만 재정을 확충할 만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내지 못했다.

2) 일본의 광업생산량 변화와 倭銅 수입

국내의 재정을 확대할 만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주전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구리가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았고 필요한 수요만큼 동전을 주조하기 위한 구리를 국내 생산량으로는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인조 대에는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효종 대에는 淸으로부터 동전 완제품을 구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은의 생산이 줄어드는 대신 구리의 생산이 점차 확

11) 송양섭, 2001,『조선후기 軍僉門 屯田의 경영형태연구』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조영준, 2008,『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2)『승정원일기』숙종 26년 12월 13일 "宮庄折受之規, 自有定限, 其不可違法冒占也決矣。曾在乙亥, 因大臣陳達, 自地部, 量給銀貨, 令該宮每[買]取庄土, 定式外勿許折受之事, 明有成命, 頒示中外, 此實出於聖上爲民除弊之至意。聽聞所及, 孰不欣忭, 而竊聞乙亥以後, 折受如前, 宮家占庄, 漸至濫觴, 該曹之給價, 因爲常例, 小民呼冤之端, 不可勝算, 而朝家變通之意, 竟歸虛套, 揆以法理, 豈容如是 矧當民産匱竭, 天災疊見之時, 凡有不便於民者, 所當一切除去, 以紓燃眉之憂, 此等違法撓民之事, 其可苟然因存, 而莫之禁乎 請乙亥定式後諸宮家冒濫折受之處, 一體革罷, 以除生民一分之弊"

대되면서 구리가 일본의 수출품에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조선은 일본의 구리를 수입하여 국내 수요를 충당시키려고 하였다. 일본의 구리 생산량 증가는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주전론의 전제조건이었던 원료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주전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일본과 외교 재개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은과 銅생산의 증가가 맞물리며 조선의 화폐정책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은 그리고 銅의 수입과 관련해서 조선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영향권아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은의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제련 방법을 조선에서 개발하여 일본에 전해주었는데, 일본에 전래된 灰吹法은 조선의 기술자였던 김검동 등이 대마도에 전래시켜 준 방법이었다. 회취법의 도입으로 일본은 銀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13] 특히 일본의 銅鑛과 銀鑛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은과 동이 원석에 섞여 있어 이를 제련과정에서 분리하였기 때문인데 은과 동을 분리하는 작업은 당시 일본의 기술수준에서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조선의 기술 전래가 없었다면 일본은 은생산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이다.[14]

표 6) 일본의 은 생산량 추계

연대	1년 평균 생산량
1500-1600	50톤/1년
1600-1640	150-190톤/1년

＊ 典據: 甘粕健, 1983『講座 · 日本技術の社会史』5, 日本評論社, 180쪽 내용 재구성

13)『연산군일기』연산군 9년 5월 18일 “良人金甘佛、掌隷院奴金儉同以鉛鐵鍊銀以進曰 鉛一斤, 鍊得銀二錢。 鉛是我國所産, 銀可足用。 其鍊造之法, 於水鐵鑪鍋內, 用猛灰作圈, 片截鉛鐵塡其中, 因以破陶器, 四圍覆之, 熾炭上下以鑠之。 傳曰 其試之”

14) 일본의 은 생산량은 새로운 제련방법과 수요의 확산 때문에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1603년에는 한 해 동안 200톤을 생산하기도 했다.

조선과 대마도의 교역증가는 대마도의 지리조건에 힘입은 바도 컸다. 대마도는 쌀이나 면포 등의 생산량이 적어 조선과 무역에 큰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15] 특히 쌀의 공급은 대마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조선과 교역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 밖에 公木이라고 하여 면포가 일본에서 생산되기까지 조선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마도와 조선의 무역관계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강제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마도와 무역관계 속에서 대마도가 에도의 통제아래에 있었는지 혹은 독자적인 무역행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16] 대마도와 무역을 통해 동이 조선에 들어오고 조선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정책들 특히 화폐정책을 펴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조선의 재정정책은 일본과 교역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임란이후 단절되었던 일본과 외교관계를 己酉約條를 체결하면서 막부와 외교를 재개하고 대마도와 실질적인 교역도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의 외교와 대외교역은 막부의 통제 아래에 크게 네 곳에서 이뤄지고 있었다.[17] 그 중 대마도는 조선과 외교와 교역을 담당하는 주요한 창구로 기능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은 대마도와 교역을 통해 일본에서 생산되는 은과 동을 수입할 수 있었고 일본도 대마도를 통해 식량과 면포 외에 唐貨를 수입할 수 있었다. 1661년부터 1683년까지 淸은 明의 부활을 기치로

15) 김동철, 1993「17·18世紀 對日 公貿易에서의 公作米 문제」『향도부산』10

16) 정성일의 견해에 따르면 조선과 대마도 무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반론은 조선후기를 통하여 일본이 조선과 무역할 때 대마도가 직접 조선과의 무역을 관장했고 막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대마도와 조선의 매매과정에서 작성한 매매문기에 에도에 그 내역을 보고하는 背面 내역이 있어 정성일은 대마도의 자율성을 그 동안 관대하게 평가한 것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정성일, 2000,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17) 나가사키(長崎)는 幕府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았고, 부산은 쓰시마번, 유구는 사쓰마(薩摩)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누 족인 마쓰메(松前)에게만 통교를 허락했다.

내건 鄭成功의 영향으로 바다를 통한 무역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에게 호의적인 무역환경이 조성되었고 조선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더불어 唐貨를 중계하는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다양한 물종을 수입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량으로 수입한 구리 때문에 조선에서는 주전을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었다. 대량 주전작업을 통해 조선은 상당한 양의 동전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미 조선은 초기부터 주전을 통해 국지적이나마 재정적 효과를 꾀하고 있었던 만큼 대규모 동이 조선으로 유입되어 주전이 가능해진다면 국가로서는 새로운 재정수단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물론 무역환경의 변화는 비단 조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네덜란드의 VOC는 다양한 무역제한 조치와 그리고 해상에서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18] 일본과 무역량을 증가시켜 나갔다.

당시 조선에사 동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은 지표면에 얕게 묻힌 광물만 채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더구나 매장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에 생산량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조선 내 구리 산출량은 매우 적었다. 물론 조선에서도 동을 비롯한 광물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19] 청동기시대 이후 동과 주석을 합금한 청동제품과 민간에서 식기, 무기 등을 제조했으므로

18)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박이 해상에서 사고를 당할 확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히라도에 있었던 네덜란드 상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상난파율은 2~4%정도로 항해 초반과 달리 낮아지고 있었다.(지명숙, 2003『보물섬은 어디에』,연세대학교출판부) 하지만 1715년 이후-貞德신령 이후-네덜란드 상선이 1년에 2척으로 제한되면서 매년 두 척의 배가 나가사키에 입항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실제 매년 두 척의 배가 동시에 들어온 해는 많지 않다. 敗船率이 높지 않다면 두 척의 배가 매번 長崎에 입항해야만 했다. 하지만 長崎에 입항하는 선박은 2척 모두 기록된 경우는 반을 넘지 않고 있다. 즉 패선율이 알려진 것보다 기후와 다른 요인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승정원일기』영조 7년 10월 10일 “採銅, 是自古通行之事, 而我國銅鐵, 無産出處, 地部經用, 遠貿倭館矣。今此産銅之地, 適出於我國境內, 則當此鑄錢之日, 豈可慮有奸僞之弊, 而捨我國所産, 不爲之採用, 乃反費重價, 遠貿他國, 恐無是理矣”

이를 통해 어느 정도 銅이 한반도에서 생산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산출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조 대 시행된 가장 큰 주전 사업에서도 倭貢으로 제공받은 3만근으로만 주전을 시행할 정도였다.[20] 물론 동의 사용처는 주전에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군사력 강화조치에 따라 五軍營의 설치와 군영의 砲兵을 양성하면서 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銅의 수요도 상당량 존재하였다.[21] 하지만 銅鑛의 경우 銀鑛과 달리 훨씬 더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어 조금 더 넓고 깊게 채굴을 위한 갱도가 마련되어야 했다.[22] 따라서 동광은 은광보다 채굴을 위한 비용도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갱도를 깊게 파고들어간다고 해서 생산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英祖 대에 확인할 수 있는 조선의 銅생산량은 세 곳에서 채굴하는 양이 하루에 30斤 정도였다.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를 300일 정도 연속적으로 채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해 동안 약 9,000근[23]정도 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시기

---

20) 『仁祖實錄』 인조 12년 2월 20일 "京圻諸邑, 聞往年收米之未收者, 以錢代捧, 已有來納者, 以其近京, 而貿錢易也。 立賦民之制, 而不鑄於外方, 秖令京中之錢, 流布於外方, 則持錢而往外方者, 必刁蹬其價, 而外方不勝其弊矣。 宜以一年倭貢三萬斤之銅, 分鑄於安東、全州、公州等處, 比京中稍高其價, 許民和買。 又就應納米中, 若干石, 與錢價相直, 而以錢收於民, 則民無加賦之弊, 而官家之米, 固自在也"

21)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2월 16일 "李匡輔, 以訓鍊都監言啓曰, 軍器中最緊要者, 莫過於火砲, 而我國産銅之道絶無, 故軍門造置之數, 甚爲零星, 其在陰雨之備, 實爲慨然矣。臣於待罪御營廳時, 使折衝權和經, 司正李世佐, 閑良李潤基·崔壽泰等, 備給略干物力, 以爲料理鑄砲, 則權和經等, 多般經紀, 貿得倭銅錫鑞正鐵等物五千餘斤, 許多工匠累朔料布, 亦自措販, 鑄得中銅砲五十門, 龍頭砲二門, 及所載車子五十二輛, 別具, 故臣頃日本局習陣時試放, 則中銅砲行丸二千餘步, 龍頭砲行丸三千餘步, 而車子亦便於運用, 可謂戰具之良器, 中銅砲五十門, 則臣旣自御營廳始造, 故使之移上御廳, 龍頭砲二門, 乃是新創之制, 御覽次封進, 而權和經等四人, 盡心國事, 如是完役, 合有論賞激勸之道, 而恩賞重典, 不敢擅便, 令該曹, 稟處, 何如 傳曰, 允"

22)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2월 20일 "安邊銅店異於銀店之有弊矣, 且軍門火砲, 有益於國家, 而每每求銅於倭館, 路遠難繼。小臣自軍門, 欲爲給料布, 鑄銅其弊, 似減於倭館之取來矣。上曰, 銅店採出, 有弊於民矣, 故先朝有立馬吳山第一峯之句, 大臣之意, 何如 洪致中曰, 銅物皆貿於倭館, 而馭來有弊, 我國所産之物, 豈可求之於他國乎 若自軍門, 募民給料布, 則似無民弊, 許之似可矣。上曰, 掘坎, 豈非民弊乎 鵬翼曰, 聞郎廳言, 則專是銅山也, 三處掘之, 則一日所得, 一百三十斤云矣。致中曰, 各軍門皆爲之, 則必將用之不竭矣。鵬翼曰, 守城, 無過於火砲也。上曰, 卽今錢貨有弊, 私鑄之弊, 誠不可不慮也。鵬翼曰, 鑄銅, 異於鑄銀, 其竈甚廣, 其役甚鉅, 此非奸細之徒, 盜鑄之物也"

상 차이가 있지만 肅宗 9년 한 해 동안 필요한 동의 양이 4천 칭(400,000근, 240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시켜 볼 경우[24] 한 해에 필요한 양의 2%도 국내 동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동전의 원료가 되는 동을 비롯한 주석 같은 광물이 조선에서는 다량으로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조선은 일본을 통해 유입되는 물량을 확보해야만 화폐를 주조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도 구리는 내수를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생산량이 많지 않아 정책적으로 대규모 무기를 제조하거나 특히 동전을 제조할 경우에는 동전의 수요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했다.[25] 따라서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高麗시대에 銀甁과 鐵錢을 사용했던 이유는 동생산량이 거의 '全無'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 것도 위와 같은 요인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26] 상평통보가 본격적으로 주조되던 시기에는 이천, 안변 그리고 함경도 수안을 주요한 동생산지로 주목하기도 했다.[27] 또한 회양에서는 동과 함께 주전의 주요한

---

23)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2월 20일 "上曰, 掘坎, 豈非民弊乎 鵬翼曰, 聞郎廳言, 則專是銅山也, 三處掘之, 則一日所得, 一百三十斤云矣。致中曰, 各軍門皆爲之, 則必將用之不竭矣"

24) 『비변사등록』 숙종 19년 7월 4일 "卽今鐵物無一斤八手, 而三衙門方爲設鑄, 鐵物之價, 日漸騰踴, 倭館一年所出鐵物, 只是三千餘稱, 而三衙門一年所用, 幾過四千餘稱, 賑廳今又鑄錢則鐵物實無繼用之路, 一時竝擧, 必有狼狽之患, 訓局及摠戎廳, 旣限以十二朔云, 姑待此兩軍門畢役後, 賑廳鑄錢, 自明年正月爲始, 未知何如"

25) 『승정원일기』 숙종 4년 10월 16일 "赫然曰, 今此行錢, 民皆便之, 而銅鐵非我國所産, 故已至垂乏, 各廳鑄錢, 實無可繼之道, 誠爲可悶。我國亦有數處産銅之邑, 自前欲爲採取, 補用於軍器, 而慮有民弊, 未果矣。今則鑄錢事, 不可中止, 雖有些少之弊, 有不可顧, 今於産銅之處, 竝許採取, 何如 上曰, 依爲之";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0월 10일 "採銅, 是自古通行之事, 而我國銅鐵, 無産出處, 地部經用, 遠貿倭館矣。今此産銅之地, 適出於我國境內, 則當此鑄錢之日, 豈可慮有奸僞之弊, 而捨我國所産, 不爲之採用, 乃反費重價, 遠貿他國, 恐無是理矣"

26) 『승정원일기』 정조16년 10월 19일 "惟我東方, 箕氏之世, 已有古錢, 而麗朝則貨用銀甁, 或鑄鐵錢, 蓋由地無銅産, 而麗之與元, 衣服官職, 事同一家, 亦未嘗借用唐錢, 則可見形格而勢拘也。逮我聖祖朝, 稽古定制, 始鑄銅錢, 國用以裕, 民受其利, 行之百餘年, 上下便之";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0월 10일 "採銅, 是自古通行之事, 而我國銅鐵, 無産出處, 地部經用, 遠貿倭館矣。今此産銅之地, 適出於我國境內, 則當此鑄錢之日, 豈可慮有奸僞之弊, 而捨我國所産, 不爲之採用, 乃反費重價, 遠貿他國, 恐無是理矣"

27) 『승정원일기』 영조 5년 9월 14일 "張泰紹, 以備邊司言啓曰, 因御營廳草記, 戰守兵器, 莫逾於火砲, 而火砲之中, 大砲及佛狼機子母砲爲最, 此等之砲, 必以銅鐵鑄成。而伊川·安邊

재료로 사용되었던 鉛을 생산하고 있었다.[28] 특히 安邊에서 생산되는 구리는 깊이 매장되어 있지 않아 채굴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고 운반비용 또한 倭銅보다 저렴하여 채굴 가능성과 채산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또, 동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원석을 녹여 제련하기 위해 연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연료 소비량을 기준으로 당시 조선에서 생산되는 원석의 품질은 生銅보다 낮고 銅錫보다 아래의 품질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구리를 녹여 제련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수안에서 생산되는 구리가 다른 수입구리에 버금갈 정도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판별하고 있다.[29] 그러나 안변 지역에서 생산된 구리도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아 공급이 지속되지 못했다.

銅의 사용처는 鑄錢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상생활 용품과 무기를 만드는데도 필요했다. 특히 火砲를 제조하는데 銅을 녹여 만들어야 하므로 양난이후 동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필요하였다. 이러한 도

兩邑之界, 銅鉛大脈始出, 無異於倭銅。且准陽, 又産鉛胍及白磬云, 今若竝採以來, 則可以造成火砲等。於以爲他日不虞之備, 而此是兵器大事, 自臣營不敢擅便事, 有令廟堂, 稟處之命矣。銅鐵爲軍門緊需, 國無産處, 尙患貿用之不足, 李起賢, 能知銅胍所在, 至於採用以納若因此開壙, 需用不乏, 則誠爲多幸";『승정원일기』 영조18년 1월 9일 "又以賑恤廳言啓曰, 黃海道遂安彦眞山採銅處, 本廳堂上一員下去摘奸事, 已爲定奪矣。採銅監官嘉義崔天若, 銅山陳告人高廷柱, 爲先給馬下送, 以爲措備機械之地, 而擧行等事, 成節目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28)『승정원일기』 영조 5년 8월 23일 "張泰紹, 以御營廳言啓曰, 戰守兵器, 莫逾於火砲, 而火砲之中, 大砲及佛狼機·子母砲, 爲最, 此等之砲, 必以銅鐵鑄成, 而銅鐵非本國所産, 常用器皿之屬, 必須貿得於倭館, 而非但價重, 運致亦難, 自前軍門, 雖欲造此等兵器, 終未果焉者, 此也。昔在壬戌年間, 故相臣金錫胄, 爲守禦使時, 適得高英國爲名人, 採銅於長連地, 鑄成子母砲及大砲數百, 留置於南漢·江都·白馬山城等諸處, 而厥後高英國身死, 銅脈亦絶, 未免中撤, 甚可慨然。今者李起賢爲名人, 謂言伊川·安邊兩邑之界, 有一大嶺, 銅鉛大脈始出云。故臣看品次使之採鎔以來, 則果爲無異於倭銅, 此誠不易得之物也。且吹銅之際, 以白礬·鉛鐵, 調勻吹鍊, 則銅品柔軟, 造器不折, 而淮陽地, 又産鉛脈, 及白礬云。今若竝採以來, 則可以造成火砲等物, 以爲他日不虞之備, 而此是兵器大事, 自臣營, 不敢擅便, 依李起賢陳告, 使之採取, 以爲鑄成火砲之地, 何如 傳曰, 令廟堂稟處"

29)『승정원일기』 영조 7년 12월 21일 "安邊聞有銅脈可採處, 今番本曹郎官, 以銀店摘奸事, 下去時, 使之看審, 則銅脈在深山長谷間, 去浮土一尺, 可以採出。其品, 錫銅之下, 生銅之上。我國旣有土産之寶, 而貿用於他國, 比萊府貿來之價, 所費不過 , 自本曹出物力, 限所用採用爲宜, 敢達。上曰, 頃日御營廳, 亦請採用, 而以宣廟朝下敎言之, 不可輕易許之。若待採銅而來, 則鑄錢之役, 將不免遲延矣"

성중심의 방어론 대두는 18세기 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1706년 수어청에서는 필요한 화포 150柄을 제작하기 위해 生銅을 공급받으려고 했지만 왜로부터 공급되는 생동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50柄만 제작하는데 그치고 있었다.[30] 1678년 이후 상평통보를 본격적으로 주조하기 시작하면서 동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조선도 국내의 동으로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외의 銅을 수입하여야 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많은 구리 생산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일본이 16세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동을 생산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동을 생산하기에 앞서 구리 보다 훨씬 가치가 높았던 銀을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학자에 따라 일본의 銀생산량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16세 전반에 걸쳐 많게는 전 세계 은의 40% 이상을 공급하다가 점차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17세기 후반에 가장 많은 구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인 기록으로 1703년 243개의 동광이 전국에 걸쳐 개설되어 있었다.[31] 동에 대한 관념도 구리는 금과 은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금속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학자이며 정치가였던 新井白石은 금과 은에 비해 동은 가치 면에서 훨씬 떨어지므로 비교할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할 정도였다.[32] 구리가 일본에서 생활용품과 무기 등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자국 내 소비만으로 전국적인 구리광산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자국 내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구리를 생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구리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1660년대 중국과 조선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동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부터 일본에서도 구리를 국가의 부로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

30)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4월 28일 “守禦廳物力凋殘, 南漢蓄積鮮少, 守城之備, 極其疎虞, 而其中火砲, 比之城堞砲穴, 多有不足之數, 此尤切急矣…取其生銅, 造成火砲, 則當爲一百五十餘柄, 而所入雜物, 無以辦出, 推移措備之際, 僅可造五十柄矣”

31) 小葉田淳, 『日本銅鉱業史の研究』 思文閣出版, 31~35.

32) 『本朝宝貨通用史略』 3, 673-674쪽(Innes, *Ibid*, p.298에서 재인용)

다.[33]

그때까지 일본에서 구리는 국제적으로 효용이 높아 무역수단으로 인기가 있었던 은에 밀려 생산하려는 특별한 계획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은과 구리는 비슷한 매장지에서 채굴하고 있었는데 효용가치가 높았던 은만 생산하고 구리는 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나마 생산된 구리가 폐기처분되기도 했다. 구리는 銀에 비해 가치 있는 금속이라는 관념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구리 생산지역은 대부분 처음부터 구리만 생산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도 이러한 변화를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銀이 해외 특히 중국으로 유출되는 양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광업생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즉, 비교적 수월하게 노면에서 채취했던 은 생산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생산량이 유출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쉽게 채취가 가능했던 은 생산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일본에서는 대외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귀금속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먼저 줄어든 통화량을 만회하기 위해 은의 함량을 낮춰 일본 내에서 유통을 시키는 등 고육책을 통해 은 통화량을 늘려나가기도 했다. 1700년대 이전 유통되었던 慶祿銀의 은함량이 80%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 1700년대 이후 유통되기 시작했던 元祿銀은 은의 함량이 64%까지 내려가고 있었다.[34] 함량을 낮춰 부족한 통화를 확보하려고 했던 고육책이었다.[35] 특히 조선에 인삼을 구매하기 위해 제조한 은의 경우 20%까지 은의 함량을 낮추어 유통시킬 정도로 은의 고갈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3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는 비슷한 장소에서 생산되는 동을

33) Ryuto Shimada, *Ibid,* 2006, 14
34) Kazui Tashiro, 2006 Exports of Japan's silver to China via Korea and changes in the Tokugawa monetary system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Japan and the Pacific, 1540-1920*
35) 高柳眞三, 石井良助 編 1934,『御觸書寬保集成』岩波書店 , 892쪽.
36) Kazui Tashiro, *Ibid*,

채굴하여 金銀의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37]

표 7) 일본의 對朝鮮 동수출액

연대	총계(단위:斤)
1684(貞享1)	169,749
1685	91,142
1686	315,015
1687	264,235
1688(元祿1)	188,577
1689	281,732
1690	587,969
1691	437,667
1692	421,874
1693	681,387
1694	692,354
1695	372,252
1696	628,348
1697	1,436,000
1698	26,453
1699	626
1700	1,100
1701	4,456
1702	24,726
1703	300
1704(宝永1)	5,251
1705	5,351
1706	55,200
1707	3,426
1708	4,009
1709	56,796
1710	72,150
총계	6,928,155
평균	256,598

* 典據: 田代和生, 1981『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 硏究』 創文社, 274쪽의 내용을 재구성했음.

표 7)에서 나타나듯이, 은의 생산량 감소와 반대로 일본의 구리는 17세기 중반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나 조선에 수출되는 양도 증가하

37) Ryuto Shimada, 2006 *The Intra-Asian Trade and Industrialization: Essays in Memory of Yasukichi Yasuba*

고 있었다. 일본의 구리 생산량은 1700년에는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일본의 구리 총생산량은 5,340톤이었다.[38] 이후 동의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어, 1710년대에는 2,000톤 정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1770년대에는 2,700톤으로 줄어들어 18세기 초반과 비교하자면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본에서 생산된 동은 은과 비슷한 양상으로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었다. 조선과 중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VOC를 통해 유럽으로까지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왜동은 당시 주변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동의 생산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1700년 이후 구리의 일본에서 생산량 대비 수출비율은 최대 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동이 해외로 수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러한 수치는 1710년대는 65% 그리고 1760년대에는 56%로 점차 내려가기는 했지만 18세기 중반이후에도 대부분의 구리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구리의 해외 수출량의 증가는 해외 교역량의 증가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당시 세계 무역량을 통틀어 보더라도 최고규모였다고 볼 수 있다. 1686년 일본 전체에서 생산되는 동은 전국적으로 9백만 근(5,400톤)이었고, 그 중 8백만 근(4,356톤)이 해외로 수출된다고 언급하고 있다.[39] 당시 일본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구리를 대량생산하고 있던 곳은 유럽의 스웨덴이었는데, 스웨덴은 17세기에 연간 2,100톤 그리고 18세기에는 생산량이 줄어들어 연간 800톤을 생산하였다.[40] 물론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던 시기였던 1650년부터 1690년에는 한해에 3,000톤 정도의 동을 생산하기도 했

38) Ryuto shimada, *Ibid*, 2006, p.46
39) 修史室編, 1957『近世前期に於ける銅貿易と住友』泉屋叢考. 第9輯, 71~73
40) Eli F.Heckscher, 1954 An Economic History of Sweden(Cambridge, MA: Harvard Univ.) p.175

다.[41] 하지만 유럽 내의 전쟁 여파로 스웨덴의 구리 생산은 변동이 있었고 유럽 국가들도 일본의 동을 얻기 위해 중국과 경쟁해야만 했다. 이러한 대외적 무역환경에서 조선도 대마도를 창구로 하여 동을 수입하고 있었다. 1685년에 대마도로부터 수입한 동의 양은 2794貫目(10,473kg)이나 되었다. 당시 淸의 동전 무게는 康熙 23년(1684)부터 1전(3.75g)으로 고정되어 유통되었는데 이를 전량 70%정도의 구리 함량으로 주조한다고 가정해보면 약 4,300,000文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이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구리의 양은 1697년 1,436,000근(861톤)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걷고 있었다. 하락세를 걷는 이유는 일본의 보호무역정책과 채굴량의 하락이 동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조선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도자기, 비단과 같은 사치품을 매개로 은이 유입되었고 중국을 세계 은의 하수구(drain)로 부를 정도로 많은 교역량이 은으로 이뤄지고 있었다.[42] 또한 銀 뿐만 아니라 통화제를 은과 함께 동전을 이중화폐로 사용하였으므로 은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동으로 대체되었고 동전의 원료가 되었던 동의 수요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였다.[43] 물론 중국이 화폐로 사용되는 금속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雲南省에서 자체적으로 동이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보다는 수입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동전을 주조할 때에도 운남성의 동과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을 주조에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운남성의 동은 '滇銅'으로 불리며 채굴량이 상당하여 주조에도 상당부분 투입되었다.

---

41) Kristof Glahn, 1977 "The Changing Pattern of Trade"(E. E. Rich,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ume 5,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arly Modern Europe*: London, 1977), p.189

42) Andre Gunder, *Reorient* (이희재 역, 2004,『리오리엔트』이산)

43) Kent G. Deng, Miracle or Mirage? Foreign Silver, China's Economy and Globalization from the Six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ies, *Pacific Economic Review* (08/2008)

표 8) 乾隆年間 지방전국개주시 사용 동의 출처

지역/관서명	사용한 銅의 종류	開鑄年代
江西 寶昌局	洋銅, 滇	건륭 2(1737)
江蘇 寶蘇局	洋銅, 滇	건륭 5(1740)
浙江 寶浙局	洋銅, 滇	건륭 5(1740)
福建 寶福局	洋銅, 滇	건륭 5(1740)
湖北 寶武局	洋銅, 滇	건륭 8(1743)
直隸 寶直局	洋銅	건륭10(1745)
廣東 寶廣局	洋銅, 滇, 廣	건륭10(1745)
山西 寶晋局	洋銅	건륭13(1748)
陝西 寶陝局	洋銅, 滇	건륭13(1748)

* 典據: 劉序楓, 「淸康熙~乾隆年間洋銅的進口與流通問題」『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7, 109쪽

※ '洋銅'은 일본에서 수입한 동을 말함

※ '廣'은 廣東에서 생산된 동을 말함.

※ '滇'은 운남성에서 생산된 동을 말함

중국도 역시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으로는 늘어난 국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던 것은 아니었다. 乾隆년간부터 매년 9백 만 냥 정도의 동전을 생산하고 있었고 건륭 5년(1740)부터는 천만 냥, 그리고 1743(건륭 8)년부터는 2천만 냥의 동전을 주조하여 동전의 급격한 생산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었다.[44] 1684~1695년 사이에 일본에서 중국으로 배를 통해 실려오는 銅의 양은 연평균 340만근(2,050톤)이었다.[45] 당시 북경의 주조량은 점점 증가하여 工部의 寶源局에서만 최대 6,240串(6,240,000文)에 이르기도 했다.[46] 만약 일본에서

44) Werner Burger, Coin Production during the Qianlong and Jiaqing Reigns, Appendix 1참조. (Hirzel, Thomas, *Metals, Monies, and markets in early modern societies*, Lit 2008)

45) 山脇悌二郎, 『近世日中貿易史の硏究』 吉川弘文館 1960, 60쪽.

46) 『皇朝文獻通考』卷14 「錢幣考」

유입되는 구리가 아니었다면 淸에서는 목표한 주조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상황이었다. 당시 청에서는 자국 내에서 생산한 구리를 주전에 활용하기도 했지만 일본에서 수입하는 구리를 배를 통해 수송하여 사용하는 것이 주전이익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淸에서도 왜동을 수입하고 이를 주전과 무기를 제조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운남성을 비롯한 여덟 개 지역에서 주전에 필요한 구리를 공급받기도 했지만 청에서는 주전에 필요한 구리를 대부분 왜동에 의지하고 있었다. 표 12)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당시 청에서는 자국 내에서 생산한 구리를 모두 주전에 투입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전에 필요한 구리의 50%이상을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뿐만 아니라 淸에서도 倭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696년~1710년 사이에는 일본의 銅수출량이 최고조에 달하여 중국으로 수출된 양은 매년 400~700만 근(2,400~4,200톤)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표 9) 對淸 연평균 銅수출량

연대	평균수출량(단위:斤)
寬文4-寬文8(1664-1668)	1,847,600
寬文12-延宝4(1672-1675)	3,086,613
延宝 5-天和元年(1677-1681)	3,503,590
天和 2-貞享3(1682-1686)	5,143,023
貞享 4-元祿4(1687-1691)	6,207,330
元祿10-元祿13(1697-1700)	6,455,900

* 典據: 『日本産業史大系』6, 東京大學出版會 1960, 416쪽

왜동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유럽과 중국에서 구리를 수입하여 갔고 조선도 이들과 경쟁하면서 구리를 수입하고 있었다. 조선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구리를 구입할 만한 결제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마도와 거래를 한정하여 수입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조선은

대마도에 필요한 식량과 면포를 공급해주면서 조선에 필요한 구리를 수입할 수 있었다.

2. 常平通寶의 발행과 재정적 효과

1) 鑄錢의 과정과 확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구리의 양이 늘어나면서 조선에서도 필요한 동전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주전에 대한 논의는 특히 재정적인 필요성에 따라 정상적인 통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임란 중간에도 제기 된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주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先代에 이미 폐단이 많아 화폐의 유통이 실패하고 있었던 점과[47] 조선에는 원료가 생산되지 않는 점이 부각되면서 논의가 지속되지는 못했다.[48] 특히 선조 대 임란으로 재정적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때에도 銀鑛과 鑄錢으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자는 건의가 올라오고 있었으나 선조는 절대로 주전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49] 인조 대에도 지속적으로 주전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동전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조정에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었다. 조선 초기에 이미 통화를 발행하여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 자체를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50] 당시 주전정책을 반대하고 행전이 되지 않았던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은 백성들의 동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백성들이 國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저화와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당시기와 주전이 논의

47) 『선조실록』 선조 36년 5월 23일 “顧念我國之人, 凡事本不耐久, 而且天下無弊之事, 纔有所作爲, 未免中輟, 殊爲未穩”

48) 『선조실록』 선조 31년 4월 7일 “鑄錢事利害難易, 予固不能知之, 但以意斟酌, 則勿論他餘曲折, 未審方內有鄧通之山乎, 將以何銅鑄之耶”

49) 『선조실록』 선조 39년 2월 12일 “戶曹經費板蕩, 天使支待之物, 專爲分定, 各官又令責辦市井, 故民怨咨有紀極。 生財之道, 宜令廟堂講定, 或廣開銀鑛、或爲鑄錢可也 上曰 我國鑄錢, 決不可爲”

50) 『인조실록』 인조 4년 9월 7일

되던 시기까지 통화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했던 이유는 필요한 만큼의 화폐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책을 추진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환수단으로서 동전은 사실 상업발달과 큰 함수 관계없이 충분한 양과 양질의 화폐가 구비된다면 경제수준과 관계없이 널리 사용될 수 있다. 경제수준이 뒷받침 되지 못해 화폐가 퇴장되기 보다는 오히려 화폐의 수량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화폐는 퇴장되는 가능성이 더 높다.[51] 특히 관에 바치는 세금을 일부 동전으로 강제하면서 지방에서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동전이 세납시기가 되면 부족해지는 전황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동전을 유통시킬 주전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동전유통이 중단되었지만 당시 시장에서 동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동전유통이 중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화폐유통책과 달리 17세기 후반 주전책은 이전 보다 원활한 원료 공급과 함께 주전책을 마련하여 行錢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전의 行錢策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로부터 대량으로 구리가 수입되면서 조선은 이전까지 필요한 동전 완제품을 청과 왜로부터 수입하여 유통시키려고 했던 정책에서 자체제작을 통해 유통량을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숙종 4년 영의정 許積의 제안으로 1678년 1월부터 戶曹, 상평청, 진휼청, 精抄廳, 司僕寺, 御營廳, 訓練都監을 포함한 중앙 일곱 개 관청으로 하여금 동전을 주조하도록 했고 상기 관청에서 주전한 상평통보가 유통되기 시작했다.[52] 이후 4월 1일

51) 화폐유통을 경제수준의 지표로 판단하는 관점은 의도와 달리 오히려 조선 후기 경제를 단순화시키고 그 수준을 낮게 보는 관점과 연결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동전이 활발히 유통되었던 다른 여타의 국가들과 경제수준을 오직 동전유통으로만 판단하는 경우 다른 조건은 관여할 여유가 없이 조선시대는 경제수준이 훨씬 뒤처진 상태로 동일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근대 화폐는 경제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52) 『승정원일기』 숙종 4년 1월 24일

부터 서울에서 동전이 유통되었는데 당시 제작된 동전의 무게는 2錢으로 배면에 동전을 주조한 관서와 함께 아래에 '二'자를 새겨 넣어 동전의 무게를 표시하였다.[53] 관서를 배면에 병기한 것은 추후 동전 주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전을 나타내는 단위는 分, 錢, 兩으로 『續大典』 戶典 國幣條에 따르면 상평통보 1兩은 100文의 동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상평통보의 가격은 銀과 쌀로 표시되어 유통되었다. 국가에서 가격을 정하여 동전에 해당하는 현물의 지급보장을 해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동전의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구리가 갖고 있는 현물 가치가 있었지만 동전의 현물가치보다 높은 액면가로 상평통보가 시장에 유통되었던 만큼 가격을 정해주고 현물과 호환성을 국가의 권위로 정해주는 보증이 필요했다. 상평통보를 최초로 주전했던 당시에는 동전 400문을 쌀 10두로 정하여 민간에 유통시키는 기준으로 삼았다.[54] 당시 정해진 상평통보의 가격은 공적인 출납에 적용되었고 사적인 거래에는 강제로 적용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동전이 주로 거래되는 공적인 통로에서 가격이 지정되다보니 민간에서도 동전 가격은 자연스럽게 공적인 거래에 맞춰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최초로 제조한 상평통보를 유포하는 과정에서도 시전 상인에게 가격에 준하여 동전을 유포시켰던 만큼 동전가격은 정부의 가격에 따라 유지되고 있었다.[55] 또한 관리의 녹봉의 일부와 수납하는 세입의 일부를 동전으로 할당하고 가격은 이전에 발표한 내역에 준했으므로 동전의 가격은 유통초기 관권에 의지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동전발행의 목적 가운데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요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동전이 안정

53) 『승정원일기』 숙종 16년 10월 7일 "凡錢文前面, 則書常平通寶四字, 後面上端, 書所鑄官曹之名一字, 如戶曹所鑄, 則只書戶字, 工曹所鑄, 則只書工字, 此則以表某司之所鑄也。後面下端, 書二字, 此則以明錢一文重二□之意也。今此惠廳所鑄錢, 則面上端之宣字, 仍存□二字滅去, 更以天地玄黃, 定其次第, 書塡於二字□排一字, 則冶所三十爐所排之字, 當爲三十字, 而每□磨等匠, 列書匠人之姓名, 成冊踏印, 藏之本廳"

54) 『비변사등록』 숙종 4년 윤 3월 24일

55) 『승정원일기』 숙종 5년 2월 22일

적으로 유통되자 동전 가격을 두 배로 올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당시 동전의 가격이 원래 구리의 가격보다 저렴해서 동전을 유기로 주조하는 毁錢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요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에 동전 가격을 은 1냥에 200문의 동전으로 조정하였다.[56] 가격을 조정하는 일은 시장에 동전의 안정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훼전을 방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며 전문을 매득한 상인들을 적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정적인 유통에 공을 기울이고 있었다.[57] 특히 훈련도감과 진휼청에서는 쌀을 발매하는 과정에서 동전과 쌀을 교환을 해주다 보니 돈이 없는 사람들은 흉년에도 쌀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동전으로만 현물을 교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제한적 조치 때문에 동전의 가격은 일정기간 안정될 수 있었다.[58] 하지만 현물과 동전의 가격을 일정하게 정하여 교환해주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 곡식 가격은 해당 연도의 풍흉에도 영향을 받고 곡식의 수급이 추수기와 세납시기에 집중되었던 만큼 서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미가가 폭락하고 있었다. 더구나 동전의 은전 비가를 정부에서 한 차례 조정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동전의 명목 가격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상평통보가 국가의 관장으로 제조 유통되고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통제에 나서면서 이를 통해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전이 公私에 걸쳐 광범위하게 유통이 일부는 강제되었고 일부는 공적인 유통망에 기반하여 사용지역이 확산되기도 했다. 특

56) 『승정원일기』 숙종 5년 2월 3일 “臣等反覆相議, 則皆以爲銅鐵本非我國之産, 而錢反價輕, 鍮器價重, 故銅鐵多歸於鑄器, 以致所鑄之錢, 或不免銷入於鑄器之中, 前頭廣布中外, 永久通行, 有不可必, 誠爲可慮”

57) 『승정원일기』 숙종 5년 2월 18일

58) 『승정원일기』 숙종 5년 3월 3일 “目今都下飢甚, 莫保朝夕, 而三春將盡, 寥無賑活之擧, 如干之穀, 雖許發賣, 有錢者得食, 無錢者不得食, 則此豈賑窮恤民之意乎”; 『승정원일기』 숙종 5년 5월 20일

히 1700년대를 전후하여 민간거래에 동전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각종 賣買文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59] 이 밖에도 본격적으로 동전이 유통되면서 민간에서 상평통보의 사용이 확대된 것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상평통보를 본격적으로 유통하기 시작한 이후 1678년~97년 사이는 450만 냥, 1731~98년 사이는 500만 냥 이상의 동전을 주조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60]

그렇다면 상평통보를 본격적으로 주조하는 과정에서 조정에서는 어떤 논리로 주전을 확대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VOC가 동을 수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은 어떻게 倭銅을 확보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으로서는 중국과 VOC가 결제수단으로 삼는 사치품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역을 유지할 만한 기제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 동을 공급 받는 과정은 먼저 公貿易을 통해서였다. 대마도에서 수출된 구리가 倭官으로 들어와 조선에 유입되었던 것이다.[61] 그 외의 私貿易을 통해서도 공급이 가능했지만[62] 중국과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국가적인 간섭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재료의 구입에서부터 시장의 요구보다는 국

59) 현재 동전이 민간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었다는 증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토지매매문기이다. 매매문기에는 각 지역별로 남아 있는 문기의 양도 가장 많고 결제수단도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며 결제한 수단이 물품에서 동전으로 변화해나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를 근거로 18세기 전반에 동전이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이정수, 김희호,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60) 이헌창, 1996「1678-1865년간 화폐량과 화폐가치의 추이」『경제사학』27

61) 『승정원일기』 영조원년 10월 19일 "賑廳, 元無鑄錢之物力, 故使行時譯官等, 受去三軍門銀三萬兩, 自賑廳轉貸, 以譯輩所貿唐貨, 入送倭館, 換出銅鐵, 以爲鑄錢之資, 而鑄錢後, 本銀三萬兩, 以錢計償, 取其贏餘, 以備賑資之意, 草記定奪, 旣已行關萊府矣。今則雖換得銅鐵, 賑廳, 將無用處, 以銅鐵, 移送軍門, 則軍門, 亦無用處, 若更關萊府, 使之勿爲換出銅鐵, 則異國之人, 必疑我國朝令之不信, 此甚難處"

62)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創文社

가의 간섭에 따라 원료가 공급되었으므로 주전에 가장 큰 역할을 끼친 것은 국가의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전의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원료의 가격과 제조가격을 합산하여 시장의 원리에 맡긴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조선에서는 동전의 원료인 구리를 거의 전량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물론 조선뿐만 아니라 17세기 동아시아에서 주전을 행하고 있었던 중국도 동을 일본에서 전량에 가까이 수입하고 있었다. 동의 가격은 동전의 원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동전의 경우 은보다 소재가치가 낮았고 백성들에게 소액환을 공급해주기 위해 제조되었으므로 동전 원료의 수입과 가격조절은 국가입장에서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였다.[63]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동의 양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수입에 전량 의존했던 조선보다 동전유통에 있어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동의 수입을 거의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동수입가격의 조절은 동전을 유통시키는데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조선에서 주전하려고 했던 동전은 소액환으로 구리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동전 한 닢의 가격을 올린다면 민간에서 백성들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도 높았다. 이렇게 소액환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비단 조선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민간에서 유통이 전제되어야 재정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선정부로서 소액환의 가격유지는 동전유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구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채산성 악화와 구리를 수입하는 국가들 간의 경쟁이 나타나면서 조선도 구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었고 그 어

63) '子母相權'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는데 고액환과 소액환을 동시에 제조하여 유통시킴으로써 백성들이 편리하게 화폐를 유통하고 시장에서 퇴장되지 않게 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子母相權'은 單旗가 제창한 이래 조선에서도 화폐유통의 주요한 원리로 언급하고 있다.

려움은 점차 구리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700년 경에 일본에서는 구리 생산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특히 구리의 수요가 중국과 조선을 비롯하여 남아시아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확대되면서 일본의 구리 유출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남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되는 구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OC)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VOC는 포르투갈이 일본 무역에서 퇴출되면서 시기상으로는 17세기 초반부터 무역에 관계하기 시작하였다. VOC는 포르투갈, 영국 등이 일본에서 퇴각하면서 독점하여 일본에서 생산되는 귀금속을 남아시아와 유럽에 공급하였다. 당시 남아시아는 무굴제국으로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무기제조를 위한 구리와 주전을 위한 구리가 상당량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VOC는 일본의 구리를 남아시아에 팔고 그 댓가로 면포와 비단을 求得하여 다시 일본에 되팔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VOC는 남아시아의 면포와 비단 등을 일본에 공급하고 일본의 귀금속을 남아시아에 교환하면서 상당한 무역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유럽에 나머지 구리를 수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VOC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 내에서 구리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생산비가 증가하였고 일본 내에서 왜동의 유출을 꺼리는 무역제한 조치마저 겹치면서 VOC가 일본과 무역하며 얻는 이득은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64]

구리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그 이전까지 VOC는 일본의 구리를 유럽으로 수입하면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구조적으로 17세기에 일본의 구리가 유럽으로 운송비용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일본 구리가 유럽으로 수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17세기에

64) Shimada Ryuto, Dancing around the Bride: The Inter-Asian Competition for Japanese Copper, 1700-1760", Itinerario: *European Journal of Overseas History*, 27-2, 2003, pp.41-43

일어난 Anglo-Dutch간 네 차례에 걸친 전쟁 때문이었다.[65] 1652년 Anglo-Dutch간의 전쟁 때문에 전쟁에서 소비할 무기제조를 위해서 구리의 소비량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은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1652년부터 54년의 1차 전쟁, 그리고 1665년부터 67년으로 이어지는 2차전쟁, 1672년에서 74년으로 이어지는 3차 전쟁까지 네덜란드와 영국은 17세기 후반 치열하게 싸웠고 특히 바다에서 해전을 격렬하게 치르며 주도권을 다퉜다. 따라서 당시 전쟁으로 필요한 것은 대포의 제조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였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공통적으로 구리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구리를 공급하고 있었던 국가는 스웨덴이었는데 스웨덴은 덴마크와 1658년부터 1660년까지 전쟁에 휘말리고 있었다.[66] 따라서 유럽에 필요한 양의 구리를 제때에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리의 공급 부족은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가격을 더 올리더라도 유럽산 구리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VOC는 운송료를 지불하고 유럽에 수출하더라도 이득이 보장되는 경제적 조건에서 많은 양의 倭銅을 유럽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즉, 1650년대 일본으로부터 구리 수입이 증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럽 곳곳에서 발생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시아에서도 일본 구리의 수요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동전을 주조하기 위한 재료로 구리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무굴제국이 아직 통일왕조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67]

상기한 것처럼 구리의 수요가 유럽까지 확대되면서 조선은 유럽

---

65) Shimada Ryuto, *Ibid* , p.65

66) Glamann, The Dutch East India Company's Trade in Japanese Copper 1653-1736, *Scandinavian Economic History Review*, Vol. 1. No.1 p.60

67) Ryuto Shimada, Ibid, p.45

으로 구리를 수출하려는 네덜란드와 자국 내 소비를 염두에 두고 구리를 수입하는 중국 등과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먼저 일본의 구리를 수입하고 있었던 유럽의 경우 유럽의 최대 구리 공급지였던 스웨덴에서 대략 11세기부터 구리를 생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68] 하지만 당시 생산되던 구리는 통계로 확인하기 미미한 정도였고 16세기 후반에 들어 스웨덴에서 구리 생산량이 연간 300톤 정도를 상회하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이후 16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획기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어 연간 2,100톤 정도의 구리를 생산하게 되었다. 당시 독일과 헝가리에서 구리를 다량 생산하고 있었지만 독일은 이미 구리 생산의 최정점을 지나 생산량이 하향일로로 접어들고 있었고 헝가리는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배에 항거한 혁명으로 정치가 불안정해지면서 구리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69] 유럽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은 스웨덴이었고 그중에서도 스웨덴의 내륙 중부에 위치한 Falun은 17세기 전반기 동안 생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채굴량이 증가하면서 점차 노면에 드러난 원광석을 채취하는 방식에서 지하 깊이 갱도를 만들어 채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갔고 이러한 채굴방식의 변화는 채산성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 수직으로 갱도를 만들어 채굴할 때에 생기는 문제를 채굴 기술을 발전시켜 대처하였지만[70] 생산량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줄어들어 연간 800톤 정도로 하락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아래에서 유럽의 구리

---

68) Shimada Ryuto, ch.5 European copper production in a changing world, T*he Intra-Asian Trade in Japanese copper by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2006, Brill, p.67

69) Lynch, Mining in World History, p.60(채계병 역, 2004『채굴과 제련의 세계사』 책으로 만나는 세상)

70) 수직갱도를 만들어 채굴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물이 고이는 현상이었다. 수직 갱도에서 효과적으로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지상으로 퍼내지 않으면 갱도 안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었고 단시간에 물을 퍼내는 펌프의 개발이 수직채굴방식을 고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다.(채계병 역, 2004 앞의 책 책으로만나는세상)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VOC를 통해 들어오는 일본 구리 가격은 낮았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일본 구리를 훨씬 더 선호하였다.[71] 네덜란드의 물가 기록인『Nederlandsche prijsgeschiedenis』에 기록된 스웨덴의 구리 가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상기 자료를 통해 1644년부터 1770년까지 가격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록물에 나타난 구리 가격 추이를 비교해보면 Dutch pound로 환산한 구리 가격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 대략 60(Dutch guilder)에서 등락을 거듭하지만 일본의 나가사키에서는 최고 높은 가격이 30(Dutch guilder)을 넘지 않고 있다. 일본 구리의 가격 경쟁력이 높고 더구나 전쟁 등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일본 구리를 계속해서 수입하려는 것은 시장의 원리로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였다.

표 10) 18세기 일본과 스웨덴의 연간 구리 생산량과 수출량

	일본			스웨덴	
	생산량	수출량		생산량	수출량
		VOC	중국		
1701-10	5,340	912	2,930	?	?
1711-20	3,840	609	1,904	?	?
1721-30	?	597	?	830	334
1731-40	?	541	?	793	309
1741-50	?	594	?	863	191
1751-60	?	660	1,154	839	324
1761-70	2,873	554	1,047	715	303
1771-80	2,702	559	897	892	516
1781-90	?	454	962	1,153	616
1791-00	?	217	578	890	422

71) N W Posthumus, *Nederlandsche prijsgeschiedenis* vol.2 Leiden, E.J. Brill, pp.872~3 (본 자료는 Ryuth Shimada의 책 76쪽에 소개된 것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Nederlandsche prijsgeschiedenis*에서 당시 유럽의 주요한 구리 생산국가였던 노르웨이, 스웨덴의 구리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다. *Nederlandsche prijsgeschiedenis*에 기록된 물가자료는 현재 다음 계정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2.scc.rutgers.edu/memdb/search_form_postpr.php)

* 典據: 1. 일본의 은 생산량에 대한 추계는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佐々木潤之介, 鉱山の技術と経営(甘粕健, 1983『講座・日本技術の社会史』5, 日本評論社) 181쪽

2. 일본에서 VOC를 통해 수출한 동의 양은 다음 자료에 근거해 작성했다. Japanese Copper Trade by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1646-1805, Bulletin of the Faculty of Letters(Hanazono Univ.), 32(2000), pp.189-191

3. 對중국 수출량은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했다. 小葉田淳, 『日本銅鑛業史の研究』思文閣, 1993, 695-697쪽

물론 위의 표 10)에서 보듯 일본의 구리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스웨덴의 생산량도 크게 늘지 않아 동아시아 국가들과 네덜란드의 무역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나가사키에서는 구리의 가격이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수요가 급증하고 생산량마저 줄어들게 되면서 점차 구리 수출량을 통제하는 데에 이르기도 했다. 먼저 막부는 1697년(元祿 10) 구리 수출 정액을 연간 8,902,000근 (5,337톤)으로 정하였다. 당대 일본의 구리 생산은 元祿 연간이 최고조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 이후에 채굴량도 줄어들면서 생산량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 생산량도 줄어들었던 만큼 1701년(元祿14)에 銅座을 설립하고 전국의 구리 광산에서 생산되는 구리는 모든 오사카 구리 吹屋에 집적되고 통제되었다. 구체적인 통제방법으로 우선 동의 유통과 제련 과정을 한 곳에서 관장하도록 강제하였다. 일본 각지에서 생산된 1차 가공된 순도가 낮은 粗銅을 오사카로 이송시켜 吹屋에서 제련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곳에서 제련한 구리는 일정한 모양으로 주조되어 長崎로 이송한 후에 수출되었다.[72] 이런 통제과정을 통해 막부는 동의 생산과 유통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18세기에 들어서는 생산지에 대한 생산할당량을 정하여 생산량도 통제하려고 하였

72) 小葉田淳, 1968 『日本鉱山史の研究』 岩波書店

다. 아래의 표 11)에 나타나듯이 각 광산에 부과된 생산 할당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생산할당량이 줄어드는 것은 일본 내의 구리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수출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무역을 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일본 수출동의 할당량 분포

鑛山名	1715(貞德5)	1716(享保元)	1720(享保5)	1721(享保6)	1722(享保7)
秋田	1,700,000斤	1,700,000斤	1,700,000斤	1,400,000斤	1,400,000斤
睦奥	650,000	750,000	450,000	450,000	400,000
別子	1,000,000	1,000,000	850,000	850,000	850,000
立川	700,000	700,000	500,000	500,000	500,000
生野	400,000	-	-	-	-
永松	280,000	280,000	250,000	300,000	150,000
越前大野	70,000	70,000	400,000	400,000	400,000
多田	50,000	50,000	67,670	70,000	50,000
熊野	40,000	-	70,000	30,000	-
播州	30,000	-	15,000	-	-
仙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延岡	20,000	20,000	-	-	30,000
会津	10,000	10,000	-	-	-
出海	10,000	-	-	-	-
吉岡	3,000	3,000	-	-	-
明延	2,000	-	285,000	-	-
阿波国	2,000	-	-	-	-
飛騨国	1,000	-	3,000	1,500	-
予州大野	1,000	-	-	-	-
美濃嶺上	1,000	-	-	-	-
猿渡	-	-	70,000	200,000	-
石州	-	-	3,000	-	-
합계	5,000,000	4,535,000	4,033,670	4,031,500	4,335,000

* 典據: 『日本産業史大系』6, 東京大學出版會 1960, 416쪽

조선으로 수입되는 동은 대마도를 창구로 조선에 수입되었다. 막부는 구리의 수출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조선에 수출하는 구리의

양도 통제하려고 했는데 1701년에 대마도주의 무역 자율권을 제한하여 막부의 통제권 아래에 두었고 1716년에는 구리 수출량을 10만斤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제한 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73] 이런 맥락에서 조선에 수출하는 구리 가격도 막부에서 통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은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 100근당 수출가격이 비슷한 시기 중국과 VOC와 일정한 수준에서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을 통해 추정가능하다. 왜관을 통해 수입하는 동도 제련을 거친 순도 90%이상의 제품이었다. 수출용 동은 외형상 여러 가지 형태로 제련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수출용 구리는 '御用銅'으로 불렀고, 대표적인 수출구리의 형태인 '棹銅'은 약 7~8寸 길이로 상자에 100斤 단위로 포장되어 수출되었다.[74]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각적으로 수출용 구리를 구분하였고 동의 밀수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수출되는 구리 가격 또한 막부에서 정하여 전체적인 동의 수출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통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는 막부의 강제력이 동원된 결과로 오사카로 銅鑛石을 일률적으로 제련하였던 만큼 가격통제에 대한 거부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오사카 내에서도 밀무역을 통한 거래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생산량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銅座를 통해 유통되는 양에 비교하면 밀무역으로 유통되는 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밀무역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銅座가 설립되었지만 이후 동의 가격과 수출량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75]

---

73) 田代和生, 「対馬藩の朝鮮輸出銅調達について--幕府の銅統制と日鮮銅貿易の衰退」『朝鮮學報』66, 1973)

74) 『制錢通考』卷1 '回棹分解各省鼓鑄' 청에 수출했던 구리도 '棹銅' 형태로 제작되었던 사실을 중국 측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수출되는 구리 외에 일본 국내에서 소비하는 구리는 丸형태로 만들어 외형상 구분하였다. 수출용 구리와 내수용 구리의 외형을 구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수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수출량을 통제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으로 수출되는 구리의 가격도 대마도의 자율권이 아닌 막부의 통제아래에 놓여 유통되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수출규모부터 가격까지 점차 막부의 통제아래에 놓고 과도한 수출을 금지시키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일본 국내의 구리가격을 살펴보면 동 100근당 139.48~156.52(단위:匁)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다.

표 12) 幕府의 구리 매입가격(1773년)과 時價 비교표

	막부 매입가(단위:匁)	시장가격(단위:匁)
아키타	156.52	143.464
남부	139.48	153.418
요시다	144.00	178.185

* 典據: BGB 10783:270, 시장가격 (Glaman, *Dutch asiatic Trade*, p.261 재인용)

당시 일본 내에서 유통된 구리의 시장가격은 銅座에서 사들인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었다. 아직까지 일본의 국내 구리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막부의 구리 수출가격이 번에서 구입한 구리가격보다 항상 낮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해하기 힘들다. 당시 막부의 입장에서는 구리의 가격을 낮춰 무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무역품에 대한 소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구리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 무역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구리 가격은 은으로 표시되었지만 실제 교환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비단의 원료였던 生絲였기 때문에 수입된 生絲의 일본 내 가격을 올리지 않기 위한 막부의 정책이라는 설명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76]

75) Innes, *Ibid*,
76) 山脇悌二郎, 『近世日中貿易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60, pp.73~79(윤병남, ,2007, 『구리와 사무라이』 소나무, 2007, 188~194쪽에 정리된 山脇悌二郎의 견해이다.)

표 13) 동아시아 각국의 일본 구리 수입가격 변화(百斤/兩)

(* 官=官商, 民=民商)

연대	朝鮮	洋銅		漢銅	VOC	일본 내 가격	비고
		官價	時價				
1664		6.5	10-14				
1679	19.6[77]						20(常銅鐵)[78]
1684		6.5	14-15				
1686		10	16-17				
1691		10.4			10.7		
1693		10			10.6		
1695		9.8			10.5		
1697		10.4			10.6		
1698		10.7			11.1		
1700		11.4			11.6		
1701					11.6		
1702					11.6	121	
1704		11.3					
1706	10[79]						
1708						13.6	
1711					11.6	19.1-19.4	
1712		13.5			11.6	25.1-25.3	
1713					11.9		
1714		13.6			12		
1715					12.1		
1716		12.5					
1717						19.5-24	
1719		14.5					
1723	18-19						
1727		14.5	18-19				
1740		17.5	19.8-20				
1745		官13,14 民17.5					
1746		14.5		20.7			
1749		官13	20-22	19			

		,14 民17 .5					
1763		民17 .5	19	19			
1770		民17 .5	25.01				
1772		民17 .5		17.5			
1781	14[80]						
1784		官13 ,14 民15 .3					
1797		官13 .6 民15 .3	24.8				

* 典據: VOC에서 수입한 구리 가격 정보 八百啓介, 『近世オランダ貿易と鎖国』吉川弘文館, 1998, 140~141쪽
일본 내 구리 가격 정보 今井典子, 「近世中期の地賣銅について」『日本歷史』480, 50-67

즉, 일본 내에서 형성된 구리 가격은 오히려 淸과 조선에 수출하는 구리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청과 조선에 수출된 구리 가격은 幕府에서 동일하게 통제된 가격이었고 청과 조선의 내지에 들어와서 운송비 등의 명목이 추가되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표 13)[81]은 일본에

77) 『승정원일기』 숙종5년 2월 18일 "銀之與銅, 精粗雖不同, 錢之於斤, 輕重亦懸殊。以鑄錢之法論之, 則七斤之銅, 可鑄錢一貫云。七斤之銅, 其價不過一兩四錢, 一貫之錢, 其價多至五兩"
78) 『승정원일기』 숙종 5년 2월 21일
79)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4월 28일
80) 『승정원일기』 정조 5년 11월 16일
81) 劉序楓, 「淸康熙~乾隆年間洋銅的進口與流通問題」『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7 142쪽

서 본격적으로 구리를 수출하기 시작하는 1664년부터 淸, 조선에 수출한 구리 가격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이 표 13)을 통해 당시 倭銅이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경우 연대기 자료에 기록된 구리가격 정보가 거의 없어 이를 시계열로 확인하기 힘든데[82] 당시 청과 VOC에서 수입한 구리 가격을 통해 조선 내에서의 구리가격 추이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3)에 나타나는 倭銅의 수입가격 추이는 시기별로 큰 차이 없이 銅100근당 비슷한 선에서 일치하고 있다.[83] 조선의 왜동 수입에 대한 가격정보는 『承政院日記』와 같은 연대기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倭銅가격에 대한 정보가 장기적인 시계열로 확보되지 않고 파편적으로 언급이 되어있어 장기적인 가격변동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국내수요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과 VOC의 가격은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되고 있다. 1706년의 경우 동시기 중국과 VOC의 가격정보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1698년 이후 중국의 수입가격은 10냥을 상회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VOC보다 저렴한 가격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간의 가격 차이는 수입가격의 차

참조.

Bettina Gramlich-Oka, Shogunal Administration of Copper in the Mid-Tokugawa Period(Thomas Hirzel(et.), *Metals, Monies, and Markets in Early Modern Societies: East Asian and Global Perspectives*, 2006.

82) 현재 구리 가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승정원일기』인데 파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시계열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기존 연구 성과에서 이용한 내용도 본 논문에서 이용한 자료와 비슷하다. 단, 단위의 해석에 있어 원유한이 1稱을 15斤으로 해석한 이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위의 자료에서도 언급된 구리가격은 1칭을 15근으로 해석하여 은(兩)으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稱은 무게의 단위로 小稱은 15근에 해당하지만 구리의 무게는 大稱(100斤)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연대기 자료에 1稱을 100근이라고 명시한 구절도 있고, 이밖에도 제조한 동전의 무게를 고려할 때 1稱은 小稱이 아닌 大稱으로 해석해야만 옳다.

83) 국가별로 구리 가격이 막부의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다. 왜동을 수입한 조선의 구리가격은 일본에서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조선에서 유통되었던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통제되는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기보다 수입한 국가에서 내지에서 포함시킨 운반비나 보관료와 같은 비용의 有無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26년에는 반대로 비슷한 시기의 중국의 동수입가격이 은 14.5냥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조선에서 형성된 구리 1칭 당 가격은 銀 18냥으로 조금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동을 수입하였던 VOC도 일본 동수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이었다. 일본에서 생산된 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연구된 것은 매우 드물다. 그 중에서도 남아시아는 VOC를 통한 왜동의 주요한 판매처였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의 귀중품들이 일본에 수요가 있었던 만큼 일본은 VOC와 무역을 통해 일본으로 동남아시아의 장신구들을 수입할 수가 있었다. 1609년 VOC의 배가 平戶에 도착하였다.[84] 이후 일본으로부터 동을 사서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동을 수출하는 길이 열렸는데 처음에는 그 양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수출량은 늘어갔고 일본 막부는 1637~46년 사이 VOC에 수출을 불허하기도 했다. 국내에 유통될 동전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수출량이 늘어나자 고육책으로 수출금지령을 내려 VOC를 통해 남아시아로 수출되는 동의 양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출 금지책은 1636년에 寬永通寶를 주조하기 시작한 것과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다. 1646년에는 이러한 수출금지책을 완화시켰는데 충분한 양의 동전을 주조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추론은 1650년대에 남아시아에 일본 동전이 다량 수출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다각화 된 倭銅의 수출은 일본으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일본으로서는 국내의 부가

84) Kobata Atsushi, “Poduction and Trade in Gold, Silver, and Copper in Japan, 1450-1750(*Presious Metals in the Age of Expansion: Papers of the XIV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Historical Sciences*(Stuttgart:Klett-Cotta, 1981) in Herman Kellenbenz(ed.)) 274

유출되는 것으로 과도한 동의 수출은 제한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유럽과 거래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문화에 대한 거부로 그 이후에는 과도한 귀금속 유출에 대한 제한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런 정책은 왜동에 의존해야 하는 조선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일본의 '鎖國' 정책은 1630년대부터 나타났다. 일본의 막부는 이 당시에 여러 가지의 쇄국책을 발행했다. 1633년에는 老中으로부터 일본배가 나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령을 반포했고, 1635년에는 일본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다. 1636년에는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出島)에서만 포르투갈 무역을 허용하고 나머지의 무역은 모두 금지시켰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파를 구실로 1639년에는 포르투갈의 무역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데지마에서만 독일이 무역을 하도록 제한했다.[85] 이러한 일련의 쇄국책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를 금지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외무역에 있어서 실권을 막부에서 차지하기 위함이었다.[86] 이후 일본에서는 네 곳의 허용된 곳을 통해서만 무역을 하도록 허용하였다. 나가사키(長崎), 쓰시마, 사쓰마(薩摩), 마쓰메(松前)가 해당 港이었는데 그 중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을 관리하던 항은 막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통제되었던 것에 비해 외부로 나가는 물품이 많은 쓰시마 같은 지역은 막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무역에서 자치를 인정하고 있었다.[87] 사쓰마의 경우 樟腦와 같은 향신료를 생산하여 특별히 장뇌 수출을 담당하고 있었고[88] 나머지 지역은 주로 구리를 주요 수출품목으로 정하여 무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구리는 막부에서도 1668년 관영통보를 주전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무역량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

85) 金井圓,『近世日本とオランダ』東京放送大学教育振興会, 1993, 118~120
86) Shimada ryuto, *Ibid,* 12
87) Tashiro, Kazui. Foreign Relations During the Edo Period: Sakoku Reexamined."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8, No. 2, Summer 1982
88) 宮下三郎, 1997,『長崎貿易と大阪 : 輸入から創薬へ』 清文堂

에 나가사키를 비롯해 쓰시마에서도 수출입에 관해 통제를 가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VOC의 무역은 막부의 통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었고 가격도 막부의 통제아래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다.

조선의 동가격도 막부의 통제 속에 수출되고 있었다. 私貿易을 통한 동의 양이 더 많았다고 田代和生은 지적하고 있지만 앞에서 중국의 동가격을 살펴보았듯이 官에서 정한 동의 가격과 시장의 가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적 시장가격이 관에서 수출하는 가격보다 조금 낮추어서 거래를 더 성사시키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정성일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마도에서 조선에 수출한 이후 작성한 매매문기는 사본을 藩廳에 보관하고 그 원문에 해당하는 것은 막부에 보내 무역상황을 보고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확인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89] 물론 이러한 과정이 모든 대마도의 사적인 거래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고 극히 일부의 매매문기만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조일간의 무역거래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막부의 간섭이 없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16세기 후반 일본의 구리 생산량 증대에 따라 조선에서도 왜로부터 수입하는 구리의 양이 점차 늘어나면서 조선에서도 대규모 주전을 설행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은 명확해 보인다.

2) 常平通寶의 주전이익과 재정확충

조선은 상평통보를 주전한 이후 매년 동전을 제작하는 것을 원칙

89) 정성일, 2000,『조선후기대일무역』신서원, 126쪽

으로 삼았다. 그러나 원료와 기타 여건 때문에 매년 주전하려는 원칙은 제대로 고수되지 못했다. 그러나 재해 때문에 급박하게 진휼을 계획하거나 긴급히 재정적인 부족을 채울만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매년 주전을 실시하지 못하는 해에도 주전에 대한 계획을 추가로 하고 있었다. 주전을 통해 생기는 주전이익을 확보해서 재정에 활용하려는 계획이었다.[90] 주전이익은 들어가는 원료와 공임료 같은 제반 비용 보다 산출되는 동전의 액면가치가 더 많을 경우에 생기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전을 주조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백성에게 교환수단을 제공한다는 시혜를 베푸는 목적도 있었지만, 국가에서 주조를 통해 얻고자하는 또 다른 목적은 주전이익의 확보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으로서는 주전을 통해 재정적 곤란을 극복하려고 했던 만큼 동전을 만드는 비용보다 많은 동전을 생산해야만 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주전이득을 내기 위한 상황이 마련되지 못했고 주전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극복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어떠한 조건에서 주전을 활용했으며 당시 재정적인 곤란함을 주전을 통해 어떻게 극복해갔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동전의 원료를 거의 전량에 가깝게 수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입하는 구리에 상응하는 지불수단도 왜동을 수입하였던 다른 경쟁국들보다 부족하였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일정량의 구리가 생산해서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었던 주변의 淸과는 주전의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선은 정부가 주전 이익을 내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비교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동전을 만들고 그 동전을 유통시키면서 재정을 확충

90) 『비변사등록』 영조 32년 7월 19일 “俄於賓廳摠使以此爲言, 而所請財力, 猝難區劃, 問於摠使則以爲本廳若趁今鑄錢, 則庶可以其餘剩, 補用於諸處役事云, 鑄錢誠多弊端, 而頃年三軍門鑄錢時, 摠廳獨不得爲之, 今亦許鑄則何可取剩而補用矣”

하기 위해서는 제작단가는 낮고 동전의 액면가는 높아야 했다. 우선 조선후기 본격적으로 상평통보를 대량으로 제작하면서 상평통보의 제작단가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전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동전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서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동전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구리를 포함한 재료비, 재료를 녹여 주물하기 위한 연료비, 동전제작을 담당하는 장인들에 대한 勞賃 등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 연대기 자료에는 동전을 제작하는 비용이 단편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전체 비용이 각 공정별로 어떻게 소비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현재 연대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30여 년간 주전을 금지하다가 다시 주전을 시작한 직후인 영조 11년과 26년의 내역으로 주전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영조 11년의 기록에서 확인 가능한 내역을 살펴보면 주전에서 工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게는 1/3 정도였다는 언급이 있다.[91] 영조 26년 기록에서는 生銅 100근을 50냥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이를 재료로 총 80냥을 주조한다고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92] 이를 통해 동전을 제조하는 원료비용이 62.5%를 차지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80냥에서 노임비와 연료비 등을 제한 것인지 언급은 없으나 영조 26년에 주전하는데 있어 재료비가 62.5%나 차지하고 있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족한 주전기록을 보충하기 위해 중국의 기록을 통해 주전할 때에 소모된 비용을 검토해 보고 조선의 상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

91)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2월 10일 “古大錢則一重五錢, 而以一葉爲一錢, 小錢則一重二錢矣。今以十葉, 鑄成三葉, 代三錢而用之, 則比小錢之以十葉爲一錢者, 實爲三倍之利, 一倍則雖以功役之費除之”

92)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11월 23일

중국의 경우 주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1630년대 북경과 남경에서 행해졌던 주전사업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중국의 明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원군을 파견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상태여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였다. 더구나 明의 崇禎帝(1611~1644)는 당시 만주에서 後金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숭정제는 후금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했다. 명은 후금의 압박에 재정의 대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확보에 대한 문제는 당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당시 명이 택한 재정확충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전사업이었다. 주전을 통해 군사비를 확보하고 건전해지지 못했던 당대의 국가 재정을 보충하려고 했다.[93] 1630년의 주전 사업은 후금의 군사적인 위협에도 계획된 것으로 국가에서도 주전하는 것이 당대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94] 특히 남경의 舊廠에서 주조 할 당시에는 표면적으로 당시의 주전의 목표를 '兵餉'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95] 따라서 주전에 소비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가능하면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구리를 사용하려 계획을 했다. 또한 원석을 이동하면서 추가되는 운반비를 절약하기 위해 구리가 채굴된 지역에 爐를 설치하고 주전작업을 하여 원석을 이동하는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96] 하지만 이 당시 명나라에서도 국내에서 산출되는 구리가 많지 않아 자국 내 구리만으로는 주전을 온전히 시행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조선과 동일하게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구리에 의존하여 주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조선과 비슷한 주전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

93) Richard von Glahn, *Ibid*, pp. 186~187

94) 畢自嚴, 『度支奏議』 「新饗司」 卷8 '覆錢法堂任內鼓鑄本息疎' "國莫利於鼓鑄然" (續修四庫全書 史部 詔令奏議類 vol. 486)

95) 畢自嚴, 『度支奏議』 「新饗司」 卷26 '覆南部考核舊廠郎中魂良槐疎' "夫鼓鑄原爲兵餉補不足"(續修四庫全書 史部 詔令奏議類 vol. 486)

96) 『春明夢餘錄』 卷37, 戶部四 "議省鑄局錢以銅鉛參雜而成, 而銅鉛各有産處搬運重難, 是以歷代多卽坑冶附近之所置監鑄錢 ,唐有八監 宋有三十六監"

었던 만큼 시기와 지역이 다르지만 전체 비용 가운데 원료비와 공임 그리고 기타 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630년 주전 당시 明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구리로 北京과 南京 두 곳에서 동시에 주조를 실행했다. 먼저 北京에서는 1630년 9월 24일부터 1631년 9월 24일까지 1년간 戶曹의 산하 寶泉局에서 동전을 제조했다. 1630년 당시 1년간 주조한 총 동전의 양은 145,144,444文이었다. 그 중 노역한 사람들의 임금을 포함한 제반 비용으로 소비된 액수는 30,178,476文으로 전체 주전 액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전의 주요한 원료였던 구리와 鉛과 같은 원재료 비용은 100,725,553文이 소비되었고 전체 주전 액수의 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이익(淨獲利)은 14,240,415文에 달했다. 주전에서 제반 비용을 뺀 순이익을 은으로 환산할 경우 21,908냥이었다. 전체 생산한 동전에서 제반 비용을 뺀 순수하게 남은 이익은 14,240,415文으로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이윤은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9.81%였다.[97] 비슷한 시기 1630년 7월부터 1631년 7월 南京의 舊廠에서도 주전작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남경에서 생산한 동전은 189,725,777文으로 연료비로 소비된 액수는 동전으로 17,349,115文으로 전체 주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1%였다. 주전에 소비된 원재료비는117,378,617文으로 전체 비용 가운데 61%를 차지하고 있다.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남은 총이윤은 동전으로 44,998,045文으로 은으로 환산 할 경우 42,450냥이었다. 하지만 북경과 달리 남경의 주전사업에서는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주전 사업과정에서 되갚아야 할 명목이 은으로 20,967냥이 존재했고[98] 전체 순이익(淨

97) 畢自嚴, 『度支奏議』 「新嚮司」 卷25 '考覆錢法主事王珍錫疎' (『續修四庫全書』 史部 詔令奏議類 vol. 486)

98) 畢自嚴, 『度支奏議』 「新嚮司」 卷26 '覆南部考核舊廠郎中魂良槐疎' (續修四庫全書 史部 詔令奏議類 vol. 486)'還原'으로 표시되어 있다.

獲利)을 은으로 환산할 경우 22,306냥으로 남경에서 주전한 동전의 순이익은 12.3%를 기록했다.

북경의 寶泉局에서 임금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포함하여[99] 동전을 주조하기 위한 제반 조건은 남경이 북경보다 훨씬 호의적이었다. 임금의 비중도 북경의 경우 전체 비용대비 20.8%인 것에 비해 남경은 9.1%였고 원료의 비용도 북경이 69.4%를 차지하였던 것에 비해 남경은 61.8%를 기록하고 있다. 제작비용의 총계를 살펴보면 북경의 주전소는 전체 비용 가운데 제작비용이 90.8%, 남경의 경우는 87.7%를 차지하고 있다.[100] 따라서 남경의 경우 동전을 제조하며 빌린 자금을 '還原'하지만 않았다면 남경과 북경의 주전이익차이는 훨씬 더 많이 벌어졌을 것이다. 즉, 남경에서는 동일한 시기 주전을 통해 약 20%정도 순이익이 더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금과 같은 제반 비용의 지역 차이 때문에 벌어진 순이익의 차이는 銀錢比價의 조절을 통해서도 줄여지고 있는데 당시 북경과 남경에서도 은전비가를 조절하며 이익차이를 줄이고 있다. 은전비가의 조절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은과 환산하는 동전의 액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주전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관에서 동전의 가치를 정하는 적극적인 개입은 조선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은전비가의 조정을 통해 주전이익을 확대시키는 17세기 후반 조선의 화폐정책을 살펴보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즉, 개략적이지만 북경과 남경의 주전 상황을 확인하면서 1630년대 明末 주전을 통해 소비하는 제반 비용은 대략

99) 북경의 경우 '爐場工料 員役 紙張工食錢'으로 남경의 경우 '炭罐工食'으로 표현되어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노동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100) 북경의 원료비와 노동비용이 더 들었던 것은 아마도 북경이 수도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인다. 특히 원료비는 당시 일본으로부터 구리를 수입하고 있었던 창구가 남쪽(漢口,와 蘇州)에 있었고 중국 국내 구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운남성에서 북경까지 원료를 이동시키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운남성으로부터 북경까지 운반과정과 비용에 대해서는 Nanny Kim, Copper transports out of Yunnan, ca. 1750-1850(Hirzel, Thomas, *Metals, Monies, and markets in early modern societies*, Lit 2008)의 논문 참조)

80%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조선의 상평통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명과 조선 공통적으로 원료를 자국이 아닌 일본을 통해 구입했던 상황이 같은 만큼 주전에서 차지하는 주전에서 차지하는 원료비중을 확인하는데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재료와 임금의 가격 등 세세하게 가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주전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핀다면 이러한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明末의 주전사업에서 재료비 다음으로 주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勞賃이었다. 노임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주전공정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투입되는 노동력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공정과 투입노동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동전을 제작하는 과정이 주물이라는 점을 통해 많은 인력이 각각의 공정마다 필요했다라는 사실은 기록이 아니더라도 짐작이 가능하다. 주물은 금속을 높은 온도로 용해시켜 틀에 부어 형체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주물한 이후 완제품 동전을 틀에서 분리하여 용해된 금속을 부었던 흔적을 각각 줄(file)로 각기 제거해야 동전이 완성되었다. 동전 하나 하나를 인력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공정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했다. 인력이 많이 투입된 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동전 제작에서 노동투입비용을 낮추는 것은 주전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101] 상평통보를 주조할 때에도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101) 서양에서도동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채택한 방식은 압연방식이었다. 압연 방식은 해머와 줄(file)을 사용해서 동전을 제작하는 방식이었는데 1550년까지 동전을 제조하는 주요한 도구였다고 밝혀져 있다. 일일이 동전을 해머로 내리치고 모양을 줄을 통해 마모시켜 제작했던 만큼 동전을 제조하는 단가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을 해결해 준 것이 스위스와 독일에서 1550년대에 프레스기계가 개발되면서 부터였다고 한다. 이 방식은 바로 동전제작에 투입되지 않고 17세기에 들어서야 동전제작에 사용되었다. 특히 프레스하는 동력을 기계의 힘을 빌리게 되면서부터 유행하게 되었다. 증기기관을 통해 압연을 했던 최초의 사례는 볼튼의 스팀프레스기로 1787년 이후에 유행하였다. 실제 볼튼의 스팀프레스 기계를 동전제작에 활용하면서 동전을 제작하는 단가가 현저하

문제였다. 노임은 동전을 제작하는 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상평통보를 제작하는 과정이 비슷했던 만큼 비용도 비슷한 수치로 노임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상평통보를 주조할 때에 동전을 주조하는 일은 비교적 歇役으로 알려져 있어서[102] 동전을 주조한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전국에서 각지를 떠돌던 노동인력들이 모여들어 成市를 이룰 정도였다고 한다.[103] 정부에서 실행했던 일이었던 만큼 공역가도 다른 노동보다 優給해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임금을 체불할 염려가 덜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몰렸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雇價로 지불되는 임금은 주전이익을 증대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明末의 주전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제작비용의 20%정도가 노임으로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1년 단위로 공사가 진행되는 주전사업에서 임금으로 지불되는 비용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명나라의 寶泉局에서 실시한 주전 사업과는 시기와 장소가 다르지만 영조 11년에 행한 주전사업에서도 전체 공역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이른다고 언급하고 있다.[104] 明末의 상황과 비슷한 수준에서 전체 제작비용의 20~30%정도가 노임으로 지불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에서도 노임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최대한 주전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노동비용 절감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노임비용의 절약을 위해 채택한 방법은 '挾鑄'였다. 협주란 주전에 동원된 匠手輩들이 官鑄錢에 사용된 爐를 이용하여

게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Thomas J Sargent; François R Velde, *The big problem of small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p.53)

102)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6월 25일 "一年五錢銀之役, 比他役爲歇矣。至於鉛穴, 則別將, 率若干知銀脈者採出, 而其所採得, 雖至累萬兩, 別將則取二分, 軍人則取一分之外"

103) 원유한, 1975, 『조선후기 화폐사연구』 한국연구원, 58쪽

104)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2월 10일 "實爲三倍之利, 一倍則雖以功役之費除之, 猶爲倍利矣"

사적으로 재료를 첨가하거나 관에서 주전을 실행한 이후 남은 재료를 동원하여 동전을 만드는 행위였다.[105] 국가에서는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 私鑄錢을 협주라는 방식을 통해 허락하여 임금을 대신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대체하려는 방식이었다. 물론 협주방식은 조선에서만 실시되었던 방식은 아니었다. 현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淸에서도 주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106] 그러나 협주는 원칙적으로 허용된 주전 방법이 아니고 임금을 절약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었던 만큼 동전의 품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협주는 官鑄錢을 마친 뒤에 실시할 수 있었으므로 동전의 주재료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재료로 구리보다 비교적 저렴한 다른 금속을 섞어 주조를 감행했고 이런 과정에서 주전된 동전의 품질은 매우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107] 賃金대신 주전을 통해 임금을 확보하다보니 품질관리는 뒷전으로 미뤄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주조된 동전을 정부에서도 허락해주었던 만큼 정부로서는 열악한 품질의 동전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 특히 관에서 사용했던 주조틀을 그대로 이용해서 동전의 겉모습은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협주한 동전과 정품으로 만들어진 동전은 외형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비슷한 저열한 품질의 협주된 동전이 통화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장수배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협주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일반 사주조 된 동전과 마찬가지로 협주되었던 동전을 무조건 금지시킬 수 없었다. 한쪽에서는 주전을 하고, 이후 주전과정에 들어갈 비용을 얻기 위해 협주로 주전된 동전을 시중에

105) 『승정원일기』 영조 8년 2월 25일 “且挾鑄, 異於私鑄, 匠手輩, 就官鑄之爐, 或略有私添, 或收其殘□, 以爲己利”
106) 『十通分類總纂』3(錢幣類) 2) 100쪽 “鑄錢速則利在官, 遲則夾鑄多而利在下”
107) 『승정원일기』 영조 8년 2월 25일 “且挾鑄, 異於私鑄, 匠手輩, 就官鑄之爐, 或略有私添, 或收其殘□, 以爲己利”

방출하는 편법을 동원하다보니 결국 '亭役'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108] 협주된 동전의 품질이 극도로 열악하다보니 민간에서 동전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기 때문이다. 주전비용을 절감하려다가 오히려 동전 유통을 官에서 방해하는 형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현실적인 때문에 협주를 쉽게 정지시킬 수는 없었다.[109] 주전이익을 극대화 할 상황 아래에서 특히 협주와 같은 규격이 비교적 일정한 구전을 새롭게 주전하여 품질을 낮출 경우 동전 주조의 약 30~40%정도 이익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110] 하지만 민간에서 惡錢을 심각하게 거부하면서 정상적으로 관청에 제작된 동전이 아닌 품질보증이 명확하지 않은 동전은 시장에서 퇴장되었다. 특히 동전의 품질이 열악하여 물에서도 뜨는 함량 미달의 동전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조정에서는 惡錢주조의 원인이 되었던 협주를 폐지하였다.[111] 협주는 관에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고 노동비 대신 工匠들이 행하는 주전 작업이었던 만큼 구리보다 가격이 저렴한 鉛과 黑鉛을 넣어 동전의 품질이 점차 악화시키는 대신 덜 들어간 구리만큼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舊錢을 재주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조작하여 30~40%의 추가적인 이득을 얻기도 했다.[112] 따라서 조정에서는 비정상적인 협주로 노동비를 절감하고 있었지만 협주가 폐지되면서 동전 주조를 통해 이득

108)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2월 27일 "以丙子年事觀之, 一邊鑄錢, 一邊行用, 蓋鑄錢諸需之貿取, 費錢無數, 必用此錢貿此需, 然後可以次次漸鑄, 得免停役之患"

109) 『정조실록』 정조 22년 3월 16일 "今錢之所以薄而小, 何也 試觀於古, 如鵝眼、綖環, 輕浮水上"

110)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6월 4일 "蓋鑄錢之時, 勿論公鑄私鑄, 匠手多詐, 必潛入鉛, 而偸用正銅, 故卽今錢貨無銅色, 而黑鉛多入, 可知 此若毁鑄新錢, 則所縮必十分之三四, 亦不可不慮矣"

111) 『정조실록』 정조 22년 3월 16일

112)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6월 4일 "蓋鑄錢之時, 勿論公鑄私鑄, 匠手多詐, 必潛入鉛, 而偸用正銅, 故卽今錢貨無銅色, 而黑鉛多入, 可知 此若毁鑄新錢, 則所縮必十分之三四, 亦不可不慮矣"

을 확보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주전을 하는 기간 동안 투입되는 연료비용도 주전비용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113] 하지만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연료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아 동전을 만드는데 연료비가 주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는 없다.[114] 주전을 하기 위해 원료를 녹이는 연료비가 점차 증가하면서 영조 대에는 연료비에 대한 염려가 표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京中에서 주전을 행할 경우 연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높은 柴炭가격 때문에 주전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영종도와 같이 연료비가 저렴한 곳에서 주전을 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영종도는 연료를 직접 수급할 수 있는 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연료를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전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료의 구비가 아닌 연료비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연료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동전을 주전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예상보다 훨씬 상회하였던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15] 또한 각 軍門에서도 주전을 허락받았지만 연료를 구하지 못해 山林이 우거진 곳에 주전을 허락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116]

이 밖에도 원료를 운송하는 운송비[117] 등이 동전의 가격을 결정하

113)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 8월 5일 “鑄錢不得不爲之, 則柴炭最難, 物力多入。且京司設鑄, 則下輩奸猾之弊, 實爲難杜, 若於東峽柴賤之處, 擇送幹事郎官, 禁絶奸細之徒, 限數朔趁速完鑄, 俾無淹延生弊之端, 似好矣”

114) 『皇朝經世文編』 「汴宋歷朝錢文輕重記」 “昔者鼓冶凡物料火工之費率, 鑄十錢得息者一二, 而贍官吏運銅鐵悉在外也” 淸朝의 사례이기는 하나 동전을 제조하는 과정은 ‘주물’을 주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만큼 대략 火工費를 10~20%로 책정하고 있었던 것을 조선에도 비슷하게 적용시켜 볼 수 있다.

115)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 8월 5일 “京中則奸弊難禁, 如永宗島中柴賤處, 使之鑄錢則似好…鑄錢不得不爲之, 則柴炭最難, 物力多入。且京司設鑄, 則下輩奸猾之弊, 實爲難杜, 若於東峽柴賤之處, 擇送幹事郎官, 禁絶奸細之徒, 限數朔趁速完鑄, 俾無淹延生弊之端, 似好矣”

116) 『승정원일기』 숙종 4년 11월 17일 “鑄錢之時, 用炭無節, 鳥銃打造之役, 亦不可中止, 而埋炭漸難, 殊爲可慮”

기도 했다. 숙종 32년에 동래 왜관에서 1만 5천근의 生銅을 운반할 때에 생동 1稱의 가격을 은 10냥으로 보았는데 그 가운데 은 2냥을 운송비로 책정하고 있다. 당시 주전은 대부분 한양에서 시행하였기 때문에 倭館에서 한양의 관서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전체 구리 가격의 20%에 이를 정도였다.[118] 이렇게 주전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와 노임 그리고 운송비가 추가되면서 영조 8년에는 주전을 하더라도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었다.[119] 주전작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조건 때문에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120]

조선과 비슷한 무역환경에서 淸도 역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구리에 주전을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에는 雲南省을 중심으로 자국 내에서 구리가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었으므로 일본에서 구리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주전재료를 일정부분 자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특히 일본에서 貞德新令(1715)이후 무역허가증인 '信牌'를 가진 선박만 출입하게 하고 長崎에서 수입할 수 있는 구리의 양도 제한하면서 중국도 주전을 하기 위한 구리를 일본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121] 정덕신령은 이전의 보호무역 정책처럼 수출하는 구리의 양도 제한하였지만 입항하는 배의 숫자를 규제하여 원천적으로 구리를 비롯한 귀금속의 유출을 제한하려고 했다. 정덕신령이 시행

117)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 11월 2일 "我國無產銅之地, 只從東萊貿得, 東萊之於嶺東·永宗, 相距殆過千數百里, 輸運生銅, 其費不貲, 未知朝家之計, 將水運耶, 抑陸運耶. 雖令水運, 不得不計給船價, 而亦不無臭載之慮, 若使陸運, 則駄價之費, 必不下三千餘兩"

118) 당시 주전은 守禦廳에서 시행하였다. 수어청은 1626년(인조 4) 북부 鎭長坊에 설치하였는데 1683년(숙종 9) 이후로 본청이 자주 남한산성과 서울로 오가다가, 1795년(정조 19)에는 남한산성으로 완전히 이전하였다.

119) 『승정원일기』 영조 8년 2월 21일 "今此鑄錢之命, 始下於年事大無, 國儲蕩殘之日, 而銅錫雖具, 物力浩多, 若只爲觀美, 務令致厚, 所辦, 僅足以償所費, 則其將何所取剩, 而責應諸道累鉅萬白給之數乎"

120)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12월 24일 "鑄錢, 經已過屢年, 而迄未就緖者, 實由於倭銅之不出而然矣。累十萬公貨, 許久滯淹, 出場無期, 事之可駭, 莫此爲甚"

121) 高淑娟、馮斌, 2003,『中日對外經濟改革比較史綱-以封建末期貿易政策為中心』清華大學出版社, 244~252(司法府庶務課 編, 1931,『德川禁令考』6, 吉川弘文館)

되기 이전에 막부에서는 1700년에 네덜란드 배를 1년에 네 척만 입항하도록 한정하였는데[122] 유출되는 구리의 양이 줄어들지 않고 생산량마저 줄어들자 정덕신령을 추가로 반포하여 대비하였다. 이 조치로 1715년 이후에는 한 해 동안 입항하는 배를 두 척으로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한 해 동안 수출하는 구리를 650,000근으로 한정할 수 있었다. 淸으로 수출되는 구리는 네덜란드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기는 했지만 이전시기보다 수출량을 제한하여 한 해 동안 수출되는 구리를 300만근(1,800톤)으로 제한되었다.

상기한 일본의 무역 제한조치 때문에 주전을 위해 일본 구리를 수입하고 있었던 주변국들은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운남성 및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구리로 당시 생산하고 있는 동전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었다. 乾隆帝가 즉위하던 1735년에는 乾隆通寶를 새로 주조하고자 구리 443만 근을 江蘇省을 포함한 여덟 곳에 분정하여 마련하도록 명을 내리기도 했다.[123] 건륭제의 즉위년만 하더라도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구리로 주전에 소모되는 재료를 충당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보듯 주전량이 억 단위를 넘어서고 필요한 구리의 양도 7백만 근 이상 소비되면서 점차 일본으로부터 구리를 더 수입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735년 말에는 蘇州에 '洋銅'을 수입하기 위한 전담 관서인 '銅政道'를 설립하여 일본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구리를 수입하려고 했다.[124]

정덕신령이후 구리 수출을 일본에서 제한하면서 중국에서는 필요한 구리를 제때에 확보할 수 없었다. 1736년 청에서 주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당시 雲南省 등지에서 생산된 자국 내 구리를 전량 동전생산에 투입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재료는 76% 밖에 공급할 수

122) 田邊茂啓, 1973,『長崎實錄大成』長崎文献社, 220쪽
123) 『制錢通考』卷1
124) 『制錢通考』卷1 "至十三年, 福撫盧奏, 請於蘇州, 設立銅政道, 專司招商採辦洋銅"

없었다. 이후 청에서 동전제작량을 중국내 동생산량과 대비시켜보면 1736년에는 전체 구리 생산량에서 동전 을 전부제작에 들어간 원료의 비율은 1737년에는 94%, 1738년에는 55% 정도였다.[125] 이후 1741년부터는 중국의 자국 내 구리 생산량만으로 주전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추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주전량의 50%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한 구리로 충당할 수 있었다. 물론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은 1741년에 접어들면 갑작스런 주전의 확대를 실시하면서 자국 내 구리로 전체 주전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청에서는 1740년에 비해 1741년에는 전년대비 약 5억 개의 동전이 더 주조되고 있다. 당시 청에서 생산한 5억 개의 동전은 동전 내의 구리 함량을 80%로 가정할 경우 동전에 사용된 구리의 무게가 3,000,000근(1,800톤)에 이르렀다. 乾隆帝의 즉위 이후 갑작스런 乾隆通寶의 증가 때문에 청은 자국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된 구리로는 주전량에 사용할 구리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당시 건륭통보를 주조할 때에 이전부터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았던 구리로 주전을 하거나 오래된 舊錢을 녹여 제조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년도의 구리 생산량과 해당시기 동전 주조량을 대입시켜 구리자급량을 산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淸도 점차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구리로 주전에 필요한 구리를 충분히 공급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였던 당대의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125) 『制錢通考』 卷一 "乾隆元年三月 以前寶泉寶源二局 歲需銅斤每年辦洋銅二百七十六萬六千八百餘斤 滇銅一百六十六萬四千一百九十九斤零" 『制錢通考』의 기록에 따르면 1736년(乾隆 元年) 북경의 寶泉局과 寶源局에서 주조에 활용한 구리는 총 443만 근 정도로 이중 왜로부터 수입하는 洋銅은 약 277만 근 정도였고 자국 내에서 생산한 滇銅은 약 166만 근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14)에 나타난 Werner의 전체 주조량 추계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Werner가 추정한 주전량은 지방의 주전량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표 14) 淸의 국내 銅생산량과 주전량 비율

연도	鑄錢 총량 (文)	동전의 전체무게 (kg)	동전의 전체무게 (斤)	銅 비율 70% 가정 시 (斤)	雲南省 銅 생산량 (斤)	淸의 동전 자급가능비율 (%)
1736	968,237,800	4,357,070	7,261,784	5,809,427	7,598,947	76.45042
1737	1,596,986,284	7,186,438	11,977,397	9,581,918	10,089,100	94.97297
1738	969,199,846	4,361,399	7,268,999	5,815,199	10,457,900	55.6058
1739	930,616,008	4,187,772	6,979,620	5,583,696	9,420,500	59.27176
1740	1,222,202,029	5,499,909	9,166,515	7,333,212	8,434,600	86.94203
1741	1,774,388,647	7,984,749	13,307,915	10,646,332	7,545,500	-41.0951
1742	1,840,874,941	8,283,937	13,806,562	11,045,250	8,757,800	-26.119
1743	2,036,881,163	9,165,965	15,276,609	12,221,287	9,290,700	-31.5432
1744	2,296,253,309	10,333,140	17,221,900	13,777,520	9,249,200	-48.959

※ 청대의 주전 총량에 관한 기사는 『皇朝文獻通考』卷14, 錢幣考 二와 『制錢通考』卷1에 기록되어 있는데 북경에 위치한 戶部와 工部 寶泉局과 寶源局에서 주조한 동전량만 합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주조한 동전량 수치와 비교해보면 약간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연도별 전국적 주전량을 명시하고 Werner Burger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Werner Burger, Coin Production during the Qianlong and Jiaqing Reins[126)]

※ 1734(雍正 12년)부터 1852년(咸豊 2년)까지 동전의 무게는 1전 2푼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制錢通攷』, 『皇朝經世文編』등 다수의 자료를 통해 淸대 동전의 무게 변동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전의 함량은 평균적으로 생각되는 구리 함량을 70%로 잡고 계산하였다. 70%에 못 미치는 함량을 보이는 동전도 다수 제작되었지만 중국내 생산된 동으로 주전을 한다는 가정을 점검해 보기 위한 계산이므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함량으로 계산하였다. (동전의 함량 내역은 Richard von Glahn의 책 table 14의 조사내역을 이용했음))

※ 1文 =1錢 2分=4.5g

청의 주전량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구리 수입이 줄

126) Thomas Hizelm Nanny Kim, *Metals, Monies, and Markets in Early Modern Societies: East Asian and Global Perspectives: Monies, Markets, and Finance in China and East Asia* vol.1, LIT Verlag, 2009)

어들었기 때문에 청의 주전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운남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청은 구리를 채굴할 수 있었고 倭銅의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滇銅 '으로 불리는 청에서 생산한 동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 비교적 왜동 감소에 따른 구리 부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은 淸과는 다른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구리가 생산이 되고는 있었지만 '全無'하다고 할 정도로 대규모 주전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선에서는 구리가 거의 생산되지 않았고 주전에 필요한 양이 倭銅이 아니면 주전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인 상황이었던 만큼 淸의 상황은 조선과 비교하여 훨씬 호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127]

물론 조선에서도 전혀 구리가 생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倭로부터 구리의 수입이 제한되면서 유입양이 줄어들자 조선에서도 倭에 구리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조선에서 구리를 생산하여 국내 수요에 충당하도록 명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조선에서 생산한 銅의 품질이 倭銅이 비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생산량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1780년에 조정으로 보고된 安邊의 동 생산량은 약 8천근에 불과했는데 당시 안변은 조선에서 가장 많은 양의 구리를 생산하는 산지였다.[128]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구리의 양과 그리고 수입 가격은 주전을 통해 재정적 이득을 꾀하려는 조선에게 중요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주전을 하기 위한 제반 조건이 모두 악화되어가면서 조선에서는 軍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주전 사업은 주전이익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주전이익을 내기 위해 동전의 무게를 줄이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는

127) 『승정원일기』 정조원년 12월 24일 "鑄錢,經已過屢年, 而迄未就緖者, 實由於倭銅之不出而然矣"

128) 『승정원일기』 정조 4년 11월 4일 "臣果見之, 則銅品似下於倭銅, 而品是鍮鐵類, 鑄器皿則似可僅用, 而正合於鑄錢, 故自安邊運來於臣營者, 合八千餘斤矣"

기존 연구성과가 있으나, 사실 동전의 무게는 정해진 무게보다 가볍게 되면 세납으로 동전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정식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동전은 민간에서 사용되지 않고 퇴출되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는 『續大典』戶典의 규정을 들어 상평통보가 제작되었던 초기에는 '當二錢'인 2전 5푼의 무게의 동전이 제작되다가 점차 주전원료가 부족해지면서 1錢(3.75g)아래로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29] 하지만 동전의 무게는 상평통보를 주전하던 초기부터 1전 2푼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當二錢'이라고 하여 무게를 두 배 증가시킨 동전만 2전 4푼~5푼으로 제조되고 있었다. 특히 '常平通寶'라는 명문이 있는 뒤 배면에 '當二'를 새겨 넣었고 크기도 비교적 컸기 때문에 다른 동전과 혼용될 염려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130] 동전의 품질이 악화될수록 민간에서 동전이 거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동전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품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따라서 암묵적으로 허용하던 挾鑄도 폐지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었다.[131] 제반 상황의 악화는 전체적인 주전이익의 감소로 이어졌다. 현재 연대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전이익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132]

129) 원유한, 2008『조선후기 화폐사』혜안
130) 한영달, 2002,『한국의 古錢』선출판
131)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8월 29일 "鑄錢時挾鑄, 自營門禁斷, 非但邊首, 許多匠手輩, 無不狼狽, 果不無呼冤之意, 箇箇直招"
132) 원유한은 주전이익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정리했다. 표 15)는 원유한이 작성한 내역에 연대기자료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해보았다.

표 15) 常平通寶의 鑄錢利益 변동표

연도	이득율	전거	비고
1679	50%	『승정원일기』 숙종 5년 9월 18일	“臣以各司鑄錢所費, 較其所剩, 則充却本銀五萬零數之外, 其贏剩, 又是五萬餘零”
1723	거의 없음	『승정원일기』 경종 3년 5월 2일	“所謂鑄錢, 其弊亦甚, 匠人料布, 所費浩繁, 畢竟所餘無多”
1727	20%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1월 5일	
1750	37.5%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11월 23일	生銅50냥(가격)주전 80냥
1752	60%	『비변사등록』 영조 28년 7월 1일	御營廳주관. 15만 냥으로 24만 냥을 주조. 1년4개월의 공기 동안 주전을 통해 산출한 이득율
1752	61%	『비변사등록』 영조 28년 7월 1일	訓練都監 주관. 1년 3개월 공기동안 주조하여 확보한 이득율
1772	20%	『영조실록』 영조 48년 9월 17일	100만 냥 주조 시 예상 이득율
1773	20%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9월 1일	“營錢殖利之法, 每十取二”
1777	20%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5월 23일	옛날에는 50%
1786	3%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1월 11일	“今者鑄錢所, 以百萬兩爲准, 餘剩當爲三萬兩云”
1793	20%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4월 29일	
1795	1%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7월 9일	“見今倭銅之出來者, 可鑄十餘萬兩, 較諸常銅之利條, 所縮不過千餘兩”
1798	20%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3월 16일	옛날엔 70% 이득, 雜鉛鐵을 많이 섞어 겨우 이득을 냄.
1825	10%	『승정원일기』 순조 25년 3월 5일	
1830	27%	『승정원일기』 순조 30년 1월 5일	

표 15)에서는 주전 시 투입된 재료와 주전 결과 생산한 동전량을

근거로 주전이익을 계산해보았다. 하지만 주전에 투입된 재료와 노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어 상기한 주전이익이 정확한 이익율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투입된 구리의 양과 산출한 동전량을 기록한 기사도 있어 사실 주전을 통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율을 말한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다. 위의 기사에서 말하는 '利'라는 것이 투입한 원재료로 만들 수 있는 동전의 양을 말할 경우 엄밀히 말해 주전 이익은 없고 주전 비용을 다 합산할 경우 오히려 주전을 할수록 손해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익율도 시기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때 마다 주전 후 이익을 계산할 때 제감하는 항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몇 년 사이에 이익율이 10%이상 차이나는 요인을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1795년 기사에서는 왜동으로 주전을 할 경우 1%의 주전이득이 난다고 보았지만 인접한 1793년과 1798년의 경우 이익율이 20%에 달하고 있지만 주전 이익에 큰 차이가 나타난 외적 요인에 큰 차이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전 이익에 내역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동전 이익을 계산하는 제감비용 어느 정도 포함했는지 여부가 주전이익율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합당할 것이다. 주전이익에 대한 기사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원료값 상승 때문에 이익의 폭이 줄어들었던 것은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에서는 동전을 주조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주전이익을 재정에 활용하려는 목적도 컸던 만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전이익의 감소는 반가운 현상은 아니었다. 특히 주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구리의 가격도 오르고 더불어 수입량도 줄고 주전비용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연료비마저도 점차 증가하여 주전이익을 내려는 정부의 계획은 점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상평통보를 최초로 발행하던 시기에는 『續大典』 戶典 國幣條에 규정된 것처럼 무게 2전5푼의 當二錢을 유통시키려고도 했지만 실제로는 1錢 2分 정도의 동전이 유통되다가 점차 1錢 정도의 무게로 고정되어 유통되었다.[133] 구리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구리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더 확보하려는 방법도 있었지만 민간에서는 구리함량이 적어 불량한 품질을 보인 동전은 사용하지 않고 시장에서 퇴장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동전의 품질을 낮춰 주전이득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은 정부에서 행할 수는 없었다. 특히 官署에서 거두는 세금은 私鑄造 되어 품질이 열악한 동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장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私鑄錢 된 동전은 高價의 구리 대신 값이 비교적 저렴한 금속을 첨가하여 주전이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두께와 크기 그리고 강도에서 정품 상평통보와 큰 차이가 나타났다. 물론 관에서 주조하는 상평통보에도 구리 이외의 금속인 錫(水錫, 豆錫), 鑞, 鉛 등을 섞고 있는데[134] 이러한 금속들도 조선에서 풍족하게 자급되었던 것은 아니어서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135] 대략적인 가격은 중국에서의 가격을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貴州에서 鉛가격이 옹정 5년(1727)에 100근당 銀으로 3냥 9전이었다. 雲南省에서 생산했던 구리 가격이

133) 『비변사등록』 숙종 5년(1679) 2월 19일 이 기록에 따르면 臺諫에서는 7斤의 동으로 1千文의 동전을 제조할 수 있다고 했으나 비변사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 10斤의 銅으로 1,050文의 동전을 제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동전 1文의 무게가 1錢 5分에 해당한다. 당초 대간에서 보고한 동전의 경우 1錢 1分에 해당된다. 당시 정확한 동전의 구리 함량이 기록된 내용이 없지만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2월 10일의 기록에 따르면 正銅이 10文 가운데 9文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즉, 구리의 함량이 약 90%정도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전 1문의 무게도 다른 鉛鐵이 섞인다고 하더라도 『續大典』에 기록된 무게만큼 중량이 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134) 『비변사등록』 영조 33년 3월 21일, 『鑄錢抄記』(장서각 디지털 아키이브 검색)

135)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8월 18일 "三軍門鑄錢方張, 必須多鑄, 然後當有實效, 故生銅含錫, 連爲鳩聚, 而含錫非燕貿, 則不可得矣" 주전에 필요한 금속 중에 일부(鉛) 함경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양은 매우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비변사등록』 영조 39년 12월 12일)

운송비를 제외하고 옹정 원년(1723)에 100근당 銀 9냥 2전이었던 것에 비해 鉛은 구리보다 약 48%정도 가격이 저렴했다.[136] 따라서 구리보다 저렴한 鉛을 수입하여 구리 대신 동전 주조에 다량 투입하면 주전이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 사주전을 행할 때에는 동전의 구리 함량을 속여 鉛과 같은 비교적 저렴한 금속을 다량 투입하여 이득을 극대화하였다.[137]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적 것으로 알려진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대신 조선에서는 惡貨가 良貨를 구축하는 대신 악화가 시장에서 사라져버리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관서에서 惡貨를 취급하지 않고 良貨만 선택하여 수납했던 이유가 가장 크다. 당시 전체 주전한 동전 가운데 官署에 축장되었던 동전이 80~90%가량이나 된다는 것은 화폐의 주요한 용도가 세금납부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관서에서 良貨만을 취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38] 따라서 점점 제작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전을 통해 주전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추가조치가 필요했다.

가장 확실한 주전이익 확보책은 銀錢比價를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고액전을 주전하자는 논의도 정조대에 나오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동전의 현물 가격에 따라 상평통보가 유통되던 당시 현실상 '當十錢'과 같은 고액전은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139] 주전을 통해 잉여전을 확보하는 문제는 주전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였지만[140] 실제 동

136) 『欽定大淸會典事例』 卷218 錢法四 「錢法直省辦銅鉛錫」
137)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6월 4일 "蓋鑄錢之時, 勿論公鑄私鑄, 匠手多詐, 必潛入鉛, 而偸用正銅, 故卽今錢貨無銅色, 而黑鉛多入, 可知"
138)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6월 12일 "一歲之中, 錢之出於民而入於公者, 不可勝計, 內而惠廳各軍門之所捧, 外而各營各鎭邑之所收, 已過屢十萬緡, 而京外之公用所散, 歲不過十分之一二矣, 自民而入者爲十之八九, 自公而散者爲十之一二, 故比年以來, 惠均二廳與各軍門之積錢, 不啻倍蓰"
139)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6월 12일
140)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7월 19일

전을 주조했을 경우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었다.[141] 따라서 구리를 구입해 동전을 제조하는 실질적인 과정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에서 구리의 가치를 표시하는 은과 동전의 비율을 조정하여 주전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동전을 제작하는 실질 비용은 구리 가격에 따라 거의 결정된다. 倭銅은 100근 당 가격이 銀으로 표시되는데 1679년의 경우 구리 1백 근의 수입가격이 약 20냥(銀)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구리 함량 70% 무게 1전 2푼의 동전을 제조한다고 가정한다면 은 1냥으로 구입한 동전으로 만들 수 있는 동전의 양은 구리 함량을 최대로 할 경우 533文에서 구리 함량을 낮추고 다른 저렴한 금속을 합금할 경우 최대 1,066文을 제조할 수 있다. 즉, 실질적인 동전의 가격을 고려하면 은 1냥 당 동전의 가격은 800~1,000문 정도로 민간에서 형성되어 거래되는 것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은 이러한 실질적인 가치대신 앞 절에서 언급한대로 국가에서 동전과 은의 교환비율을 강제로 은 1냥 당 전문 200文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있다.[142] 한 번 조정된 동전 가격은 훈련도감과 진휼청에서 동전과 米를 실제 교환해주는 공신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줬음에도 잠시 유지될 뿐 가격이 점점 더 하락하게 되었다. 동전가격에 대한 논의는 결국 은전비가가 1:400으로 재조정되었고[143] 이후 숙종 6년 2월에는 전문 800문이 은 1냥과 교환될 정도로 전가는 하락하고 있었다.[144] 당시 전문 가격이 800문 까지 내려간 이유는 지방에서 주조된 동전이 서울로 상납되어 적체되었고 동전의 양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동전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되는 원료이 가격을 근거로

141) 『승정원일기』 정조 9년 10월 7일 “致仁曰, 自前鑄錢, 害多而效小, 固難輕易擧行, 而然旣鑄之後, 必須盡具容入排日督成, 無少間斷, 然後庶可少弊”
142) 『승정원일기』 숙종 5년 2월 3일
143) 『승정원일기』 숙종 5년 9월 13일
144) 『숙종실록』 숙종 6년 2월 3일 “外方鑄錢, 而不能用, 故來積於京, 其價漸賤。 朝家以錢四百文, 與銀一兩同價, 而卽今市直則八百文錢, 與銀一兩同云”

동전가격을 추정해보면 은전비가가 1:800으로 숙종 6년대에 형성된 것은 실제 시장 가격이 원료의 값이 기반하여 조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실제 제작할 수 있는 동전과 유통되는 동전의 비율이 차이나는 만큼 조선정부에서 이윤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의 은전비율은 18세기 후반 은 1냥 당 300文정도가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였다. 이에 비해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으로 표시된 조선의 구리 가격은 10~20냥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가격도 조선에 유입된 뒤 유통과정을 거친 것으로 실상은 10냥(銀)대 초반에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 구리가격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45] 그렇다면 조선에서도 실질적인 제작단가를 반영한 은전비율은 은 1냥 당 800文 정도에서 가격비율이 정해져야 하지만 실제 조선에서 상평통보 발행 이후 결정된 은전비가는 아래의 표처럼 은과 동전의 비율이 1:200文 선에서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은전비율이 오르기는 했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145) 가장 확실한 왜동의 가격 추이는 Suzuki Yasuko의 2012년 저작에 정리된 Table 11의 VOC의 수입가격 시계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왜동의 수출가격은 막부에서 동결하였고 대마도 역시 막부의 정책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동을 수입하고 있었던 조선과 淸 그리고 네덜란드는 비슷한 가격으로 왜동을 본국으로 수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VOC의 구리 수입가격은 100근을 기준으로 1646년 8냥(銀)을 시작으로 1649년 11.6냥, 1665년에는 12.4냥, 1670년에는 12.7냥, 1673년에 12.35냥, 1703년 12.84냥으로 점점 오르기 시작해서 1750년부터는 18냥으로 고정되어 수출되고 있다. 즉 왜동의 수출가격은 17세기 이후 점차 상승하여 100근당 18냥 정도의 가격으로 고정되었는데 연대기 자료에 보이는 조선의 구리 가격도 가격 정보가 워낙 소략하기는 하지만 VOC자료와 비슷한 추세로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표 16) 常平通寶의 銀錢比價 변동표

연도	동전/은(1냥)	전거	비고
1679	2냥	『승정원일기』 숙종 5년 2월 3일	
1679	4냥	『승정원일기』 숙종 5년 9월 21일	
1682	2냥	『승정원일기』 숙종 8년 3월 29일	
1700	5냥	『승정원일기』 숙종 26년 2월 20일	2냥으로 조정 건의
1701	3냥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2월 10일	
1727	2냥	『승정원일기』 영조 3년 윤3월16일	李日章의 상소
1730	2냥	『승정원일기』 영조 6년 5월 30일	
1731	2냥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0월 1일	錢1냥=米3두
1731	2냥5전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1월 2일	
1742	1냥8-9전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4월17일	
1742	2냥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6월 19일	
1769	2냥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1월 16일	
1795	3냥 7전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10월 10일	
1798	3냥 3전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8월 22일	4냥 2~3전(時價)

비슷한 동전 제작 환경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는 조선과 달리 은전비가가 은 1냥 당 동전 800文 정도에서 은 1냥 당 동전의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사주조된 동전의 경우 동전 가격이 은을 기준으로 3,000文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북경에 한정시켜 寶泉·寶源局에서 정식으로 주조한 동전의 경우 동전의 실제 제작 가격에서 가격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의 大坂지역 은전비가도 중국과 비슷한 가격 등락폭을 보이고 있다. 은 1냥 당 동전의 가격이 낮게는 600文 정도에서 높게는 1,000문 이상까지 정해지고 있지만 조선과 같이 200文 수준까지 내려가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선에서는 중국·일본과 달리 동전의 가격이 은과 비

교해 현저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동전을 제작하는데 있어 비슷한 공정을 채택하고 원료도 일본으로부터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받는 시점에서 조선의 동전가격이 유독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차이는 것은 국가의 간섭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즉, 조선에서는 은 1냥으로 구매하여 실질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동전의 개수보다 훨씬 적게 민간에 내어주는 방식을 채택하여 그 나머지를 국가의 재정에 활용하고 있었다.

표 17) 18~19세기 大坂 지역 銀錢比價 변동표

연도	동전1貫 당 은의 비율(兩)	은1냥 당 동전의 양	연도	동전1貫 당 은의 비율(兩)	은1냥 당 동전의 양
1733	1.2	833.3333	1779	0.999	1001.001
1734	-	-	1780	0.976	1024.59
1735	-	-	1781	0.975	1025.641
1736	1.8	555.5556	1782	0.947	1055.966
1737	1.77	564.9718	1783	0.962	1039.501
1738	2.17	460.8295	1784	0.972	1028.807
1739	-	-	1785	0.975	1025.641
1740	-	-	1786	0.96	1041.667
1741	-	-	1787	0.921	1085.776
1742	1.58	632.9114	1788	0.976	1024.59
1743	-	-	1789	0.966	1035.197
1744	1.4	714.2857	1790	0.955	1047.12
1745	1.35	740.7407	1791	0.965	1036.269
1746	1.345	743.4944	1792	0.952	1050.42
1747	1.37	729.927	1793	0.954	1048.218
1748	-	-	1794	0.971	1029.866
1749	-	-	1795	0.965	1036.269
1750	1.372	728.863	1796	0.955	1047.12
1751	1.34	746.2687	1797	0.945	1058.201
1752	1.3	769.2308	1798	0.947	1055.966
1753	1.319	758.1501	1799	0.9	1111.111
1754	1.373	728.3321	1800	0.942	1061.571
1755	1.429	699.7901	1801	0.942	1061.571
1756	1.439	694.927	1802	0.935	1069.519
1757	1.412	708.2153	1803	0.935	1069.519
1758	1.408	710.2273	1804	0.918	1089.325
1759	1.485	673.4007	1805	0.888	1126.126
1760	1.54	649.3506	1806	0.901	1109.878
1761	1.536	651.0417	1807	0.91	1098.901

1762	1.535	651.4658	1808	0.931	1074.114
1763	1.534	651.8905	1809	0.928	1077.586
1764	1.54	649.3506	1810	0.931	1074.114
1765	1.538	650.1951	1811	0.925	1081.081
1766	1.528	654.4503	1812	0.927	1078.749
1767	1.531	653.1679	1813	0.924	1082.251
1768	1.538	650.1951	1814	0.908	1101.322
1769	1.487	672.495	1815	0.905	1104.972
1770	1.403	712.7584	1816	0.902	1108.647
1771	1.332	750.7508	1817	0.896	1116.071
1772	1.3	769.2308	1818	0.896	1116.071
1773	1.243	804.5052	1819	0.886	1128.668
1774	1.206	829.1874	1820	0.895	1117.318
1775	1.204	830.5648	1821	0.894	1118.568
1776	1.142	875.6567	1822	0.889	1124.859
1777	1.071	933.7068	1823	0.902	1108.647
1778	1.036	965.251	1824	-	-

＊ 典據: 新保博, 1978,『近世の物価と経済発展 : 前工業化社会への数量的接近』東洋経済新報社,, 711~713쪽

표 18) 淸代 銀錢比價 변동표

연도	북경 지역	절강 지역	연도	북경 지역	절강 지역
1723	800		1765	890	
1724	820		1766	910	
1725	854		1767	930	
1726	900		1768	950	
1727	925		1769	950	
1728	950		1770	950	
1729	980		1771	950	860
1730	950		1772	950	
1731	925		1773	950	
1732	900		1774	955	
1733	880		1775	960	
1734	860		1776	910	
1735	840		1777	890	
1736	820		1778	870	
1737	800		1779	850	
1738	755		1780	910	
1739	830		1781	925	900

1740	830		1782	940	
1741	830		1783	955	
1742	815		1784	970	
1743	800		1785	985	
1744	825		1786	1000	980
1745	850		1787	1020	
1746	825		1788	1040	
1747	850		1789	1060	
1748	775		1790	1080	
1749	790		1791	1100	
1750	805		1792	1120	1300
1751	820		1793	1140	
1752	840		1794	1150	
1753	850		1795	1150	1450
1754	850		1796	-	
1755	850		1797	-	1035
1756	850		1798	1090	
1757	850		1799	1033	1080
1758	850		1800	1070	1000
1759	850		1801	1041	900
1760	850		1802	997	
1761	825	785	1803	997	
1762	800		1804	920	
1763	850		1805	936	
1764	870		1806	963	

* 典據: 陳昭南, 1996,『雍正乾隆年間的銀錢比價變動, 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叢書』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서 유통된 동전 가격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훨씬 가격이 높았으므로 중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동전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다. 淸에서는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 1냥 당 동전 1,000文의 비율로 유통시켜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오고 있었고 실제 淸정부에서도 이러한 요청에 따라 은전비율을 고정시키고 있었다.[146] 따라서 조선에서는 유통되는 동전 1냥은 중국의 동전 7냥에 해당되니 淸의 동전이 들여온다면 큰 이익이 보장

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에 실제 淸人이 이익을 목적으로 淸錢을 조선에 들여와 유통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조정에 전해지기도 했다.[147] 이에 조선에서는 비교적 낮은 은가격으로 많은 동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청과 일본의 동전이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평통보가 아니면 공식거래에 있어 수납을 거부하면서 상평통보를 유일화폐로 유통시키고 있다. 즉, 조선에서는 은전비가를 실제와 다르게 조절하여 주전이득을 극대화시켰고 주변 인접국의 동전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조선의 통화권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146) 『皇朝經世文編』「通行錢法疏」

147)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2월 5일 "彼中則田畓與商賈稅, 專用銀貨, 而錢則只用於閭巷小小買賣, 且雍正, 別禁鍮器, 雖小鐘子, 若是鍮鐵, 則皆歸鑄錢, 故錢貨至賤, 我國一兩錢, 可貿彼中七兩, 人言朝鮮, 貿唐錢用之則好云矣"

제3장 廢錢論의 대두와 常平通寶의 재정효용

1. 동전의 공급감소와 廢錢 논의의 진전

1) 민간의 廢錢 논의: 星湖 李瀷의 廢錢論을 중심으로

1678년 이후, 常平通寶의 유통이 법제화되고 유통이 확대되면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고액의 토지거래, 군포와 전세 등의 일부가 동전으로 수납되는 등 동전 유통은 특정한 부분으로 한정되지 않고 확대되었다. 상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물건의 시세를 동전으로 표시하는 등 동전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유통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1]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倭銅의 양이 줄어들면서 주전량이 감소했고, 지역과 관서간 유통도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백성들은 '錢荒'을 겪게 되었다. 이에 18세기 초반에 동전은 이득 보다는 폐단이 많다는 이유로 폐기해야 한다는 '廢錢論'이 民과 官에서 등장하고 있다. 민간에서 일어난 폐전론을 제기한 대표적인 학자로 星湖 李翼(1681~1763)을 들 수 있는데 이익은 지금의 安山지역에서 당시의 세태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을 그의 저서에 많이 남기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당대 동전에 대한 민간의 인식을 星湖 李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廢錢論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익의 화폐관을 한마디로 집약하자면 '폐전론'으로 줄일 수 있다. 이익이 한 때는 고액환 유통안도 주장했는데 이 방안도 결국은 동전을 폐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결론적으로는 동전을 폐지하고 현물을 사용할 것을 주장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폐단이 있다고 해서 동

1) 『咫聞日記』(古4254-20)坤, 壬辰(1713) 2월 24일, 癸巳(1713) 4월 25일

전의 존재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동전의 편리한 기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은 동전의 기능에 대한 성호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천하는 넓고 생산되는 재물은 각각 다르니 그 형세가 유통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전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입니다.[2)]

성호 이익은 동전이 휴대하기가 편리하고 또 천하는 매우 넓기 때문에 동전을 통해 원거리 교환도 편리하게 매개할 수 있다고 동전 자체의 편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거리 거래를 매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전이 사용될 여지는 적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현실적으로 조선은 중국과 달리 지역이 협소하고 해로 및 수로교통이 편리하여 재화의 운반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동전을 교환하기 보다는 직접 현물을 이동해도 큰 장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3)]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전은 크게 필요치 않았고 동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도적과 탐욕 많은 吏胥輩 그리고 掊克者들로 간주하였다.[4)] 동전은 교환매개라는 순기능보다는 실제 현실에서는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는데 사용되고 사치하는데 허비하여 역기능만 가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동전이 유통되면서 백성이 더욱 곤궁해졌다. 내가 장시를 돌아보니 마을마다 사람들이 동전꿰미를 차고 나갔다가 술에 취해 서로 붙잡고 돌아온다. 이로써 재화의 허비함이 지극히 심하다. 동전이 있는 자는 반드시 원근지방에서 물건을 사오고 동서에서 마음껏 받들되 오직 사치스럽지

2)『藿憂錄』,「錢論」“天下之廣 而産財各異 其勢不能不轉移流通 此錢所以作”
3)『藿憂錄』,「錢論」
4)『星湖塞說』人事門,「米賤傷農」

못할까 두려워 하다가 마침내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이를 미루어 본다하더라도 동전은 백가지가 해롭고 한 가지도 이로운 것이 없다.[5]

위의 예문처럼 이익은 동전이 순기능 보다는 편리한 휴대성 때문에 나타난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내었고 이러한 인식은 동전을 폐기하여 폐단을 없애자는 폐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익이 생각한 폐전의 방법은 동전의 '輕便'기능을 없애 사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동전은 저절로 유통에서 퇴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6] 하지만 성호 이익은 다양한 폐단이 있으니 동전을 한시라도 빨리 폐지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동전의 사용을 갑자기 금지하면 서울과 지방의 각 관서와 부호들의 집에 퇴장되어 있는 다량의 동전이 무용화되고 그 타격과 파문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동전 사용을 서서히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7] 또한 이익은 동전뿐 만 아니라 조선 초기에도 유통되었던 저화와 같은 지폐의 유통에도 반대하고 있다. 鄭介夫의 예[8]를 들면서 원나라의 寶鈔와 같은 지폐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고 위조가 쉬운 명목상 돈에 불과하니 동전보다 더욱 유통시키지 말아야 할 통화로 간주하고 있다.[9] 즉, 인위적으로 만든 화폐를 폐지하고 무겁고 옮기기 힘든 현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의 폐전론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상업전반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도 확장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정기시장의 개시일수

---

5) 『星湖塞說』 萬物門, 「錢鈔會子」

6) 동전 50문을 합주하여 當六十錢을 만들어 유통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藿憂錄』, 「錢論」)

7) 『藿憂錄』, 「錢論」

8) 鄭介夫는 中統鈔는 실제 동전으로 2퍼밀 밖에 교환해주지 못할 정도로 과대 발행되어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정개부는 중통초의 유통에 반대하고 대신 동전의 유통에는 찬성하고 있다. 지폐유통에는 반대하고 현물가치가 있는 동전의 유통에는 찬성한다는 측면에서 이익의 전면적인 폐전론과 차이가 있다.(叶世昌, 『中國貨幣理論史』, 廈門大學出版, 2002)

9) 『星湖塞說』 萬物門, 「錢鈔會子」

를 줄이자는 논의에 이르기도 했다. 정기시장의 기능을 억제하면 상업에 종사하기 위해 離農했던 농민이 다시 농사에 專心하게 되고 소비 사치성향 사기풍조 및 도적행위가 줄어들게 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재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적의 존재도 궁극적으로는 동전 때문에 생긴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의 폐전론은 궁극적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한에서만 재화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과 의미가 맞닿는다고 볼 수 있다.

> 무릇 땅에서 생산되어 서민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을 財貨라고 한다. 재화는 衣食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그 다음이 여러 가지 용도의 器物이나 藥物 따위 인데 이 외에는 소용되는 것이 없다.[10]

위의 예문처럼 星湖 李瀷은 상업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만들어 내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이었고, 같은 맥락에서 廢錢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역을 매개하는 동전을 '保民'하기 위해 폐기한다는 것은 조선후기의 상공업발달과 화폐 사이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당시에는 1678년 이후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확산되었고 동전의 유통은 토지매매문기의 분석을 통해 1720년대에는 적어도 동전이 토지거래에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혀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頤齋亂藁』에서 확인 되는 것처럼 지방에서도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할 경우 동전으로 숙박과 식사 대금을 지불할 정도였다.[11] 또한 충청도에서 능참봉으로 宣陵을 오갔던 金斗璧이 남긴 기록[12]을 통해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도

---

10) 『藿憂錄』, 「錢論」 "凡産於地 益於民曰財 財莫大於衣食 其次器用藥物之類 外此無所用之也"

11) 정수환, 앞의 논문, 2009

12) 『咫文日記』(古4254-20)

동전이 유통매개체 혹은 가치표시수단으로 명확하게 기능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기반으로 화폐 주전론자들은 錢貨가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차원에서도 錢貨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13] 이를 바탕으로 동전의 편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동전의 유통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당시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와 대비되어 이익과 같은 폐전론자들의 의견은 더욱 근시안적인 안정책으로 비춰지곤 했다.

磻溪 柳馨遠(1622～1673)도 '錢貨'는 나라의 財用을 돕고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所以'[14]라고 언급하며 화폐 통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유형원과 같은 화폐관은 비슷한 시기 혹은 이후 시기의 다른 학자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燕巖 朴趾源(1737～1805)이나 茶山 丁若鏞(1762～1836)의 저작에서도 화폐문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화폐는 교역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15]이란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상기한 학자들은 상업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생각을 표현하며 당시 변화하는 시세에 능동적으로 변화를 포용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실학자'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도 성호 이익을 비롯한 폐전론자들의 논의는 반봉건적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당한 변명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성호 이익은 장시를 통한 교역에도 반대하며 교역의 수단이었던 동전유통에도 반대하여 상업이라는 자체에 반대하고 안정적인 농업사회를 유지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13) 대표적으로 禹禎圭가 正祖연간에 주장한「錢貨變通之議」가 있다. (『承政院日記』 정조 12년 6월 12일)
14) 『磻溪隧錄』 권8, 田制後錄攷說 下, 「本國錢貨說」
15) 『燕巖集』권2, ,「賀金右相履素書」, 別紙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經世致用'학파로 구분되었던 이익은 왜 유독 화폐문제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필요성을 뒤로하고 폐단을 앞세워 폐전을 주장했던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16] 과연 이익은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론을 고집하여 폐전론을 주장한 것인지 혹은 이익이 주장하였던 것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근대사회의 화폐가 반드시 상품교환의 매개체라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에 따라 유통되고 있었다면 조선후기에 유통되었던 상평통보는 어떤 목적에 따라 유통되었는지 유통을 촉진시켰던 원리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동전이 다양한 용도에 따라 유통되었다면 동전의 폐단을 비판할 때에 비판하는 대상도 그만큼 세분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동전의 사용을 금지하자고 해서 무조건 반동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판의 대상을 좀 더 세분화시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절에서는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던 성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익과 같은 폐전론자들이 없애려고 했던 동전의 폐단은 무엇인지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조선후기 화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평통보는 주로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점차 유통이 확대되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화폐가 사용되는 지역적인 범위가 확대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성과에서 이러한 동전유통의 확대는 어느 한순간에 나타

16) 이러한 문제의식은 霞谷 鄭齊斗의 廢錢論에서도 비슷하게 표출되고 있다.(한예원, 「霞谷 鄭齊斗의 화폐관을 통해본 經世사상」, 『陽明學』, 2009) 경세론에서 주자학에 비해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던 양명학에서 실용적인 필요성이 높았던 동전의 폐기를 주장한 것에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정제두는 양명학적 입장에서 이상적 군왕정치의 모델을 제시했고 동전유통의 해악은 이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폐전을 주장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난 것으로 보지 않고 점증적으로 상업이 발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예로 동전이 활발하게 유통되기 이전에 이미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麤布를 들고 있다. 전혀 가치가 담보되지 않은 추포가 명목화폐처럼 시중에서 유통될 정도로 상업이 발달해 있었다고 이해한 것이다.[17] 추포의 유통을 통해 동전유통을 확신할 수 있었고 이후 동전이 보급된 뒤에는 야채를 파는 노파나 소금을 파는 사람까지도 곡물보다는 동전을 요구하는 모습[18]에서 동전이 유통될 수 있었던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고 간주하였다. 이런 모습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19] 조선후기 화폐는 전국적으로 상품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활발하게 유통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동전이 상품거래가 확대되면서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했지만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촉매제의 역할까지 한 것으로 보았다.[20] 즉, 화폐의 등장과 유통의 확대는 상품화폐경제 발달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지표로 보고, 동전의 존재를 상업이 발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동전이 상업에 끼친 영향이 지대한 상황에서 동전을 폐지하자고 나서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동전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기록들과 동시에 동전이 제한적으로 유통되는 모습, 錢荒이 발생하여 동전유통이 활

17) 송재선의 연구(송재선, 「16世紀 綿布의 貨幣機能」, 『邊太燮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삼영사, 1985)에서 추포가 중종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유현재, 2006, 「16세기 추포유통과 그 성격」, 『한국사론』5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당시 유통되었던 추포는 사용가치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유통되었고 지역적으로도 유통되는 한계가 있어 추포가 명목화폐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했다는 송재선의 설명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18) 『肅宗實錄』 숙종 44년 윤8월 3일

19) 『承政院日記』 영조 3년 9월 12일 “當初始造之後, 用之甚輕便, 故始則行用於京中矣. 今則京外通用, 南則濟州, 北則會寧, 皆用之”

20) 김대길, 『조선후기 場市연구』, 국학자료원, 1997, 55쪽.

발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교환경제의 매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모습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계절적 차이를 두고 동전의 가치가 은이나 현물과 같은 다른 종류의 화폐보다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였고,[21] 특히 활발하게 화폐가 유통되었다고 보는 시기에도 동전 유통의 지역과 계절에 따라 유통되는 양과 속도에 있어서 일정하지 않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22] 그렇다면 기록에 나타나는 동전의 상반된 유통 현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상기한 동전유통의 특징을 통해서 화폐가 유통될 수 있었던 다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후기 유통되었던 금속화폐의 기능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적인 용도 외에 公的인 용도로 동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라는 점이다. 그동안 동전의 용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던 분야는 잉여생산물을 시장에 내놓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동전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라는 지극히 私的이고 經濟的인 관점에 치중되었다.[23] 하지만 동전을 주조하는 것도 조정에서 주도하였고 동전으로 조세를 거두는 비율이 낮지 않아 동전 유통권에 있어서 공적영역의 비중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이다. 결론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조선후기의 동전 유통은 민간에서의 필요성 못지않게 국가차원에서 필요성을 느껴 유통시킨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동전의 기능은 주로 거래를 매개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추포경제체제로부터 동전경제체제로 넘어

---

21) 『備邊司謄錄』 숙종 25년 5월 17일

22) 특히 지역적 차이를 기록한 내용으로 남공철은 서울에서는 돈으로 살아가고 지방에서는 곡식으로 살아간다는 내용을 예로 들 수 있다.(이헌창, 「2장 금속화폐시대의 돈」,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주』, 2006에서 재인용)

23) 원유한의 연구에서도 동전의 공적 사용에 대해 지적하고는 있지만 동전의 기본 성격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조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온 것으로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기는 하나[24] 실상 동전이 처음으로 민간의 필요성 때문에 전국가적으로 제조되고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전이 주조·유통될 수 있었던 가장 실질적인 원인 중 하나는 17세기 전반에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25] 당시 조선에서는 동전을 제조하면서 들어가는 제반비용보다 생산되는 동전의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26] 동전을 관서에서 제조하면서 유통시키면 동전의 명목가격에 해당하는 이득을 축적할 수 있었고[27] 이를 기반으로 부족한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또한 동전을 거두어 축장하고 있으면서 추수기에 비교적 곡가가 낮은 것을 틈타 시세차익도 노릴 수도 있었다. 따라서 관서에서 동전을 제조하고 유통시켰던 의도는 단순히 백성들의 경제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의미는 국가의 이득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 유통되었던 화폐가 민간부문에서 유통된 부분의 비중이 큰지 아니면 공적인 부분에서 유통된 부분의 비중이 큰지 여부는 당시의 관찬기록에만 의지해 살펴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전에 강조되어 왔던 민간부분의 화폐수요 만큼 관서나 軍門에서 유통되었던 화폐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군문과 관서에 축장된 銅錢量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28] 또한 당시 동전이 부족해지는

---

24) 방기중, 「17·18세기 前半 金納租稅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45, 1984

25) 『仁祖實錄』 인조3년 10월 27일

26) 동전 주조 이익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원유한의 연구가 있다.(원유한, 『조선후기 화폐사연구』, 1975)

27) 『備邊司謄錄』 정조 22년 5월 25일 '大抵今之鑄錢費 十而取十二' 이 기록을 바탕으로 원유한은 동전을 제조하면서 20%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동전이 주전이익을 보장해주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른 기록에서는 오히려 주전이익을 취하지 못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承政院日記』 고종 3년 11월 6일 "蓋鑄錢 古則費十取九 挽近十而取十二")

28) 명확한 비중은 현재 발견된 자료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당시 기록들을 통하여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이헌창, 「1678~1865년간 貨幣量과 貨幣價値의 推移」, 『경제사학』27, 1999, 40쪽.); 『備邊司謄錄』 정조 6년 11월 7일 "錢貨旣非水火耗失者 而近來京外 錢荒忒甚 此專由於內而軍

‘錢荒’이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전의 양을 증가시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關西에서 축장하고 있는 동전의 양을 줄여 민간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개선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吳達運(1700~1747)의 언급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며 동전을 더 주조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전의 공적인 수요가 당시 동전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 국가에서 돈으로 거두어들이고 관리들이 돈을 요구하기에 보통 매매할 때에 베는 천하고 돈은 귀하며 말과 소는 버리고 돈을 취하여 이처럼 비등하는 단서가 있게 된 것이다. 만약 관가에서 돈을 요구하는 규례가 누그러지면 백성들이 돈을 탐할 필요도 없고 시가는 반드시 말・소・베로 유통될 것이다. 어찌 이 때문에 돈을 더 주조할 것이 있겠는가…….[29]

즉, 오달운은 동전의 대부분을 관서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서에서 거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동전 부족사태가 벌어졌던 것이지 실제 官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시중에 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전이 관서에 다수 축장되어 있고 조세를 돈으로 거두게 되면서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별도로 쌀을 내어 돈을 구해야했다.[30] 이런 상황아래에서 ‘錢荒’으로 동전이 부족해지면 백성들은 이전보다 동전을 구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고 ‘錢荒’ 때문에 토지를 방매하기도 하였다.[31]

門 外而營邑 俱爲藏置不散之致”; 禹禎圭, 『國譯 經濟野言』, 「錢貨變通之議」, 을유문화사, 1973.(민간에서 들어오는 열의 8~9 정도가 관가에 쌓이고 나머지 1~2정도만 다시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정규의 이러한 언급은 『日省錄』 정조 12년 8월 18일에 다시 기록되어 있다.)

29) 國譯海錦集發刊委員會, 1993 『國譯 海錦集』, 「加鑄錢便否議」

3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편, 『公車文叢書』4, 1992, 1727년 1월 「右通禮 吳命義上疏」 “惟軍役戶役田結雜色科歛柴草雉鷄之屬 率多計價徵錢故 民困於徵求之 煩催督之急 不得不賤賣穀 而貴買錢 而供其征役焉”

특히 조세를 동전으로 거두면서 문제가 커지기도 했다. 쌀값이 치솟을 때에는 쌀값에 따라 계산을 하고 추수기에 곡식의 가격이 떨어지고 동전의 가격이 귀해질 때에는 동전 값을 기준으로 쌀을 거두어 이윤을 극대화 시키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시세차익을 통해 이윤율이 다섯 배까지 치솟아 동전을 많이 축장하고 있던 관서와 軍門에서 얻는 이득이 상당히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2] 백성들은 동전이 시중에 부족하더라도 동전으로 세금의 일부를 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물을 비싼 값에 동전과 바꾸어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또한 흉년이 들거나 풍년이 들 경우, 계절적으로는 봄과 가을에 곡가와 돈의 가격이 더 크게 변동하고 있었다. 동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나마 유통되었던 동전을 관서나 富民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동전의 대부분을 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절에 따라 '米貴錢賤 '이나 '米賤錢貴'현상은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都農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상업이 가장 활발했던 도성에서 조차 쌀이 귀해 쌀값이 폭등하여 돈이 천해지거나 반대로 계절차이를 두고 돈이 귀해져서 쌀값이 내려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었다.[33] 즉, 풍년이나 흉년이 들 경우 쌀값의 등폭은 더욱 커지고 있어 동전과 쌀값 간의 상관관계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물을 가지고 있었던 富民들이나 재정의 확충을 꾀했던 관서에서는 시세차익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아래의 예문도 위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31) 土地賣買明文(규 430293)

32) 『承政院日記』 숙종 24년 1월 19일 "米貴錢賤之時 給利者 以米從市直計給之 及其秋成之後 米賤錢貴 而又從其秋時市直求償 故其利不啻倍蓰 以此富者益富 貧者益貧 行錢以來弊莫甚於此者也"

33) 京中의 米價가 변동하는 기록은 제시한 기록 외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日省錄』 정조 5년 6월 29일)

> 富民은 錢貨를 쌓아 놓고 돈의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貧民은 1년에 수확하는 곡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公稅를 챙겨서 낼 때가 되면 부득이 헐값으로 내다팔 수밖에 없었으며 조금 풍년이 들었다는 해에도 벼 1석의 값으로 돈 1냥도 받지 못합니다.[34]

위에서 보는 것처럼 시세 차익으로 생기는 이득을 얻기 위해 富民들은 돈을 축장하여 전황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부민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구조는 다름이 아닌 동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35] 즉, 동전은 현물을 교환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어 가격이 형성되기보다 조세로 상납되는 시기에 공표된 공정가를 기준으로 최고 5~6배 정도 상향되어 민간에서 거래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전은 매개체가 아닌 동전 자체가 가치를 띠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이러한 동전가의 상승은 동전의 원료가 되는 동의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전의 양이 부족한 측면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동전자체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특정 시기가 되면 이득이 보장되었던 만큼 富民들은 여력이 있을 때 동전을 축장하여 이득을 확보하려 했고 백성들은 '錢荒'이 빈번한 만큼 동전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가능하다. 따라서 官署에서 동전납부를 통해 이득을 과도하게 취하고 백성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서 관부의 牟利행위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36] 만약 동전의 유통이 민간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동전의 사용에 대한 비중이 세금과 관련된 公的영역보다 사적인 영역의 비중이 높았다면 화폐로 이득 내는 것을 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

34) 『備邊司謄錄』 영조 3년 5월 11일

35) 전체적인 동전납부 비율은 크지 않으나 항시적인 동전납부비율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동전을 구하기 힘든 시기에도 동전을 구하여 납부하기 위해 쌀을 팔아야 했다.

36) 國譯海錦集發刊委員會, 『國譯 海錦集』, 「加鑄錢便否議」, 1993

정리하자면, 상평통보는 국가에서 주도하여 주조하고 유통시켜 민간에서 교환수단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관에서 세금으로 동전을 일정부분 거두게 되면서 동전만으로 이득이 보장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특정시기가 되면 동전의 가치는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동전부족을 가속화시켜 백성들의 부담은 점차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星湖 李瀷이 살고 있었던 시기에 동전은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었지만 공적인 용도가 강하게 간섭하여 시장의 원리대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백성들은 계절에 따라 등락하는 동전을 구하기 위해 공정된 가격보다 많은 현물을 내놓고 부자들과 관서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2) 純木令의 실시

일본의 구리 생산이 17세기 중반이후 급증하면서 조선에서도 일본으로부터 구리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었다. 1697년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구리의 양이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조선과 무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대마도로부터 수입한 구리는 1,436,000근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일본에서 생산되는 구리의 양도 점차 줄어들었고 1698년부터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수출하는 구리의 양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699년에는 조선에서 수입하는 구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 1,000근 정도의 구리가 대마도를 통해 수입될 뿐이었다. 동전과 무기의 원료가 되는 구리수입이 줄어들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은 주전사업이었다. 당시의 무기제조를 위해 다량의 구리가 필요하기도 했다. 양란 이후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었던 화

포도 상당량의 구리가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화포의 경우 매년 일정량을 제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구리의 수입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무기제조에 큰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鑄錢사업은 구리의 양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주전을 줄이거나 멈추기도 했지만 매년 일정량을 주전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구리의 수입량 감소는 큰 타격이었다.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구리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주전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었고 주전량이 부족했던 만큼 매년 동전이 부족한 '錢荒'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었다. 錢荒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었는데 일단 백성들은 세금으로 동전을 일정 부분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했으므로 동전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전을 구하기 위해 家産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전체적인 동전의 양이 줄어들면서 세납을 하던 시기에 백성들과 관 모두 동전을 유통시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關西에서도 동전을 이익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동전과 현물로 교대로 거두면서 백성들에게 고충을 안기고 있었다. 근거 관의 입장에서도 주전재료의 부족은 주전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주전에 대한 외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관에서도 동전을 주조하는 것만으로 주조한 동전 만큼 재정의 확장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었다. 동전을 유통하면서 백성들로부터 표면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동전의 현물 교환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후하게 치러주고 있었다. 특히 동전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대신 현물로 작미하는 방식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민과 관에서 모두 동전을 관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모두 손해가 나타나면서 관에서도 동전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이 유지되지 못했다. 이에 표면적으로는 錢荒이 확산되면서 조

정에서는 廢錢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관에서 는 재정문제도 포함됨)백성들에게 동전 사용이 부담되었던 것은 동전이 공적용도로 사용되면서 일정부분 백성들에게 강제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부족한 동전을 세납 시기에 반드시 구해야 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익을 꾀하는 富商들이나 모리배들에게는 동전을 축장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동전에 대한 반동적인 인식이 민간에서부터 증가하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백성들의 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假傳體 소설의 하나이다. 돈을 의인화 하여 당시 백성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일단면을 확인 할 수 있다.[37]

> 저 常氏의 도는 어떠한가? 한 번 나가 행해지면 그 공은 천하의 선비들이 그 도를 잊도록 하며 백성들은 그 본업을 잊게 한다.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자로 하여금 어진 인재를 고하지 않고 오직 常氏를 먼저 하게 하고 사대부들은 여럿이 모여 仁義禮樂의 說을 강론하지 않고 오직 常氏에 대해서만 묻게 만들고, 혹 한 技藝를 부지런히 하여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자 또한 정신이 피폐하고 생각이 고갈되도록 오직 상시와 사귀기만을 기필하게 하는 비록 성인이 사람을 교화함도 이 같이 넓지는 않다.[38]

위의 인용문은 상평통보가 유통되던 당시 상평통보를 의인화하여 ‘傳’의 형태로 서술한 ‘常氏宗族傳’인데 동전을 의인화한 ‘常氏’는 선비들도 도를 잊게 할 정도로 이익을 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간의 화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동전은 부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굳어지면서 동전을 단순히 가치를 표시해

---

37) 假傳體 소설의 전승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 했다.(이홍식, 2004, 「沆瀣 洪吉周의『常氏宗族傳』연구 －孔方傳類 假傳의 전통과 연계하여－」 『어문연구』32권 3호)

38) 洪吉周, 『峴首甲藁』 (박무영 역, 2006, 태학사) 「常氏宗族傳」 “彼常氏之道, 何如哉. 一出而行, 其功使天下爲士, 忘其道, 爲民者, 忘其業, 治天下國家, 不求賢材, 而唯常氏是先, 士大夫羣居, 不講仁義禮之說, 而唯常氏是問, 其或勤一藝而立名, 亦敝神竭慮, 唯求交常氏是期, 雖聖人之化人, 未如是之薄也”

주고 유통을 매개하는 수단이 아닌 謀利의 수단이란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전이 없어지면 윤리가 바로서고 農本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나타나게 된다.

동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폐전론으로 이어졌는데 英祖는 폐전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국가에서는 세금을 쌀과 목면 그리고 동전으로 거두고 있었는데 동전으로 거두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료수급문제를 비롯하여 주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축장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나면서 동전유통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점차 민간에서는 동전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동전을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시가보다 훨씬 많은 현물로 동전과 교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조는 동전유통의 폐단을 제거하자는 표면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不罷不鑄'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 동전은 점차 더 귀해질 수밖에 없었다.[39] 영조가 꾀했던 결과는 동전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사용을 금지시킨다면 동전대신 현물이 사용되면서 동전이 귀한 폐단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순목령 이전까지 국가에서는 세금의 일부를 동전으로 강제하였던 만큼 백성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일정한 시기에[40] 동전을 구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따라서 동전을 구하기 위해 백성들은 심한 경우 재산을 탕진하기도 했다. 쌀의 작황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가격보다 훨씬 값이 올라 동전 1냥의 값이 米10斗에 이르기도 했다.[41] 백성 재산이 없어지고 지탱하지 못하는 이유를 동전이 귀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차라리 大同稅와 軍布 그리고 노비의 貢木을 모두 동전이 아닌 면포로 통일하여 거두

39) 『승정원일기』 영조 5년 1월 5일 "今則聖意不在加鑄, 而不鑄, 又不罷, 則亦必有使錢賤之道, 然後民可堪矣。今富民雖有錢, 不得給債, 則當以錢易米穀而給債, 錢必賤矣"

40) 세금의 납부시기는 지역과 세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田稅의 경우 호서지방의 경우 3월 30일이 기한이었고 호남지방은 4월 30일, 영남 지방은 5월 10일이었다. (『受敎輯錄』 戶典 (한국역사연구회, 2001, 청년사)

41) 『비변사등록』 영조 4년 9월 19일

는 것이 당시 나타난 폐단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에 영조는 돈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문제를 해결학 위해서는 동전을 더 제조해야 하는데 동전을 필요한 만큼 주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전을 더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더 민간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선혜청과 호조에는 전문이 적고 군문에 전문이 많이 축장되어 있다는 보고는 당시 동전유통이 재정기관이었던 宣惠廳이나 戶曹가 아닌 군문에만 큰 이득을 안겨주고 있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었다.[42] 따라서 영조의 입장에서는 동전 사용으로 오히려 왜곡 되었던 재정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한 논의 끝에 나온 정책이 바로 純木令이었다.

순목령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 대책으로 세금을 동전이 아닌 순전히 면포로만 거두려는 법령이었다. 순목령은 영조의 결단에 따라 영조 3년, 5년 1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첫 번째 순목령은 4개월, 두 번째 순목령은 약 1년, 세 번째는 1년 4개월에 걸쳐 유지되었다. 세 번째 순목령이 가장 오래 유지되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순목령을 철회하고 있다. 첫번째 순목령은 영조 3년 5월 11일에 실시되어 약 4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던 순목령은 9월 21일에 영조가 스스론 순목령을 거두면서 폐지되었다. 순목령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기도 했기 때문인데 목화의 작황이 좋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백성들은 순목령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연도의 세금을 이미 동전으로 받은 곳도 있었고 순목령을 너무 급박하게 시행하여 오히려 불편함이 생기게 되니 5월에 실시한 순목령을 거두고 목화나 곡식의 작황이 결정되는 가을부터 순목령을 시행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 길이라는 의견이 나타나게 되었다.[43] 이에 영조는 호조판서의 건의

42) 『비변사등록』 영조 3년 5월 11일
43) 『비변사등록』 영조 3년 5월 27일

를 기반으로 같은 해 9월 21일 순목령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동전으로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맞지만 동전을 일체 거부하고 목면으로만 세금을 통일하는 것도 민간에서는 큰 문제를 끼쳤기 때문이다.[44]

영조는 1차 순목령을 스스로 철폐하였지만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2차 순목령을 영조 5년에 실시하였다. 1차 순목령으로 조정에서는 목면과 동전을 세금으로 상황에 따라 바치도록 방식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동전만을 강제할 경우 당시에는 아직 충분한 양의 동전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전을 세금으로 바치기 위해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했다. 따라서 동전을 더 주조하여 충분한 양의 동전을 제조하자는 의견과 세금으로 내는 수단 중 동전을 없애고 현물로 내게 하자는 두 가지 방식의 해결책이 등장하였다.[45] 이때 尹淳은 동전을 제조하는 것보다 동전으로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폐단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윤순의 이러한 제안은 당시 쌀과 목면이 풍작을 이루어 영조 3년 1차 순목령이 실시되었던 시기와 달리 목면과 쌀이 비교적 풍부하였으므로 영조의 2차 순목령으로 이어졌다. 2차 순목령이 나타나게 된 배경도 역시 1차 순목령의 배경과 같은 錢荒때문이었다. 1678년 이후 주전을 실시하지 않아 새로 유입되는 동전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세금으로 바치기 위해 동전을 얻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조세의 납부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통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지만 다시 다음 해의 조세를 바치는 수량만큼 지방 곳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물류 유통은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매년 주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세금을 바치는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순목령이 요구되었다. 영조는

44) 『비변사등록』 영조 3년 9월 15일
45) 『비변사등록』 영조 5년 10월 24일

이러한 환경을 인식하였지만 목면을 구하지 못한 폐단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순목령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2차 순목령도 목면의 가격이 비싸지고 특히 목화가 생산되지 않는 곳에서 목면가의 등귀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2차 순목령도 실시한지 1년이 안된 영조 6년 9월 2일에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46] 이후 동전과 목면을 상황에 따라 반씩 바치도록 하는 절충안이 시행되기도 했다.[47]

이후 영조는 30년 정도 정지되었던 주전을 1731년(영조 7)에 다시 재개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동전이 부족하여 백성들은 2차 순목령이 폐지된 이후부터 고충을 겪고 있었다. 이에 새로 新錢을 주조하여 시중에 유통시켰지만 錢荒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돈은 귀하고 특히 쌀의 가격이 천하여 돈을 세금납부수단으로 고정시킬 경우 백성들은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특히 영조는 백성들 대부분이 돈의 사용을 편리하게 여기고 있고 동전이 편리한 기능을 시장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경제적 배경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동전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동전을 사용하면서 '奸僞'가 심해지고 있어 부득이하게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영조는 근본적으로 동전의 양을 증가시켜 백성들이 수월하게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동전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을 내리고 있다. 3차 순목령도 영조 10년에 실시되었지만 역시 1년 4개월 이후에 폐지되었다. 1, 2차 순목령과 달리 30여 년 동안 금지되었던 주전이 시작되어 동전의 공급이 재개되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의 동전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동전부족 때문에 민간에서는 문제점이 지속되었고 영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3차 순목령을 실시했던 것이다. 영조의 순목령

46) 『비변사등록』 영조 6년 9월 2일
47) 『비변사등록』 영조 7년 1월 16일

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단순히 동전의 사용을 거부한 반시장적 혹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동전이 내외부의 요인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사태까지 이르기도 했다. 결국 영조는 순목령을 통해 현실적으로 동전이 부족했던 당시 상황을 타개하려 했던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동전을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하기에는 동전이 가지고 있는 민간에서의 기능 못지않게 재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흉년이 들어 진휼할 자원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동전을 주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두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전을 주조하기 위한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고 동전의 양적인 확대가 수요만큼 이뤄지지 않아 불편함이 생길 수 있었지만 동전을 시장에서 그리고 재정책의 수단에서 순목령만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흐름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선후기에 주조된 동전은 민간에서도 유통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상 동전의 유통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국가의 公的인 용도로 유통된 동전이 더 많고 또한 공적인 동전 사용이 동전의 유통 양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48] 물론 민간에 유통된 동전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軍門이나 관서에서 공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양이 8할이나 되었고 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꾀하고 있었다.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私的인 동전 유통은 그 비중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公的으로 활용되었던 동전이 해마다 조세를 납부할 때에 수량이 모자랐고 이러한 '錢貴'현상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동전 때문에 편리

48) 1782(정조 6)년 말 서울의 중앙관청 재고가 136만 냥이고 동년 7월 지방관청이 보유한 동전이 470만 냥이었는데 당시 동전 총량이 700-800만 냥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서울과 지방의 관청이 축장하고 있는 동전이 장부상으로는 전체의 8할이나 되고 있다(『經濟野言』「錢貨變通之議」).

함 보다는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시중에 화폐경제를 매개할 동전은 1~2할 정도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동전이 백성들에게 편리한 교환수단으로 기능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더구나 동전을 축장하여 이득을 얻는 富民들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백성들은 필요한 동전을 원하는 대로 求得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이런 상황은 '錢荒'과 함께 지속되었다.

상기한 문제점은 '錢荒'과 함께 가속화 되어 민간에서 폐단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만약에 돈을 더 많이 주조하여 민간에 돈을 풍부하게 하더라도 동전유통은 활발하게 유지될 수 없는 요인이 있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1678년 이후 유통된 常平通寶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시 활발하게 진행된 교환경제를 매개할 수단은 物品화폐에서 麤布 그리고 동전과 같은 명목화폐로 변화되었고 동전은 이전에 유통되었던 교환수단을 완전히 대체하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전이 없으면 교환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휴대가 편리한 동전이 무겁고 보관상 어려움이 많았던 쌀과 면포보다 교환경제의 매개수단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성들의 경우 쌀과 포를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불편이 없었고 지역 내에서 성립된 유통권내에서는 오히려 현물을 확보하여 통화로 사용하고 동시에 '朝夕之資'로 삼는 것이 백성들에겐 더 필요하였다.[49] 당시 상업이 가장 발달했다고 간주하는 都城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쌀의 공급량은 '都庫'들에게 조정되어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되었고[50] 쌀이 부족해질 경우 동전은 액면가와 관계없이 무용지물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官署의 운용에도 적용되었다. 관서의 장부(上下冊)를 조사해보면 '米秩'과 '錢秩'을 구분하고 현물을 따로 계산하

49) 실제 요역에 동원된 백성들은 동전과 포보다 쌀로 급료를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윤용출, 『조선후기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출판부, 1988)
50) 『日省錄』 정조 6년 5월 26일

여 확보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동전으로 세금을 수납하는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것도[51]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米貴錢賤', '穀貴錢賤'한 상태가 나타날 경우, 관서에서조차 곡식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동전으로 더 많이 거둘 수가 없었다. 실제 곡가가 높을 경우 군인들이 돈보다 현물로 급료를 받기 원했던 것처럼[52] 조선후기에는 동전으로 충당할 수 없는 현물 경제권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오히려 '米貴錢賤'의 시기에는 동전을 사용하기 보다는 쌀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거래로 생기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도 했다.

특히 전근대 사회에서 육상 운송비용[53]은 상당히 高價였기 때문에 이동량과 이동거리에 제약이 클 수밖에 없었다. 즉, 흉년이나 곡물부족 사태가 벌어질 경우 주변지역으로부터 곡물과 같은 현물을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현물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은 改色의 부담이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당연한 방책이었을 것으로 본다. 星湖 李瀷이 지적하고 있듯이 재물의 이동 범위가 '由旬'을 넘을 수 없었으므로[54] 현물을 확보하여 정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高米價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 현물의 필요성은 公·私에서 모두 절감하고 있었던 만큼 운송비가 허락하는 지역 내에서는 아무리 동전이 활발하게 유통되더라도 일정부분 현물을 확보할 필요성이 존재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이 오히려 중요한 교환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따라서 동전이 활발하게 유통되더라도 현물이 차지하는 당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물론 동전이 휴대가 간편하고 가치를 국가에서 보장해주었기 때

51) 김재호, 2008「朝鮮後期 중앙재정과 동전-『賦役實摠』을 중심으로-」,『경제사학』44
52)『備邊司謄錄』영조6년 9월 7일
53)『潛谷遺稿』권4,「論兩西事宜疎」"一日之程 馬則米九斗 人則三斗 此費一民數月之糧矣"
54) '由旬'은 고대 인도의 거리 단위로 약 40리 정도의 거리를 의미한다(『성호사설』권4,「錢鈔會子」).

문에 동전이 일상생활에서 활발하게 쓰일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동전의 가격은 계절에 따라 불안정하였고 현물을 구입해야 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동전가격의 등락은 큰 고충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성호 이익의 폐전론에 따라 실제 동전을 없애더라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쌀을 비롯한 현물로 동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물물교환상태로 간주할 정도는 아니었다. 영조가 발표한 '純木令'도 표면적으로 보자면 당시 사용되었던 교환수단을 갑자기 폐지하는 것으로 '反動的'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부족한 동전 대신 현물이 백성들에게는 더 편리하였고 동전이 자체로 牟利행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영조의 '純木令'을 반동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용할 수 있는 교환수단을 증가시켜주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李翼도 동전을 유통하면서 얻는 장점보다 백성들이 가을에 나타났던 '米賤錢貴'에 노출 되면서 받는 고통에 더 초점을 맞추었고 이를 기반으로 '廢錢'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李翼은 동전으로 야기된 폐단이 농민들의 기반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廢錢' 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동전과 현물이 완전히 대체되지 않고 보완적인 교환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전을 없애 동전으로 야기되는 폐단을 없애려고 하였다. 실제 동전이 없어지더라도 현물화폐로 보완이 가능했고 현물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더 이득이 되었다. 화폐는 輕便함을 제공해 주지만 당시 물자의 공급과 동전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富商들의 牟利행위를 가능하게 해줄 뿐이었다. 따라서 星湖 李翼이 주장한 폐전론은 동전을 폐기하면서 교환수단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닌 교환수단을 현물로 대체하여 백성의 고충을 덜어주려 했던 현실적인 개혁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55]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전에 대한 논의가 영조 대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전유통으로 말미암아 폐단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동전을 충분히 주조해주지 못하면서 폐단이 심화되었고 이런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전 대신 면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영조의 純木令을 세 차례나 치폐를 거듭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전은 여전히 국가적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혹은 일시적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조선에서 주조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가 일본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고 조선에서는 동전으로 해결했던 재정문제를 해소시켜줄 다른 재원을 찾아야만 했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은 지출을 줄이는 작업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세액을 증대시키는 재원을 찾는 일이 시급한 당시의 과제였다.

55) 실제 16세기 중반 일본에서는 貫高制에서 石高制로 쌀로 모든 통화수단을 일시에 변화시킨 적이 있다. 이익이 폐전론을 주장하던 시기와 차이가 있으나 당시 일본에서는 동전이 활발하게 민간에서 사용되고 조세로 거두어지고 있어 쌀로 급격하게 통화수단을 변화시킨 후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시 일본에서 石高制로 변화하면서 시중의 거래수단이 별다른 혼란 없이 70%이상 쌀로 거래되고 있었다.(Kozo Yamamura, From Coins to Rice: Hypotheses on the Kandaka and Kokudaka Systems,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4.2 (Summer. 1988), pp. 341-367)

2. 倭銅 수입 감소와 貨幣流通策

1) 주전량의 감소와 高額換

상평통보의 발행 이후 국가에서 수요만큼 동전을 공급하지 못하자 동전의 수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부족한 동전 때문에 나타난 폐단을 동전 자체의 폐단으로 인식하며 동전을 없애자는 廢錢을 주장하기도 했다. 廢錢論者들은 백성들이 동전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불편함이 생기고 폐단이 야기되니 동전을 없애 백성들이 겪는 고충을 제거하자는 의미에서 주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폐전론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英祖를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제작하여 발행했던 동전은 교환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효용이 높았다. 우선 동전은 잘 알려져 있듯이 교환수단으로 기능하며 민간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특히 17세기 후반 상평통보의 발행량이 급증하면서 조선에서는 상평통보가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교환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56] 상평통보가 널리 확산되는 정도에 있어 지역차이는 나타나고 있었지만 일상에서 동전의 영향력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던 경향은 부인하기 힘들 정도였다. 백성들이 동전이 아니면 교환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언급에서 이러한 경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57]

동전이 단순히 민간에서 교환수단만으로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에서는 財政 補用수단으로 화폐가 활용되고 있었고 국가가 동전의 제작과 가격의 책정에 크게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의

56) 현재 화폐사 연구의 대부분은 매매문기와 같은 고문서를 통해 동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를 추적하여 화폐교환경제의 성립 시기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이정수, 정수환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57) 『비변사등록』 영조 4년 9월 19일 “臣意則以爲有國則必有錢, 若無錢則國無行貨之道, 民無懋遷之利矣”

간섭은 주전이익과 관계된 것으로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주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득으로 곡물을 구매하여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재정분배가 진행되었다.[58] 특히 흉년이 들어 진휼할 자원이 부족했을 때에는 더욱더 새로운 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환경에서 동전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동전은 흉년이 심하게 들어 곡식을 1石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서에서 유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기도 했다.[59] 주전을 통해 가뭄과 같은 재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常平廳과 같은 중앙관서 뿐만 아니라[60] 지방감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전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방에서 백성들이 흉년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는 현지에서 鑄錢을 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다. 英祖 18년 함경도에서 흉년으로 식량 조달이 어렵게 되자 주조를 통해 식량을 확보하는 의도하에 함경도에서 주전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이 당시에 함경도에서 직접 鑄錢이 設行되지는 않았다. 제반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특히 원료 공급의 어려움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함경도가 아닌 平安監營에서 15만 냥을 주전하여 함경도의 흉년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각 지방 감영에서는 함경도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개성에서 주전을 행하여 약 50만 냥 정도를 흉년을 원활하게 극복하는 차원에서 발행하였다.[61] 三南지방은 곡창지대로 국가 재정에 끼치는 영향력이 컸던 만큼 삼남 지방에 흉년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조정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58)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1월 23일 "鑄錢於安州地, 息利貿穀"
59)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 8월 5일 "國家無一石穀賑救之資, 若使多數鑄錢, 播及諸道, 則庶爲一分可救之道矣"
60) 『숙종실록』 숙종 21년 9월 30일 상평청에서 1년에 40~50만 냥을 주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61) 『비변사등록』 영조 18년 8월 23일

서도 鑄錢이 주된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三南에 참혹한 흉작이 들어 稅入이 줄어들자 戶曹의 경비를 충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였고 宣惠廳에서도 貢價를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고의 탕진이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辛亥年(영조 7)과 壬子年(영조 8)에도 흉년에 주전을 한 일이 있다하여 주전을 통해 변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주전이 흉년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며 주전의 효과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62] 즉, 주전은 현실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시적인 소규모 재정확충책으로도 널리 활용되었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재해를 재정적으로 해결할 때에도 활용되고 있었다.

재해가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官署의 재정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으로 鑄錢이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軍門은 원래 屯田의 보급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지만 屯田의 수확도 매해 수확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 軍門에서 급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63] 숙종 11년에는 軍器寺의 工匠과 하인의 料布를 흉년 때문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임시로 선혜청에서 보내주는 大同木을 쌀로 折價하여 나눠주며 변통하기도 하고, 내년 분을 당겨쓰며 눈앞의 급한 재용을 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게 되었을 때, 결국 軍器寺에서도 鑄錢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64] 軍門의 하나인 摠戎廳의 재정위기도 주전을 통해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영조 32년에는 摠戎廳에서 三軍門에 물자를 나눠주는 일을 홀로 담당하여 재정상태가 빈약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주전밖에 없다고 언

62) 『비변사등록』 영조 38년 10월 17일 “蓄儲之匱竭, 莫甚於此時, 曾前辛壬歉歲, 亦有鑄錢之前例, 若不及今講確變通, 則前頭之憂, 不可勝言, 第念生財之道, 莫如鑄錢”

63) 『승정원일기』 숙종 7년 7월 23일 “本曹責應浩多, 物力漸縮, 將無以成樣, 依他衙門例, 鑄錢補用, 何如 上曰, 唯。錫胄曰, 近來錢文漸賤, 各衙門竝鑄, 必至於難行”

64) 『비변사등록』 숙종 11년 9월 12일

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총융청에 주전을 허락하여 재정을 회복시키도록 명령하고 있다.[65]

실제 동전의 주조가 시작되면 관서에서는 왜동을 구입하여 주전을 실시하고 주전이익을 취하고 이를 통해 다시 곡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휼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66] 물론 동전 자체가 갖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전 자체만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즉, 동전은 민간의 소용 못지않게 국가의 財政策으로서 이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구리의 양이 줄어들면서 점차 鑄錢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정부주도의 주전사업이 축소되면서 민간의 백성들은 '錢荒'현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도 주전할 倭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요대로 주전을 행할 수 없었다. 주전이 30년간 중단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재료인 倭銅이 제대로 수급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동전 수급의 중단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큰 타격이 미칠 수밖에 없었다.

영조는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고자 동전 대신 木綿을 사용하려던 純木令을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지만 순목령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철회하였다. 이후 1730년에 주전이 재개 되었지만 倭銅의 생산 감소에 따른 원료수급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였다.[67] 따라서 주전량을 늘리려는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실행에 옮겨질 수 없었고 민간에서는 동전부족으로 고충을 겪는 '錢荒'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물론 상평통보의 주전을 멈추기 이전에도 동전이 풍족하게

65)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5월 18일 "上曰, 摠戎廳物力之殘弊, 朝家旣已知之, 依所啓許鑄, 可也);『비변사등록』영조 32년 7월 19일(摠廳物力本來凋殘, 營門以北漢城堞公廨修葺事言之, 三軍門分授之役, 一併獨當, 摠使之悶迫固然矣, 漢北門城役, 自朝家旣無劃給之物, 則宜許鑄錢矣", 『비변사등록』 영조 33년 3월 21일 '摠戎廳鑄錢節目' 참조

66)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1월 23일 "鑄錢於安州地, 息利貿穀"

67) 『승정원일기』 영조 8년 7월 5일 "上曰, 鑄錢今已中止, 而所鑄幾何 寅明曰, 十二三萬餘兩, 而卽今無餘存矣"

공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상평통보가 발행된 지 1년이 지난 숙종 4년(1678)에도 田稅를 돈으로 거두자, 시골에서 갑자기 돈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다.[68] 특히 군병과 서리, 노비 등이 납입하는 布納에 대해 錢納을 원칙으로 강제하면서 백성들은 동전이 비교적 풍족하게 발행되던 시기에도 동전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69] 특히 각 관서에서 거둔 동전이 관서의 창고에서 다시 시골로 환원될 수 있는 경로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교적 동전발행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는 동전을 求得하는 어려움이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70] 선혜청과 軍門에서 동전으로 거둔 세금 중 10~20%정도만 다시 민간으로 돌아간다고 보았으니 지방에서는 동전을 구하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 것을 짐작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즉, 동전 주조가 원활하게 시작되던 시기에도 동전 부족은 만연했었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그 어려움은 더 배가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료의 수급마저 불안정했기 때문에 18세기 초반의 동전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 속에서 화폐를 지속시키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도출되었는데 고액환의 발행과 저화와 같은 명목화폐를 다시 발급하자는 내용이 그것이었다. 고액환은 현실적인 화폐 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료로 필요한 만큼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楮貨는 이미 世宗대에 실시되어 '失敗'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상평통보가 부족하게 되자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등

68) 『비변사등록』 숙종 4년 1월 24일
69) 『비변사등록』 숙종 5년 4월 9일
70)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6월 12일 "顧今錢貴之弊, 非在乎他, 一歲之中, 錢之出於民而入於公者, 不可勝計, 內而惠廳各軍門之所捧, 外而各營各鎭邑之所收, 已過屢十萬緡, 而京外之公用所散, 歲不過十分之一二矣, 自民而入者爲十之八九, 自公而散者爲十之一二, 故比年以來, 惠均二廳與各軍門之積錢, 不啻倍蓰, 而又貿銅鐵, 儲置於軍門亦已多矣, 則財之閟滯而不流通者, 於是乎極矣…今則公下之外, 不復有散錢之路, 而一向徵出於民間, 則錢安得不貴乎? 天下未嘗無財, 而通之則有裕, 閟之則不給, 財之勢也。今若分付均·惠二廳與各軍門, 以其積置之錢貨, 散貸於貢市諸民, 以爲滋殖之地"

장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대안화폐는 화폐가 지니는 명목가치가 실질가치를 훨씬 뛰어 넘는 것으로 유통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 명목가치를 담보해줄 수 있는 보증이 존재해야만 했다. 이를 고대 중국에서는 '子母相權'으로 설명하고 있는데[71] '母'에 해당하는 고액권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子'에 해당하는 소액화폐가 실질가치를 담보해주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는 원리였다.[72] 하지만 '子'에 해당하는 상평통보를 수요만큼 주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母'에 해당하는 화폐를 남발한다면 子母權은 유지되지 못하고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常平通寶의 부족을 해결하려고 고액권의 화폐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상평통보가 수요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고액권의 유통은 현실화될 수 없었다. 세종대에 楮貨가 유통에 실패했던 이유도 저화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朝鮮通寶가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은 앞 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영조 3년에 楮貨를 발행하여 상평통보의 부족분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성공하기 힘든 계획이었다. 당시에는 상평통보 대신 狀紙 1장을 12片으로 나누고 이를 화폐로 활용하여 원래 종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4배의 이득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며 저화의 발행을 종용하였다.[73] 하지만 저화와 고액전의 발행은 실제 가치를 담보해줄 만한 소액화폐

71) '子母相權'은 單穆公이 주장한 최초의 화폐이론으로 평가 받는다. 單穆公은 화폐는 재해를 구제 하기 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大錢을 母錢으로 小錢을 子錢으로 간주하며 子錢은 母錢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國語』 齊語下, 協世昌, 2002, 「春秋戰國時期貨幣理論」『中國貨幣理論史』 厦文大學出版部)

72)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2월 10일 "以不可廢爲言云。蓋國不可以無錢, 而錢荒之弊已極, 故欲依子權母, 母權子之法, 以救其弊也"

73) 만약 1장의 狀紙를 16등분하여 사용하고 1片의 가격을 동전 1分의 가치로 사용한다면 1塊의 종이로 320냥의 동전에 해당하는 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好狀紙의 경우 동전으로 환산한 가격은 70냥에 불과하고 次狀紙의 경우 60냥인데 저화를 320냥 정도 제작할 수 있었으니 대략 4배의 이득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 정부의 저화통용책은 직전 해에 왜관에 동을 구입하기 위해 宣惠廳에서 왜관에 은을 보냈지만 원하는 수량만큼 구리를 공급받지 못했던 직후에 나온 것으로 동전 주전을 수요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응방안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승정원일기』 영조3년 11월 5일 "聞年前, 自惠廳, 入送銀貨於倭館, 方又貿銅, 而銅鐵, 亦未及盡數出來云"

가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동전 재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조선정부에서는 저화나 고액환을 발행하여 대체하려고 했지만 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정책적 시도에 불과했다.

2) 倭銅의 확보노력과 결제수단

錢荒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재정 부족을 주전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속되었다. 조선에서 구리와 같은 금속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鑄錢은 시행될 수 없었다. 특히 常平通寶와 같은 금속화폐는 구리의 함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구리 외에도 동전주조에 錫, 鉛 등이 첨가되었지만 구리의 가치가 가장 높았고 구리의 함량이 높을수록 동전의 실질 가치가 보장되어 유통되었다. 전근대 유통되었던 동전의 대부분이 구리를 주성분하고 있던 이유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리는 조선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생산량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동전을 주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자원에 의지해야만 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구리를 생산하고 있었던 곳은 중국과 일본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구리는 17세기 중반이후 획기적으로 생산이 늘어나면서 구리가 조선과 교역하는 주요한 상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도 倭銅을 수입하여 주전에 활용하였고 1678년 常平通寶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공작미를 매개로 대마도로부터 구리를 수입하고 있었다.

조선과 일본의 교역은 임진왜란 이전으로 소급된다. 조선초기의 朝日무역은 당대에 倭寇로부터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對馬島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왜구로부터 입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회유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74] 이때 수입된 물품은 銅·鐵·鑞·皮物 등이었는데 倭로부터 수입했지만 다 소비되지 못하고 창고에 쌓이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왜와 교역은 경제적 관점에서 적자가 나기도 했지만 交隣關係의 지속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조선초기의 朝日 무역은 외교적인 목적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후 壬辰倭亂으로 대마도와 교역이 중단되었지만 1609년 己酉約條의 체결로 다시 朝日간 무역이 재개되었다. 己酉約條 이후 지속된 조선후기의 무역도 처음에는 조선전기의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대마도에서는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생산되는 쌀의 양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조선으로부터 쌀이 유입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안된다고 할 정도였다.[75] 따라서 기유약조 직후 대마도와 재개된 교역의 성격은 조선 전기에 유지되었던 교린차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76]

당시 대마도에서 교역의 조건으로 받았던 것은 公木이었다. 하지만 1651년(효종 2)부터 公木의 일부인 300同을 1疋에 12斗로 환산하여 미곡 12,000석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公木대신 공작미를 요구하여 개항까지 대마도에서는 공작미를 조선 측으로부터 교역의 대가로 수납했다. 하지만 공작미의 제공은 조선 측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한 부담이 가는 대목일 수밖에 없었다. 공작미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에서는 대동미와 전세명목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급하였다.[77] 그리고 경상도 지역의 세액은 중앙으로 상납하지 않고 공작미로 전액 투입되었다. 그리고 공작미를 분급받은 지역에서는 公木을 내는 것 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작미를 제공해야 하므로 부담은 가

74) 정지연, 2006 앞의 논문, 32쪽
75) 『비변사등록』 숙종 31년 12월 6일
76) 김동철, 1993「17·18세기 대일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 『항도부산』 10
77) 『만기요람』 財用 5, 公貿 公作米條

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1필당 10두의 가격으로 거두고 나머지 2두를 貢物立米太로 지급함으로써 공작미를 분급받은 고을의 부담을 감해주고자 했다.[78] 더구나 공작미로 지급했던 쌀의 품질이 다른 여타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쌀보다 품질이 훨씬 뛰어났던 만큼 공작미를 제공하면서 조선은 산술적으로 손해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79] 즉, 대마도와 교역이 재개되고 17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조선에서 부담하는 내역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교역을 진행했고 공작미의 비율을 조선 측의 물가가 아닌 1필당 12두로 고정했던 이유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9) 公木·公作米 지급수량

연도	총지급량	공목수량	공작미수량	代錢	전거	비고
1691		766동				
1787	1,221동	371동	16,000석	45,000兩		作米 400동 作錢 450동
1802	1047동 4필 17척	543동 15필	16,000석			

* 典據: 김경란, 2009「조선후기 동래부의 公作米 운영실태와 그 성격」『역사와 현실』72, 140쪽, 표1 인용

먼저 조선과 대마도가 교역한 규모에 대해 확인해보면 조선에서 대마도로 수송된 물자의 규모는 표에 제시된 대로 1691년에는 공목 766동, 1787년 1,221同(공작미 16,000석), 1802년 1,047同의 규모였다.

78) 『嶺南大同事目』 (국립중앙도서관 古 683-5)
79) 『승정원일기』 정조 5년 12월 28일 "儲米還米, 精麤不同, 而供倭之米, 尤取潔白, 斗斛差異, 量法高準, 其勢不可以還米直送"

일본에서 면포를 자급하였지만 대마도의 경우 여전히 조선에 의존해야 하는 양이 필요했다. 면포의 자급으로 대마도에서도 면포가 재배되거나 본토에서 구매하는 양이 늘면서 조선에서 들여오는 公木의 양은 감소하고 公木 대신 지급하는 쌀의 양은 증가하였다. 1691년(766同)보다 1787년의 公木의 총 지급량은 1,221同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공목으로만 지급한 양은 371同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쌀과 돈으로 대신 지급하고 있다. 쌀의 유출이 많아지고 경상도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조선에서도 公作米로 대마도와 교역하는 것을 '謬例'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작미를 제공하는 고정된 비율은 수정되지 않고 1811년 1필에 10두로 낮춰질 때까지 유지되었다.[80] 경상도에서 米綿비율은 1필 당 미곡 5斗의 비율로 作木하였는데 倭館에 지급하는 미곡은 12斗로 정해져있어 경상도의 입장에서는 목면보다 쌀로 公作하는 것이 훨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81] 이러한 과도한 공작미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중앙의 관서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공작미와 면포의 교환비율이 時價보다 높아지면서 쌀의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부족한 쌀 만큼 선혜청에 상납하는 대동미로 충당하려 하였다. 특히 흉년이 들어 호조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동래로 下納하는 곡식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82] 특히 조선의 재정 상태가 경상도의 전세를 모두 대마도에 투입해도 온전하게 운영해 나갈 상태이지 않았기 때문에 對日本 公貿易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조선에서는 흉년이 들 경우 조선 내에서 소비되는 賑資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83]

---

80) 『嶺南廳事例』 (奎. 15233)
81) 김동철, 1993「17·18세기 대일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 『항도부산』 10
82) 『승정원일기』 경종 3년 6월 5일
83) 『비변사등록』 영조 4년 1월 27일(逐年例給倭館, 厥數夥然, 而列邑或稱賑資, 或稱年凶難捧, 一任遷延, 甚者至於經年閱歲, 彼倭不得應得之物, **本府不給應給之數**, 如是之際, 百般侵督)

그러나 대마도의 입장에서는 米價가 조선이 일본 본토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 쌀을 수입하는 것보다 조선에서 쌀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 1679년 조선의 미가는 日本의 도량형 1石으로 가격을 환산할 경우 48.2匁이었는데 같은 해 京都의 쌀 판매가격은 71.48匁으로 조선보다 약 20匁정도 高價로 거래되고 있다. 7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약 20匁낮았고 아래의 표와 부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日本 1石의 가격이 50~100匁 사이로 조선의 米價가 1679년에 日本 1石으로 환산했을 경우 48匁 정도였고 가장 가격이 높았던 1703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조선의 쌀 가격이 일본 본토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1696년에는 조선의 쌀 가격을 日本石으로 환산할 경우 1석에 은 75匁이었고 大阪에서는 日本1石에 銀 105匁으로 가격이 형성되었다.[84] 1696년에는 가격 차이가 30匁으로 더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격 격차는 18세기 들어서면서 약간 좁혀지기도 하고 조선이 재해를 입을 경우 일본보다 쌀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18세기 초반까지도 일본의 쌀 가격이 조선의 쌀가격 보다 조금씩 높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대마도의 입장에서는 운송료도 비교적 저렴하게 들고 가격도 낮은 조선의 쌀을 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것이 훨씬 이득에 맞았다. 더구나 면포 대비 쌀가격의 비율이 조선의 경우 면포 1필당 5斗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었는데 12斗로 인상하여 요청함으로써 대마도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대마도가 제시한 米布의 가격 비율은 부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본토의 米布가격 비율과 가까운 것으로 모든 무역요구에 있어 대마도의 요청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다.

---

84) 일본의 米價는 괄호 안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朝尾直弘, 「米價相場」(小葉田淳 監修, 『讀史總覽』 人物往來史 1966) 759~776쪽)

85) 일본의 직물 단위인 反은 1필의 1/2로 환산했다.

표 20) 17세기 말~18세기 초 조선의 米·綿布의 가격 변화표

연도	물가(米價/綿布價)	비고[85]	江戶 단위 환산[86]	전거
1676	4동 40필(正木) =140냥(銀)	1필(綿布)=0.58냥(銀) 1냥(銀)=1.17필(綿布)	1反=0.29냥(銀) =**2.9**匁(銀)	『승정원일기』 (숙종2년 11월12일)
1679	1냥(銀)=7두(米)	1석(米)=2.14냥(銀)	1石 =4.82냥(銀) (=48.2匁)	『승정원일기』 (숙종5년 2월18일)
1696	면포 1동=銀 30냥(평안도 25냥)(銀)	1냥(銀)=1.67필, 1疋(綿布)=0.6냥(銀)	1反=0.3냥(銀) =**(3匁)**(銀)	『승정원일기』 (숙종22년 10월13일)
1696	2두(米)=1냥(錢)	1석=7.5냥(錢) 1석=3.25냥(銀)	1石=75匁(銀)	『승정원일기』 (숙종22년 10월30일)
1696	4두(米)=1냥(錢)	1석=3.75냥(錢) 1석=1.875냥(銀)	1石=37.5匁(銀)	『승정원일기』 (숙종22년 11월1일)
1697	1同(綿布)=25냥(銀)	1냥(銀)=2필(綿布) 1필(綿布)=0.5냥(銀)	1反=0.25냥(銀) =**2.5**匁(銀)	『승정원일기』 (숙종23년 12월13일)
1703	1석(米)=15냥(錢)	5냥(銀)=1石(米)	1石=100匁(銀)	『승정원일기』 (숙종29년 12월21일)
1727	8두(米)=1냥(錢)	銀 환산가격 (米1석=銀(0.9375냥)	1石=187.5匁(銀)	『승정원일기』 (영조3년 5월5일)
1727	2두(米)1냥(=錢)	1석=7.5냥(錢) 1석=3.25냥(銀)	1石=75匁(銀)	『승정원일기』 (영조3년 11월5일)
1731	1석=5냥(錢) 1필(綿布)=1냥 5전(錢)	1석(米)=3.3필(綿布)	**1反=0.5석(米)**	『승정원일기』 (영조7년 12월21일)
1740	2천석(米)=1百同(綿布)=2080냥(錢)	1석(米)=2.5필(綿布)=1.04(錢)=0.5냥(銀)	1石=2.5日本反 =2.5匁(銀) 1反=0.4日本石=**4**匁(銀)	『승정원일기』 (영조16년 9월20일)
1756	1석(米)=3필(綿布) 3냥(銀)=5필(綿布)	1필(綿布)=0.6냥(銀)	1反=0.3냥(銀) =**3**匁(銀)	『승정원일기』 (영조32년 8월6일)
1758	1석(米)=5냥(錢)	1석(米)=2.5냥(銀)	1石=5냥(銀) =50匁(銀)	『승정원일기』 (영조34년 4월6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에서도 이러한 거래가 경상도 지역재정뿐만 아니라 중앙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凶年이 들어 공작미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銀布로 대신 교역을 진행하여 대마도와 무역을 유지하려고 하였다.[87] 대마도에서

86) 일본의 米·綿의 물가는 '표) 18~19세기 米·綿布의 가격 변화표'의 내용을 이용하였다.

는 조선과 거래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과 거래를 지속하길 원했다. 조선에서는 곡물을 지출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전을 통해 얻는 이득이 더 크고 18세기 후반 지속된 주전 논의를 지탱해줄 무역이 계속 지속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일본의 구리 생산이 줄어들어 무역조건이 악화되고 조선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무역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조선에서 교환수단으로 사용한 공작미의 비율이 12두로 고정되었던 것이 잘 대변해 준다.

정조대에도 주전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되었다. 특히 주전을 통해 늘어난 예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정조 12년(1788) '年例鑄錢法'으로 이어지면서 매년 주전을 계획하였다. 필요성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주조하는 것과 달리 매년 주기적으로 5~6만냥씩 동전을 주조하려는 계획이 입법화되었다.[88]

정조 12년 당시 매년 주전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동전의 규모를 쌀로 환산해보면 8,300석 정도이다. 1년 동안 서울에서 소비되는 곡식을 100만석으로 계산할 때에 많은 양은 아니었다. 특히 壯勇營의 설치로 40만석 규모의 쌀이 소비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주전을 통해 확보하려고 예산은 전체 예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미한 것이었다. 늘어난 예산만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대략 100만냥 정도의 주전을 계획하고 있던 것과 비교해 '年例鑄錢法'의 주전 규모는 매우 작은 것이라고 보인다.

정조 초기 장용영과 같은 새로운 군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만 한 해에 40만 석이 넘는 곡식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에 따른 것은 아니었겠지만 정조는 100만 냥을 상한으로 하여 주조하려는 계획을 암암리에 언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87) 『公木作米謄錄』(奎 12968) 二冊(1695년 조)

88)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10월 4일 "戶曹本有鑄錢所名色, 每年限五六萬兩, 竝與弓角契生銅而開鑄, 另擇本色郎廳, 使之監董, 歲以爲常, 則經費無不補益, 泉貨亦足流行"

이에 신하들이 주전을 백만 냥으로 정한 것은 현실을 감안할 때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89] 현실적으로 주변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왜동수급이 어려워졌고 이런 상황에서 주전을 했을 때에 주전이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전을 일차적인 재정책이 아닌 선택적인 재정보완책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조는 매년 주전을 하려는 '年例鑄錢法'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1775년, 1785년, 1787년, 1791~94년, 1797~98년에 주전을 간헐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특히 정조는 왜동의 수입부진으로 주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한탄하며[90] 국내에 동광을 개발하려고 시도하였다. 주전에 필요한 동이 왜로부터 공급되지 못하자 영조 대부터 잡철을 모아 주전에 활용하려는 궁박한 계책마저 등장했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구리로 주전의 원료 공급을 충당할 수는 없었다.[91] 정조 4년에는 왜동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적지만 국내 동광산을 개발하여 弓角契의 공가만이라도 지급하도록 명을 내렸다. 이 때 안변에서 생산된 구리의 양이 약 8천근에 달했지만 정조는 8천근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92] 특히 정조 3년부터 5년까지 궁각계의 공가마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국내 동광의 개발은 정조에게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93] 동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주전을 계획하거나 唐錢의 수입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여 부족한 동전을 채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중국의 동전을 도입해서 부족한 동전 수량을 채우려는 노력은 영조 대부터

89)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3월 15일 "柱國進前曰, 今番鑄錢, 以百萬兩爲限, 而我國銅太不足, 若以倭銅鑄之, 則非但爲利之鮮少, 百萬之數, 無路充鑄"
90)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12월 24일 "鑄錢, 經已過屢年, 而迄未就緖者, 實由於倭銅之不出而然矣。累十萬公貨, 許久滯淹, 出場無期, 事之可駭, 莫此爲甚"
91)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2월 21일 "臣待罪戶曹時, 爲鑄錢, 多聚雜鐵矣"
92) 『승정원일기』 정조 4년 11월 4일 "柱國曰, 臣果見之, 則銅品似下於倭銅, 而品是鍮鐵類, 鑄器皿則似可僅用, 而正合於鑄錢, 故自安邊運來於臣營者, 合八千餘斤矣"
93) 『승정원일기』 정조 5년 9월 1일

시작되었다. 영조 13년 박문수는 동전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청나라의 동전(北錢)을 수입해서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김재로의 경우 북전을 수입해서 사용할 경우 이는 潛商과 다를 것이 없고, 또 병행해서 쓰게 한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떻게 彼我의 분별을 하겠느냐는 염려로 북전 사용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전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조선의 돈은 사용하지 못하고 청전이 조선에 대두수가 유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조선은 청에게 貨權이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김재로는 박문수의 '북전유통론'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박문수는 포기하지 않고 동전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동전 수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淸錢과 상평통보를 合鑄하여 유통시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94] 동전주전이 원료 공급의 축소로 그 규모가 줄어들면서 주전이익을 확보하려는 재정기구 들에는 재정을 확충하는 하나의 수단을 잃게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재정 상태도 매년 악화되고 있었다. 물론 재정의 전반적인 확대에 재정악화의 큰 원인이 있겠지만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주전의 중단도 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왜동을 수입해서 주전하는 과정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전비가를 조정하고 있었던 만큼 주전이 갖는 재정적 효과는 상당한 비중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로서는 대마도의 무역조건에 맞춰 교역을 진행하여 구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측에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94)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6월 4일

3. 18세기 중반 동전의 활용과 유통

1) 동전납의 확산과 '民願'의 증가

원료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동전을 수요대로 주전하지는 못했지만 1678년 이후 조선에 누적된 추정치 주전량은 1,300~1,500만냥에 이르렀다. 주전량은 한 해 동안 생산된 미곡의 10%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규모로[95] 주전된 동전은 公私간 모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동전은 그 자체로 현물 가치가 있었고 쌀이나 면포보다 보관과 운송에 유리했기 때문에 교환수단 뿐만 아니라 재정수단으로 가치가 충분했다. 그러나 상평통보를 주전한 이래 누적된 전체 주전량을 인접국가와 비교해 볼 때 절대적인 수치는 많지 않았다. 총 주전량 인구수로 나눈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18세기 말을 기준으로 조선, 중국 그리고 일본의 1인당 화폐량은 일본이 794文, 중국(福建省)이 1,071文, 조선은 500文으로 보고 있다.[96] 물론 주전된 동전의 수량이 적었다고 동전 유통 양상이 저조했던 것은 아니었다. 주전 총량이 적었지만 서울에서는 동전이 아니면 거래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활발한 유통양상을 보이고 있다.[97] 그러나 총 주전수량이 적었던 만큼 동전 유통은 위축되기도 했다.[98]특히 지방과 서울 간의 동전 거래규모가 차이 났던 이유는 이러한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99] 물론 향촌에서도 서울과 같은 동전유통 양상이 나타났는

95) 이헌창, 1999, 「1678~1865년간 화폐량과 화폐가치의 추이」 『경제사학』 27

96) 李紅梅, 2010, 「近世日本中國朝鮮における貨幣經濟化比較史試論」 『東アジア経済史研究-中國·韓國·日本·琉球の交流』, 思文閣出版, 71쪽

97) 『승정원일기』 숙종 6년 10월 5일 "近來錢幣大行, 凡京中受價者, 辭米而願受錢, 外方則雖不可知, 自都城至開城, 則無弊行用云。今若加鑄, 則似有錢賤之弊, 而不可不一切罷鑄。今後加鑄時, 勿令各衙門, 如前爭鑄, 只自戶曹, 豫爲措置器具, 春間加鑄, 似好矣"

98) 동전유통이 축적되었던 것은 통화 부족이 한 원인이었지만 전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통화 부족 외에 官署와 軍門에 상납된 동전이 다시 민간으로 환류되지 못한 원인도 통화 부족의 큰 원인이었다.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동전을 활용한 교환경제 그리고 재정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확실한 부분은 서울과 향촌에서 공통적으로 재정책의 일환으로 동전을 활용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향촌에서는 백성들이 동전납으로 稅目을 변경하여 줄 것을 바랐고 관에서는 '從民願' 하면서[100] 동전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戶曹에 한정 시킬 경우 유통된 동전 규모는 적게 추산하더라도 6만 냥에서 많게는 40만 냥을 상회할 정도였다. 또한 대동법 실시 이후 戶曹와 함께 최대 재정기구로 부상하고 있었던 宣惠廳과 균역법 실시 이후 설립된 균역청의 예산까지 더한다면 재정상 활용되는 동전의 양은 더욱 늘어 날수밖에 없다.

표 21) 戶曹의 연간 수출입액 중 동전의 수량

연번	연도	연간 수입량(냥)	연간 지출량(냥)
1	1685(숙종 11)		33,935
2	1700(숙종 26)	84,260	
3	1702(숙종 28)		81,850
4	1707(숙종 33)	66,260	
5	1713(숙종 39)	82,350	
6	1714(숙종 40)		73,200
7	1723(경종 3)	115,026	106,674
8	1727(영조 3)	118,300	127,000
9	1729(영조 5)		133,616
10	1730(영조 6)	177,420	
11	1731(영조 7)		198,790
12	1732(영조 8)	93,890	
13	1749(영조 25)	169,790	
14	1757(영조 33)		420,076

99) 『승정원일기』 숙종 5년 9월 13일 "至於外方, 諸般身役及山郡大同作木, 以錢代納事, 旣已定奪行會, 而外方所鑄之錢, 其數不多, 不可以此備納。京中所鑄, 勢將分送于諸道監司處"

100) 『승정원일기』 숙종 34년 10월 5일 "已納之類, 有所不均, 此則勿爲代捧, 而今年峽邑大同, 木錢間, 從民願代捧, 則亦可爲均蒙實惠之歸"

15	1776(정조 즉위)		576,769
16	1777(정조 1)		374,860
17	1780(정조 4)	152,245	
18	1782(정조 6)		182,299
19	1783(정조 7)	208,959	
20	1784(정조 8)	148,250	
21	1785(정조 9)	219,830	
22	1790(정조 14)	409,997	
23	1792(정조 16)		274,890

* 典據: 『만기요람』 재용편4 戶曹一年經費, 『증보문헌비고』 권155 재용고2 國用2

표 22) 宣惠廳의 연간 수입·지출량 중 동전 액수

연번	연도	연간 수입(량)	연간 지출(량)
1	1759(영조 35)	288,433	324,287
2	1763(영조 39)	230,791	
3	1766(영조 42)		273,891
4	1767(영조 43)	247,229	
5	1769(영조 45)		294,430
6	1785(정조 9)	419,614	
7	1787(정조 11)		448,591
8	1795(정조 19)	386,066	367,917
9	1796(정조 20)	350,409	
10	1799(정조 23)		308,322
11	1807(순조 7)		377,613

* 典據: 『만기요람』 재용편4 戶曹一年經費, 『증보문헌비고』 권155 재용고2 國用2

호조를 비롯한 선혜청의 동전세입은 정조대에 이르러 40만 냥에 가깝게 증가하기도 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입 중 동전의 비중이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배경에는 백성들이 동전 납을 원했던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 이들이 재정물류로 동전 세납을 원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우선 현물로 납부할 때보다 운송비가 적게 들었고 보관 또한 용이했기 때문이다. 동전의 무게가 쌀이나 면포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현물로 운송할 때보다 운송비가 적게 들 수밖에 없었다. 또 쌀이나 면포의 경우 현물의 품질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수납하는 기관이나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點退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이렇게 점퇴를 당한 경우 백성들은 원하는 품질의 현물을 구하기 위해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101] 백성들이 동전납을 선호하는 경우 동전이 비교적 구하기 편리했거나 다른 현물이 전혀 求得할 수 없었고 點退하는 폐단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동전납을 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02] 특히 쌀은 현물 중에서도 가장 부피가 크고 무거웠던 만큼 백성들이 점퇴를 염려하여 아예 동전납으로 세목을 변경해 줄 것을 미리 요청하기도 했다.[103] 또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동전납을 통해 현물로 세납을 하는 것 보다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동전납이 확산되기도 했다. 관에서 정한 동전의 가격이 민간에서는 훨씬 낮아지면서 백성들은 쌀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던 시기였다. 특히 세납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역가를 납부하는 동안 백성들이 전납을 선호하는 만큼 더 동전의 가격은 더 치솟고 있었다. 당시 군문에서 동전으로 군포를 거두면서 농민들은 실제로 쌀만 가지고 와서 동전을 구매하게 되므로 세금을 바치는 기간에는 동전의 가격이 높아지고 쌀의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시기별로 전황은 더욱 심해지기도 했다.[104]

---

101)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9월 24일 “大抵納布則有點退之弊, 納錢則無點退之事, 民必願其納錢, 而不願於納布矣”

102)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1월 10일 “木一匹定價二兩, 不是廉價, 則民豈以錢願納, 而今乃以錢上納者, 蓋錢則無點退操縱之患故也。至於木, 則捧納之際, 各司胥吏輩, 中間操縱, 情債糜費, 倍蓰本價, 故各邑不得已以錢上送”

103)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2월 6일 “各邑田稅大同之上納, 卽是惟正之供, 畓出米, 田出太, 各有所納, 便是不易之典, 近年以來, 京外捧上, 日漸高重, 米色點退太甚, 故民間皆願以錢代納, 而監色輩, 收錢上京, 貿米納倉,

104)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6월 5일 “似難捄錢賤之弊, 卽今都下錢賤, 弊甚不貲, 而遐方軍民備給身布之際, 每以米穀換錢, 故每於秋成之節, 米價愈賤, 錢直常踊, 其害之及於農民, 尤有甚焉, 朝家以物貨貴賤, 隨時低昂則已, 若以爲民弊所在, 不可不變更, 則雖自地部, 出銀貨錢, 一衙門, 恐難獨任其事, 必自各軍門諸衙門, 各自出力, 以示泉貨流行之意, 然後庶可以少捄其弊矣”

구조적으로는 지방과 지방사이 그리고 지방과 서울 사이에 동전의 유통이 재정적 물류 이외에는 큰 흐름이 존재하지 않아 전황이 더 심화되기도 했다. 감영을 비롯한 관서에 동전이 상납되면 다시 지방으로 환류되는 자연적인 흐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동전을 지방을 싣고 가서 곡물과 교환하는 흐름에 지역 간 동전 유통을 의지하기도 했다.[105] 따라서 전황이 나타나게 된 큰 원인을 감영과 군문에 동전이 축장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106] 그렇다면 본 절에서는 동전의 주전상황의 악화로 충분한 동전 수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동전이 전국적으로 분배되었고 매년 많게는 100만 냥 가까운 동전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동전 유통의 가장 큰 흐름을 차지하는 재정적 물류에 대해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먼저 백성들이 동전을 어떻게 구득하고 동전납에 활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전납은 호조에 한정하더라도 한 해에 납부 되는 양이 40만 냥 정도였다. 그런데 매년 40만 냥의 동전이 상납될 경우 지방으로 다시 환류되는 양이 많지 않고 호조의 창고에 쌓이는 양이 늘어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지방의 농민들은 세납시기에 동전의 가격이 올라 시가보다 높은 동전을 구하기 위해 많은 양의 곡식을 소비해야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107] 따라서 동전납을 농민에게 강제할 경우 농민들은 현물로 내는 것보다 동전을 구해 바치는 과정을 겪다보니 한

105)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1월 12일 “卽今道內民間急錢之心, 最爲切迫難支之端, 大小莫不遑遑云, 以三南言之, 古則富商大賈, 載錢送船, 而貿穀於各道, 故鄕民以穀易錢, 能備身役矣。今則此路永塞, 船隻斷絶, 公私運穀之難, 已爲大患, 而卽今南土, 穀賤如土, 一身役所費, 幾至五石租, 而持穀出市, 終日不售而歸云, 民情之急於錢貨, 八路殆同然矣”

106) 『승정원일기』 영조 3년 5월 5일 “且內而戶曹各軍門, 外而監兵營, 雖云罄竭, 其所儲可至累巨萬, 猶多於京外私家之藏矣”

107) 『승정원일기』 영조 3년 9월 5일 “錢弊則無窮, 而以我國言之, 用錢旣久矣。罷錢之後, 亦難得代用之物, 小臣雖未知錢貨間事, 而農家貧民, 則將辦一兩之錢, 幾費一年之所收, 錢貴之弊, 已可知矣”

해동안 수확한 내역을 모두 소비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경우 관에서 현물을 납부하는 액수를 조금 감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108] 따라서 백성들의 경우 동전납을 원하고 관에 동전납부를 허용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동전납이 현물납보다 반드시 수월하거나 편리한 상황 아래에서 동전납을 택했던 것은 아니었다. 백성들이 세납하는 세목을 동전으로 택한 이유는 백성들이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이라기보다는 곡물을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현물이나 동전이 최선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전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不得已'해서 自願한 것이지 동전납이 현물납이 다른 안에 비해 월등하게 편리하고 이득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동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항상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109]

동전납을 하는 경우 당시 시세에 따라 환산하자면 실제 현물로 바치는 것보다 동전으로 납부하는 경우 액수가 배나 되기도 했다. 숙종 24년(1698)에 靈光의 장인들이 방납가로 목면을 바치고 있었는데 동전으로 대신 납부하게 되면 오히려 면포로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인들은 동전과 면포 대신 현실적으로 가장 저렴한 미곡으로 납부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했다. 당시 미가는 추수기의 면포의 가격이 1필 당 쌀 12두였던 것에 비해[110] 연 초에는 필당 가격이 米 6두로 훨씬 유리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다른 세목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포와 쌀을 선택해서 세납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은 마련되지 못했고 백성들은

108) 『승정원일기』 숙종 35년 8월 20일 "嶺南木花不實甚矣。身布不爲代錢, 而必欲盡捧, 則似難, 或宜有酌量蠲減"

109)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2월 18일 "縷縷呼訴, 臣等取見刑曹文案, 則金碩儱等, 果爲防納工曹, 受關下去靈光, 督徵於匠人等處, 本土木價, 適甚踊貴, 故匠人等, 不得不以米願納, 所謂自願, 出於不得已, 非樂爲之事也"

110)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9월 12일

면화를 흉년으로 수확하지 못할 대에는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전납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작물을 경작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재해가 심각할 경우 현물보다 동전으로 납부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한 대안으로 상평통보 가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전의 가격이 민간에서 떨어지는 경우 백성들은 동전납을 택하는 것이 현물납을 할 때보다 많은 이익을 백성들이 누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전납으로 백성들이 이익을 보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동전가격이 민간에서 하락할 정도로 공급이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동전이 충분히 공급되었던 지역과 시기에 따라 백성들은 이익을 전납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동전납이 백성들의 사이에서 확산되었고 동전납을 택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반드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었다. 물가에 따라 동전의 가격이 더 치솟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111] 이런 경우 백성들은 농사의 작황이 해마다 변했던 만큼 작황에 따라 동전납을 항상 선호하지는 않았다. 영조 2년(1726)의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도성에서 유민들이 동전 1전으로 5승의 쌀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는 1냥에 5두의 가격으로 당시 도성에서 전문 1냥에 해당하는 쌀의 가격이 3.75석이었다.[112] 이후 영조 11년에는 낮게는 1냥 당 3두에 쌀 가격이 형성되었던 것과[113] 비교해 보았을 때 영조 6년의 쌀 가격은 동전에 비해 상당한 고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전을 세금으로 납부할 경우 동일한 양의 동전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곡식을 소비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했다. 따라서 당시에는 만약

111) 해마다 동전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세납을 할 시기에 맞춰 곡식가격은 천해지고 대신 동전 가격은 올라가는 계절적인 변동 요인도 동전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승정원일기』 영조 10년 8월 20일 “宋寅明曰, 近來穀價之賤歇, 非由年事之大歉, 以民間錢貴之致, 以南中言之, 則必非大凶歉, 則秋冬市直, 一兩幾至十斗, 以軍布二匹價錢, 計其價米, 則不下四五十斗, 民間將何以支堪耶”)

112) 『승정원일기』 영조 2년 4월 12일

113)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2월 10일

동전을 더 주조하여 동전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身役을 동전으로 납부하고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동전가격이 오히려 고가여서 만약 동전납이 유일한 세납의 통로였다고 가정한다면 貿錢과정에서 농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다수 존재하였다. 즉, 동전납이 백성들이 원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리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면포도 쌀과 같은 구조 속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영조 32년 호남에서는 면화의 흉작때문에 綿布를 납부하는 대신 錢納을 택하고 있다. 평소 호남에서는 영남의 면화를 교환하여 이를 직조한 후 布納을 해왔는데 영남의 면화가 흉작이 되어 납부해야 할 면포의 재료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호남지방에서 백성들은 면포를 납부하는 대신 동전을 납부하기를 바랐고 결국 錢納으로 세액을 해결할 수 있었다. 동전납을 하기 위해 면포로 납부하던 내역에 비해 두 배나 비용이 필요했고 백성들에게 동전납이 이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호남에서는 달리 세액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동전납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114] 호남에서 동전으로 이미 절반의 貢布를 錢納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세액도 면포가 아닌 동전납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115]

결국 정부에서는 동전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동전납을 하는 백성들의 손해가 커지므로 동전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전을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추가 주전이 수요대로 이뤄질 수는 없었다. 동전 기근이라고 이름이 붙여

114)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0월 15일 '閔百祥所啓, 臣自湖南來, 敢以湖南民隱, 仰達矣。湖南之民, 本不以綿農爲業, 而換用嶺南木花矣。當此綿農荐歉之時, 貧殘納布之類, 尺布旣難自辦, 則皆願以代錢倍數備納, 民情誠爲矜惻, 朝家若不許純錢, 則必不無渙散之慮, 且本道軍貢布, 元數不多, 而半則已以純錢許納, 其半盡許純錢, 然後可爲目下懷保之道矣'

115)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0월 15일 "閔百祥所啓, 臣自湖南來, 敢以湖南民隱, 仰達矣。湖南之民, 本不以綿農爲業, 而換用嶺南木花矣。當此綿農荐歉之時, 貧殘納布之類, 尺布旣難自辦, 則皆願以代錢倍數備納, 民情誠爲矜惻, 朝家若不許純錢, 則必不無渙散之慮, 且本道軍貢布, 元數不多, 而半則已以純錢許納, 其半盡許純錢, 然後可爲目下懷保之道矣"

질 정도로 錢荒은 지속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은 전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백성들은 현물이 없는 상태에서 고리대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여한 동전을 세납시기에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부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숙종 연간부터 정조 연간 사이에 米價는 1냥 당 3~5두 사이의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되기도 했지만 1냥 당 米價가 1석 가까이 오르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흉년이 들었을 경우 현실적으로 고리대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동전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백성들은 관에 동전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自願'하였다. 더구나 흉년으로 곡식의 가격이 등귀했을 때에 관에서 흉년 이전의 가격으로 고정해서 수납한다면 백성들로서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었고 동전납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가에서도 흉년으로 백성들이 本色으로 세금을 상납할수 없게 되면 국가로서도 탕감과 같은 조치를 취해줘야 했다. 그러나 국가로서도 재정상 이유로 蠲減해 줄 수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차선책으로 가격을 견감해주고 원하는 경우 동전납을 선택하여 허가해주는 것으로 세납에 대한 불만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국가로서는 동전으로 납부받는 과정에서 時價대로 받지 않고 가격을 낮춰받고 동전으로 關西지방의 封不動으로 묶여 있던 현물과 교환한다면 국가로서도 손해볼 것이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부득이 한 경우 백성들은 동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손해를 덜보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았다.[116]

동전납이 확대되면서 국가로서는 동전납이 일정 부분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동전납이 증가할 경우

116) 『승정원일기』 숙종 29년 10월 10일 "道內木花之大無, 朝家亦已知之, 而各邑田稅木·大同木·軍兵身布甚多, 而市上木布絶貴, 無以徵納, 千百爲群, 處處呼訴, 許多之物, 蠲免爲難, 而旣無收捧之勢, 若或以錢代納, 則國家無所損, 而可除一道呼冤之弊, 統營·水營各鎭浦防軍身布, 爲先以錢代捧事, 一邊分付而馳啓云"

쌀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현물의 양이 부족할 수도 있었다. 당시 서울에서는 생산이 허락되지 않았고 생산물을 거의 전량 외방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행정도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서울에는 일정량의 현물이 반드시 공급되도록 비율을 제한해야 했고 세목 가운데 쌀이나 면포와 같은 현물은 일정량 이상 확보되어야 했다. 동전은 배가고파도 먹을 수 없고 추워도 입을 수 없다는 당시 인식이 현물납의 필요성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117] 특히 당시 관료들의 녹봉은 米로 고수해서 분급해 주었는데 곡물이 부족할 경우 백관들의 녹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경종 2년에는 호조에서 백관의 녹봉을 지급할 미곡이 모자라자 賑恤廳에 보관하고 있는 쌀을 稱貸하여 해결하기도 했다. 봉록을 동전으로 분급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봉록은 반드시 쌀로 지급했던 전례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다른 관서에서 쌀을 빌려오고 있다. 그러나 진휼청은 호조가 쌀이 부족할 때에 언제나 대여가 가능한 곳은 아니었다. 다음 해에도 호조의 쌀 재고가 확보되지 않자 이번에는 진휼청이 아닌 別餉米를 請得하여 녹봉으로 지급할 양을 채워 넣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 양이 부족하여 나머지는 호조의 정식인 쌀 1석 당 4냥의 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녹봉은 현물로 지급하려는 원칙이 가능한 고수되었던 만큼 동전납이 진행되더라도 현물이 호조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동전납을 확대할 수는 없었다.[118]

공물가를 쌀로 지급했던 선혜청의 경우 현물을 확보하기 위해 쌀

117) 『승정원일기』 영조 4년 7월 1일 “夫錢者, 飢不可食, 寒不可衣, 則此是無用之物, 而富益富貧益貧, 皆錢之故也”

118) 『승정원일기』 경종 2년 5월 18일 “而本曹連値歲歉, 米穀尤爲不足, 百官頒祿, 軍兵放糧, 無路繼用, 稱貸賑廳穀物, 僅以支過, 而今年稅入, 亦且不敷, 故或請得別餉米, 或買取貢物價米, 以備前頭需用, 猶患不足, 則今此六百石之米, 勢難以本色輸送, 而內司形勢, 亦不可不念, 依本曹行用定式, 每石代錢文四兩支計輸送, 何如傳曰,錢米分半輸送, 可也”

과 목면 그리고 전문의 비중을 별도로 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비율은 고수해야 할 법식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전으로 출입이 정해진 경우 동전 이외의 현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119] 영남의 경우 3/5은 쌀 1/5은 면포, 나머지 1/5은 전문으로 상납하게 했고 호남의 경우 4/6는 쌀, 1/6은 면포, 1/6동전으로, 호서지방은 12/15는 쌀, 2/15는 면포, 1/15은 동전으로 지정하였다.[120] 세목이 동전으로 편향되어 수납될 경우 도성에서는 쌀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대표적으로 貢人들에게 貢價를 쌀로 지급해야 했던 宣惠廳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 선혜청에서 공가를 제때에 공급해 주지 못할 경우 이에 생활을 의지하는 도성의 백성들의 생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쌀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으로 쌀의 공급이 외방의 흉년이나 기타 요인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성의 백성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원칙적으로 선혜청에서 지급해주는 공가는 시장에서 귀한 품목을 택하여 공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종목을 지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때에 따라 쌀이나 면포와 같은 현물을 지급해주거나 혹은 동전이 귀할 때에는 동전을 지급해주기도 했다.[121] 하지만 현물의 양을 규제하여 상납되는 쌀과 목면의 양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동전납은 확산되어 갔다.

쌀과 함께 세납하는 면포의 비중도 일정부분 정해졌는데 군사의 의복으로 면포가 활용되었기 때문이었다. 軍門의 예산으로 책정된 면포는 직접적인 소비물품이었으므로 해마다 필요한 양이 확보되어야 했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관서에서 請得해와야 필요한 수요

119)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0월 27일 “惠廳重記中, 以錢載錄之故, 不許以木代納”
120)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2월 21일 “卽今變通, 只有一策, 惠廳貢價, 從前磨鍊者, 嶺南則五分內, 三分米一分木一分錢, 湖南則六分內, 四分米一分木一分錢, 湖西則五分內四分米一分則又爲三分, 二分木一分錢, 其他諸廳, 亦皆恒定磨鍊之規”
121) 『승정원일기』 영조 3년 5월 5일 “當受二兩者, 受木一疋, 則似無彼此輕重, 而豐年則貴錢, 凶年則貴米, 木布亦隨時異同, 貴則都民願受, 賤則民不願受, 若初不捧錢, 而只捧木布, 則純木上下, 亦豈稱冤乎”

를 맞출 수 있었다. 도성민들도 貢人들이 貢價로 지급받아 유통시킨 면포에 의지하여 의복의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면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공인들이 면포를 경제성을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면포가 부족해 면포 가격이 등귀하는 상황을 감당해야만 했다.[122] 따라서 백성들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면포가 도성에 공급되어야 했다. 즉,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동전으로만 세목을 고정할 수 없었다. 민간의 수요도 중요했지만 면포는 군복의 재료로 일정량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면황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목으로 바꿔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반드시 필요한 양이 있었기 때문이다.[123]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 상평통보의 주전 이후 18세기 말까지 동전으로 납부하는 세금의 양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런 동전납 증가는 백성들 스스로 동전납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전의 시중 가격이 정부의 고시 가격으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 민간에서는 동전납을 하는 것이 쌀로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백성들은 현물납보다 동전납을 선호했다. 물론 심한 재해가 들어 동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어서라기보다 동전밖에 납부할 물종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동전을 선택한 경우도 많았다. 상평통보의 발행 이후 원료 공급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관서에 축장되고 지역 간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전황이 나타났고 동전납을 선호하는 백성들의 경향 때문에 전황은 심화되고 있었다. 전황을 동전을 구하는 일이 민간에서는 더욱 어려워 졌지만 당시 동전납은 일정부분을 제외하고는 불안한 당시 상황에서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세금의 대안으로 국가에서 동전 가격을 흉년이전의 물가이전으로

122)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3월 5일 “晩曰, 以木綿給貢價事, 問之貢人, 則或有以錢自願者, 或有以木自願者, 詳考前例處之, 何如 上曰, 惠廳無木耶 成中曰, 雖有之, 而都數甚不足, 來頭請得他司木, 出給貢人, 然後都下可以得衣矣”

123)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10월 3일 “今年本道綿農, 雖不大登, 亦不至太歉, 則莫重軍需, 徑請純錢, 事體所在, 萬萬未安”

낮춰주면서 더욱 확산될 수 있었다.

2) '貿米'의 활용과 재정유동성 증가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정 물류에서 동전이 차지하는 규모는 일정 부분 내에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다. 그만큼 동전을 재정에 활용하는 부분도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 물류로 유입된 동전은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그리고 동전의 액수만큼 부족한 현물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성들의 '願納'에 따라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서울에 유입된 동전은 재정물류로 기능하고 있었다. 하지만 풍흉에 따라 곡물의 공급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동전납을 정부에서 허가했고, 결국 관에 축장되는 동전의 양은 늘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입이 증가한 동전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동전으로 실제 서울에 필요한 현물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먹거나 입을 수 없는 동전을 당장 사용이 가능한 현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일정 수준 보관해야 했던 賑恤廳과 같은 관청 그리고 西北지역과 같이 군사적 목적으로 군량을 확보하고 있었던 특수한 지역과 거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관에서도 가능하면 당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쌀과 같은 현물을 필요한 만큼 수납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124] 그런데 세목을 정하여 향촌에서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실제로는 풍흉에 따른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교환을 통해 확보하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 과

124)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30일 "今適累豐故願錢, 凶年則願米矣。上曰, 中年亦願米乎 在魯曰, 辛壬間, 一石價八九兩, 則皆願米矣, 凶年則米爲大利矣。始炯曰, 若如辛壬則願米, 而其餘則皆願錢矣"

정에서 정부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고 동전으로 쌀을 구매하는 '貿米'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럴 경우 백성들이 얻는 이익은 줄어들고 때로는 손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에 따라 무미 과정에서 관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현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만들어 내고 貿米과정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은 국가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고 금기시하고 있었다.[125] 하지만 동전유입량이 현실적으로 증가하면서 현물 이송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풍흉에 따라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면 관에서는 무조건 백성들에게 유리한 방식의 거래만 고집할 수는 없었다.

각종 세금을 동전으로 납부하면서 동전과 현물 간의 가격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동전과 현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優給'해주거나 동전과 현물 가운데 백성이 가볍게 부담하는 세목을 택하여 납부하도록 허락해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당시 각종 세금은 원하는 세목으로 항상 납부하도록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과 국가 사이에서 납부를 대행해주는 중간납부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통하여 세금이 거둬지는 경우 시세차익과 물종에 따른 이익차이를 이용한 모리행위가 나타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身役價를 현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行錢 이후에 백성들은 세금을 모두 동전으로 보내고 있을 정도로(皆以代錢送)한다고 할 정도로 납부해야 할 면포를 대신하여 동전납이 확산되었다. 이에 목면 대신 거두는 동전의 比價를 정하기 위해 관에서는 시장 가격을 따르고 있었다. 이 경우 時値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물의 교환가격이 수년 전의 가격으로 고정되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損上益下'의 원칙에 따라 시장가

125)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0월 6일 '此非朝家公然貿米, 與民爭利者也'

격을 반영하더라도 관서의 교환가격은 백성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었다.

1697년(숙종 23)에는 신역으로 거두는 면포의 가격을 수년전 '木賤錢貴'하던 시절의 가격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목면이 천하던 당시 면포 1필의 가격이 1냥 8~9錢이었는데 숙종 23년에는 1필당 4~5냥으로 목면의 대전가격이 치솟고 있었다. 이러한 시장 가격이 신역가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신역으로 바치던 면포의 가격으로 전문으로 1냥이 되지 않던 8~9전 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백성들은 목면을 직접 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동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큰 이득이 되었다.[126] 따라서 백성들은 현물이 아닌 동전으로만 身役價를 납부하려고 했다. 물론 면포 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터무니없는 동전 가격으로 고정되어 있어 신역가를 받던 各司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영남에서 거둔 신역가를 동전으로 분급해주면, 영남에서 거두는 값은 채 1냥이 되지 않은데 비해 분급하는 면포가는 4~5냥이 되었으므로 손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兵曹에서 거두는 것은 동전으로 거두고 各司의 下人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동안 축장하고 있었던 면포를 반 필만 나눠주는 형식으로 변통하며 시장가격을 맞추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各司 下人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는데 면포를 반으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 동전으로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 필의 면포를 받아야 할 각사의 하인들이 시장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반 필만 지급 받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兵曹에 신역가를 상납할 때에 外方에서 직접 동전을 거두고 운송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외방에서 구하기 힘든 경우가

126)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10월 5일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兵曹判書李世華所啓, 臣待罪本曹, 有所變通事, 故敢此仰達。行錢之後, 諸般身役之以木上納者, 皆以代錢送。數年前, 則木賤錢貴, 故一匹之價, 仍爲代捧錢文一兩八九錢矣。卽今則一匹之價, 至於四五兩, 而外方, 則以曾前所定價, 仍爲代納, 故本曹, 以此逐朔上下於各司下人, 而一匹價, 反爲半匹之價, 受食人呼冤特甚"

많아 대납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득을 취하는 모리배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가격 차이가 4~5배 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모리배가 납부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수월할 수밖에 없었다. 동전과 현물 사이에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兵曹와 백성 그리고 하인들 가운데 중간 대납자가 가장 큰 이익을 챙기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면포 뿐만 아니라 쌀도 현물로 거두는 주요한 세목이었다. 특히 쌀은 식량으로 반드시 서울에 공급되어야 하는 현물이었다. 그런데 쌀은 공급량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수납가는 해당 연도의 작황을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변동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풍흉에 따른 세목 조정을 통해 나타나는 수세량은 바로 정해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소비되는 현물의 양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산성과 같이 일정한 군량미가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곳에서는 동전납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곡식을 확보하는 문제는 중요한 현안으로 직면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항상적인 곡식을 확보하기 위해 經理廳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안정적인 군량미 공급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 즉,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곡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관청에 동전대신 현물을 공급해주며 이득을 취하는 모리배가 생겨나고 있었다.

숙종 45(1719)년에 경리청에 쌀을 공급하는 差人輩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득을 취하고 경리청에는 손해를 끼치며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다. 당시 해당 연도에는 농사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현물납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에 중간납부를 대신하던 차인배들이 자신들이 이익을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 가격을 임의로 정해 문제가 되고 있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현물도 구하기 힘들었지만 동전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다 보니 차인배들이 정한 比價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차인배들이 상납미의 가격을 시가보다 고가로 정

해버려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중간납부를 담당한 차인배들은 이전 해에 상응하는 대전가를 1石 당 7냥 5전으로 곡식 대전가를 이전 해와 비교하여 정했고 관에서도 큰 무리가 없는 代錢價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불과 1년 전에 도성에서 還穀을 가을에 거두는 대전가격이 1석당 4냥이었던 것에 비하면[127] 당시 경리청에 납부하던 대전가는 두 배 이상의 고가였다. 따라서 백성들이 불합리하다고 언급하는 것은 관의 평가만큼 근거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경리청에 납부하는 쌀값에는 운송비가 별도로 부과되었다고 하지만 환곡의 대전가에도 포함되어 표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리청의 대전가격은 차인배들이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관에서는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從輕折價'하거나[128] '民願'에 따라 세목을 변경해주기도 했던 만큼 자의적인 대전납의 인상은 관으로서도 용인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관에서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한 전납이 구조적으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측면도 발생하고 있었다.[129]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더욱더 백성들의 입장에서 쌀과 같은 현물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전을 稅目으로 선호했다. 하지만 도성에서는 쌀이 부족하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宣惠廳과 같은 관서의 운영이 제대로 지속되지 못했고 선혜청에서 공가로 제때에 공급해 이에 생활을 의지하는 도성의 백성들의 생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쌀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으로 쌀의 공급이 외방의

127) 『승정원일기』 숙종 44년 1월 20일

128)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10월 28일 "上年春都城上下民人等, 本廳還上各穀, 或別受, 或戶受者, 多至一萬餘石, 秋成後爲慮其備償之難, 米每石價錢四兩, 從輕折價, 使之代納"

129) 『승정원일기』 숙종 45년 5월 15일 "嶺底七邑稅米, 自經理廳草記相換, 發送差人, 使之作錢以納, 而差人輩勒定價直, 米一石定以七兩五錢云。蓋嶺底七邑, 去可興船所, 頗遠。一石輸納之際, 可費二石。故差人所定七兩五錢之價, 似不過濫, 而聞嶺南, 昨年稍豐, 穀賤錢貴而然也。但經理廳, 初無折定之事, 而差人輩, 勒定濫徵, 致有民怨, 則卽宜禁止, 而一從市價, 或捧價錢, 或捧本米竝馱價, 從民願爲之似宜矣。且此狀達中, 經理廳料販等事, 朝家一切痛禁。今此稅米防納, 應在停罷之中云。此則旣在於令前, 而戶曹已受所換之米云, 不可遽罷。米錢間從民願爲之事, 更爲分付, 何如 令曰, 依爲之"

흉년이나 기타 요인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성의 백성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영조 7년과 8년(1731~1732)에 곡창지대인 양남에도 큰 피해를 입은 辛亥·壬子年의 대기근을 겪었던 시기를 대표적인 예로 살펴볼 수 있다. 辛壬대기근으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어 외방의 곡식에 의존하는 도성에서는 미가가 치솟아 쌀 1석의 가격이 8~9냥으로 치솟았다.[130] 이전 해의 관서지방 미가가 비록 풍년으로 가격이 폭락해서 1석 당 1냥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신임기근으로 미가가 얼마나 폭등했는지 짐작가능하다. 이런 조건 아래에서 백성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民願을 올려 상황에 맞게 세납을 변통해주기를 바랐고 관에서는 전문과 현물을 반씩 거두는 '參半' 혹은 '從民願'에 따라 현물이나 전문을 선택해서 납부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131] 따라서 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의 현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동전을 과도하게 수납한 상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에 관에서는 현물 대신 수납한 동전으로 실제 필요한 쌀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官署나 지방에서 동전으로 대신 쌀을 사오는 '貿米'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미과정에서 차인배의 무미활동에 의지한다면 公私간의 이득이 줄고 차인배의 이득만 커지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官이 직접 교환과정에 참여하여 손해를 줄이고 貿米를 시행하였다. 물론 관에서는 무미 활동을 국가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만큼[132] 최대한 백성들에게 유리한 물가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줄여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동전을 현물로 교환하기 위해 쌀을 다수 확보하고 있던 선혜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130) 『승정원일기』 영조 5년 윤7월16일

131) 『승정원일기』 영조 7년 9월 20일 "大同軍布等諸般上納, 勿論錢與木, 以從民願, 收捧爲請。今若許施, 則自九月當番爲始, 以純木捧納云, 此於上納, 無所損, 而於民, 有實惠, 自軍門防塞, 似過矣。在魯曰, 大同之錢布參半, 係是貢物, 不可撓改。而至於軍布, 當此凶歲, 便民之政, 不可防塞。依狀請許施爲宜, 但九月當, 如有已捧錢者, 及此後或有自願納錢者, 則隨所納上送之意"

132)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0월 6일 "此非朝家公然貿米, 與民爭利者也"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동전납을 시행하면서 생긴 쌀을 官署 사이 혹은 지역 간 거래를 통해 확보하고 있었다. 동전이 과도하게 많고 쌀이 부족할 경우 각 관서에서는 쌀을 구비하기 위해 직접 貿米활동을 시행하였다. 무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從重上下'의 원칙에 따라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거나 혹은 과도한 현물확보책으로 시장에서 소비될 양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미활동으로 官署에 쌀을 보충할 수는 있었지만 한정된 도성의 쌀을 관서에서 흡수하다보니 민간에서 쌀값은 관서의 무미활동으로 크게 오르고 있었다. 특히 무미활동 외에도 京貢價를 동전으로 절급해주면서 쌀가격이 상시적으로 치솟아 풍년이 들어도 흉년과 다르지 않다고 할 정도였는데[133] 무미활동으로 서울의 쌀을 흡수하다보니 결국 지방민의 고충을 도성민의 고충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즉, 공인들에게 京貢價로 쌀을 주어 도성에 쌀이 풀려야 하지만 관의 무미활동으로 쌀이 시중에 유입되지 않다보니 도성에서는 미가가 풍년이 들더라도 고가로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반면 공인들의 입장에서 시세에 따라 동전으로 공가를 지급받는 것이 더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貢人들의 입장에서도 정부 측의 米錢비가에 따라 공가를 지급하다보니 쌀을 공가로 받을 경우 당시 시세에 따르면 손해를 보고 있었다. 따라서 선혜청에서도 공가를 가능하면 시가가 떨어지는 미곡으로 대신하려고 했다. 貢價에 동전이 없다는 탄식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에서도 동전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익을 염두에 두고 동전이 아닌 다른 현물로 지급하려고 했지만 '錢荒'이 심했기 때문에 실질

133)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1월 23일 "各軍門貿米公文, 下去外邑之後, 私齋買賣, 一切嚴斷, 持錢入市, 空手而歸, 京貢米之以錢折給, 米價常踊, 豐凶無異, 請令備局行會, 俾無外邑禁買之患, 貢米代給之弊事也"

적으로 공가를 동전으로 지급해줄 만한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다.[134] 따라서 공인들의 '失利'가 극심해지고 공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關西지방에 보관되어 있는 동전으로 공가를 대신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135] 관서지방에는 지역적인 특징상 국방에 필요한 예산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내역을 '封不動' 하였는데 상평통보가 유통되면서 점차 곡식이 아니라 동전으로 '封不動'하여 만일의 수요에 대비하였다.

도성의 무미활동은 관서지방과 진휼청 등 평소 쌀을 다량 가지고 있는 지역과 관서와 거래를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균역법의 시행으로 18세기 중반 이후 관에서 동전과 쌀을 교환해야 하는 규모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었다. 균역법은 두 필의 군포 납부를 한 필로 줄여주는 대신 나머지 부족한 액수를 균역청에서 보충해주는 군역 변통안으로 부족분을 채우는데 급대조의 40% 이상을 結錢으로 충당하고 있었다.[136] 따라서 균역법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군문에서 필요한 규모대로 면포와 쌀을 현물로 거두어 사용했는데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結錢을 획급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쌀을 貿易해야만 하는 구조가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마련되었다. 그 과정에서 입게 되는 시세차익은 정부차원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결전을 거두는 방식에 대해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다.[137]

균역법의 시행으로 동전납의 확대되면서 도성에서는 사용할 곡식

---

134)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30일 '旣令從民願, 故外邑所納, 多是純木, 不得不隨到隨捧, 納木數多, 錢邊自縮, 貢價中無以給錢, 多未卽下, 都下錢荒之弊方極, 蓋錢多積滯於兩西矣'

135)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30일 '自是定式, 則今以貢人失利之故, 捨惠廳米木, 取關西錢而給之'

136) 송양섭, 2008, 「『부역실총』에 나타난 재원파악 방식과 재정정책 」 『역사와현실』70

137)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2월 22일 "臣於軍門米條事, 竊有局外深憂者, 軍門自前有元定米大保所捧, 故用米處用米, 用木處用木矣。自均役廳畫給結錢以後, 不得不貿米, 貿米則必當藉此而料理, 料理則必當耗失財力, 無財力, 則軍食竭矣, 豈不大可憂者乎 若以軍門目下小利害言之, 得錢雖似有利, 前頭則亦有無限損害之憂矣。謀國之道, 莫如木·錢, 則以木錢守之, 米穀則以米穀守之, 切勿那移遷動, 則軍門雖似沓沓, 大爲儲蓄之道, 而永絶無窮之慮"

을 별도로 다시 확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은 도성뿐만 아니라 外邑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각 군문에서 외읍에 곡물을 사들이기 위해 일반 백성들은 곡물매매를 금지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백성들은 시장에서 곡식을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정도로 관에서 곡물 거래를 통제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었다. 당시 도성에 유통되고 있던 미곡의 대부분이 선혜청의 공가지급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이후 도성에서 給代條로 사들이면서 결국 도성에는 쌀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군문의 급대조로 다시 흡수되어버렸다. 이에 서울에 필요한 쌀의 양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풍년이 들게 되면 도성의 미곡 가격도 안정되어 유통되었는데 균역청의 무미활동으로 쌀값은 다시 등귀하여 백성들은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즉, 백성들은 균역법이 실시된 이후 미가가 치솟아 풍년이 들어도 그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균역청의 무미활동은 시장상황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138]

물론 균역법으로 나타나게 된 균역청의 무미활동이 반드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었다. 균역청의 무미활동이 미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균역청에 급대된 쌀도 결국은 시장에 다시 환류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역청의 무미활동으로 생겨난 미곡가격의 등귀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또한 균역청이 결전을 징수하고 다시 민간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통해 민간의 동전 유통량을 증가시키는 구체적인 역할도 하고 있었다. 당시 민간에서 이뤄지는 큰 규모의 동전 거래는 재정적인 부분이었다. 따라서 관서에서 거두기만 하고 민간에 동전을 배분하지 않으니 동전이 귀해질 수밖에 없다는 당시의 평가는 이를 뒷받침해주

138) 『승정원일기』 정조 3년 11월 21일 “蓋以兵而言, 則食爲重, 以財而言, 則信爲重矣, 後世掌財賦者, 寢失其道, 每多損下益上之患, 尋常竊嘆, 以近事言之, 荐歉之餘, 今歲稍登, 八方之民, 庶有少蘇之望, 而一自均廳貿米之後, 市價踊貴, 都民不知豊歲之樂”

고 있다.[139] 1794년 간행된 『賦役實總』[140]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전체 부세액 중 동전납 액수는 3,084,977냥으로 동전으로만 300만 냥 이상이 수납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서울로 상납되는 동전의 총계는 1,314,418냥으로 전제 동전납부액의 약 42.6%가 서울로 상납되고 있었다. 즉, 정조 말을 기준으로 약 300만 냥 정도의 동전이 민간으로 환류되고 서울에서는 1백 만 냥 정도의 동전이 지역 간 이동을 통해 환류되어야만 원활한 동전 공급이 이뤄질 수 있었다.

지방에서도 전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에서는 동전 지출량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모든 需用을 쌀로 會減하다 보니 관으로부터 풀리는 동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관에서는 반드시 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성들에게 쌀 대신 동전으로 나눠주어 시중에 동전이 풀리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동전으로 나눠주는 과정에서 시중의 쌀가격 중 중간 가격을 택해 유통시켜 관으로서도 손해를 입지 않고 백성에게도 이득이 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141] 정조 12년의 기록에 따르면 전황의 가장 큰 이유는 軍門과 營邑에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고 훗날의 쓰임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전으로 放債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식할 정도였다.[142]

---

139)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6월 12일 "夫錢者, 上之所造而通於下者也, 今操自我所造之柄, 而徒索於不得自造之民, 民受其病, 不亦宜乎 在前則不然, 均廳及各軍門, 或爲貿米, 多以官錢, 散於都民, 故公私兩利, 貨財通行矣。今則公下之外, 不復有散錢之路, 而一向徵出於民間, 則錢安得不貴乎"

140) 『부역실총』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부역실총』에는 강원도와 함경도의 세납 내역은 빠져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양섭, 2008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와 《부역실총》」 『역사와 현실』70; 송양섭, 2008, 「《부역실총》》에 나타난 재원파악 방식과 재정정책 」 『역사와현실』70; 김재호, 2008「朝鮮後期 중앙재정과 동전-『賦役實摠』을 중심으로-」,『경제사학』44)

141)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3월 11일 "大抵三南, 米賤錢貴, 大小需用, 以米會減, 故年穀稍登, 民苦錢荒。今若就其中不可不用米者外, 皆令以錢代下, 本米則儲留各邑, 民無錢貴之歎, 官有米裕之效"

142) 『승정원일기』 정조 6년 11월 6일 "錢貨旣非水火耗失者, 而近來京外, 錢荒忒甚, 此專由於內而軍門, 外而營邑, 俱爲藏置不散之致"

동전을 활용한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관에서도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 관의 입장에서는 동전을 활용하는 것이 저장성도 좋고 현물과 달리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부분도 적다보니 재정수단으로 동전을 전황에도 불구하고 선호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동전납은 당시 농형의 풍흉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세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에 계획된 균역청의 錢條는 동전으로 받더라도 재정소비에 영향을 덜 받았지만 직접 쌀로 소비해야만 하는 米條에 이르러서는 현물이 아닌 동전으로 거둘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시장가격에 따라 결역을 내는 백성들이 모두 전납을 원하고 있어 동전으로 수납하다보니 실제 군문에 필요한 허다한 餉米를 실제 급대해주기가 힘들었다. 만약 동전으로 군문에 직접 지급한다면 군문에 나타나는 폐단이 컸기 때문에 균청에서는 동전을 그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현물로 바꾸어 나누어 주는 수밖에 없었다.[143]

동전이 상납되는 양이 늘어날수록 관서에서는 현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144] 현물을 확보하기 위한 관서 간 거래가 증가하며 백성들에게 혹은 관서에 큰 손해가 나타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전거래는 향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상납량은 일정했지만 다시 향촌으로 환류되는 양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의 부상대고들이 동전을 서울에서 싣고 지방에 다시 팔아 이득을 취했던 구조가 바로 당시 서울 지방간의 물류흐름을 잘 대변해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전납은 현실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상 혹은 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증가했지만 부수적으로 경향간 물자의 이동을 야기하는 유동성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아래의 사례는 이러한 상

143)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均廳錢條, 猶可支過, 而至於米條, 則各道結役之民, 皆願納錢之, 故軍門許多餉米, 實難推移給代, 若以錢直劃於軍門, 則又有無限弊”

144) 『승정원일기』 정조 6년 11월 6일 “各司錢木上下, 旣有其法, 若木賤則以錢上下, 錢賤則以木出給, 參半上下, 則是可爲變通之道。而今適錢貴而木賤, 以木邊四分一或三分一上下, 錢邊倍之, 則似爲一分矯捄之方矣”

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767(영조 43)년에는 지속된 흉년으로 세금을 계획대로 걷지 못했다. 이에 도성에서는 곡식과 전문이 모두 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매년 균역청에 給代米條로 확보해야 할 양이 존재했고 영조 43년에는 약 3만 석의 미곡이 급대조로 보충되어야 했다. 급대미의 대부분은 군량으로 활용되었으므로 급대미의 확충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선혜청에서 이속 받은 급대미는 2만석으로 약 만석 정도의 쌀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균역청으로서는 만석에 해당하는 쌀을 구하기 위해 貿米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족분을 三南지방에서 求得하고 있다. 그런데 양남에도 큰 흉년 때문에 급대할 쌀을 균역청에 공급하지 못했다. 따라서 도성에 곡식의 상당량 유입시키는 양남과 기호 지방 특히 연해에서 지급하는 夫刷價를 진휼청의 정식에 따라 동전으로 지급하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쌀을 저축하여 均役廳에서 給代米條로 취용하도록 했다. 당시 市價가 아닌 진휼청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쇄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양남과 기호지방에게는 큰 폐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도성에 곡식이 '匱渴'된 상황에서 兩南을 비롯한 외방의 곡식을 최대한 수송하기 위해서는 곡식은 모두 취합하고 그에 해당하는 동전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식은 균역청의 급대미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으므로 대신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145] 즉, 현물로 지급되어야 할 부쇄가를 동전으로 대신하여 지급하면서, 소비되어야 했던 쌀을 축적하고 급대조로 활용할 쌀을 마련하고 있다. 물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물품을

145) 『승정원일기』 영조 43년 4월 10일 "同日入侍時, 左議政韓所啓, 京外蓄儲, 隨處匱竭, 日昨得雨之前, 誠慮無所不至矣, 外方每患穀貴錢荒, 民受其弊, 兩南畿湖沿海各邑夫刷價, 以賑廳定式折錢上下, 儲留本米, 自均廳取用, 則似好, 臣與領右相及諸堂相議, 幸不崖異, 分付惠堂節目擧行何如, 領議政金曰, 此非大段變通之事, 只令惠堂商量磨鍊, 成節目擧行好矣, 右議政金曰, 左相之意, 非徒捄外方錢荒之弊, 因均廳給代米條之不足, 有此變通之請矣, 上曰, 好矣, 此亦常平之意, 分付惠堂依爲之"

동전으로 대신 거두고 해당지역에서 동전으로 현물을 구입하며 재정 물류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론

조선 후기 화폐유통은 1678년 常平通寶의 발행으로 본격화되었다. 17세기 후반부터 발행된 상평통보는 많게는 한 해에 50~60만 냥 정도가 주조되어 시장에서 유통되었다. 1698년 이후 30년 동안 주전이 정지된 적이 있었지만 상평통보는 이전의 다른 어떤 화폐보다 대규모로 제작되어 유통되었다. 전근대시기에 전국적인 규모로 유통되었던 화폐는 상평통보가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기존 화폐사 연구는 상평통보 이전의 화폐는 왜 유통에 실패했으며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전국적인 규모로 유통이 확대되었는지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상업발달을 화폐유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존 연구성과에서도 화폐의 발행과 유통이 재정적 측면에서 효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아직 화폐를 활발하게 사용할 정도로 화폐성숙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평통보 이전의 화폐들은 유통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화폐는 이미 고대 중국에서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조선시대 이전에도 동전의 필요성은 이미 대두하고 있었다. 실제 고려시대에도 제한된 범위이지만 화폐가 활발하게 유통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즉, 화폐는 조선 시대 이전에도 충분한 양의 화폐가 확보된다면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던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고 이것은 상업의 성숙도와는 큰 관계를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상평통보 이전에 발행되었던 화폐는 왜 안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장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관주도로 유통되었던 화폐가 왜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화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 초기에 유통되었다가 퇴장된 저화와 동전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저화는 1401년(태종 원년)에 河崙의 건의로 처음 통용되기 시작했다. 저화는 금속화폐가 아닌 지폐, 즉, 실질가치가 거의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 유통만 보장된다면 대량으로 제작이 가능했다. 그러나 태종이 사섬시를 설치해서 발행한 저화는 시장에서 널리 유통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 저화는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실패한 것으로 간주했다. 저화가 실패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 저화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물담보를 정부가 뒷받침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조선 정부는 저화의 가치를 동전의 양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저화의 액면가에 상응하는 동전을 주조하지 못했다. 따라서 저화는 민간에서 가치를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贖錢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사용이 둔화되었고 시장에서 신용도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발행량과 유통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저화의 발행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유통시킨 화폐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화의 양과 그리고 저화의 가치를 뒷받침했던 동전의 발행 규모를 통해 전국적인 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는 해당시기에 부족한 자원을 기반으로 긴급한 재정적 위기를 풀어내기 위해 저화를 발행하여 유통시켰던 것이다.

저화는 세종대에도 다시 발행되었는데 이때에 발행된 저화는 朝鮮通寶라는 동전과 같이 유통되었다. 관에서는 조선통보를 저화의 가치를 뒷받침하면서 시장에서 교환되도록 의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통보의 발행량은 극소량이었고 저화가 사용되는 범위도 넓지 않았다. 특히 발행된 저화의 가치를 담보해줄 만한 조선통보가 충분히 주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통보와 저화는 유통이 지속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져버렸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 초기 상업환경이 성숙하지 않아 동전이나 저화와 같은 화폐가 유통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조선통보가 전국적인 규모로 유통되기를 바라고 유통시켰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통보는 발행된 규모와 주전 계획을 통해 한시적인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제작된 동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통보는 전국적인 유통을 염두에 두고 발행한 화폐라기보다 일시적인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화폐로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 발행된 저화와 조선통보와 같은 화폐는 전국적으로 유통시킬 만한 화폐원료가 공급되지 않은 가운데 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재정책으로써 선택된 것으로 해당시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화와 조선통보가 시장에서 퇴장되었지만 화폐에 대한 필요성은 民과 官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가 없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면포와 쌀과 같은 현물을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麤布는 민간에서 사용되었는데, 현물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품질을 유지한 채 유통되었다. 이후 兩亂을 겪으며 중국으로부터 銀이 유입되었고 조선에서는 銀을 화폐로 사용했다. 그러나 銀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하지 못했고 현물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특히 양란 이후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유입이 차단되면서 은의 공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화폐로 널리 사용될 만한 양이 확보하지 못했다. 민간에서 화폐를 필요로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정부에서도 한정된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동전 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중국 동전이 수입되어 유통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도 동전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였고 조선에서도 명청교체기에 明과의 교역이 어려워지자 중국으로부터 동전을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 없었다. 조선 정부에서 소량으로 수입해 유통시킨 동전 역시 전국적인 유통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의 적은 분량이었다.

즉, 조선은 동전의 재정적 효과에 대해 이전 시기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양란이후 필요에 따라 淸錢을 도입하여 시급한 재정적 현안을 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규모 동전 유통에 대한 논의는 사실 국가의 경제적 배경이 안정적이었던 시기가 아닌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아래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그 도입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양란 이전 조선에서 유통되었던 화폐는 시장경제의 성숙도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재정수단으로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상평통보 이전의 동전은 유통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재정책으로서 일시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사라진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동전 유통의 제반 환경이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은 17세기 후반이었다. 일본에서 다량의 구리가 생산되고 조선에서 왜동을 수입하면서 조선에서는 상평통보를 대규모로 주전하여 이전시기와는 다른 行錢策을 시행하였다. 조선정부가 구리를 수입한 곳은 대마도였는데 대마도는 쌀과 면포를 자급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선과 무역이 성립할 수 있었다. 조선은 대마도에 면포와 쌀과 같은 현물을 공급하고 대신 구리를 수입하였다. 東萊를 창구로 대마도에서 수입된 구리는 주전재로로 활용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이전과 다른 규모로 동전을 유통시키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주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주전반대론자들은 이미 조선 초기에 실시되어 실패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다시 시행한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동을 재료로 만든 상평통보는 소액환으로, 동전 자체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고 이전의 화폐와 달리 별도의 담보를 국가에서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구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이전과 비교하여 규모가 큰 연 50~60만 냥 정도를 주조하기도 하여 이전과 달리 비교적 넓은 지역적 범위에서 유통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교환매체가

부족해서 면포와 쌀을 사용하고 있었던 민간에서도 새로 발행한 상평통보를 널리 활용하였고 상평통보는 조선의 기축화폐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로서 상평통보 유통의 성공 여부는 시장의 성숙도에 달려 있다기보다 유통될 수 있는 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17세기 후반 왜로부터 구리가 공급되었고 대규모로 상평통보를 주조하면서 민간에서 백성들은 동전을 일상에 활용하면서 동전 사용층과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평통보가 민간에서만 유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상평통보의 발행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큰 효용성이 있었다. 일차적으로 동전이 만들어진 만큼 재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동전의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었다. 재정적 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노력은 정책적으로 시도되었는데, 당시 조선에서 실시한 상평통보 유통책은 가격을 비정하는 단계에서 비슷한 주조환경에서 동전을 제조하였던 淸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당시 조선은 상평통보의 가격을 주전 초기에 淸과 달리 가격을 높였고, 차액은 정부에서 주전이익으로 최대한 가져가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시기 일본의 大坂과 중국 北京의 銀錢比價를 비교해보면 좀 더 부각되는데, 조선은 銀 1냥 당 동전의 가격을 낮게는 200文의 비율로 고수하였고 일본과 중국은 銀 1냥 당 동전 800~1,000文 정도에서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수입된 구리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銀 1냥 당 동전의 가치가 조선에서 훨씬 높았던 차액만큼 정부에서는 주전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조선정부는 주전이익으로 가져가는 액수는 은 1 냥 당 동전으로 600문~800문 정도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 정부는 왜로부터 수입한 동전의 가격을 높여 나머지 차액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을 통해 주전 초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17세기 말 이후 주전환경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왜

동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동전의 원료를 거의 전적으로 일본에 의지하고 있었던 조선에서는 동전을 수요에 따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조선에서는 상평통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있었으므로 갑작스런 동전 주조의 금지는 民官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것이었다. 동전이 부족한 당시 상황을 통칭하여 '錢荒'이라고 하였는데 錢荒이 심화되면서 각종 폐단이 나타났고 백성들은 동전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전황이 전적으로 왜동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동전유통이 정체 되어 전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상평통보가 발행된 이후 정부에 내는 세금의 일부가 동전으로 강제되었고 매년 일정한 양의 동전이 호조와 재정기관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戶曹의 경우 1년 동안 사용되는 동전의 양은 英祖 3년의 경우 10만 냥을 넘어섰지만, 호조의 세출동전은 사실 지방 곳곳으로 다시 환원되지 못했다. 호조 외에도 동전을 가장 많이 재정에 활용하는 기관은 宣惠廳과 均役廳 그리고 軍門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에 매년 축장되는 동전의 양의 일부만 소비되었고 그 소비지역도 대부분 서울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錢荒'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우선 '加鑄'를 통해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의 양을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실행되지 못했고 민가에 축장된 동전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 舊錢의 사용연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축장시킨 동전을 끌어내려했지만 이마저도 동전 재주조에 투입되는 자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했으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官의 입장에서도 동전을 유통시키면서 더 이상 재정적 이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로 유입되는 구리의 양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실제 동전으로 세금을 걷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동전가격을 정하다보니 동전으로 세납을

하면서 오히려 국가 재정적으로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동전을 유통시키면서 관의 재정적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가운데 동전의 가격을 현물로 정하다 보니 동전납이 증가할수록 재정적인 손해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민과 관에서는 차라리 동전을 없애자는 '廢錢論'이 등장하였다. 純木令은 이러한 환경에서 동전이 아닌 면포를 국가 재정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당시 동전 사용은 이미 公私에서 확대되었고 영조가 실시했던 순목령은 세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지만 결국 철폐되었다. 당시 동전을 폐지하자는 폐전론은 표면적으로는 동전을 없애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에 폐전론에 대한 평가는 동전을 없애자는 논의로 해석하여 당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반동적인 시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폐전론의 핵심은 화폐를 없애자는 표면상의 의견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전 부족으로 야기된 폐단을 없애자는 논의였다. 따라서 폐전론은 단순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반동론으로 평가하기보다 당대의 行錢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안의 하나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후 조선에는 전황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공사 간 모두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동전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통론을 검토하고 있었다. 동전을 유지시키는 선에서 변통을 하려는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전개되었다. 한 가지는 고액환의 유통, 다른 하나는 楮貨를 유통시키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현실적인 문제로 끝내 실행되지 못하고 철회되었다. 하지만 흉년이나 긴급한 재정 보완이 필요한 시기에 여전히 화폐를 재정책으로 활용하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곡식 1석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鑄錢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자는 논의는 당시 주전책이 단순히 민생안정책이 아닌 재정책으로서

갖는 의미를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실적인 주전재료의 부족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비된 재료보다 많은 양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고액환이나 저화 발행으로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려고 했다.

조선 시대 화폐유통은 楮貨를 시작으로 常平通寶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발행되어 유통되었다. 상평통보 이전에 발행된 화폐는 짧은 시간 동안 한정된 지역에서 유통되다가 시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그 유통을 실패로 간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화폐발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화폐가 발전된 시장경제의 대응물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기보다, 위기를 타개해 가기 위한 재정책으로서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주전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18세기부터 상평통보의 행전책은 재정적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급선무를 해결하기 위해 동전을 지속적으로 유통시킬 수밖에 없었고 동전유통으로 생기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후기에 주전된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상평통보는 각 재정 기구의 재정유동성을 확보시켜주었던 재정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조선 후기 재정의 탄력적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화폐유통에 대해 단순히 상업발달의 지표로서 바라보는 단선적인 시각을 넘어 국가 재정수단의 일환으로 의미를 확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조선시대 관주도의 화폐유통책은 정부의 재정책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부표 1) 明·淸시기 銀錢比價 변동 (1478-1649년)

연대	規格錢	私鑄錢
1478		1,550
1480	750	
1506	700	
1512	700	
1525	700	
1527	700	1,400
1529	700	
1536		3,000
1539	700	1,400
1541	550-600	1,000
1553	700	1,400-2,100
1554	700	3,000-4,000
1567	800	
1576	1,000	
1577	800	
1578	800	
1580	1,200	
1582	800	
1585	400	
1587	500	
1588	500	
1589	500	
1592	800	
1597	690	
1598	850	
1605	1,000	
1608	680	
1611	600	
1614		1,280
1621	500	
1623	500	
1626	550	
1628	550	
1629	650	
1630	650	
1631	650	
1632	650	
1634	1,000	
1636	650	
1638	800	

1640	2,000	
1642	2,500	
1643	3,000	
1644	700	
1645		2,850
1646	5,000	
1647	1,000	
1649	3,300	
1670	1,250	
1684	850	
1722	780	
1723	800	
1724	820	
1725	845	
1726	900	

* 典據: Richard von Glahn, *Fountain of fortune*,

부표 2) 18-19세기 大坂및 京都의 米·綿布의 가격 변화표(*단위는 匁(銀))

연대	河內木綿(反)	筑前米(일본石)	中國米	米/木 가격비
1757	4.9	70.5		14.39
1758	4.95	63.8		12.89
1759	5	62.5		12.50
1766	4.7	64.5		13.72
1767	5	82.6		16.52
1768	4.95	70.7		14.28
1771	5.2	72.6	65	13.96
1772	5.35	62.1	62.3	11.61
1773	5.3	53.9	57.3	10.17
1781	7.9	57.7		7.30
1782	8.2	70		8.54
1783	7.25	88.6		12.22
1784	7.2	105.3		14.63
1785	8.5	66.6		7.84
1786	7.85	84		10.70
1787	8.9	109.6		12.31
1788	9.3	71		7.63
1789	5.75	66		11.48
1790	9.1	60.9		6.69
1791	10.9	74.4		6.83
1792	11.15	95.8		8.59
1793	10.5	92.3		8.79
1794	11	61.2		5.56
1795	10.5	72.9		6.94
1796	11.2	73.8		6.59
1797	11	70.5		6.41
1798	8	65		8.13
1802	6.4	74.5	75.4	11.64
1803	6.9	63.9	64.6	9.26
1804	6.4	58.4	58.4	9.13
1805	6.4	59.5	61.1	9.30
1806	6.3	61.8	62.4	9.81
1807	6.2	72.9	74.4	11.76
1808	6.9	73.5	76.9	10.65
1809	6.4	74	73.5	11.56
1810	6.4	58.8	58.8	9.19
1811	6.4	84.7	58.8	13.23
1812	6.4	66.5	57.1	10.39
1813	6.1	68.2	66.1	11.18
1814	8	68.8	69.8	8.60
1815	6	69.5	67.9	11.58
1816	6.3	68.3	67.8	10.84
1817	6.2	69.6	68.5	11.23

1818	5.8	59.7	58.4	10.29
1819	5.8	54.6	54	
1820	6.1	56.4	50.3	
1821	6.1	59.2	59.5	
1822	6.1	59.7	64.8	
1823	6.3	62.9	64	
1824	6.1	64.5	64.1	
1825	7.1	74.7	75.5	
1826	6.3	76.9	76.5	
1827	6.3	62.7	61.8	
1828	6.3	82.6	84	
1829	6.1	94.1	92.1	
1830	6.5	86.1	83.9	

* 典據: 三井文庫　編, 1989 『近世後期における主要物価の動態』(본 표는 三井文庫所藏史料를 지역과 시기별로 표로 정리한 자료집을 재구성 했다.)

※1781년 이전까지는 자료는 『穀物相場帳』別77, 別79의 내용이다. (단위는 1反)

※1781년부터 기재된 수치는『從天明元丑年諸相場控』本894의 내용이다. (단위는 1疋) 1781년부터 河內에서 생산된 면포의 단위는 1疋로 되어 있고 면포의 품질이 上中下로 구분되어 있다. 월별로 기록되어 있는 가격 중 최고치를 선택하여 해당연도의 면포 가격을 표시하였다.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쌀의 종류는 대부분 산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있다. 肥後米, 筑前米, 加賀米 등이 있으며 中國米는 중국에서 수입한 쌀로 보인다.

부표 3) 숙종-정조 연간 물가 변동표

일자	연도	면포가	동전가	미가	비고
숙종 5년 2월18일	1679				본문: 銀1냥=7두 賑恤廳가격
숙종 5년 3월 27일	1679	1필	1냥	5두	본문: 錢賤의 시기, 6전=3두에도 못 미침
숙종 5년 10월 16일	1679		1냥	7.5두	본문: 1석=2냥 俸祿대신 銅錢을 지급
숙종 7년 7월 23일	1681	1필		5두	兩南 3필=1석
숙종 19년 3월 3일	1693		은1냥 2전	1석	小米의 가격
숙종 22년 10월 30일	1696		1냥	2두	
숙종 23년10월 5일	1697	1필	4-5냥		옛날의 가격1냥 8-9전
숙종 23년10월 13일	1697	1필		5두	兩南·關東·海西지역의 가격
숙종 23년 12월 13일	1697	50필			은 25냥 은1냥=2필
숙종 24년 2월 18일	1698	1필		6두	匠米 환산가격, 6두로 정할 경우 백성들이 쌀을 더 선호하기도 했음
숙종 24년9월 12일	1698	1필		12두	
숙종 28년1월 15일	1702	1필	3냥3전	5두	정식가격,1석=9냥9전 금년 大同木의 정식가격, 1석=7냥 제안
숙종 29년 10월 10일	1703	1필	은1냥	2석	
숙종 35년 1월 5일	1709	1필	3냥 5전		원래 가격은 2냥 5전. 흉년으로 인상
숙종 42년 11월 18일	1716	1필	2냥		
숙종 44년 1월 20일	1718		1냥	3.75두	본문: 1석=4냥
숙종 45년 5월 15일	1719		1냥	2두	본문: 1석 =7냥5전, 差人輩가 늑정한 比價
경종 2년 5월 18일	1722		1냥	3.75두	戶曹의 정식
경종 2년 11월 22일	1722		1냥	3.75	정식은 1석=2냥, 실제가격 1냥=3.75두 4냥 1석
경종 3년 3월 6일	1723		1냥	3.75	본문: 1석=4냥
경종 3년 5월 26일	1723		1냥	2두	흉년으로1-2두에 불과함.
영조 2년 4월 12일	1726	0.5필	1냥	3.75두	1석=4냥 1냥=3.75석, 본문 1필=2냥=7.5두 0.5석
영조 2년 9월 2일	1726		1냥	1.89두	본문: 1석=8냥 太 1석=4냥
영조 3년 5월 5일	1727		1냥	8두	湖南 풍년 시 곡식가격.

					租일경우 20두
영조 4년 8월 2일	1728		1냥	8두	
영조 5년 1월 5일	1729				1695-6 乙丙대기근시 1석=10관 1냥=1.5두, 貫을 兩으로 해석
영조 5년 윤7월16일	1729		1냥	15두	關西지방의 풍년 시 가격, 軍布 2필가=5-6석
영조 6년 8월 28일	1730		1냥	2.5두	1석=6냥 貢物價기준
영조 6년 8월 30일	1730		1냥7전4푼	1석	貢物米가격
영조 6년 9월 20일	1730		1냥	5두	流民들이 서울에서 구입함
영조 6년 11월 7일	1730		1냥	6두	慶尙右道 면포: 1필 12두, 경상우도와 좌도의 미가, 면포가격 차이 있음
영조 6년 11월 12일	1730		1냥	8.5	1냥 8-9두 市値 기준 본문: 시치 1관전 貿米 8-9두
영조 7년 9월 20일	1731		1냥	3두	1석=3냥 貢物가격, 군병급료가 5냥=15두 흉년
영조 7년 11월 17일	1731		1냥	10두	南陽에서의 미가
영조 7년 12월 21일	1731		1냥	3두	1필=1냥 5전, 1석=5냥 關西지방 특히 면포는 품질이 추열함
영조8년	1732		1냥	1.8두	영조 12년 5월 30일 기사에 근거함, 1석=8-9냥
영조 10년 1월 11일	1734				흉년1문=2-3홉,풍년1문=5-6홉
영조 10년 5월 12일	1734		1냥	5두	본문:1석=3냥 보통의 貢價가 풍년이면7-8냥 흉년의 경우 3-4냥
영조 10년 8월 20일	1734		1냥	5두	가을의 가격, 봄에는 1냥 1-2두
영조 10년 9월 24일	1734	1필	2냥		
영조 10년 10월 27일	1734		1냥	8두	1냥=8두 端陽의 물가임. 영조8년1732년에는 1냥=4두
영조 10년 10월 29일	1734		1냥	3.75두	賑恤廳의 동전을 綾州牧에 보내어 貿米한 가격
영조 11년 3월 5일	1735	1필	1냥		7升면포 기준 가격
영조 11년 12월 7일	1735	1필	1냥		
영조 11년 12월 10일	1735		1냥	3-5두	
영조 12년 5월 30일	1736		1냥	7.5두	2냥=1斛(15두)
영조 14년 12월 25일	1738	1필		3석	
영조 15년 5월 18일	1739		1냥	4.28	본문: 1석=3냥5전 經理廳의 환전가격

영조 18년 1월 16일	1742		1냥	4.54	본문: 1석=3냥 3-4전
영조19년2월13일	1743		1냥	3.75	본문: 1석=4냥
영조 21년 5월 3일	1745		1냥	2.15두	1석=7냥
영조 22년 7월 2일	1746				은가 1석=2냥5전 時値기준
영조 21년 5월 26일	1745	1/6 필	1냥	2.5	본문:1석=3필=6냥1필=5두=2냥, 宣惠廳 정식
영조 24년 10월 2일	1748				본문: 租1석=1냥1전, 太1석=1냥1전 牟:4전5푼 粟:7전,木麥:7전,小豆:1냥7전
영조 25년 9월 19일	1749		1냥	6두	豊年으로 '米價深淺'
영조 25년 9월 23일	1749		1냥	3.75	1석=6냥 지금은 1석=4냥으로 給價하고 있음. 貢人들이 혜택 받는 것, 1석=3필 그러나 공인들이 관서목이 추해 원하지 않음
영조 26년 7월 23일	1750		1냥	2.5두	본문: 1석=6냥, 선혜청의 貢價
영조 26년 11월 27일	1750		1냥	2.5두	본문: 1석 6냥 선혜청 貢價
영조 26년 12월 27일	1750	1필	1냥 5전		선혜청의 貢價 1냥=3전
영조 27년 5월 3일	1751		1냥	2.1두	海西지방 흉년 1석=7냥
영조 27년 6월 2일	1751		1냥	6두	12두=2냥 中年 기준가격
영조 27년 6월 4일	1751		1냥	3두	戶曹定式 1석 5냥
영조 27년 10월 19일	1751		1냥	3.75	본문: 16냥=4석
영조 27년 12월 10일	1751	1필	1냥2- 3전		1냥5전이 정식
영조 30년 1월 30일	1754		1냥	5두	賑廳발매가격 발매가 1석=3냥 이후 1석=1냥8전까지 떨어짐(1냥=8.3두)
영조 30년 1월 10일	1754	1필	1.2냥		常木: 1냥 2,3전
영조 32년 4월 3일	1756		1냥	3.75	戶曹: 1석=4냥 (3.75) 賑恤廳 가격: 1석=6냥(2.5)
영조 32년 4월 19일	1756		1냥	5두	賑恤廳 穀價, 廣州 1석 5냥, 원문: 3냥 1석
영조 32년 12월 15일	1756		1냥	3.75두	1필=1냥8전, 원문:4냥 1석
영조 32년 12월 15일	1756	1필		6두	應行舊例임
영조 32년 12월 15일	1756	1필	12두		풍년이 연속되어 곡식 가격이 천함
영조 32년 12월 15일	1756	1필	1냥 8전		1필=7.5두
영조 33년 6월 18일	1757		1냥	5두	본문: 3냥 1석 (『비변사등록』)

영조 34년 1월 2일	1758		1냥 3전	1석	貢物米價: 貢人들이 곤란함. (『英祖實錄』)
영조 34년 10월 20일	1758		1냥	3두	
영조 34년 8월 25일	1758		3전	1석	江原廳에서 嶺南米와 교환한 가격
영조 37년 3월 14일	1761	1필	4전		別貿價
영조 38년 1월 18일	1762		1냥	4.1두	木賤錢貴한 상황
영조 38년 1월 18일	1762	1필	2냥		
영조 38년 4월 2일	1762	1필	2냥		
영조 46년 3월 10일	1770		1냥	3두	平壤에서 還穀을 米와 교환한 가격
영조 46년 8월 4일	1770		1냥	7.5두	1석=2관, 풍년 시 곡식 가격
영조 50년 5월 19일	1774				鹽1석=8-9냥
영조52년2월9일	1774	1필	1냥	3두	2냥=6두
정조 2년 1월 5일	1778		1냥	2.15두	본문: 향촌에서의 미곡 가격 1석=5냥, 서울 1석=7-8냥
정조 2년 11월 22일	1778		1냥	2.5두	본문: 1석=6-7냥, 흉년시 가격
정조 4년 10월 9일	1780		1냥	5두	본문: 1석 3냥 還糶價
정조 5년 9월 24일	1781		1냥	2.5두	嶺南의 白米가격 1석당 가격 관서(5냥), 예산(3냥5전), 정읍(4냥5전), 양구(4냥5전)
정조 6년 1월 15일	1782		1냥	5두	1석=3냥
정조 6년 5월 28일	1782		1냥	1.25	1석=12냥 端川이남 關西지방
정조 6년 11월 6일	1782		1냥	1.5두	1석=10여 냥, 摠戎廳에서 무역한 환곡가격
정조 7년 5월 11일	1783		1냥	2.72두	본문: 1석=5냥5전, 공미
정조 7년 7월 8일	1783		1냥	3.75두	關西지방 대미: 1석=4냥, 소미1석=3냥
정조 7년 9월 20일	1783		1냥	2.5두	본문: 1석=6냥 함열 지방 미가 소미=5냥
정조 7년 9월 22일	1783		1냥	2.72두	본문: 1석 5냥 5전
정조 8년 1월 11일	1784		1냥	2.15두	7냥=1석, 시치임. 균청 무미가는 1석=5냥임.
정조 8년 3월 14일	1784		1냥	1.88두	1석=8냥
정조 8년 10월 5일	1784		1냥	5두	본문 1석=3냥 시치
정조 9년 1월 2일	1785		1냥	3.75두	본문 1석=4냥 文川군수 大豊으로 곡식 가격 저렴
정조 9년 1월 2일	1785		1냥	7.5두	본문 1석=2냥 寧遠 大豊
정조 9년 2월 22일	1785		1냥	3.75두	본문: 1석 4냥 조금 못미

					침 서울시치 기준
정조 9년 11월 21일	1785		1냥	12.5두	본문: 1석 1냥2전 高城郡守 李趾光의 보고
정조 9년 12월 8일	1785		1냥	3.75두	宣惠廳價 6냥 호조 4냥
정조 10년 9월 18일	1786		1냥	2두	본문: 1석 7냥 5전
정조 10년 10월 8일	1786		1냥	3.75두	본문: 1석 6냥
정조 10년 10월 11일	1786		1냥	2.72두	본문: 경기감사 從願納 1석=5냥5전
정조 11년 10월 5일	1787		1냥	3.3두	본문: 1석 = 4.5
정조 12년 6월 12일	1788		1냥	1두	풍년일 경우, 흉년: 1냥 7-8승
정조 13년 12월 10일	1789		3냥7전	1석	3냥7전=1석
정조 17년 2월 19일	1793		1냥	3.8두	義禁府 折米式에 의거 함 (191석을 752냥으로 바꿈)
정조 18년 6월 16일	1794		1냥	4.28두	平安道 還折米
정조 18년 11월 24일	1794		1냥	4.3두	1석=3냥4-5전
정조 20년 11월 4일	1796		1냥	3두	본문:1석=5냥 鄕軍 上番時 교환비율
정조 22년 12월 7일	1798		4냥	1석	1냥=3.75두

* 典據: 『승정원일기』

참고문헌

1. 資 料

1) 年代記

『高麗史』(東亞大學校, 경인문화사, 1965),『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DB),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DB),『備邊司謄錄』(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DB)

2) 文集類 및 관찬자료

吳達運, 『海錦集』, 禹禎圭 『經濟野言』, 李瀷, 『星湖塞說』

『弓角契變通節目』(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규18953),
『嶺南廳事例』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奎. 15233)
『公木作米謄錄』(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奎 12968)
『雜物折價 』,『公車文叢書』(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편, 1992)

3) 중국자료

『銅政便覽』(臺灣, 臺灣學生書局, 1986)
『吳城日記』(中國, 江蘇古籍出版社, 1999)
『制錢通考』(臺灣, 聚珍仿宋書局, 2003)
『度支奏議』(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95)
『皇朝經世文編』(臺灣 世界書局, 1964)
『皇朝文獻通考』(中國 鴻寶書局, 1902)
『欽定大淸會典事例』(臺灣, 中文書局, 1963)

2. 論 著

1) 저서 및 학위 논문
고병권, 2005『서유럽에서 근대적 화폐구성체의 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종수, 1996, 『조선후기 훈련도감의 설립과 운영』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준성, 1984,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박평식, 1999『조선전기상업사연구』지식산업사
宋贊植, 1975 『李朝의 貨幣』春秋文庫 9 한국일보사
송양섭, 2001,『조선후기 軍衙門 屯田의 경영형태연구』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오일주, 1984, 「조선후기 국가재정과 환곡의 부세적 기능의 강화」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원유한, 2006『한국화폐사』, 한국은행
_____, 2008『조선후기 화폐사』혜안
유원동, 1977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일지사
유자후, 1940 『朝鮮貨幣考』 학예사
이우성・임형택, 1973 「婢夫」『李朝漢文短篇集』上, 일조각
이정수, 박희호, 2000 『조선후기의 화폐와 화폐량』경북대출판부 화폐량
이정철, 2010,『大同法 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이종영, 2003『조선전기사회경제사연구』혜안
이태진 외, 2001 『서울상업사』, 태학사
장동표, 1999, 『조선후기지방재정사연구』, 국학자료원
정성일, 2000,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정수환, 2007 『17세기 동전유통의 정책과 실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정연식, 1992, 『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운찬, 2000『화폐와 금융시장』율곡출판사
전성인, 1996『화폐와 신용의 경제학』다산출판사
조영준, 2008,『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지명숙, 2003『보물섬은 어디에』,연세대학교출판부
애덤 스미스, 김수행 역, 1996『국부론』상권, 동아출판사
로이드 E. 이스트만, 이승휘 역, 1999『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돌베개
홍길주, 박무영 역, 2006 『峴首甲藁』, 태학사
채계병 역, 2004,『채굴과 제련의 세계사』 책으로만나는세상)
케네스 포머란츠, 2003『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심산
칼 폴라니, 이종욱 역, 1994『초기제국에 있어서의 제국과 시장』민음사
마크 엘빈, 李春植 외 역, 1989『중국역사의 발전형태』, 신서원
黑田明信, 정혜중 역, 2005『화폐시스템의 세계사』논형

東京大學出版會, 1960『日本産業史大系』6
今井典子, 1988 「近世中期の地賣銅について」『日本歷史』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 硏究』 創文社
宮澤知之, 1998『宋代中國の國家ど經濟』創文社
金井圓,1993 『近世日本とオランダ』東京放送大學教育振興會
修史室編, 1957 『近世前期に於ける銅貿易と住友』泉屋叢考. 第9輯
八百啓介, 1998 『近世オランダ貿易と鎖國』吉川弘文館
高柳眞三, 石井良助 編, 1934『御觸書寬保集成』岩波書店

1960 『日本産業史大系』6, 東京大學出版會
三井文庫 編, 1989『近世後期における主要物価の動態』東京大學出版會
小葉田淳, 1966 『讀史總覽 』人物往來社
小葉田淳, 1938 『日本銅鉱業史の研究』 思文閣出版
山脇悌二郎, 2002, 『絹と木棉の江戶時代』, 吉川弘文館
修史室編,1957 『近世前期に於ける銅貿易と住友』泉屋叢考 第9輯
甘粕健, 1983 『講座 · 日本技術の社會史』5, 日本評論社

葉世昌 外, 2006「春秋戰國時期貨幣理論」『中國貨幣理論史』厦文大學出版部, 2006.
姚賢鎬, 1962 『中國近代對外貿易史資料』中華書局, 1962
劉序楓, 1997 『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7, 1997
張存武, 1978 『淸韓宗藩貿易』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 1978(김택중 편역, 2001 『近代韓中貿易史』교문사)
彭信威, 1958『中國貨幣史』
楊端六, 2006 『淸代金融貨幣史稿』 武漢大學出版社
丁福保 2006,『歷代古錢圖說』丁福保編纂出版社
高淑娟、馮斌, 2003,『中日對外經濟改革比較史綱-以封建末期貿易政策爲中心』淸華大學出版社,

2) 논 문

김재호, 2008「朝鮮後期 중앙재정과 동전-『賦役實摠』을 중심으로-」『경제사학』44
권인혁, 1984「조선초기 화폐유통연구-특히 태종대 저화유통을 중심

으로」『역사교육』
_____, 1984「세종대의 저화유통책」『논문집』17
_____, 1986「세종대의 동전유통책」『논문집』19
김도연, 2004, 「元간섭기 화폐유통과 寶鈔」 『한국사학보』 18
김동철, 1993「17·18世紀 對日 公貿易에서의 公作米 문제」『향도부산』10
남원우, 1991「15세기 유통경제와 농민」『역사와 현실』5
남미혜, 1998「조선전기 면업정책과 면포의 생산」『국사관논총』80
박평식, 1994「朝鮮前期의 穀物交易과 參與層」『한국사연구』8
방기중, 1984 「17·18세기 전반 금납조세의 성립과 전개」 『東方學誌』 45
백승철, 2000 「17세기 동전유통론과 화폐정책의 분화」『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송재선, 1985,「16세기 면포의 화폐기능」『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태학사
송찬섭, 2000,「숙종대 재정추이와 경자양전」『역사와 현실』36
유현재, 2006「16세기 麤布유통과 그 성격」『한국사론』서울대 국사학과
이강한, 2001「고려후기 元寶·의 유입 및 유통실태」『한국사론』46
이정수, 1996「조선전기의 물가변동-미곡 이외의 상품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68
이헌창, 1996「1678-1865년간 화폐량과 화폐가치의 추이」『경제사학』27
임덕순, 1985『수도서울의 기원과 발전과정』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조효숙, 「방직업」『한국사』24,

채웅석, 1988「高麗前期 貨幣유통의 기반」『한국문화』9
한명기, 1992「17세기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규장각』15
한영국, 「대동법의 실시」『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Angela Schottenhammer , Japan-The Tiny Dwarf? Sino-Japanese Relations from the Kangxi to the Early Qianlong Reigns Asia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No. 106

Dennis O.Flynn, Arturo Giraldez, 1995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Journal of World History 6:2

E. E. Rich, 1977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ume 5,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arly Modern Europe: London

Eli F.Heckscher, 1954 An Economic History of Sweden(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of Michigan

Innes, 1980 The door ajar : Japan′s foreign trade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sis (Ph. D.)--Univ

Hiroyuki Honda, 2007, "Copper coinage, Ruling Power and Local Society in medieval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Hoang Anh Tuan, 2006 Silk for silver: Dutch-Vietnamese relations, 1637-1700, Leiden Univ. Ph.D. thesis

Hirzel, Thomas, 2008 Metals, Monies, and markets in early modern societies, Lit

J. R. Hicks, 1989 A Market Theory of Money , Oxford

Kent G. Deng, 2008 Miracle or Mirage? Foreign Silver, China's Economy and Globalization from the Six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ies, Pacific Economic Review

Kozo Yamamura, 1988 "From Coins to Rice: Hypotheses on the Kandaka and Kokudaka Systems",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4.2 (Summer)

Kristof Glahn, 1977 "The Changing Pattern of Trade"(E. E. Rich,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ume 5,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arly Modern Europe: London

Kuroda Akinobu, 2007 "Uncommon commen

Kazui Tashiro, 2006 Exports of Japan's silver to China via Korea and changes in the Tokugawa monetary system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Japan and the Pacific, 1540-1920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4:1

_____, 2008 "What is the complementarity among monise?" Financial History of Review 15. I

_____, 2008 "Concurrent but non-integrable currency circuits:complementary relationships among monies in modern China and other region" Financial History Review 15. I

Ryuto Shimada, 2006 The Intra-Asian Trade and Industrialization: Essays in Memory of Yasukichi Yasuba

Ryuto Shimada, 2006 The Intra-Asian trade in Japanese copper by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bid, Brill
Von R. Glahn, 1996 Fountain of Fortune, Univ. of Cal.
Von R. Glahn, 2004 "Revisiting The Song Monetary revolut
iom"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1, 1

【Abstract】

A Study on th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Utilization of Currency in the Late Chŏson Dynasty

Yoo, Hyunja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ies about the history of social economy in late Chŏson, which were emerged in 1960s and have been activated from then, have argued that the late Chŏson Dynasty's commer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was based on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particularly, they explain that advanc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caused agricultural surpluses and these surpluses vitalized exchange economy, and ultimately, this process made industrial development. Previous studies also explain that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celerated monetary exchange, and correspondently, the amount and shape of currency had been changed. Accordingly, research on the history of Korean currency has tended to only examine the industrial development by means of indirect methods such as investigating the beginning of use of currency and the scale of the circulation. These previous studies view the development o

f monetary economy as corresponding phenomenon with the a ctive circulation of money among people in the premodern soc iety, and this perspective has been persisted in research of th e circulation of money from Goryeo to late Chŏson. However, these studies have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monetary circulation in the premodern society in terms th at they focus only on the corresponding relation between the monetary development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ey t end to simply apply the circulation of money in modern era to that of premodern society,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correl ation between the circulation of money and the industrial deve lopment.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between premodern currency and modern c urrency; therefore, it has been perceived that both Koryo and Chŏson's monetary circulation are the results of the developm ent of commodity money economy. As a result, it has been co nsidered that all the currencies before *Sangpyeongtongbo*(常平通寶), which was the currency distributed in quantity, were fai led currencies due to the immature market, and this perceptio n comes from a lack of in-depth understanding of social situa tions when currency was actually used.

Previous research on the history of currency tends to focus on the period around the issue of *Sangpyeongtongbo*; of course, this research has enabled institutional study for the ci rculation of money in the Chŏson Dynasty and has enabled a comprehensive review of internal factors for the circulation of money under the consideration that currency was closely relat

ed to commerce. Which means, previous studies systemically i nvestigate how Chŏson's internal economic situations accelerat ed the circulation of currency, and this perspective that relate s economic situations to the circulation of money has been co ntinued for research on the circulation of money from ancient to modern society. However, the circulation of money in the p remodern era, in fact, has more relation to the financial policy than to commerce itself; accordingly, it is more important to examine the government's intention when it comes to investig ating the purpose of the circulation and enforcement of policy. This paper examines the circulation of money in the macrosco pic perspective including the government's viewpoint, complem ent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at overemphasize t he correlation between currency and commerce which might h ave overlooked various contexts that could be inferred from t he circulation of money in late Chŏson.

The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 one exami nes the process of the issue of currency that was used befor e *Sangpyeongtongbo.*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meaning of the circulation of money in early Chŏson, examining the perce ption of currency in those days. As it is widely known, the hi story of currency has begun from ancient China. The perspect ive that sees the economic development as a corresponding p henomenon to the development of currency cannot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ancient China's economy, when currency was existed, and 18th and 19th century Chŏson society, when *Sangpyeongtongbo* had been made.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percepti ons toward currencys how ninancient Chinese records and tho se of Chŏson Dynasty; and specifically, the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currency in the perspective offinan ce. The records show that coins and paper money used in ea rly Chŏson were distributed by the government as a state-do minated financial policy, and this can be reevaluated as an eff ective financial policy that could escape financial crisis even t hough the range of time and space for the distribution was li mited.

Chapter two investigates the circulation of *Sangpyeong tongbo*, the official currency of Chŏson from 17th century, an d the chronological change that made mass-produced currenc y possible. The importance of the basematerial for currency a nd foreign conditions related to the material has been neglect ed in earlier studies. The basematerial for *Sangpyeongtongbo* was copper, but Chŏson's copper output wasn't enough to pro duce a quantity of coins for the nationwide distribution. As a result, Chŏson Dynasty had no choice but importing copper fr om Japan, where produced about a half of copper output amo ng all in the world. Most copper output, along with silver outp ut, was exported to China, and Ch'ing put in a great deal of e ffort to secure copper imports even by dispatching spies. In a ddition, as trade competition for copper had been deepen and Japan started to limit exports of copper, the price of copper h ad been increased. Practically, it was almost impossible for C hŏson to secure enough copper to make coins if Chŏson have

left it to the market, since it was necessary to compete China where planned national business for currency. Furthermore, VOC had joined so that competition for copper had become even more intense. All things considered, it becomes necessary to see Chŏson's actions on obtaining copper and making coins, in this fierce competing environment, in a macroscopic perspective. There has been limited research on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hina's situation on circulation of money, where imported the base material from Japan, and Chŏson's situation. Chapter two examines how Chŏson obtained the base material from Japan in competition with China or other countries for the distribution of money in quantity, and how it implemented policies different from China to take advantage of currency for finance. It also examines the function of distributed currency in Chŏson, focusing on actual circumstances in those days, attempting to escape the existing perspective that tends to focus only on quantitative expansion of distributed currency. From this perspective that focuses on the function of currency, it is clear that *Sangpyeongtongbo*, which was made in 1678, maximized financial effects and was distributed to the people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Chapter three examines the change in the circulation of money according to the change in importing environment. This change affected the money distribu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Overall conditions had become worse so that manufacturing coins become no more beneficial for national finance, and Chŏson noticed financial loss from distributing coins unlike

before; however, it took risks and kept distributing money. Ev en though coins weren't a direct help to the nation, the main reasons for Chŏson to keep the circulation of money were to increase liquidity of financial distribution due to the distributio n of coins, and to keep the possibility of various financial poli cies through coins. Within the flow of the change in central fi nancial policy that can be represented by Gyeunyeok policy, Chŏson could politically complement financial loss by coins; a nd this was the biggest reason for maintaining the distribution of money. Chapter three extends the perspective on the functi on of currency from considering coins just as the means of e xchange to considering it as the method of finance, and from this extended perspective, it investigates how the use of coin s could be quantitatively expanded even in the condition of cu rrency-famine. Particularly, it attempts to consider both of th e government and the people's stance, examining how coins s ecured financial liquidity.

This paper highlights the meaning of Chŏson's monetar y system by reviewing features of currency that was distribut ed before *Sangpyeongtongbo* and also by comparing Chŏson's p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Sangpyeongtongbo* to other countries. It was possible for Chŏson to improve financial con ditions by distributing coins and also possible to temporarily c ope with critical situations in the late Chŏson society. Future research needs to be continued to examine more highlighted f eatures of Chŏson, by studying the history of currency of Jap an and China around the same time.

Key Words: Paper note(楮貨), seigniorage, Chŏsontongbo (朝鮮通寶), Sangpyeongtongbo(常平通寶), Japanese copper(倭銅), Exchanging rate between silver and copper coin(銀錢比價)

Student Number: 2005-30032